

2023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연구용역과제

발간등록번호 11-1543000-004357-01

# 동물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

박준휘·정유나·주현경·박미랑·홍문기



농림축산식품부



2023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연구용역과제

발간등록번호 11-1543000-004357-01

# 동물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

박준휘·정유나·주현경·박미랑·홍문기



농림축산식품부



이 연구보고서를 귀 기관과 체결한 2023년도 연구용역과제인 『동물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 ◎ 연구진

연구책임자 박준휘 선임연구위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공동연구자 정유나 부연구위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주현경 교수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미랑 교수 (한남대학교)

홍문기 조사연구위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목 차

국문요약 ..... 1

## 제1장

서 론 ..... 17

    제1절 연구목적 ..... 19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 20

## 제2장

현행 우리나라 동물학대 현황과 쟁점분석 ..... 23

    제1절 우리나라 현황 ..... 25

        1. 동물보호법 위반범죄의 증가 ..... 25

        2. 동물에 대한 변화된 인식 ..... 29

        3. 동물학대 범죄의 실질적 처벌의 미비 ..... 35

        4.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 필요한 이유 ..... 43

    제2절 동물학대 방지 관련 현행 법제도 고찰 ..... 45

        1. 동물의 개념과 법적 지위 ..... 45

        2. 현행법상 동물에 관한 법제 ..... 47

        3. 민법 ..... 51

        4. 그 외 ..... 52

        5. 동물보호법 ..... 53

        6. 현행법상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규정 ..... 60

### 제3장

#### 동물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의 비교법적 분석 ..... 71

- 제1절 독일 ..... 73
  - 1. 개관 ..... 73
  - 2. 연방 동물보호법 개관 ..... 77
  - 3. 독일 동물보호법상 동물보유등 금지제도 ..... 78
  - 4. 동물보유등 금지 임시조치제도 ..... 80
  - 5. 학대동물 압수 ..... 81
- 제2절 스위스 ..... 82
  - 1. 개관 ..... 82
  - 2. 동물보호법 ..... 84
- 제3절 미국 ..... 86
  - 1. 개관 ..... 86
  - 2. 미국 연방법 ..... 87
  - 3. 동물학대 관련 주(State)법 ..... 92
- 제4절 기타 영미법계 법률 ..... 139
  - 1. 영국 ..... 139
  - 2. 캐나다 ..... 141

### 제4장

#### 실효성 있는 보호조치를 위한 유사제도 분석 ..... 143

- 제1절 아동학대와 동물학대 ..... 146
  - 1. 아동학대 개념과 피해 특징 ..... 146
  - 2. 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적 작용 ..... 148
  - 3. 아동학대 대응을 통해 살펴본 동물학대 사건 대응 방향성 ..... 158
- 제2절 가정폭력 ..... 159
  - 1. 가정폭력 개념과 피해 특징 ..... 159
  - 2. 가정폭력에 대한 법률적 작용 ..... 160
  - 3. 가정폭력 대응을 통해 살펴본 동물학대 사건 대응 방향성 ..... 162

## 제5장

### 동물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의 실효성 보완 현안 및 개선방안 ..... 165

제1절 동물사육금지제도 .....	167
1. 개요 .....	167
2. 제도 도입 비판론 검토 .....	168
3. 대상 학대범죄의 수준 .....	169
4. 재범의 위험성 판단방법 등 .....	173
5. 금지되는 행위 및 그 대상 .....	175
6. 개정안 1: 형사제재(보안처분) 형식 .....	177
7. 개정안 2. 이수명령 등과 병과하는 방법 .....	185
8. 개정안 3: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 .....	187
9. 개정안 4: 기존 보안처분의 부수처분 .....	190
제2절 동물사육금지 임시조치 제도 .....	197
1. 개요 .....	197
2. 현행 보호·격리조치의 개정 .....	198
3. 임시조치의 내용 .....	198
4. 개정안 .....	199
제3절 학대행위자와 피학대동물의 영구격리제도 .....	201
1. 영구격리제도 필요성 .....	201
2. 안1: 압수 제도의 활용 .....	201
3. 안2: 동물보호법 개정 .....	202
4. 개정안 제시 .....	204
제4절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 외 기타 보호처분 제도 보완 .....	204
1. 형벌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의 병과 .....	204
2. 동물몰수 처분 및 동물사육의 금지 등 .....	205
3.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 .....	207
4. 동물학대 행위자 사후 관리 제도 .....	207

## 제6장

결 론 ..... 213

참고문헌 ..... 229

## 표 차례

[표 2-1] 최근 5년간 연도별 동물보호법 위반 검거 현황 .....	26
[표 2-2] 대전광역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조례 자치구별 관리책임부서 .....	27
[표 2-3]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동물보호조례 제정일 및 동물보호팀 .....	27
[표 2-4] 2021년 지자체 동물보호감시원 활동실적 .....	28
[표 2-5] 성별, 연령별 동물권 & 개 식용 관련 인식 .....	30
[표 2-6] <질문> 현행 민법에서 동물은 ‘물건’ 또는 소유자의 ‘재산’으로 분류됩니다. 이에 대해 동물에게 생명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귀하는 이러한 주장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에 대한 응답 .....	30
[표 2-7] <질문> 귀하는 동물이 사람처럼 희로애락 감정을 느끼는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 .....	32
[표 2-8] 농림축산식품부 6대분야 21대 과제 .....	34
[표 2-9] 동물보호법 위반 발생·검거·송치 현황 .....	37
[표 2-10] 동물보호법 위반사건 접수 및 처분 현황 .....	37
[표 2-11]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자의 연령별 분포 .....	38
[표 2-12] 동물학대 수사경험에 대한 설문응답 .....	40
[표 2-13] 동물학대 수사진행의 어려움에 대한 설문응답 .....	41
[표 2-14] 동물학대 수사가 어려운 이유에 대한 설문응답 .....	41
[표 2-15] 동물학대 정황 의심사례 경험에 대한 설문응답 .....	42
[표 2-16] 동물학대 의심시 조치에 대한 설문응답 .....	42
[표 2-17] 동물학대 의심 시 미조치 이유에 대한 설문응답 .....	42
[표 2-18] 개별법에서 동물에 대한 정의 .....	45
[표 2-19] 동물관련 법령들의 내용과 소관부처 .....	48
[표 2-20] 민법 개정안 .....	51
[표 2-21] 동물보호법 연혁 .....	57
[표 2-22] 동물학대의 유형 -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61
[표 2-23] 동물학대의 유형 - 상해를 입히거나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 .....	62
[표 2-24] 동물학대의 유형 - 유실·유기 동물 등에 대하여 포획, 판매 등 .....	63
[표 2-25] 동물학대의 유형 - 유기하는 행위 .....	63

[표 2-26] 동물보호법 벌칙조항 .....	64
[표 3-1] 독일 동물보호법 개관 .....	77
[표 3-2] 독일 동물보호법 제17조 -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형벌규정 .....	78
[표 3-3] 독일 동물보호법 제20조 - 동물사육금지 및 직업적 거래행위 등 금지 규정 ..	78
[표 3-4] 독일 동물보호법 제20a조 - 동물보유 등 금지 임시조치제도 .....	80
[표 3-5] 동물보호법 제19조 - 동물 압수제도 .....	81
[표 3-6] 스위스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행위 .....	84
[표 3-7] 스위스 동물보호법상 금지처분 및 행정청의 개입 .....	85
[표 3-8] 미국 연방법상 동물복지법(AWA)의 처벌 내용 .....	88
[표 3-9] Preventing Animal Cruelty and Torture, PACT 내용 .....	91
[표 3-10] 캘리포니아 주 형법상 금지된 동물학대 .....	93
[표 3-11] 메릴랜드 주 관련법과 처벌 내용 .....	97
[표 3-12] 테네시 주 관련법과 처벌 내용 .....	101
[표 3-13] 뉴욕 주 관련법과 처벌 내용 .....	104
[표 3-14] 플로리다 주 관련법과 처벌 내용 .....	107
[표 3-15] 미국 각 주별 동물학대 최고 선고형과 행위 .....	110
[표 3-16] 의도적 방임 금지 규정과 대표적 주법 .....	120
[표 3-17] 금지 내용과 대표적 주 법 .....	122
[표 3-18] 인간과 동물에 대한 폭력성의 연결점을 인정한 대표적 주 법 .....	130
[표 3-19] 테네시 주 동물학대 등록 및 공개 사이트 .....	135
[표 3-20] Albany, Nassau, Rockland, Suffolk 카운티 및 New York시 의 동물학대자 등록 법 소개 .....	137
[표 3-21] 뉴욕 주의 신상등록 제도 운영 카운티 .....	138
[표 3-22] 영국 동물복지법의 처벌조항 처벌 수준 .....	140
[표 3-23] 캐나다 동물학대 금지 규정 및 처벌 수준 .....	141
[표 4-1] 아동학대 범죄 처벌 특례 .....	149
[표 4-2] 응급조치와 임시조치 비교 .....	150
[표 4-3] 응급조치와 즉각 분리 제도 비교 .....	151
[표 4-4] 아동학대처벌법 상의 가해자 벌칙 조항 및 내용 .....	153
[표 4-5] 아동학대처벌법 상 집행기관의 역할 .....	154
[표 4-6] 아동학대처벌법 상 보호처분 불이행에 대한 조항 .....	157
[표 4-7] 아동학대 법률을 통해 살피본 동물학대 처분 방향성 .....	158
[표 4-8] 가정폭력처벌법상 형벌과 수감명령 병과 .....	160
[표 4-9] 가정폭력사건 응급조치와 임시조치 비교 .....	161

[표 4-10] 가정폭력 법률을 통해 살려본 동물학대 처분 방향성 .....	162
[표 5-1] 대상 동물학대행위의 선별방법 .....	170
[표 5-2] 동물학대행위의 유형 구분 .....	170
[표 5-3] 동물보호법 제10조 금지행위와 처벌의 정도 .....	171
[표 5-4] 보호관찰 일반준수사항(보호관찰법 제32조 제2항) .....	191
[표 5-5] 보호관찰 특별준수사항(보호관찰법 제32조 제3항) .....	191
[표 5-6] 보호관찰법 시행령 제19조의 특별준수사항 .....	195
[표 5-7] 동물사육금지 임시조치 단계 .....	199
[표 5-8] 병역 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공개 관련 법령 .....	210
[표 5-9]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 관련 법령 .....	211



## 그림 차례

[그림 2-1] 동물학대 사건발생 시 절차 .....	35
[그림 2-2] 2017~2022.3.까지 동물보호법 처벌 비중 .....	36
[그림 4-1] 아동학대 대응체계 .....	152
[그림 5-1] 병무청 웹사이트의 병역기피자 공개 화면 .....	210
[그림 6-1] 동물사육금지 임시조치 .....	227
[그림 6-2] 동물학대 재발방지 제도 구성 .....	228

## 제1장 서론

- 1.1. 본 연구는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강력한 재발방지 제도로써 학대행위자 동물사육금지처분 도입 및 피학대동물 구조·보호 등 임시조치 보완 방안 마련을 위해 기획됨.
- 1.2. 동물보호법은 계속 개정을 거듭하다가 최근 전면개정 되었고, 2023년과 2024년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변화된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지만, 실질적으로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해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처분이 빠진 채 전면개정되었고, 피학대동물에 대한 보호방안이 미흡하여 전면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제대로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 두 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 1.3. 이 보고서에서는 동물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로,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동물사육금지처분과 피학대동물 보호를 위한 제도를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분석하고, 개정안을 제시하고자 함.
- 1.4. 본 연구는 동물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로 재발방지 제도 중 동물학대자에 대한 사육금지처분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함.
- 1.5. 피학대동물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조치를 위해 우리나라의 유사제도를 분석하고 동물학대 재발방지제도의 입법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제2장 현행 우리나라 동물학대 현황과 쟁점분석

- 2.1. 최근 몇 년 사이 동물학대 범죄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임.
- 2.2. 경찰청 통계나 범죄분석 통계를 분석해도 동물보호법 위반 검거건수는 2017년 322건에서 2021년 689건으로, 검거인원도 2017년 459명에서 2021년 936명으로 약 2배 이상 급증함.
- 2.3. 경찰청도 2021년 3월부터 동물대상범죄 벌칙해설을 발행하였고, 동물학대 코

## 2 동물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

드를 신설하여 관리중임. 지자체별로는 동물보호감시원 제도를 통해 동물학대 범죄 등에 대해 수사 중임.

- 2.4. 우리나라에서 동물에 대한 인식 또한 변화했음을 각종통계에서 살펴볼 수 있음. 더불어 동물의 보호와 복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지만 동물을 상대로 한 끔찍하고 잔혹한 범죄도 계속 증가하고 있음.
- 2.5. 현정부는 국정과제 48번으로 누구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과 함께 과제목표의 하나로 사람과 동물이 모두 함께 행복한 건전한 반려문화 조성을 제시하고 있음.
- 2.6. 농림축산식품부도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시행 중인데, 이 중에 동물학대 행위범위를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하며 재발방지를 주요과제로 하는 동물소유자 인식개선이 포함되어 있음.
- 2.7. 동물학대 사건은 꾸준히 늘어나고, 사람들의 동물에 대한 인식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지만,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 미미하다는 것이 동물학대 범죄의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음.
- 2.8. 동물학대범죄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일반범죄와 다른 어려움이 있음.
- 2.9. 범죄파악과 학대의 파악이 어렵고,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특정 및 증거확보가 어려움. 그리고 피학대동물 그 자체가 증거가 되는 경우 시간이 경과하여 치유됨에 따라 증거가 자연 소멸함. 또한 경찰과 공무원만으로 모든 학대행위를 감시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동물범죄 수사는 일원화된 전문부서가 존재하지 않음. 실제로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을 다루는 경찰들이 수사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조사결과도 있음.
- 2.10. 동물학대가 심각하고, 수사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동물학대가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동물학대는 심각한 반사회적 행동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청소년이나 폭력, 약물중독 등의 문제를 안은 가정을 찾아내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 동물학대는 비교적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며, 동물을 해치는 행위는 부정적 발달의 결과와 연관될 수 있고, 동물학대는 가정폭력의 지표일 수 있으며, 가해자의 상당수가 가정폭력의 피해자이기도 하고, 동물학대는 비폭력범죄 뿐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인간폭력과는 연결되며, 잠재적

피해동물의 수가 많고 동물학대의 종결은 모든 형태의 폭력을 종결하는 데 중요한 한 걸음이 된다는 점에 있음.

- 2.11. 미국의 경우 FBI에서 동물에 대한 학대를 범죄 데이터베이스화하기 시작하였고 동물학대는 방화, 절도, 폭행, 살인과 같은 중범죄에 포함함.
- 2.12. FBI는 UCR(Uniform Crime Reporting)의 미국 범죄 보고서에서 동물학대를 단순방치(neglect), 의도적 학대 및 고문(torture), 조직적 학대(organized abuse), 성적 학대(sexual abuse)로 나누어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하였음.
- 2.13.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통계나 데이터가 부족하기에, 동물학대와 다른 범죄와의 연관성이 더 연구되어 논증되어야 함. 그러나 동물학대가 다른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음.

### 제3장 동물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의 비교법적 분석

- 3.1. 독일에서 동물보호에 관련된 가장 주된 법은 연방 동물보호법임. 동물보호에 관련된 내용은 동물보호법, 민법, 기본법의 순으로 발전해왔음. 독일민법은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기본법에도 동물보호의 내용이 추가됨.
- 3.2. 독일은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표적인 제도로 동물보호법상 동물보유등 금지제도를 두고 있음. 금지되는 유형은 보유, 보호, 거래, 그 밖의 직업적 취급임. 동물보유등 금지제도의 대상은 동물보호법 제17조에 따른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 또는 책임조각사유로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자임. 또한 독일은 동물보유등 금지제도의 실효성을 위하여 이에 대한 임시조치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리고 동물학대에 관련된 동물을 압수도 가능함.
- 3.3. 스위스는 동물보호법 뿐 아니라 민법과 헌법 등에도 동물보호에 관련된 조항을 두고 있음. 스위스 민법에도 동물을 물건의 예외로 두는 조항을 두고 있으며, 헌법 역시 동물보호를 명시하고 있고, 모든 동물들을 위한 생명의 존엄성을 명시하고 있음.
- 3.4. 미국은 각 주마다 동물학대를 금지하는 주형법 혹은 개별법이 존재하며, 동물학대법은 50개 주에서 중죄 관련조항을 갖고 있음. 주의 경계를 넘어서는 동물

#### 4 동물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

학대행위는 동물복지법(Animal Welfare Act, AWA)의 수정보완과 동물학대 및 고문 금지법(Preventing Animal Cruelty and Torture, PACT)의 시행으로 보완되고 있음.

- 3.5. 동물복지법(Animal Welfare Act, AWA)은 동물을 소유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동물 생활조건을 규율하는 법임. 위반행위를 명시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민사제재, 허가취소 규정을 제시하고 있음. 특히 동물싸움 금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임
- 3.6. 동물학대 및 고문 금지법(Preventing Animal Cruelty and Torture, PACT)은 1999년 경 미국 내 여러 주에서 유통되는 압살영상(crush video)에 대한 규제 목적으로 제정됨, 이 법은 동물싸움 영상에 대해 광범위한 규제 대상과 검사의 재량 문제가 있어 위헌판결이 선고되었고, 2010년 이러한 영상을 제외하고 압살영상의 제작과 유포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음. 전반적인 동물학대 행위는 주 단위에서 규제되고, 해당 연방법은 동물학대행위를 촬영한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2019년 개정에서는 “누구든지 고의적으로 미국의 특별해양 및 영토관할 내의 교역, 주와 주 사이 또는 해외교역과정에서 동물 압살행위에 관여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음. 또한 PACT 법은 법 집행에 동원되는 경찰동물에 대한 상해를 더욱 엄하게 처벌하고 있음.
- 3.7. 미국은 많은 주들이 동물학대 관련 법들이 집행될 수 있도록 부서를 재조직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동물법부서, 동물복지부, 동물학대기소부서 등을 설치함.
- 3.8. 캘리포니아는 형법에서 동물학대를 규정하고,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상담 및 치료명령을 내리고 동물조사관에 의해 범죄에 사용된 동물은 압수가 가능하며,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5년 동안 동물을 소유, 점유, 유지, 양육, 함께 거주, 돌보는 행위 등이 금지됨.
- 3.9. 메릴랜드는 형법에서 동물학대를 규정하고 있고, 인도적사회관리관을 두어 동물복지위반이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발견하면 이들을 체포하고 지방법원에 소환하도록 되어 있음.
- 3.10. 테네시 주는 형법에서 동물학대를 규정하고 있음. 테네시주는 테네시동물학

대자등록법을 마련하여 동물학대자명단을 공개하고 있음.

- 3.11. 뉴욕은 농업및시장법과 뉴욕주 형법에서 동물학대를 규정하고 있음. 농업및 시장법은 동물을 인간을 제외한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로 규정하고 있음. 뉴욕 주의 경우 경찰과 치안관 모두 동물학대행위자를 목격했을 때 형사절차에 개입하는 권한을 갖고 있음. 뉴욕 주의 경우 유죄선고 이후 동물소유권 제한에 관한 내용과 부수처분, 보안처분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 3.12. 플로리다의 경우 형법에서 동물학대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플로리다는 동물 보호를 아동이나 취약한 대상과 같은 맥락에서 바라보고 있음.
- 3.13. 미국에서 동물학대에 대한 법률은 빠르게 개정되고 있고, 처벌 수위도 상당히 상향조정되고 있는 경향을 띠고 있음. 동물학대행위에서 신고형이 높은 대표적인 행위는 중한 학대, 동물싸움, 동물에 대한 성적 행위임.
- 3.14.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동물의 유기를 금지하고 있음. 동물에 대해 심각한 피해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의도적 방임을 금지하는 주는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일리노이, 뉴욕 주임.
- 3.15. 동물을 학대한 가해자에 대하여 피학대 동물을 몰수하거나 향후 학대자의 동물 소유권에 제한을 두고 있는 주들도 있음. 유죄판결 전 동물에 대한 몰수 조건을 갖고 있는 주는 미네소타, 일리노이, 오레곤, 워싱턴 주가 대표적임. 유죄판결 후 몰수 및 소유금지조항을 갖고 있는 주는 일리노이, 미네소타, 텍사스, 오레곤, 플로리다 주가 대표적임.
- 3.16. 테네시는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처벌과 함께 동물학대자의 동물관리 포기 및 몰수를 명령함. 일리노이는 동물학대 관련 범죄를 이유로 범죄자를 구속하는 경우 법집행관이 해당반려동물을 점유하고 압류할 수 있음. 펜실베니아, 메인 주도 동물학대 발생시 피학대동물에 대한 몰수, 긴급압수가 진행됨.
- 3.17.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단순히 처벌받을 행위로만 보지 않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동물을 줄이고 가해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동물학대자에 대한 심리치료와 교육을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주들도 있음. 일리노이, 버몬트,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메릴랜드 주가 대표적임.
- 3.18. 미국은 동물학대자에 대한 신상등록 및 공개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동물학대

## 6 동물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

자 신상등록 제도는 동물학대자에 대한 접근 가능한 정보를 동물 복지 기관, 형사사법기관, 연구자와 대중들에게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목적임. 동물학대자에 대한 신상등록 및 공개 제도는 고지 자체로써, 처벌로써 효과를 갖는 것이 아니라 재범방지에 더욱 가중치를 두고 있음. 현재 신상등록 제도는 가해자의 사진과 함께, 이름과 추가적 정보를 수집하며 사회보장번호, 운전면허정보, 다른 주 혹은 연방신원번호는 포함하지 않음.

- 3.19. 2008년 테네시 동물학대자 등록, 추적, 확인법(Tennessee Animal Abuser Registration, Tracking, and Verification Act of 2008)이 만들어졌고, 2016년 1월 1일에는 테네시 동물학대자등록법(Tennessee Animal Abuser Registration Act)이라는 동물학대 범죄자에 대한 신상등록 제도를 도입함.
- 3.20. 2010년 뉴욕의 Suffolk 카운티에서는 미국 내 처음으로 동물학대자 등록법 (animal abuser registry law)을 제정. 이후 2011년 Rockland 카운티와 Albany 카운티에서도 학대자 등록법을 제정하였고, 2014년에는 Nassau 카운티와 New York City에서도 같은 법을 제정하여 시행 중임.
- 3.21.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처음으로 동물보호의 의무를 법률로 명시한 나라로 1822년 가축에 대한 학대와 부당한 처우를 막기 위한 법이 의회를 통과함. 영국의 일반적인 동물보호법은 1911년 “Protection of Animals Act”로 제정된 이후 지속적인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동물에 대한 중한 위해가 가해졌을 경우 법원은 소유권을 박탈하고 동물을 몰수할 수 있음.
- 3.22. 캐나다의 경우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 수준이나 처벌 규정이 촘촘하게 마련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임. 캐나다 형법에서 전반적인 내용을 규율하고 있고, 각 주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조율하고 있으나, 학대자 신상등록 제도와 같은 제도는 아직 미시행 중.
- 3.23. 캐나다에서도 소떼에 대한 위해 및 상해, 일반 다른 동물에 대한 위해 및 상해행위, 동물에 대한 불필요한 고통 주기, 동물에 대한 유기 방임으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간 동안 피고인이 동물이나 새를 소유, 양육 또는 통제하거나 동일한 거주지에서 거주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음

## 제4장 실효성 있는 보호조치를 위한 유사제도 분석

- 4.1. 동물학대와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와의 연관성은 국외에서는 꾸준히 지적되고 있음.
- 4.2. 동물학대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동물학대 가해자가 과거 가정폭력의 피해자였다는 점, 동물학대가 가정폭력의 일부분으로써 일어나고 있다는 점, 동물학대 피해자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발견과 연결된다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음.
- 4.3. 아동학대와 동물학대는 발견의 어려움, 수사기관의 소극적 대응 및 증거수집의 어려움, 사회적 인식, 학대자와 피해자의 즉각적 분리필요성의 측면에서 유사점을 보임.
- 4.4. 아동학대에 대한 범죄는 최대 사형까지 선고가 가능하고 아동복지 시설의 종사자 등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해 아동학대를 한 경우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됨.
- 4.5.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유죄판결 시 200시간 이내의 수강명령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함. 집행유예 선고 시 수강명령을 병과하고, 실형 선고 시 이수명령이 선고가능함.
- 4.6. 아동학대 사건을 보호사건으로 결정할 경우, 판사는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제36조에 근거하여 접근금지 명령,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 제한 또는 정지를 신청함과 동시에, 보호관찰법에 따라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관찰 병과가 가능함.
- 4.7. 아동학대의 경우 현장 피해자에 대해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가 가능함. 이러한 응급조치가 요건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아동에 대한 일시 보호제도로써, 즉각 분리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4.8.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 범죄 신고를 접수한 경찰과 형사사법 집행기관이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취해야하는 조치에 대하여 상세히 명시하고 있음. 아동학대처벌법은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아동학대 행위자,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학대자에 대하여 불이행에 대한 벌칙

규정을 명확히 제시함.

- 4.9. 아동학대처벌법과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현장에서 아동학대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된 대응책들은 실제로 유사성을 갖고 있는 동물학대 행위 대응 방안에 좋은 대안을 제시하고 있음. 무엇보다, 즉각적으로 학대행위를 멈추도록 하고, 반복피해를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응급조치와 임시조치는 동물학대에도 매우 필요한 제도임.
- 4.10. 동물학대에 대해서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재량적으로 응급조치와 긴급임시 조치로써 피해 동물을 안전한 곳으로 분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함.
- 4.11.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임.
- 4.12. 가정폭력과 동물학대는 내부 구성원들에 의해 발생하는 사건으로 발각이 어렵고, 피해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점에서 유사점이 있음.
- 4.13. 가정폭력 사건의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의 가해행위가 즉각적으로 중지되는 것이 필요함은 물론이거니와 피해자와의 분리를 통해 추가적 반복 피해를 막을 수 있는데, 동물학대 역시도 소유주와의 즉각적인 분리를 통해 추가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음.
- 4.14. 가정폭력의 경우 원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단순한 처벌 위주의 정책이 아니라 보호처분을 통한 성행 교정을 중요 역할로 보고 있는데,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성행 교정을 통한 재범 방지 대책이 역시나 필요함.
- 4.15. 가정폭력처벌법 제40조에서는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접근금지, 친권행사 제한,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이 가능함.
- 4.16. 가정폭력처벌법에 근거하여 동물학대 보호법의 개정 및 현장 집행력을 높이는 대안으로 응급조치와 임시조치가 필요함.
- 4.17. 가해자에 대한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을 의무적으로 부과하여 성행 교정과 치료를 통해 향후 재범을 막기 위한 사회적 노력도 필요함.
- 4.18. 가정폭력처벌법은 피해자가 가정보호사건이 진행되는 1심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민사처리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장애인 등을

보조하는 서비스 동물에 대한 학대가 타자에 의해 발생했을 때 이러한 배상신청을 통해 소유주의 피해회복을 신속히 도모하는 작업도 필요함.

## 제5장 동물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의 실효성 보완 현안 및 개선방안

- 5.1. 동물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가장 실효성 있는 제도는 학대행위자에 대하여 동물의 사육 등을 금지하는 제도임.
- 5.2. 이미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유럽 및 미국의 제도를 검토하고, 이 제도를 우리에게 적합한 제도의 모습으로 제안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효율적인 방법임.
- 5.3.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추어 시행 첫 단계에서는 대상범죄인 동물학대범죄를 중한 범죄로 한정하는 등 제도 도입 단계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 감정에 발맞추어 갈 필요가 있음.
- 5.4. 동물사육을 금지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임. 첫째, 형사제재의 형식으로서, 검사가 청구하고 법원이 유죄판결 선고 시에 보안처분으로 함께 내리는 명령의 형식인 '동물사육금지명령'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개정안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처분으로 부과하는 방법(개정안 2), 그 외에도 기존의 이수명령과 병과하는 방법(개정안 3), 보안처분의 부수처분으로 부과하는 방법(개정안 4) 등이 있음.
- 5.5. 이중처벌금지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보안처분의 특수성을 이유로 하고, 이 제도가 필요적 처분이 아니며 법원의 재량에 따른 제도임. 이 제도를 도입한다 하여 무조건적으로 동물사육금지제도를 모든 사건마다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제도의 도입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사건마다 비례성원칙의 충족 여부가 고려되어야 함.
- 5.6. 다양한 유형의 동물학대행위를 일률적으로 '동물사육금지명령'의 대상 범죄로 삼을 것인지, 또는 이 중 우선 중한 범죄에만 형사제재로서의 동물사육금지처분을 규정할 것인지를 정하여야 함.
- 5.7. 우리 동물보호법에서도 제도 도입 초기 단계에서는 중대한 학대범죄를 대상으로 동물보유등금지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그 중 실현가능성이

높은 두 가지로 첫째, 실제 처벌되는 선고형을 기준으로 징역형을 부과할 때에만 동물사육금지제도를 도입하는 방법, 둘째, 동물보호법상 금지되는 학대행위의 행위유형과 법정형을 고려하여 그 유형을 선별하는 방법이 있음.

- 5.8. 이 제도는 법원이 부과하는 명령의 경우 원칙적으로 동물학대범죄에 대한 유죄판결과 함께 부과하는 형식임.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되므로, 우선적으로는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로만 한정하여 이 제도를 시행하고, 향후 제도 안정화 단계에서 책임조각사유가 있어 유죄판결 받지 않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5.9. 이 명령이 비례성원칙의 균형성 원칙이 지켜진다고 하기 위해서는, 이 명령을 부과하기 위한 조건으로 단순한 과거의 범죄행위인 학대행위만을 요건으로 두어서는 안 되며, 보안처분의 목적인 장래에 대한 범죄위험성, 즉 재범위험성을 명령의 요건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다른 법률에서 운용하고 있는 청구전 조사 제도나 의견청취제도 등 사전의 조사제도의 필요성이 검토되어야 함.
- 5.10. 현재 법안에서는 사육·관리 및 보호를 금지하고 있음.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소유자등”으로 보고 있으며(제2조 제2호), “사육·관리 또는 보호”를 동물에 대한 돌봄의 기본행위로 칭하고 있다(제3조, 제9조 등). 따라서 동물사육금지제도에서도 금지하는 행위는 기존의 법체계와의 정합성을 위하여 사육, 관리, 보호로 정할 수 있음.
- 5.11. ‘사육’이란 어린 가축이나 짐승이 자라도록 먹이여 기름, ‘관리’란 어떤 일의 사무를 맡아 처리함, 시설이나 물건의 유지, 개량 따위의 일을 맡아 함, 사람을 통제하고 지휘하며 감독함, ‘보호’란 위험이나 곤란 따위가 미치지 아니하도록 잘 보살펴 돌봄을 뜻함.
- 5.12. 우리 동물사육등 금지제도에서 금지되는 사육·관리 또는 보호는 소유 여하를 불문하고, 또한 일시적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동물을 양육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행위로 규정할 수 있음.
- 5.13. 개정안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그 외 금지행위로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분양금지를 고려해 볼 수 있음.
- 5.14. 사육 등이 금지되는 동물을 특정하는 방법을 결정하여야 함. 이론적으로는

- 미국의 예와 같이 모든 종류의 동물에 대한 사육 등을 금지하는 방법, 또는 종별로 금지하는 방법 등을 고려하여야 함.
- 5.15. 형사제재 중 보안처분 형식으로 동물사육금지명령제도는 동물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법원이 동물을 보유, 관리, 보호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5.16. 법원이 내리게 되는 보안처분인 광의의 형사제재에 대해서는 ‘처분’이라는 이름보다는 ‘명령’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이 기존의 형사제재와의 정합성 측면에서 타당함.
- 5.17. 형사재판의 선고 시에 내려지는 제재이며,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규정을 담은 형사특별법에 규정되는 광의의 형벌과 함께 부과되는 형태인 보안처분으로 구성되는 것으로서, 성격상 형사제재임. 이 명령은 검사가 청구하며, 명령의 청구는 공소제기 시부터 가능하고 공소가 제기된 동물학대등 사건(특정범죄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하여야 함.
- 5.18. 학대범죄의 대상범죄에 대하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 약식절차에 의하여 약식명령이 가능하므로, 약식명령 시에도 동물사육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5.19. 제도 도입 초기 단계에는 중한 범죄유형으로 한정하여 제도의 정착을 꾀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징역형이 배제되는 약식절차에 의한 유죄판결에 있어서는 부수적인 동물사육등 금지제도는 부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5.20. 법원이 동물학대범죄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검사의 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사육, 관리, 보호가 금지되는 대상동물을 정하여 판결로 동물사육금지명령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제시함.
- 5.21. 형사소송법상 재판의 집행은 검사가 지휘하도록 하므로(제460조), 원칙적으로 이 명령의 집행은 검사의 지휘 하에 두는 것이 바람직함. 동물구조·보호 등의 조치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검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 명령의 집행지휘를 위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업무를 위임받아 집행하도록 함이 효율적일 것임.

- 5.22. 동물사육금지명령을 받은 사람이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해야 할 중대한 필요성이 생기거나 그 밖에 동물사육금지명령의 집행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명령에 대하여는 임시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동물사육금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형사제재를 함으로써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음.
- 5.23. 동물사육금지제도를 법원의 명령 형식으로 구성할 경우, 이 제도의 기본권 제한적 측면을 고려할 때 신중하게 제도에 접근할 수 있는 사법적 제재방식이라는 점이 장점임.
- 5.24. 개정안 2는 현행 동물보호법에 존재하는 수감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과 등가적으로 동물사육금지명령을 규정하는 방법임. 보호처분의 한 종류로 동물사육금지제도를 구성하는 것임.
- 5.25. 개정안 3은 행정청의 행정처분 형식을 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동물사육금지처분’을 하도록 하는 방법임.
- 5.26. 행정처분 형식의 장점은 동물의 구조·보호(동물보호법 제14조)에서 주도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점임.
- 5.27. 행정처분의 형식을 취할 때에도 형사처벌받은 자를 대상으로 들지, 또는 동물학대행위가 인지되는 경우 형사재판과 무관하게 이 처분을 부과할지가 문제됨.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동물사육금지처분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동물학대행위자로서 1) 학대행위 유형이 중대한 행위이고, 2)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며, 3) 학대행위로 인해 지역 주민의 평온한 생활에 지장을 주는 등의 요건을 실시하여 행정청이 재량판단을 통해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입법하여야 함.
- 5.28. 동물사육금지를 행정처분의 형식으로 제도화하는 경우 행정법상의 불복절차인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음. 동물사육금지처분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통해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음.
- 5.29. 개정안 4는 보안처분으로서의 보호관찰의 특별준수사항으로 동물사육금지 등을 부과할 수 있을 것임. 첫째, 기존 보안처분의 부수처분으로 부과하게

될 경우 위의 동물보호법의 개정을 통하여 보호관찰의 형식으로 규정할 수 있고, 보호관찰법 제32조 제3항에 “동물사육금지”의 내용을 추구하는 법령개정을 통해 동물학대자에 대한 보호관찰 특별준수사항 부과가 가능하고, 둘째, 법률의 개정이 없다 하더라도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의 재량을 통해 특별준수사항에 개별적 사안을 추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통상적이고 일률적인 준수사항 부과가 어렵기에 집행의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한계임.

- 5.30. 이 제도는 본처본인 보호관찰이 이미 존재하는 제도라는 점,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제도를 용이하게 신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5.31.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피학대동물이 여전히 학대상황에서 노출됨으로써 보호가 용이하지 않은 문제가 있음. 따라서 수사단계에서 이 제도의 임시조치 제도를 통해 이른 시기에 피학대동물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 5.32. 피학대동물에 대한 임시조치 제도는 현 동물보호법 제34조 제1항의 격리조치를 좀 더 구체화하는 제도로 구성함으로써, 기존의 격리조치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함을 목표로 하였음.
- 5.33. 학대행위가 인지된 때, 즉각적으로 학대 행위를 멈추도록 하고, 반복피해를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피해동물과 가해자를 현장에서 분리·격리하는 조치가 필요함. 따라서 이 격리조치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재량적으로 피학대동물을 안전한 곳으로 분리·격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기능하여야 함.
- 5.34. 임시조치에 해당하는 임시동물사육금지조치는 일종의 가치분제도라 볼 수 있음. 이 제도의 청구권자는 검사로서, 긴급격리조치 후 72시간 이내에 청구하고 판사가 이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함. 관할은, 수사단계에서는 동물학대범죄사건이 인지된 관할을 따르고, 공소제기 후에는 사물관할에 따름. 수사단계에서 이 조치의 집행 업무 담당은 경찰이 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특별사법경찰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
- 5.35. 피학대동물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기 위하여 소유·보유자인 학대행위자와 영구 격리하는 제도가 필요함. 첫 번째 안으로 피학대동물을 소유자로부터 격리하는 방법으로 ‘압수’ 또는 ‘몰수’의 방법을 검토함. 영구격리제도로서의

압수는 기존의 형사소송법상 압수, 몰수와 유사하면서도 그 성질이 다른 제도로 보아야 함. 특히, 동물에 대하여 ‘압수’ 및 ‘몰수’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어,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보임. 두 번째로 현행 동물보호법에 제도화된 내용들을 소폭 개정함으로써 학대행위자로부터 피학대동물을 영구 격리하는 제도임. 긴급격리조치를 통하여 피학대동물을 구조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긴급격리하는 것임.

- 5.36. 분리 이후 다시 학대행위자에게 피학대동물을 돌려보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현행 동물보호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권 취득규정을 활용할 수 있음. 단, 학대행위자가 소유권 유지의 의지를 표명한 경우에도 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소유권을 박탈할 것인가가 문제됨. 우리나라에서 동물사육금지제도에 대한 강한 비판으로 사인의 재산권이라는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높으므로, 학대행위자의 의지에 반하는 소유권 박탈 부분은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음. 제도 초기에는 소유권을 강제로 박탈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소유권을 포기하게 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게 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동물사육금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음.
- 5.37. 동물학대자에 대한 동물의 몰수, 동물사육금지 제도도 도입이 필요한 부분인 것은 분명함.
- 5.38. 아동학대 사건과 가정폭력사건에서 행해지고 있는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조치들이 동물학대 행위자와 피학대동물에게 유사하게 적용할 수 있음.
- 5.39. 미국의 경우에는 주단위는 물론 카운티 단위에서 동물학대자 신상을 등록하고 공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5.40. 우리나라에서 동물학대자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공개하는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참고할 수 있는 제도는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등록공개고지 제도임. 기 운영 중인 성범죄자 신상등록제도가 추가적인 처분이 아니라 보안 처분이라고 해석된 점과, 재범 방지와 사회 방위 측면에서 개인의 개인정보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된 점을 고려하여, 동물학대자에 대한 신상등록 제도 역시도 엄정하고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행위자의 재범방지는 물론 피학대 동물의 피해 확산을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운영 가능.

- 5.41.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등록제도 이외에도 우리나라의 경우 병역기피자에 대한 신상정보도 공개되고 있음.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명단도 여성가족부의 관리하에 공개되고 있음.

## 제6장 결론

- 6.1.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동물학대 재발방지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 6.2. 동물보호법은 전면개정되었지만 실질적으로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해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처분이 빠진 채로 시행되고, 피학대동물에 대한 보호방안이 미흡한 상태임.
- 6.3. 이를 위해 첫째 형사제재의 형식으로서, 검사가 청구하고 법원이 유죄판결 선고 시에 보안처분으로 함께 내리는 명령의 형식인 '동물사육금지명령'을 고려해볼 수 있음(개정안 1). 두 번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처분으로 부과하는 방법이 있음(개정안 2). 그 외에도 기존의 이수명령과 병과하는 방법(개정안 3), 보안처분의 부수처분으로 부과하는 방법(개정안 4) 등을 제시하였음.
- 6.4. 그 외의 제도로 미국의 경우에는 주단위는 물론 카운티 단위에서 동물학대자 신상을 등록하고 공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참고해 볼 수 있음.
- 6.5. 위에서 제시한 어떠한 제도이든지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추어서, 국민의 동물보호에 대한 법감정에 발맞추어 시행하는 것이 중요함.
- 6.6. 그러므로 시행 첫 단계에서부터 모든 것을 포섭하고, 모든 동물학대행위를 처벌하려는 시도보다는 대상범죄인 동물학대범죄를 중한 범죄로 한정하는 등 제도 도입 단계에서 차근차근 발맞추어 가는 것이 중요함.



## 제 1 장

동물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

# 서 론



## 제1절 | 연구목적

본 연구는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강력한 재발방지 제도로서 학대행위자 동물사육금지처분 도입 및 피학대동물 구조·보호 등 임시조치 보완 방안 마련을 위해 기획되었다.

동물은 과거부터 법적으로 재산의 일종으로 취급되어 왔기에 소유자가 임의로 이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존재로 인식되었다. 반려동물을 학대하더라도 형법 상 재물손괴죄로 처벌가능하였고, 소유자가 자신의 반려동물을 학대하는 경우에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동물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동물학대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만, 동물학대 사건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하고 새로운 유형의 동물학대는 끊임 없이 발생하고 있다. 동물보호법은 계속 개정을 거듭하다가 최근 전면개정되었고, 2023년과 2024년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변화된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 역시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받지만, 실질적으로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해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처분이 빠진 채 전면개정되어 피학대동물에 대한 보호방안이 미흡하므로 전면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제대로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 두 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이 보고서에서는 동물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로,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동물사육금지처분과 피학대동물 보호를 위한 제도를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분석하고, 개정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제2절 |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동물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로 재발방지 제도 중 동물학대자에 대한 사육금지처분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한다. 그리고 피학대동물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조치를 위해 우리나라의 유사제도를 분석하고 동물학대 재발방지제도의 입법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은 1988년 서울올림픽 당시 국제동물보호기금(IFAW, International Fund for Animal Welfare) 등 동물보호단체들에 의해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된 후, 1991년 5월 31일 제정되어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 뒤로 2007년, 2011년, 2013년, 2015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여러차례 개정을 거쳤고, 2022년 4월 26일 전부개정된 동물보호법이 2023년과 2024년에 시행될 예정이다. 제정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의 방지와 동물의 생명과 안전보호를 입법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선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sup>1)</sup> 제정 동물보호법은 총 12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동물보호법에서 학대행위에 대한 법정형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었다.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지 15년 후인 2007년 동물보호법은 동물보호법의 목적에 '복지를 증진하고'라는 문구가 추가되며 동물복지의 이념이 나타나게 되었다. 2011년 또 한 번의 전부개정이 있었는데 이는 열악한 사육환경과 운영비리로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는 유기동물보호소 환경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위함이었다. 2011년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 외에도 실험동물, 농장동물을 규율하는 규정을 둬으로써 동물보호 영역을 확대하였다.

그 후 일부개정을 거듭하다가 동물보호법이 최근 전면개정되었고, 이 법은 2023년과 2024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2022년 4월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에 따라 농림축산부령으로 규정하던 금지행위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1) 동물보호법 [시행 1991. 7. 1.] [법률 제4379호, 1991. 5. 31., 제정]

제1조 (목적) 이 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과 그 안전을 보호하도록 하여, 생명의 존중등 국민의 정서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형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 2023년 4월 27일부터는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 공간이나 먹이를 제공하지 않는 등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반려동물을 죽게 하는 행위가 법상 동물 학대행위에 포함되고, 처벌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되었다.

동물보호법이 제정되면서 현재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의 동물에 대한 법감정이 변화하였지만 한편으로는 동물학대 범죄도 굉장히 증가하였음을 여러 가지 사례나 통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여 동물보호법도 구성요건을 구체화하고, 형벌을 강화하여 대응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논란이 된 동물학대범죄 사건들은 동물학대에 해당하는 행위유형을 늘리고, 동물학대를 범한 자에게 형벌을 강화하는 것이 동물학대를 막기에 충분한지 의문이 들게 한다. 오히려 학대행위 시점에, 늦어도 학대행위가 발견된 이후라도 동물학대범죄의 가해자가 동물에 접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는 일정기간 동안 동물을 사육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고찰해보아야 할 시점이다.

이 연구보고서에서는 우선 동물보호법 위반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황을 살펴본 후, 동물학대와 관련된 현행 법제도를 고찰해본다.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의 현황을 살펴보고, 동물에 대한 변화된 인식을 통계를 통해 살펴본 후, 동물학대 방지와 관련된 현행 법제도를 살펴본다. 그리고 전면개정된 동물보호법의 주요내용을 검토한다.(제2장) 다음 장에서는 우리나라에 적합한 동물학대 재발방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우리보다 먼저 동물학대 재발방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 독일, 스위스, 미국, 영국, 캐나다의 제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각 나라는 그 특성에 따라 형벌 혹은 행정작용 또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각각 다른 양태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그 구체적인 모습을 살펴본다.(제3장) 그리고 피학대 동물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조치를 위해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검토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학대범죄에서 범죄의 특성과 피학대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가정폭력범죄에서 범죄의 특성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검토하여 동물학대범죄와 유사점을 살펴본 후, 동물학대 사건에 대한 대응 방향성을 찾고자 한다.(제4장) 마지막으로 동물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법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동물사육금지제도에 대한 입법적 개선방안

## 22 동물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

을 제시하고, 동물사육금지 임시조치제도, 학대행위와 피학대동물의 영구격리제도, 처벌 외 기타 보호처분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는 것으로 보고서를 마무리하고자 한다.(제5장)

본 연구는 문헌 분석을 통한 연구 중심으로 진행된다.

## 제 2 장

동물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

# 현행 우리나라 동물학대 현황과 쟁점분석



## 제2장

# 현행 우리나라 동물학대 현황과 쟁점분석

### 제1절 | 우리나라 현황

#### 1. 동물보호법 위반범죄의 증가

2019년 11월 경의선 숲길 고양이 '자두' 살해 사건<sup>2)3)</sup>, 제주도에서 강아지를 땅속에 생매장 한 사건<sup>4)</sup>, 고양이 수십 마리를 잔인하게 학대하고 살해하고서 사진과 영상을

2) "경의선숲길 고양이 '자두' 살해범 징역 6월 법정구속"

[https://www.hani.co.kr/arti/animalpeople/human\\_animal/917890.html](https://www.hani.co.kr/arti/animalpeople/human_animal/917890.html)

자두가 아프게 떠난 지 어느덧 1년 잔혹한 동물학대 왜 더 많아지죠?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713016002>

3) 1심 판결에 나타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고시원에서 혼자 생활하면서, 평소 산책하러 다니는 경의선 숲길에 고양이가 너무 많고 갑자기 튀어나와 놀라게 하기도 하고 다리를 물기도 하고,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통행로를 막아가면서 고양이에게 사료를 주어 불편을 겪는 등 고양이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던 중, 사료에 세탁세제를 섞어 고양이에게 먹여 골탕을 먹이는 등 고양이를 학대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3. 08:02경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37길 11 1층에 있는 경의선 숲길 내 피해자 예○숙이 운영하는 '○○○○' 레스토랑 앞 산책로에서, 그곳 테라스 화분에 있던 피해자가 기르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고양이 '자두'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해 간 세탁세제를 섞은 사료와 물을 주었으나 고양이가 먹지 않고 거부하며 피고인을 피해 테라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기르는 다른 고양이가 보는 가운데, 갑자기 손으로 고양이 '자두'의 꼬리를 움켜쥐고 들어 올린 후 수회 땅바닥과 테라스 벽 등에 내리찍고, 바닥에 눌어진 고양이 머리에 세제를 섞은 물을 뿌려 고양이가 움찔거리자, 발로 고양이 머리 부위를 수회 세계 짓밟아 죽인 후 고양이 사체를 화단의 구석진 곳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잔인한 방법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1. 21. 선고 2019고단2803 판결 [동물보호법위반, 재물손괴])

SNS로 공유한 동탄 고양이 학대 사건<sup>5)</sup> 6), 포항 폐양어장 학대 사건등 연일 동물에 대한 가혹한 학대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언론으로 보도된 사건 뿐만 아니라, 수십 개의 동물학대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최근의 범죠통계에서도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경찰청의 통계에 의하면, 2017년 322건이었던 동물보호법 위반 검거건수는 2021년 689건으로 2배 이상 급증하였고, 검거인원도 2017년 459명에서 2020년은 1014명, 2021년은 936명으로 역시 약 2배 정도 급증하였다.

▶▶▶ **[표 2-1]** 최근 5년간 연도별 동물보호법 위반 검거 현황

구분 \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검거 건수	322	416	723	747	689
검거 인원	459	589	962	1,014	936

출처: 경찰청

경찰청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2021년 3월 ‘동물학대 사범 수사 매뉴얼’을 ‘동물 대상 범죄 벌칙 해설’로 개정하였다. 기존 매뉴얼이 동물보호법상 벌칙 조항을 열거만 하고 있던 것에서, 112 신고 접수자부터 초동 조치를 담당하는 지역 경찰 근무자를 위한 초동 조치 및 지자체 공조 방법, 수사 실무자를 위한 동물 사체 부검 의뢰 및 양형 기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단순 동물보호법상 벌칙 조항을 열거하고 있었던 동물학대사범 수사매뉴얼보다 개선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 증가 및 동물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2021년 1월부터 ‘동물학대’ 코드를 신설·관리 중인데 2021년 9월까지 유·무선

4) 입만 나오게한 채 강아지 생매장...그 위에 돌덩이까지 올렸다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04/20/SHO2QTP2SZHQXG2V7C2HPYHT2I/](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04/20/SHO2QTP2SZHQXG2V7C2HPYHT2I/)

5) 고양이 학대 영상 확산...동물단체 “가해자 제보 300만원 현상금”  
<https://www.yna.co.kr/view/AKR20180412156200051>  
 ‘고양이 학대 동영상’ 남성, 게임아이디 추적해 찾았다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4/13/2018041301263.html](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4/13/2018041301263.html)  
 남성 유튜버에게 학대당한 고양이, 갈비뼈 부러졌었다  
[https://www.ytn.co.kr/\\_ln/0103\\_201804171600063206](https://www.ytn.co.kr/_ln/0103_201804171600063206)

6) ‘사체만 50구’ 고양이 학대 사건, 다음 대상은 사람일 수도  
[https://m.health.chosun.com/svc/news\\_view.html?contid=2022042602282](https://m.health.chosun.com/svc/news_view.html?contid=2022042602282)

전화, 문자메시지, 앱, 영상신고 등 다양한 경로로 신고된 동물학대 건수는 4,262건에 달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 남·북부 경찰청 1,017건, 서울 경찰청 906건이 신고됐으며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 지역에 동물학대 신고가 집중된 것을 알 수 있다.

지자체별로는 동물보호감시원 제도를 통해 동물미등록, 동물관리 미이행, 미등록·미신고·무허가 영업, 동물학대, 유기 등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동물보호 수사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수사팀을 신설하였고, 동물보호 전담 수사관을 4명 배치하고, 보건복지수사팀에 동물보호감시원을 지정하여 2022년 9월부터 동물보호 분야 수사를 개시하였다.<sup>7)</sup>

서울시의 경우 거의 모든 구청이 동물보호조례를 갖고 있고, 동물보호팀을 보유하고 있으나, 기타 지역의 경우 동물관리나 복지에 관한 부서는 부재하고, 산업진흥과, 일자리경제과 등의 부서에서 부수적으로 동물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 [표 2-2] 대전광역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조례 자치구별 관리책임부서

자치구	관리 책임부서
대전 서구	산업진흥과
대전 유성구	지역산업과
대전 동구	일자리경제과
대전 대덕구	일자리경제과
대전 중구	경제기업과

#### ▶▶▶ [표 2-3]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동물보호조례 제정일 및 동물보호팀

(\* 2021.03.24.기준(강남구 제외))

연번	자치구	동물보호조례 (제정일)	동물보호팀 유무	동물보호팀 인원
1	강남구	2021.07.09	지역경제과>동물관리팀	7
2	강동구	2018.10.04	사회적경제과>반려동물팀	8
3	강북구	2017.04.07	X	
4	강서구	2017.04.05	지역경제과>동물보호팀	3
5	관악구	2017.04.06	일자리벤처과>반려동물팀	5
6	광진구	2020.10.28	지역경제과>동물관리팀	4

7) 2022.09.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주요현안보고 10면

28 동물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

연번	자치구	동물보호조례 (제정일)	동물보호팀 유무	동물보호팀 인원
7	구로구	2015.12.24	지역보건과>동물복지팀	3
8	금천구	2018.12.31	X	
9	노원구	2019.07.18	보건위생과>동물보호팀	6
10	도봉구	2020.06.04	환경정책과>동물복지팀	1
11	동대문구	2020.01.02	경제진흥과>동물보호팀	3
12	동작구	2016.09.22	보건위생과>동물보호팀	3
13	마포구	2019.07.11	지역경제과>동물보호팀	4
14	서대문구	2019.11.06	일자리경제과>동물복지팀	3
15	서초구	2018.10.30	일자리경제과>동물복지팀	5
16	성동구	2020.10.26	지역경제과>반려동물정책팀	3
17	성북구	2020.10.05	일자리경제과>동물보호팀	3
18	송파구	2020.04.16	문화체육과>동물복지팀	4
19	양천구	2019.06.09	보건위생과>동물보호팀	5
20	영등포구	2020.09.17	X	
21	용산구	2019.11.08	보건위생과>원산지동물관리팀	4
22	은평구	2020.03.19	가족정책과>반려동물팀	4
23	중구	2020.06.10	X	
24	종로구	2020.12.18	X	
25	종량구	2019.07.11	보건행정과>동물복지팀	4

▶▶▶ [표 2-4] 2021년 지자체 동물보호감시원 활동실적

시·도	처분 실적						
	계	동물 미등록	동물관리 미이행*	미등록·미신고· 무허가 영업	동물 학대	유기	기타
서울	131	4	109	3	7	2	6
부산	55	2	45	2	2	3	1
대구	36	2	30	1	0	0	3
인천	68	2	49	7	4	0	6
광주	18	2	13	0	0	0	3
대전	60	34	21	1	1	1	2
울산	8	0	6	1	1	0	0
세종	5	0	4	0	0	0	1
경기	272	36	147	20	17	5	47

시·도	처분 실적						
	계	동물 미등록	동물관리 미이행*	미등록·미신고· 무허가 영업	동물 학대	유기	기타
강원	40	3	29	0	2	0	6
충북	45	12	23	1	3	1	5
충남	29	1	12	3	1	0	12
전북	23	3	12	1	6	0	1
전남	109	23	84	0	1	1	0
경북	112	0	91	6	7	2	6
경남	46	0	31	6	6	2	1
제주	17	1	1	4	5	3	3
계	1,074	125	707	56	63	20	103
비율(%)	-	11.6	65.8	5.2	5.9	1.9	9.6

출처: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

## 2. 동물에 대한 변화된 인식

### 가. 동물에 대한 변화된 인식

동물보호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법의 수범자의 동물에 대한 인식도 중요하다. 2022년 8월 한국갤럽에서 동물권과 개 식용 관련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sup>8)</sup>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동물에 대한 인식도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동물에게 생명체 법적지위 부여’에 대한 항목은 2015년과 비교했을 때 수치는 동등하지만, ‘동물은 감정을 느끼는 존재이다’라는 항목에서는 2015년에는 86%가 긍정하였던 조사가 2022년에는 91%로 변화를 보였고, 이 중 남성의 경우 2015년에는 83%, 2022년에는 90%, 여성의 경우 2015년에는 89%, 2022년에는 92%의 긍정적인 답을 하여 남성의 인식변화가 크게 나타났다.

8)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506호 2022년 8월 1주

▶▶▶ [표 2-5] 성별, 연령별 동물권 & 개 식용 관련 인식

		동물권 & 개 식용 관련 인식 - 성별, 연령별											
		동물에게 생명체 법적 지위부여찬성		과학계 동물 실험 허용해야 한다		개 식용 좋게 본다		최근 1년간 개 식용 경험		집에 반려동물 있다		동물은 감정 느끼는 존재다	
		2015년	2022년	2015년	2022년	2015년	2022년	2015년	2022년	2015년	2022년	2015년	2022년
성별	전체	48%	48%	63%	63%	37%	17%	27%	8%	19%	30%	86%	91%
	남성	43%	43%	71%	76%	45%	20%	39%	12%	20%	30%	83%	90%
	여성	53%	54%	54%	50%	29%	13%	16%	4%	17%	30%	89%	92%
연령별	18~29세	70%	62%	60%	60%	33%	13%	17%	2%	28%	36%	97%	97%
	30대	54%	54%	62%	58%	33%	25%	17%	6%	17%	31%	96%	97%
	40대	42%	48%	66%	64%	44%	12%	28%	4%	13%	33%	90%	94%
	50대	41%	48%	71%	70%	41%	9%	39%	7%	20%	32%	81%	94%
	60대	36%	40%	53%	66%	33%	19%	33%	17%	18%	30%	69%	91%
	70대 이상		36%		57%		26%		15%		15%		68%

출처: 한국갤럽

그리고 “현행 민법에서 동물은 ‘물건’ 또는 소유자의 ‘재산’으로 분류됩니다. 이에 대해 동물에게 생명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귀하는 이러한 주장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2015년 조사에서는 찬성이 48%, 반대가 40%로 나타났지만 2022년 조사에서는 찬성이 48%, 반대가 37%로 반대의 비율이 3% 정도 감소하였다.

▶▶▶ [표 2-6] <질문> 현행 민법에서 동물은 ‘물건’ 또는 소유자의 ‘재산’으로 분류됩니다. 이에 대해 동물에게 생명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귀하는 이러한 주장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에 대한 응답

		조사완료 사례수 (명)	가중적용 사례수 (명)	동물에게 생명체로서의 법적 지위 부여		
				찬성	반대	모름/ 응답거절
2015년 9월 8~10일		1,011	1,011	48%	40%	12%
2022년 8월 2~4일		1,001	1,001	48%	37%	15%
지역별	서울	186	189	52%	37%	11%
	인천/경기	321	317	52%	33%	15%
	강원	31	30	-	-	-
	대전/세종/충청	105	106	46%	40%	14%
	광주/전라	99	98	45%	38%	17%
	대구/경북	98	98	42%	42%	16%

		조사완료 사례수 (명)	가중적용 사례수 (명)	동물에게 생명체로서의 법적 지위 부여		
				찬성	반대	모름/ 응답거절
성별	부산/울산/경남	147	151	45%	41%	13%
	제주	14	13	-	-	-
	남성	515	496	43%	45%	13%
	여성	486	505	54%	29%	16%
연령별	18~29세	131	175	62%	30%	8%
	30대	133	144	54%	38%	9%
	40대	181	186	48%	41%	11%
	50대	224	196	48%	37%	15%
	60대	188	167	40%	43%	17%
	70대 이상	144	134	36%	35%	29%
주요 지지 정당별	국민의힘	352	341	41%	42%	17%
	더불어민주당	391	391	54%	34%	12%
	정의당	35	35	-	-	-
	무당(無黨)층	220	231	51%	34%	16%
직업별	농/임/어업	28	26	-	-	-
	자영업	164	157	48%	42%	10%
	기능노무/서비스	152	150	54%	35%	10%
	사무/관리	311	328	50%	38%	12%
	전업주부	186	169	44%	30%	26%
	학생	47	61	57%	29%	14%
	무직/은퇴/기타	113	111	42%	39%	19%
성향별	보수	289	284	43%	42%	15%
	중도	307	307	51%	37%	13%
	진보	304	313	55%	36%	9%
	모름/응답거절	101	98	38%	26%	37%
과학계 동물실험	허용해야 한다	642	630	40%	47%	12%
	금지해야 한다	239	255	72%	19%	9%
개 식용	좋게 본다	171	166	30%	57%	13%
	좋지 않게 본다	638	645	59%	28%	13%
반려동물	있다	297	301	60%	30%	10%
	없다	704	700	43%	40%	17%
동물은 사람처럼	감정 느끼는 존재	907	912	52%	35%	13%
	그렇지 않다	50	48	7%	73%	20%

출처: 한국갤럽

“귀하는 동물이 사람처럼 희로애락 감정을 느끼는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2015년 같은 질문에 대해 ‘동물은 사람처럼 희로애락의 감정을 느끼는 존재이다’라는 응답이 86%,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이 10%로 조사되었지만, 2022년 조사에서는 ‘동물이 감정을 느끼는 존재이다’라는 응답이 91%,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이 5%로 나타났다.

▶▶▶ [표 2-7] <질문> 귀하는 동물이 사람처럼 희로애락 감정을 느끼는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

	조사완료 사례수 (명)	가중적용 사례수 (명)	동물은 사람처럼 희로애락			
			감정 느끼는 존재	그렇지 않다	모름/응답거절	
2015년 9월 8~10일	1,011	1,011	86%	10%	4%	
<b>2022년 8월 2~4일</b>	<b>1,001</b>	<b>1,001</b>	<b>91%</b>	<b>5%</b>	<b>4%</b>	
지역별	서울	186	189	95%	4%	1%
	인천/경기	321	317	94%	2%	4%
	강원	31	30	-	-	-
	대전/세종/충청	105	106	87%	6%	6%
	광주/전라	99	98	91%	5%	4%
	대구/경북	98	98	85%	7%	9%
	부산/울산/경남	147	151	87%	10%	3%
	제주	14	13	-	-	-
성별	남성	515	496	90%	5%	5%
	여성	486	505	92%	4%	3%
연령별	18~29세	131	175	97%	1%	2%
	30대	133	144	97%	2%	1%
	40대	181	186	94%	4%	2%
	50대	224	196	94%	3%	3%
	60대	188	167	91%	6%	3%
	70대 이상	144	134	68%	15%	16%
직업별	농/임/어업	28	26	-	-	-
	자영업	164	157	88%	9%	4%
	기능노무/서비스	152	150	95%	2%	3%
	사무/관리	311	328	95%	3%	2%
	전업주부	186	169	89%	5%	6%

		조사완료 사례수 (명)	가중적용 사례수 (명)	동물은 사람처럼 희로애락		
				감정 느끼는 존재	그렇지 않다	모름/ 응답거절
	학생	47	61	100%		
	무직/은퇴/ 기타	113	111	83%	8%	8%
생활수준별	상/중상	183	187	94%	3%	3%
	중	487	493	94%	4%	2%
	중하	192	189	91%	5%	5%
	하	119	114	81%	9%	10%
성향별	보수	289	284	92%	6%	2%
	중도	307	307	94%	4%	2%
	진보	304	313	94%	3%	3%
	모름/응답 거절	101	98	70%	9%	21%
동물에게 생명체	법적 지위 부여	469	485	98%	1%	2%
	반대	378	371	86%	9%	5%
과학계 동물실험	허용해야 한다	642	630	92%	5%	3%
	금지해야 한다	239	255	96%	3%	1%
반려동물	있다	297	301	97%	1%	2%
	없다	704	700	89%	6%	5%

출처: 한국갤럽

이러한 설문조사를 살펴볼 때 동물에 대한 인식은 이전보다 꽤 많이 변화하고 있으며, 동물의 보호와 복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나. 정책과제로서 동물보호

현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에 따르면, 국정과제 48번으로서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과 함께, 과제목표의 하나로서 '사람과 동물이 모두 함께 행복한 건전한 반려문화 조성'이 제시되어 있다. 특히 동물복지 강화의 차원에서 동물보호시설 인프라 확충 및 환경 개선지원으로 보호 수준을 높이고, 동물학대 및 개물림사고 방지 제도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고, 동물학대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엄정한 양형기준 마련(법정형 최대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을 강조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2020-2024)을 마련하고, 동물보호법에 의거하여 관계부처, 동물보호단체, 생산자단체, 지자체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6대 분야의 21대 과제를 선정하였는데, 이 중에 동물대살범죄와 관련하여 동물학대 행위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하며 재발방지를 주요 과제로 하는 ‘동물 소유자 인식개선’이 포함되어 있고, 유기·피학대 동물 보호 강화를 위해 지자체에 민·관 합동 유기·피학대동물 구조반 운영을 유도하고 지자체 동물보호센터를 개선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 [표 2-8] 농림축산식품부 6대분야 21대 과제

6대분야	21대과제
1. 동물소유자 인식 개선	① 반려견 및 소유자 교육 강화 ② 반려견 소유자 안전관리 의무 강화 ③ 동물학대 행위 범위 확대 ④ 동물학대 처벌 강화 및 재발방지 ⑤ 동물등록제 개선 및 등록활성화
2. 반려동물 관련 산업 개선	① 동물생산업 사육환경 개선 ② 동물판매행위 관리 강화 ③ 동물관련 서비스업 규제 합리화
3. 유기·피학대 동물 보호	① 유기·피학대 동물 구조 체계 개선 ②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개선 ③ 반려동물 인수제 도입 ④ 사설보호소 시설 운영기준 마련
4. 농장동물의 복지 개선	① 농장 사육단계 동물복지 수준 개선 ② 운송·도축단계 동물복지 강화 ③ 동물복지축산 인증 고도화
5. 동물실험의 3R 원칙 구현	① 실험동물 공급·관리 체계 강화 ②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기능 강화 ③ 동물대체시험법 개발·보급체계 마련
6. 동물복지 거버넌스 강화	① 동물복지위원회 컨트롤 타워 역할 정립 ② 지자체 동물보호·복지 정책 추진 체계 개선 ③ 중앙정부·지자체 인력 및 조직확충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개편하여 불법적인 반려동물 영업을 근절하는 등 사전예방적 정책을 확대하고 사후 보호조치를 실질화하는 동물복지 강화방안을 발표하였다.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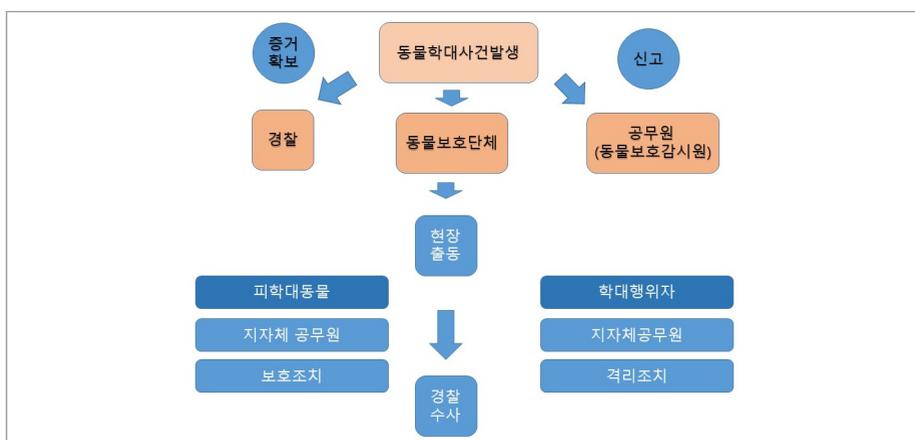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업무계획으로 “동물복지 강화 - 동물복지를 강화하여 사람·동물 모두 행복한 One-Welfare 실현”을 표제로 학대·유기 등 최소화를 위한 사전예방정책 확대 및 사후조치 실질화, 동물 ‘보호’에서 동물 ‘복지’ 관점으로 정책 전환을 위한 추진기반 마련, ① 학대, 유기 및 개물림사고 등 최소화 위한 사전예방적 정책 확대, ② 피학대·유기 동물의 구조·보호 및 입양 등 사후조치 실질화, ③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제도, 사회적 수용성 등 추진기반 마련을 내세우고 있다.

### 3. 동물학대 범죄의 실질적 처벌의 미비

#### 가. 동물학대 사건 처리 과정

동물학대 목격 시 사건의 제보 또는 신고는 수사기관인 경찰과 동물보호업무의 책임이 있는 지자체 동물보호담당관, 그리고 동물보호단체 등에 할 수 있다. 학대가 벌어지고 있는 경우 경찰 및 동물보호담당관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피학대 동물의 상태에 따라 지자체가 3일 이상의 격리조치를 취할 수 있다. 목격자 또는 지자체가 경찰에 고소·고발이 가능하며, 동물학대 사건 역시 일반적인 형사사건의 절차를 따르게 된다.

» [그림 2-1] 동물학대 사건발생 시 절차



9) 농식품부, 동물복지 강화 방안 발표- 기존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개편, 불법적인 반려동물 영업 근절 등 사전예방적 정책 확대 및 사후 보호조치 실질화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2.12.6.)

나. 동물보호법 위반 발생, 검거, 송치 현황

동물학대 사건은 꾸준히 늘어나고, 사람들의 동물에 대한 인식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지만,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은 미미하다는 것이 동물학대 범죄의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최근 5년간(2017년~2022년 3월) 동물보호법 위반 구속기소 자료를 살펴보면, 동물학대 사건 4,221명 중 구속기소된 사람은 4명으로 0.1%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사건은 불기소(46.6%), 약식명령(32.5%) 처분을 받았으며 단 2.9%(122명)만이 정식재판으로 넘겨졌다. 정식재판에서도 실형을 받은 수는 346명 중 19명(5.5%)에 불과하며 절반 이상의 피고인이 벌금형(56.9%), 벌금형 집행유예(3.2%)라는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 [그림 2-2] 2017~2022.3.까지 동물보호법 처벌 비중



출처: <http://www.datasom.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4442>

범죄통계분석을 살펴보면 2020년 기준 지난 10년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3,360명 중 구속된 인원은 단 4명에 불과하였으며, 2019년 송치 인원은 973명이었지만 구속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2021년에도 구속사건은 단 2건에 불과했다. 동물보호법위반 범죄 발생 건수는 배로 증가하고 있고, 경찰 단계에서의 송치율 및

검찰 단계에서의 기소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법원 단계에서의 양형기준은 아직 까지 마련되지 않았다.

▶▶▶ [표 2-9] 동물보호법 위반 발생·검거·송치 현황

구분(년도)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인원	송치인원	구속	불구속
2010	69	64	78	78	0	78
2011	98	89	113	113	0	113
2012	131	118	137	138	0	138
2013	132	113	150	150	0	150
2014	233	198	262	262	0	262
2015	238	204	264	264	0	264
2016	304	244	331	331	2	328
2017	398	323	459	459	1	458
2018	531	416	589	592	1	591
2019	914	723	962	973	0	973
2020	992	747	1014	565	1	561
2021	1072	689	937		2	
합계	5,112	3,928	5,296	3,925	7	3,916

▶▶▶ [표 2-10] 동물보호법 위반사건 접수 및 처분 현황

년도	사건접수	처분					
		처분계	구공판		구약식	불기소	기타
			구속	불구속			
2017	526	509	0	18	183	260	48
2018	613	601	1	10	176	345	69
2019	1070	1070	1	29	320	538	182
2020	1125	1110	0	30	325	540	215
2021	748	779	2	26	316	241	194
2022(1-3월)	167	152	0	5	52	41	54
총계	4249	4221	4	118	1372	1965	762
%		100	0.1	2.8	32.5	46.6	18.1

▶▶ [표 2-11]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자의 연령별 분포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18세	4	-	5	1	3	2	2	2	6	4	14	43
19세~30세	8	10	10	14	13	26	33	44	59	135	134	486
31세~40세	6	11	9	12	15	24	29	37	67	146	149	505
41세~50세	15	26	34	29	44	46	46	57	98	137	136	668
51세~60세	18	27	35	40	73	66	68	115	133	183	190	948
61세~70세	15	25	26	30	68	55	74	100	84	144	148	769
71세~	6	10	9	13	30	28	38	52	64	75	86	411
미상	6	4	9	11	16	17	40	52	78	138	157	528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학대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나 대법원의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판사의 재량에 의해 처벌 수위가 정해진다. 실제로 최근 5년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판결을 살펴보면 최대 벌금액은 1,800만원(2021년), 최소 벌금액은 20만원(2017년)으로 비교적 가벼운 선고에 그쳤다<sup>10)</sup>

#### 다. 경찰수사의 어려움<sup>11)</sup>

동물학대범죄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일반범죄와 다른 어려움이 있다.<sup>12)</sup> 첫째로, 범죄피악과 학대의 피악이 어렵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동물학대는 사적공간에서 은밀히 이루어진다. 또한 피해 동물이 사람과 달리 말을 할 수 없다는, 대인범죄와 명확히

10) 동물학대 사건 4221명 중 구속기소는 0.1% 뿐

<http://www.datasom.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4442>

11) 이 항목은 김영준, 국내 동물범죄 수사의 한계 및 개선점에 대하여, 동물범죄 양형기준 수립을 위한 국회 토론회(실효성 있는 동물범죄 예방을 위한 양형기준 모색) 자료집, 2022에서 정리함.

12) 뉴햄프셔주 동물학대 수사 매뉴얼에서 동물학대 조사에 있어 제약요소로 제시한 동물학대 사건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The Governor's Commission on the Humane Treatment of Animals. (2012). Animal Cruelty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A User Manual for New Hampshire Law Enforcement p.48), 동물자유연대, 2020년 동물학대 대응 매뉴얼, 2020, 2-3면에서 재인용

- 대부분 사적 공간에서 은밀히 이루어지고, 정황증거에 의존한다.
- 피해 당사자(피학대동물)의 직접 증언이 불가하다.
- 학대자가 피학대동물을 계속 보호(소유)하는 경우 적극적인 대응이 제한된다.
- 피학대 동물의 격리 시 보호 및 관리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발생한다.
- 동물이 증거이며, 시간의 경과(치유됨)에 따라 학대증거가 자연 소멸된다.
- 범수의학적 전문가가 부재하다.(상해 혹은 죽음과 학대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려움)
- 청소년과 호더의 경우 실효성 있는 판결에 제한이 있다.

구분되는 차이점에서 기인한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동물범죄는 수사 개시의 단계에 있어 타 범죄보다도 수사기관이 인지하고 수사 개시하는 데에 더 큰 어려움이 있다. 피해 당사자의 직접 고소, 112 범죄신고 등이 수사의 주요단서가 되는 타 범죄와 달리, 동물범죄의 경우 범죄인이나 수사 개시를 위해서는 전적으로 제3자에 의한 고발, 112 범죄신고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일반 시민에 의해 사건이 목격되더라도 시민들이 학대라고 인지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 이를 인지했다 하더라도 동물학대 상황에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라 대응이 지연되고, 학대사건을 신고하더라도 일선 대응 주체인 경찰 및 공무원의 소극적 태도와 부족한 전문지식으로 인해 현장 대응이 미흡한 경우도 많다.<sup>13)</sup>

둘째로, 동물범죄는 수사 과정에서도 피의자의 특정 및 증거 확보에 큰 어려움이 있다. 동물범죄는 피해 당사자인 피학대동물에게서는 피해 진술을 청취할 수 없어 피의자 특정을 위해서는 정황증거에 더욱 의존하여야 하고, 혐의 입증에 있어서는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등 보다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증거 또는 피의자의 자백이 요구된다.

또한, 피학대동물이 그 자체로 범죄의 증거가 되는 경우, 시간이 경과하여 치유됨에 따라 증거가 자연 소멸되는 어려움도 있다. 커뮤니티 게시판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되는 동물범죄의 경우, 별도 개인정보의 입력 없이도 아무런 제약 없이 글을 게시할 수 있는 커뮤니티 사이트의 특성과 피의자의 유동 IP, VPN을 통한 우회 IP 사용 등으로 그 추적이 쉽지 않다

이러한 동물범죄 자체의 특성뿐만 아니라 현 제도와 체계 등에서 기인한 현실적인 어려움 또한 존재한다. 경찰과 공무원만으로 모든 학대 행위를 감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동물범죄를 수사하는 부서는 각 경찰서의 사무분장에 따른 경제범죄수사팀 또는 지능범죄수사팀으로서 전국 공통의 일원화된 전문 부서가 존재하지 않고, 기타 특별법 사범을 수사하는 경제범죄수사팀에서 동물범죄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성 있는 수사가 많이 요구되지 않는 다수의 일반 경제범죄 고소, 고발 사건을 전문으로 하고, 팀 단위보다는 개인 단위로 개별 사건의 수사 과정 전체를 전담하는 경제범죄수사팀의 수사현실상 범행 현장 보존 및 분석, 증거 확보, CCTV 추적 등

13) 동물자유연대, 2020 동물학대 대응 매뉴얼, 2020, 3면

현장성 있는 수사가 종종 요구되는 동물범죄 수사에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변사 등 대인 사건의 경우, 담당 형사, 국과수 직원, 검시조사관, 검안의 등이 현장에 입장하여 현장을 보존 및 분석하고, 증거 확보를 하는 등 이미 정립된 절차와 방식, 전문 인력 및 장비에 의해 일관성 있게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데에 반해, 동물 사건은 담당 수사관이 범죄 인지 후 현장에 출동하여 사료 등의 독성 검사는 국과수에, 사체 부검은 직접 사체를 확보하여 일반 수의사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등에 부검 의뢰를 하고 있어 기관 간의 순수한 공조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전문 인력, 장비, 제도, 절차 등은 미비한 상황이다.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을 다루는 경찰들은 동물학대 사건을 수사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이은주 의원실에서 발표한 자료<sup>14)</sup>에 의하면 5월 11일부터 20일까지 경찰청 고객만족 모니터 센터를 통해 총 128,364명의 경찰관을 대상으로 ‘동물학대 사건 현장출동 및 수사 경험’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 (3,235명) 가운데 동물학대 사건 수사 경험이 있는 경찰관(332명)의 72.6%(241명)가 동물학대 사건 수사가 “어렵다”고 답했다.

〈동물학대 사건 현장출동 및 수사 경험 설문조사〉

- 조사부서 : 경찰청 고객만족모니터센터
- 조사대상 : 전 경찰관 총 128,364명 중 3,235명 응답
- 조사방법 : 이메일조사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1.72%p
- 조사기간 : 2021년 5월 11일(화) ~ 5월 20(목), 10일간

▶▶▶ [표 2-12] 동물학대 수사경험에 대한 설문응답

귀하는 동물학대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빈도(명)	퍼센트(%)
예	332	10.3
아니오	2,903	89.7
합계	3,235	100.0

14) 지난해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 첫 1천명대 진입 ‘역대 최대치’ - 동물학대 사건 급증하는데 경찰관들은 여전히“동물학대 수사 어려워” (2021.09.16. 국정감사 보도자료)

▶▶▶ 【표 2-13】 동물학대 수사진행의 어려움에 대한 설문응답

동물학대 사건을 맡아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게 느껴졌습니까?		
	빈도(명)	퍼센트(%)
매우 어려웠다	125	37.7
약간 어려운 편이었다	116	34.9
다른 사건과 비슷했다	80	24.1
약간 쉬운 편이었다	8	2.4
매우 쉬었다	3	0.9
합계	332	100.0

▶▶▶ 【표 2-14】 동물학대 수사가 어려운 이유에 대한 설문응답

다른 사건과 비교했을 때 어렵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복수응답 가능)			
	응답수(명)	응답 수 퍼센트(%)	응답자 수 퍼센트(%)
동물의 생태나 습성을 잘 모름	60	10.5	18.1
동물보호법이 생소함	41	7.2	12.3
동물보호법이 부실함	66	11.6	19.9
증거 수집이 어려움	126	22.1	38.0
신고나 고소·고발 내용이 부실함	74	13.0	22.3
동물학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	175	30.6	52.7
기타	29	5.1	8.7
합계	571	100.0	172.0

동물학대 사건이 다른 사건과 비교했을 때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로 약 52.7%가 해당행위가 동물학대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답했고, 증거 수집의 어려움을 호소한 경우가 약 38%, 동물보호법의 생소함과 모호함 등으로 동물학대 수사에 고충을 겪고 있다는 의견이 약 32.2%로 나타났다.

또 전체 응답자 3,235명 중 402명(12.4%)은 가정폭력 등 다른 사건에 대한 현장출동 및 수사 중 동물학대 정황이 의심되는 사례를 경험했는데, 이 경우 “어떤 조치를 취했나”는 질문에 “동물학대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경우는 30.6%(123명)에 그쳤다. 나머지는 “동물의 상태만 관찰”(108명·26.9%)하거나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요구”(80

42 동물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

명·19.9%)하는 데 그쳤다.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72명)고 답변한 경찰의 38.9%(28명)은 “동물학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서”라고 이유를 밝혔다.

▶▶▶ [표 2-15] 동물학대 정황 의심사례 경험에 대한 설문응답

귀하는 가정폭력 등 다른 사건에 대한 현장출동 및 수사 중 동물학대 정황이 의심되는 사례를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빈도(명)	퍼센트(%)
예	402	12.4
아니오	2,833	87.6
합계	3,235	100.0

▶▶▶ [표 2-16] 동물학대 의심시 조치에 대한 설문응답

동물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습니다가?		
	빈도(명)	퍼센트(%)
동물학대 여부에 대해 조사	123	30.6
동물의 상태만 관찰	108	26.9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 요구	80	19.9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음	72	17.9
기타	19	4.7
합계	402	100.0

▶▶▶ [표 2-17] 동물학대 의심 시 미조치 이유에 대한 설문응답

동물학대가 의심되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빈도(명)	퍼센트(%)
동물학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서	28	38.9
조사를 해도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12	16.7
당시 신고된 혹은 수사중인 사건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돼서	30	41.7
기타	2	2.8
합계	72	100.0

#### 4.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 필요한 이유

동물학대가 예상보다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언론에 노출되는 것처럼 그 양상과 행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의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1990년대까지 동물학대 문제는 학계에서 거의 주목받지 못했다. 동물학대 문제, 즉 동물에 대한 폭력이 여러 가지 이유로 무시되어 온 이유에 대한 외국의 분석에 의하면 ‘첫째, 사회는 인간에 비해 동물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다른 이슈가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 셋째, 소수의 사례만 미디어를 통해 보도되기 때문에 대중은 동물학대를 드문 일로 인식한다. 넷째, 동물을 향한 범죄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개인이 벌인 독립적 사건으로만 여겨질 뿐 또 다른 행위(예컨대 인간에 대한 폭력) 및 더 큰 사회문화적 요인과 연결되는 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sup>15)</sup> 다섯째, (사냥, 어업, 동물실험, 육식 등)대규모로 벌어지는 사회적으로 용인된 형태의 동물폭력이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폭력을 향한 무관심에 기여한다. 여섯째, 동물은 체제적 차별과 착취의 피해자로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유일한 존재이다.<sup>16)</sup> 라는 이유 때문이다.

동물학대가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첫째, 동물학대는 심각한 반사회적 행동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청소년이나 폭력, 약물중독 등의 문제를 안은 가정을 찾아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둘째, 동물학대는 비교적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다. 셋째, 동물을 해치는 행위는 부정적 발달의 결과와 연관될 수 있다. 넷째, 동물학대는 가정폭력의 지표일 수 있으며, 가해자의 상당수가 가정폭력의 피해자이기도 하다. 다섯째, 동물학대는 비폭력범죄 뿐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인간폭력과도 연결되어 있다. 여섯째, 잠재적 피해동물의 수가 어마어마하다. 일곱째, 동물학대의 종결은 모든 형태의 폭력을 종결하는 데 중요한 한 걸음이 된다.<sup>17)</sup>’는 분석이 있다.

미국의 경우 FBI에서 동물에 대한 학대를 범죄 데이터베이스화하기 시작하였다. 동물학대는 방화, 절도, 폭행, 살인과 같은 중범죄에 포함된다. FBI는 UCR(Uniform Crime Reporting)의 미국 범죄 보고서에 동물관련범죄를 ‘기타범죄’ 범주에 포함시켰으나,

15) 첫째부터 넷째의 설명은 Arluke, Arnold and Carter Luke, “Physical Cruelty toward Animals in Massachusetts, 1975-1996”, *Society & Animals* 5: 95-204, 1997 (클리프턴 P. 플린, 동물학대의 사회학, 책공장더불어, 2022, 12면에서 재인용)

16) 이에 대해서는 클리프턴 P. 플린, 동물학대의 사회학, 책공장더불어, 2022, 13면

17) 클리프턴 P. 플린, 동물학대의 사회학, 책공장더불어, 2022, 15-16면.

2016년 1월 1일 NIBRS(National Incident-Based Reporting System)는 동물학대를 단순 방치(neglect), 의도적 학대 및 고문(torture), 조직적 학대(organized abuse), 성적 학대(sexual abuse)로 나누어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sup>18)</sup> 동물학대 통계를 수집한 후 타 범죄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FBI는 “연구결과에 따르면 동물학대범죄는 더 큰 범죄에 대한 하나의 전조(Some studies say that cruelty to animals is a precursor to larger crime)”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sup>19)</sup>

NIBRS 데이터의 예비 분석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인구 10만명당 동물 학대 사건은 4.43건으로, 폭행은 106.68건, 강도는 65.77건, 마약 범죄는 799.40건<sup>20)</sup>이다. 연구자들은 동물 학대 혐의로 체포된 150명의 성인 남성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과 범죄 특성을 조사했다. 연구에 포함된 범죄자의 평균 연령은 37세였으며, 41%는 대인 폭력으로 최소 한 번 체포되었고, 18%는 성범죄로, 28%는 다양한 대인 범죄(예: 금지 명령 위반 또는 괴롭힘)로 체포되었다고 한다.<sup>21)</sup>

미국 FBI는 아동기 때 동물을 괴롭히다가 나중엔 사람에게 범죄를 이어가기도 한다면 서 동물학대가 결국 사람에 대한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실제 2005년 한 논문에서 ‘연쇄살인범 387명을 분석한 결과 상당수 연쇄살인마는 힘없는 작은 동물들을 상대로 연습기간을 거쳤다’는 미국연방수사국(FBI)의 분석결과를 소개하기도 했다.<sup>22)</sup>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통계나 데이터가 부족하기에, 동물학대와 다른 범죄와의 연관성이 더 연구되어 논증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다른 나라의 예로 보았을 때 동물학대는 동물에 대한 범죄이기도 하지만, 사회에 대한 범죄이기도 하므로 다른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18) Tracking Animal Cruelty - FBI Collecting Data on Crimes Against Animals  
<https://www.fbi.gov/news/stories/-tracking-animal-cruelty>

19) Tracking Animal Cruelty - FBI Collecting Data on Crimes Against Animals  
<https://www.fbi.gov/news/stories/-tracking-animal-cruelty>

20) “Animal Cruelty Reporting Scorecard,” Animal Welfare Institute, accessed January 26, 2021,  
<https://awionline.org/content/animal-cruelty-reporting-scorecard>.<https://leb.fbi.gov/articles/featured-articles/the-link-between-animal-cruelty-and-human-violence>

21) Lacey Levitt, Tia A. Hoffer, and Ann B. Loper, “Criminal Histories of a Subsample of Animal Cruelty Offenders,”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30 (2016): 48-58, <https://doi.org/10.1016/j.avb.2016.05.002>.<https://leb.fbi.gov/articles/featured-articles/the-link-between-animal-cruelty-and-human-violence>에서 재인용

22) 동물행동권카라(2021). “동물 학대 범죄 일관되고 강력한 처벌을 위해 ‘양형기준’ 마련이 시급합니다”. <https://blog.naver.com/animalkara/222581991943>.

## 제2절 | 동물학대 방지 관련 현행 법제도 고찰

### 1. 동물의 개념과 법적 지위

#### 가. 현행법 상 동물의 개념

동물보호법은 동물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 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고 규정하며 각 목에서 ‘가. 포유류, 나. 조류, 다. 파충류·양서류·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조에서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파충류, 양서류 및 어류를 말한다. 다만,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의사법 제2조 제2호에서는 “동물”이란 ‘소, 말, 돼지, 양, 개, 토끼, 고양이, 조류(鳥類), 꿀벌, 수생동물(水生動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의사법 시행령 제2조 수의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고 하여 각 호에서 1. 노새·당나귀, 2. 친칠라·밍크·사슴·메추리·평·비둘기, 3. 시험용 동물,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동물로서 포유류·조류·파충류 및 양서류로 정의하고 있다. 즉, 법의 목적에 따라 동물의 개념을 달리 정하고 있다.

#### » [표 2-18] 개별법에서 동물에 대한 정의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시행령	수의사법
제2조 제1호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 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가. 포유류, 나. 조류, 다. 파충류·양서류·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제2조제1호다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파충류, 양서류 및 어류를 말한다. 다만,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2조 2호에서는 “동물”이란 소, 말, 돼지, 양, 개, 토끼, 고양이, 조류(鳥類), 꿀벌, 수생동물(水生動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수의사법 시행령 제2조 수의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시행령	수의사법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말한다. 1. 노새·당나귀 2. 친칠라·밍크·사슴·메추리·꿩·비둘기 3. 시험용 동물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동물로서 포유류·조류·파충류 및 양서류

### 나. 동물의 법적 지위

동물은 항상 재산으로 간주되어 왔고, 법적 지위를 갖지 못하는 존재였다.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아퀴나스를 지나 데카르트 시기에 정점에 달한 서양철학 전통의 동물관은 동물은 도덕적 지위가 없는 인간보다 낮은 존재라는 것이다. 도덕 공동체 내에서 동물을 근본적으로 삭제하는 이러한 입장은 동물에게 일련의 능력이나 특질(영혼, 이성, 말하고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 등)이 없음을 강조함으로써 정당화된다. 데카르트적 시각으로 볼 때 동물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기계에 불과하고, 따라서 도덕적 고려를 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이다. 유대-기독교적 관점과 데카르트적 이원론은 서로 결합하여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sup>23)</sup>

그러나 벤담은 고통을 느끼는 동물은 인간과 똑같이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고<sup>24)</sup>, 피터 싱어는 벤담의 생각을 계승, 발전시켜 인간만이 도덕적이고 나머지는 배제하는 태도를 종차별주의(speciesism)이라고 하며 성차별주의, 인종차별주의와 마

23) 클리프턴 P. 플린, 동물학대의 사회학, 책공장더불어, 2022, 43면

24) 인간 아닌 동물들이 폭군의 손이 아닌 이상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권리를 획득하게 될 날이 올지도 모른다. 프랑스 사람들은 피부색깔이 검다는 사실이 '괴롭히는 사람이 제멋대로 행동함으로써 입게된 피해를 아무런 보상 없이 방치해도 무방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없음을 이미 깨닫고 있다. 었자, 피부에 용모가 있는지의 여부, 또는 천골 끝 모습 등이 감각을 느낄 수 있는 존재가 동일한 운명을 맞이하도록 방치하는 이유가 될 수 없음을 깨닫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특징을 통해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 이성 능력인가? 그렇지 않으면 담화를 나눌 수 있는 능력인가? 하지만 완전히 성장한 말이나 개는 갓난아기 또는 생후 일주일이나 한 달이 된 유아에 비해 훨씬 합리적이며, 우리와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하지만 설령 그들의 능력이 생각과 다르더라도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 문제는 그들에게 이성적으로 사고할 능력이 있는지 또는 대화를 나눌 능력이 있는지가 아니다. 문제는 그들이 고통을 느낄 수 있는가이다. J. Bentham, Introduction to the Principles of Morals and Legislation, 17장(피터싱어, 동물해방, 연암서가, 2021, 36-37면에서 재인용)

찬가지로 옳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sup>25)</sup>

동물의 지위, 동물의 권리에 대한 철학적, 이론적 논쟁은 현재 계속 진행 중이다. 아직까지 인간과 동물을 동등한 선상에 놓는 법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동물의 생명존엄성, 보호받을 의무 등에 관한 논의는 계속 진행 중에 있으며, 각 나라마다 그 나라의 문화와 동물에 대한 인식에 따라 각기 다른 법제도로써 동물을 보호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1년 제정된 동물보호법이 동물에 관한 기본법 역할을 하고 있지만, 동물보호법 제6조에서 보듯 동물 기본법은 주로 ‘동물의 보호 및 이용·관리’에 주안점을 둔 동물일반법이다. 따라서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해서는 여전히 민법의 개념에 의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민법은 제98조에서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민법 외의 법률에서 물건을 달리 정의하거나 동물에 대하여 민법 제98조를 배제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이상, 동물은 민법의 물건에 관한 규정 아래 놓이게 된다.<sup>26)</sup> 일상적으로 물건은 생명체가 아닌 것을 의미하지만, 생명체로서의 동물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민사법적 관점에서는 동물도 유체에 속하는 물건으로 볼 수밖에 없다.<sup>27)</sup>

## 2. 현행법상 동물에 관한 법제

우리나라에는 동물보호법 뿐 아니라 여러 분야와 영역에서 동물에 관한 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동물이라는 표제를 포함하고 있는 조문은 총 477개이고, 동물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조문은 총 1,704개에 해당된다.

이러한 법령 중 현재 동물과 관련된 대표적인 법률로는 동물보호에 관한 일반법인 동물보호법 외에도 가축전염병 예방법, 검역법, 경범죄처벌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낙농진흥법, 도로교통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동물보호법,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민법, 사료관리법, 소비자기본법, 수산생물 질병관리법, 수의사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실험동물

25) 자세한 내용은 피터싱어, 동물해방, 연암서가, 2021 참조.

26) 송호영, 동물의 법인격 논의 동향과 향후 민사법적 변화 모색, 사법정책연구원-강원대 환경법센터·동물법센터 공동학술대회 “동물법의 새로운 지평” 발표자료집, 2022, 13면.

27) 김종기(집필), 주석민법 [총칙2], 제5판(편집대표 김용덕), 2019, 98면

에 관한 법률, 악취방지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주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축산법,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한국마사회법, 한국진도개 보호·육성법, 향만법, 형법 등이 있다.

동물관련 법률들의 제정목적과 소관부처는 다음과 같다.<sup>28)</sup>

▶▶▶ [표 2-19] 동물관련 법령들의 내용과 소관부처

부서	법률	목적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
	사료관리법	사료의 수급안정·품질관리 및 안전성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료의 안정적인 생산과 품질향상을 통한 축산업의 발전
	수의사법	수의사(獸醫師)의 기능과 수의(獸醫)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건강증진,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
	낙농진흥법	낙농산업의 구조 개선, 원유(原乳)와 유제품(乳製品)의 수급(需給) 조절, 가격 안정과 유통 구조의 개선을 통하여 낙농업과 낙농 관련 산업의 발전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낙농산업의 구조 개선, 원유(原乳)와 유제품(乳製品)의 수급(需給)조절, 가격 안정과 유통 구조의 개선을 통하여 낙농업과 낙농 관련 산업의 발전
	축산법	가축의 개량·증식,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 및 유통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축산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며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
	한국마사회법	한국마사회의 조직·운영과 경마(競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원활한 보급을 통하여 말산업 및 축산의 발전
	한국진도개 보호·육성법	진도개 고유의 혈통을 보존하고 그 증식 및 보급 확대를 통하여 진도개의 우수성을 증진하며 그 활용도를 높이는 것

28) 홍진희/김판기, 동물관련 법제의 체계화를 위한 시론적 고찰, 법학연구 통권 제52집,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17, 146-148면

부서	법률	목적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水生生態系)를 적정하게 관리·보전
	악취방지법	사업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
보건복지부	검역법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운송수단, 사람 및 화물을 검역(檢疫)하는 절차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내외로 감염병이 번지는 것을 방지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과 시설의 위생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
해양수산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公有水面)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관리하고, 환경친화적인 매립을 통하여 매립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수산생물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수산생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과 수생태계 보호 및 국민건강의 향상
	항만법	항만의 지정·개발·관리·사용 및 재개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만과 그 주변지역 개발을 촉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경찰청	경범죄처벌법	경범죄의 종류 및 처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유지
	도로교통법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
국토교통부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도시에서의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및 도시녹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
	주택법	쾌적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공급·관리와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

부서	법률	목적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
	소비자기본법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자유시장경제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
법무부	민법	사인간의 재산 및 신분관계 규율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제1조). 이 밖에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CITES),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천연기념물 동물에 관한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8조, 멸종 위기종을 재료로 한 의약품에 관한 약사법 제43조, 수산업법 등이 직·간접적으로 야생동물을 규율하는 법률이다.

전시 또는 오락 목적과 관련된 동물에 관한 규율은 크게 동물보호법 관련 조항과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로 구분된다. 동물보호법은 오락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가하는 학대행위를 금지하고(제8조 제2항 제3호, 동조 제5항 제2호),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에 관한 동물전시업(제32조 제5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은 기본적으로 동물원 및 수족관의 동물에 대한 보호 및 이에 관한 규율을 정한 법이다.

일반적으로 농장동물은 ‘가축’이라고 정의되며, 농장동물에 대한 법률은 그 규율영역과 목적에 따라 축산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수의사가 아니어도 자기가 사육하는 가축에 대한 진료행위를 허용하는 수의사법 제12조 제3호 등이 있다. 각 법률이 정의하는 '가축'의 범위는 동일하지 않다.

### 3. 민법

우리 민법은 제4장에서 “물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98조에서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동물은 반려동물을 포함하여 ‘유체물’로서 ‘물건’에 속한다.

법무부는 2021년 7월 19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으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안, 의안번호 2112764)을 입법예고하였다. 이 법률안은 9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10월 1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법무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본 개정안은 민법 제98조의2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여 동물을 법적으로 더 이상 물건으로 취급하지 않고, 동물 그 자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피해에 대한 배상의 수위가 높아지고, 생명존중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안들이 제시되는 등 우리 사회가 동물을 포함하여 생명 그 자체를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게 될 것으로 기대하며, 민법 상 반려동물 개념을 신설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는 법안 등, 후속 법안들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sup>29)</sup>

정부제출안은 제98조의2 제2항을 신설하여, “동물에 대해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여, 제1항에서 동물이 물건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이 조항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 ▶▶ [표 2-20] 민법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8조의2(동물의 법적 지위) ①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② 동물에 대해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9) 법무부 보도자료,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 2021년 9월 28일

1999년<sup>30)</sup>과 2012년<sup>31)</sup>, 2017년<sup>32)</sup>에도 민법 상 동물의 법적지위에 대한 규정 신설검토가 있었으나,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최근에는 여러 영역에서 동물의 법적지위 개선에 관한 입법안이 다수 발의되고 있다.<sup>33)</sup>

민법 개정안이 포함하고 있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해 동물을 법적으로 더 이상 물건으로 취급하지 않고, 동물 그 자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이 바로 동물의 법적지위를 권리주체로 승격시키는 것은 아니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이 준용이 되는 물건이 아닌 권리객체에 속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을 통해 동물학대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짐은 물론, 동물 피해에 보호의 필요성, 생명존중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 제도들이 검토되어야 하는 상황이 된다. 이러한 규정을 통해 동물관련 법해석 또는 법적용을 하는 법관이 경제성과 동물보호라는 가치가 대립할 때 후자의 가치에 더 무게를 두는 것이 정당화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sup>34)</sup> 이번 입법예고안이 보여주는 동물이 물건이 아니라는 조항이 선언적 역할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동물 학대와 보호에 대한 부수적 입법과정이 보완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민법은 그 외에 야생동물을 무주물로 보는 민법 제252조 제3항, 동물 점유자의 책임에 관한 민법 제759조를 두고 있다.

#### 4. 그 외

동물은 물건이기 때문에 형법상 동물에 대한 상해는 재물손괴에 관한 제368조가 적용된다. 헌법은 동물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헌법에서 동물은 재산권

30) 1999년 법무부 주관 민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에서 물건에 관한 규정의 개정과 관련하여 동물보호 정신을 반영하여 동물의 법적지위에 관한 규정신설이 논의되었다.

31) 2011년 법무부 주관 민법개정위원회 제3기 제2분과에서 동물의 법적지위 관련 논의가 있었고, 해당 규정을 도입할 경우 손해배상, 압류금지 규정 등도 함께 개정이 필요하다는 등의 내용이 논의되기도 하였으나, 입법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32) 2017년에도 동물은 물건이 아니며 별도의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한도에서 민법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개정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6313)이 제출되었다가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33) 국내 입법 동향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이재영,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입법례 및 시사점-민사법 규정을 중심으로-, NARS 현안분석 제227호, 2021, 2면

34) 최준규,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민법 개정안의 의의와 민사법의 향후 과제, 그리고 민사법의 한계, 환경법과 정책 제28권, 2022, 14면.

에 관한 헌법 제23조, 환경권에 관한 헌법 제35조,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에 관한 헌법 제37조 제1항을 통해 다루어질 수 있다.

## 5. 동물보호법

### 가. 연혁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은 1988년 서울올림픽 당시 국제동물보호기금(IFAW, International Fund for Animal Welfare) 등 동물보호단체들이 우리나라 정부에 대하여 개고기 식용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여 세계적인 논란이 일었고, 이러한 논란으로 인해 동물보호법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된 후<sup>35)</sup>, 1991년 5월 31일 동물보호법<sup>36)</sup>이 제정되어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 뒤로 2007년, 2011년, 2013년, 2015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여러차례 개정을 거쳤고, 2022년 4월 26일 전부개정된 동물보호법이 2023년과 2024년에 시행될 예정이다.

동물보호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동물보호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았다. 형법에서는 타인의 재물을 보호하기 위한 재물손괴죄 규정으로 재물로서의 동물을 부수적으로 보호하였으며, 경범죄처벌법에서 부수적으로 동물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정도였다.<sup>37)</sup> 그 외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조수보호및수렵에

35) 제정 동물보호법 심사보고서 전문위원은 '80년대 초부터 국제동물보호단체에서 우리나라의 잔인한 개의 도살행위에 대한 비난과 이의 금지를 위한 법 제정 요청이 있어 대외적으로 동물보호의지를 천명하고'라며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36) 동물보호법 [시행 1991. 7. 1.] [법률 제4379호, 1991. 5. 31., 제정][신규제정]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국민의 동물보호정신을 함양하려는 것임.

①누구든지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함에 있어서는 그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함.

②동물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죽이거나, 잔인하게 죽이거나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등의 동물학대행위를 금지함.

③시·도는 유기동물의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에 따라 유기동물을 보호·관리하되 그 소요경비는 그 동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함.

④동물을 죽이지 아니하면 아니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고, 거세·제각·단미등 동물에 대한 외과적인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수의학적 방법에 의하도록 함.

37) 제정 경범죄처벌법 제1조 (경범죄의 종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35. 인축에 가해할 성벽이 있는 축견 기타 조수류를 함부로 풀어놓거나 또는 그 감시를 태만히 하여 이를 도주케 한 자

관한 법률, 문화재로서의 동물을 보호하는 문화재보호법, 그리고 동물의 이용이나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축산물가공처리법, 축산법 등이 시행되고 있었다.

이러한 법들이 동물의 이용과 관리를 목적으로 한 것과 달리 제정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의 방지와 동물의 생명과 안전보호를 입법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선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sup>38)</sup> 제정 동물보호법은 총 12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동물보호법에서 학대행위에 대한 법정형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한 매우 형식적이고 실효성이 결여된 상징적인 법률이었다.<sup>39)</sup>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지 15년 후인 2007년 동물보호법은 전부개정되었다. 조문은 12개에서 26개로 늘어났으며, 동물보호법의 목적에 '복지를 증진하고'라는 문구가 추가되어 동물복지의 이념이 나타나게 되었다.<sup>40)</sup> 2011년 또 한 번의 전부개정이 있었는데 이는 개정이유<sup>41)</sup>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반려동물 소유자의 동물학대 행위의 양태와 방법이 다양해지고, 잔혹해지고 있을 뿐 아니라 극히 열악한 사육환경과 운영

38) 동물보호법 [시행 1991. 7. 1.] [법률 제4379호, 1991. 5. 31., 제정]

제1조 (목적) 이 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과 그 안전을 보호하도록 하여, 생명의 존중 등 국민의 정서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9) 함태성, 동물보호법의 입법적 평가와 향후 과제, 공법학연구 제21권 제4호, 2020, 626면. 이 논문에 따르면 당시 동물보호법 제정 과정에서 국회 농림수산위원회에 제출되었던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80년초부터 국제동물보호재단에서 우리나라의 잔인한 개의 도살행위에 대한 비난과 이의 금지를 위한 법 제정 요청이 있어서 대외적으로 동물보호의지를 천명하고 국내적으로 동물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국민의 동물보호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이 법안을 제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국회 농림수산위원회 동물보호법안 심사보고서(1991.5.), 4면; 함태성, 동물보호법의 입법적 평가와 향후 과제, 공법학연구 제21권 제4호, 2020, 626면에서 재인용

40) 동물보호법 [시행 2008. 1. 27.] [법률 제8282호, 2007. 1. 26., 전부개정]

제1조 (목적) 이 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과 그 안전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생명의 존중 등 국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41) 동물보호법 [시행 2012. 2. 5.] [법률 제10995호, 2011. 8. 4., 전부개정][제정·개정이유]

◇ 개정이유

반려동물 소유자의 동물학대 행위의 양태와 방법도 다양해지면서 매우 잔혹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극히 열악한 사육환경과 운영비리로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는 유기동물보호소 환경에 대한 감독과 개선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 따라, 동물복지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동물보호정책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동물복지위원회를 설치하며, 정부 차원의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 농장동물에 대한 복지를 장려하고, 동물등록제를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의무화하며, 피학대 동물의 구조·보호조치를 마련하고,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등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비리로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는 유기동물보호소 환경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 법에서는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운영(제5조), 학대받는 동물에 대한 구조·보호조치의 강화(제14조, 제15조 및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도입(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동물학대 및 금지된 동물실험행위에 대한 벌칙 등 강화(제46조)<sup>42)</sup>에 대한 규정들을 두었다. 2011년 동물보호법은 ‘현행 동물보호법의 원형’이라고 평가되기도 한다.<sup>43)</sup> 2011년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 외에도 실험동물, 농장동물을 규율하는 규정을 둬으로써 동물보호 영역을 확대하였다.

그 후 일부개정을 거듭하다가 동물보호법이 최근 전면개정되었고, 이 법은 2023년과 2024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sup>44)</sup> 이 법에서 동물소유자의 사육,

42) 동물학대행위를 한 자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상향조정함.

43) 함태성, 동물보호법의 입법적 평가와 향후 과제, 공법학연구 제21권 제4호, 2020, 634면.

44) 동물보호법 [시행 2008. 1. 27.] [법률 제8282호, 2007. 1. 26., 전부개정] [전문개정]

◇ 개정이유

동물보호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고, 반려(伴侶)동물의 사육 및 유기(遺棄)동물의 증가 등에 따라 반려동물 소유자 등에 대한 등록제 시행근거를 마련하며, 동물학대행위 방지조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동물의 등록제 도입(법 제5조)

- (1) 고의 또는 과실로 버려지는 동물의 증가가 사회문제로 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됨.
- (2) 시·도지사는 동물의 소유자로 하여금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소유하고 있는 동물을 등록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3) 동물 및 동물의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행정기관에 등록하게 함으로써 동물의 유기를 방지하고 동물보호의 실효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반려동물 소유자의 관리의무 강화(법 제6조)

- (1) 반려동물의 관리소홀로 개에 물리거나 개회충증 등으로 인한 피해 등이 증가함.
- (2) 동반 외출시 인식표 부착, 안전장구 휴대 등 소유자의 의무를 명시하고, 시·도지사는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 특정지역에서의 사육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3) 반려동물 소유자의 관리의무 강화로 인수공통질병의 예방 등 공중보건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동물에 대한 금지행위의 구체화(법 제7조)

- (1) 동물에 대한 금지행위가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위반 여부의 판단에 어려움이 있음.
- (2)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및 살아있는 동물의 체액을 채취하는 행위 등 금지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 (3) 금지행위의 내용이 구체화되고 그 범위도 확대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됨.

라. 동물의 운송에 따른 보호규정 마련(법 제8조)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동물학대 등 위법행위시 처벌규정을 강화하였다.

2022년 4월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sup>45)</sup>에 따라 농림축산부령으로 규정하던 금지행위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형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 2023년 4월 27일부터는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 공간이나 먹이를 제공하지 않는 등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반려동물을 죽게 하는 행위가 법상 동물 학대행위에 포함되고, 처벌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되었다.

- 
- (1) 동물이 차량으로 운송되는 도중 상해를 입거나 질식사하는 등의 사례가 증가함.
  - (2) 동물 운송시 적합한 사료의 공급, 상해를 방지하고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차량의 사용 등 동물을 운송하는 자의 준수사항을 정함.
  - (3) 동물을 운송하는 자 등의 준수사항을 정함으로써 동물보호의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마.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법 제14조)
- (1)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물실험시설에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두도록 함.
  - (2) 윤리위원회의 설치로 무분별한 동물실험의 억제 및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바. 동물보호감시관 및 명예감시관제 도입(법 제19조)
- (1) 동물 학대행위에 대한 감시와 계도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2) 농림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은 동물보호감시관과 명예감시관을 지정 또는 위촉하되, 직 무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3) 동물학대의 신고를 접수한 동물보호감시관에 대하여 동물의 보호와 학대의 방지를 위하여 동물학대행위자로부터 피학대동물의 격리 또는 치료가 필요한 때에는 동물보호전문기관 또는 치료기관의 인도에 필요한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4) 동물보호감시관제 등의 도입으로 민간전문가 등의 감시활동이 활성화되어 동물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사. 법령위반에 따른 처벌 강화(법 제25조 및 제26조)
- (1) 동물 학대행위자·소유자등의 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2) 동물 학대행위에 대한 벌칙을 현행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고, 의무위반에 대하여도 최고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3) 학대행위 방지 등 동물보호에 관한 법령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 45) 동물보호법 [시행 2023. 4. 27.] [법률 제18853호, 2022. 4. 26., 전부개정]
- ◇ 개정이유
- 현행법은 1991년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 조성과 사람 및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된 이후, 사회적 이슈와 정책적 수요를 반영하여 여러 차례 개선·보완되어왔으나, 동물학대 및 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와 반려가구의 급증,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 인식변화 등에 따라 전반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보호조치 중인 동물 반환 시 사육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동물학대를 예방하고, 맹견 사육허가제와 기질평가제를 신설하여 맹견관리를 강화하며, 반려동물 영업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도를 신설하고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등 동물의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정비하려는 것임.

▶▶▶ [표 2-21] 동물보호법 연혁

제·개정시기	주요내용
1991.5.31.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죽이는 행위 잔인하게 죽이는 행위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합리적 이유 없이 고통을 주거나 상해하는 행위 소유자 관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유기하는 행위 금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2007.1.26.	현재와 유사한 형태로, 죽이는 행위, 상해행위 등 금지행위를 구체화 학대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5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강화
2011.8.4.	처벌조항에 징역형을 추가(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013.4.5.	2012년 소 값 폭락 및 사료가격 상승으로 농장주가 키우던 소에게 사료를 주지 않고 방치하여 33마리의 소를 폐사시킨 사건 발생(불기소 의견 송치) → 방치 등의 가혹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신설
2013.8.13.	정의 규정에 '동물학대' 명시(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 동물학대영상물의 판매 전시 전달 상영 게재 등을 금지
2017.3.21.	동물의 죽음 관련 학대의 범위를 죽이는 행위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까지 확대하여 결과적 가중범도 처벌범위에 포함
2018.3.20.	2018년 1월 견주가 33마리의 동물을 기르다가 일부를 유기하여 발각되는 등 애니멀 호더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 논란 야기 → 최소한의 사육공간 등을 제공하지 않아 반려동물이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를 학대행위에 포함 맹견에 의한 공격사고 급증 → 맹견 유기 처벌조항 신설
2019.8.27.	2018년 11월 인터넷에 투견 도박 참가 모집 광고가 사회적 공분 야기 → 투견 등 동물을 이용한 도박 광고, 선전행위 금지
2020.2.11.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법정형 상향(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동물유기행위를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처벌조항으로 개정(300만원 이하의 벌금)

나. 전면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대한 주요 내용

1) 동물학대 행위 등의 구체화(제10조)

- (1) 농림축산부령으로 규정하던 금지행위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형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 (2) 동물학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소유자등의 금지행위를 구체화하고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2) 반려동물 전달방법 보완(제12조 및 제101조 등)

- (1) 반려동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는 사람은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운송업의 등록을 한 자를 통하여 전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3) 맹견수입신고제도 도입(제17조)

- (1) 맹견을 수입하려는 자는 맹견의 품종, 수입 목적, 사육 장소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4) 맹견사육허가제도 도입(제18조)

- (1)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맹견사육허가를 받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사육허가를 하도록 함.

5) 기질평가위원회의 설치(제26조)

- (1) 맹견사육허가 전 기질평가 및 맹견 아닌 개의 기질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도에 기질평가위원회를 두도록 함.
- (2) 기질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수의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등 동물의 행동과 발달 과정, 동물복지정책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도록 함.

6)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제도 도입(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 (1) 반려동물의 행동분석·평가 및 훈련 등에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로서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2)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업무, 자격시험, 결격사유 및 명의대여 금지 의무 등의 내용을 규정함.

7)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 및 지원(제37조 등)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기증·인수반

아 임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 (2) 신고가 수리된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자는 시설 및 운영기준 등을 준수하고 시설정비 등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함.
-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민간동물보호시설의 환경개선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8)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제도 마련(제44조)

- (1) 소유자등이 자신이 소유하거나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동물의 인수를 신청하는 경우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동물을 인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9) 동물복지축산농장 제도 정비(제59조)

- (1)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업무를 수행할 인증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의 근거를 마련함.
- (2)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인증갱신 및 갱신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 제도 등을 도입함.

#### 10) 반려동물 영업 관련 제도의 정비(제69조부터 제85조까지)

- (1)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을 허가영업으로 하도록 정비하고 그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
- (2)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을 등록영업으로 하고 그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
- (3) 맹견을 생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에 대한 허가 특례를 규정하고 맹견취급을 위한 시설 및 인력기준을 별도로 정하도록 함.
- (4) 휴업·폐업 등의 신고 관련 사항을 신설하고, 영업자가 휴·폐업할 경우 동물처리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의무를 신설함.

- (5) 동물생산업자, 동물수입업자 및 동물판매업자는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에게 동물등록의 방법을 설명하고 구매자의 명의로 동물등록을 신청한 후 판매하도록 의무화함.
- (6) 동물생산업자, 동물수입업자 및 동물판매업자가 등록대상동물을 취급하는 경우 그 거래내용을 신고하도록 함.
- (7) 영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 처분이 해당 영업의 동물 또는 이용자에게 곤란을 주거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8)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가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영업하거나, 허가 및 등록의 취소, 영업정지처분 등의 사유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계속할 경우 영업장 폐쇄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11)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제95조)

-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증진과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해당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

6. 현행법상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규정

가. 형법 상 손괴죄로 처벌

우리 형법은 제366조에서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물, 문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효용을 해하는 것이 그 전형이다. 재물이란 유체물 및 물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말한다.(형법 제346조) 동물은 형법적 관점에서 타인의 재물에 해당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형법적 관점에서 타인의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는 타인의 물건을 손괴하는 행위가 된다.<sup>46)</sup>

## 나. 동물보호법 상 동물학대로 처벌

동물보호법에서는 제2조 제1의2에서 동물학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 1) 동물학대의 유형

#### 가)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제4호 :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 [표 2-22] 동물학대의 유형 -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 4. 그 밖에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제6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서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 2. 허가, 면허 등에 따른 행위를 하는 경우 3. 동물의 처리에 관한 명령, 처분 등을 이행하기 위한 경우

46) 경의선 숲길 고양이 자두 사건에 대해서 법원은 동물보호법 위반과 함께 재물손괴를 인정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9노1696 판결 [동물보호법위반, 재물손괴]

피고인은 자신이 길고양이와 주인 있는 고양이를 어떤 기준으로 구별하였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채 이 사건 고양이가 길고양이인 줄 알았다고만 진술하고 있다. 위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고양이가 가게주인이 보호하는 주인이 있는 고양이일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고도 이 사건 고양이를 공격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동물보호법 제10조 제2항 : 상해를 입히거나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

▶▶▶ [표 2-23] 동물학대의 유형 - 상해를 입히거나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p>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해당 동물의 질병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li> <li>2.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몸을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해당 동물의 질병 예방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li> <li>3.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li> <li>4. 동물의 몸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li> <li>나.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li> <li>다. 갈증이나 굶주림의 해소 또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의 목적 없이 동물에게 물이나 음식을 강제로 먹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li> <li>라. 동물의 사육·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거나 도구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li> </ul> </li> </ol>	<p>② 법 제10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해당 동물의 질병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행위인 경우</li> <li>2. 법 제47조에 따라 실시하는 동물실험인 경우</li> <li>3. 긴급 사태가 발생하여 해당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인 경우</li> </ol> <p>③ 법 제10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해당 동물의 질병 예방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p>④ 법 제10조제2항제3호 단서에서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p>

## 다) 동물보호법 제10조 제3항 : 유실·유기 동물 등에 대하여 포획, 판매 등

## ▶▶▶ [표 2-24] 동물학대의 유형 - 유실·유기 동물 등에 대하여 포획, 판매 등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p>③ 누구든지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포획하여 판매하는 행위</li> <li>2. 포획하여 죽이는 행위</li> <li>3.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li> <li>4.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임을 알면서 알선·구매하는 행위</li> </ol>	

## 라) 동물보호법 제10조 제4조 :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

## ▶▶▶ [표 2-25] 동물학대의 유형 - 유기하는 행위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p>④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li> <li>2.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적절한 길이의 목줄, 위생·건강 관리를 위한 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관리 또는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li> <li>3. 제2호의 행위로 인하여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li> </ol> <p>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항부터 제4항까지(제4항제1호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다만,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목적이 표시된 홍보 활동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i> <li>2.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 또는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선전하는 행위. 다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은 제외한다.</li> </ol>	<p>⑤ 법 제10조제4항제2호에서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적절한 길이의 목줄, 위생·건강 관리를 위한 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관리 또는 보호의무”란 별표 2에 따른 사육·관리·보호의무를 말한다.</p> <p>⑥ 법 제10조제5항제1호 단서에서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목적이 표시된 홍보 활동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각 호에 따른 법인·단체(이하 “동물보호 민간단체”라 한다)가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법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제4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이하 이 항에서 “사진 또는 영상물”이라 한다)에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과 해당 목적을 표시하여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경우</li> <li>2. 언론기관이 보도 목적으로 사진 또는 영상물을 부분 편집하여 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경우</li> </ol>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p>3. 도박·시합·복권·오락·유흥·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p> <p>4.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건의 대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3. 신고 또는 제보의 목적으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기관 또는 단체에 사진 또는 영상물을 전달하는 경우</p> <p>⑦ 법 제10조제5항제4호 단서에서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건의 대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건을 대여하는 경우</li> <li>2. 촬영, 체험 또는 교육을 위하여 동물을 대여하는 경우. 이 경우 대여하는 기간 동안 해당 동물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제5조에 따른 적절한 사육·관리를 해야 한다.</li> </ol>

## 2) 동물보호법의 벌칙 내역 및 조항

▶▶▶ [표 2-26] 동물보호법 벌칙조항

분야	위반내역(조항)	벌칙내역 및 조항
동물보호법	<p>동물학대 등의 금지 위반(제10조 제1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임에 이르게 하는 행위</li> <li>-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임에 이르게 하는 행위</li> <li>-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li> <li>- 그 밖에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임에 이르게 하는 행위</li> </ul> <p>- 포획하여 죽이는 행위(제10조 제3항 제2호)</p> <p>- 제10조 제4항 제2호의 행위로 반려동물을 죽임에 이르게 하는 행위(제10조 제4항 제3호)</p> <p>등록대상동물, 맹견의 관리 위반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제16조, 제21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물보호법 제97조 제1항)</li> </ul>
	<p>동물학대 등의 금지 위반(제10조 제2항, 제3항, 제4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li> <li>-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물보호법 제97조 제2항)</li> </ul>

분야	위반내역(조항)	벌칙내역 및 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li> <li>- 동물의 몸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li> <li>-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li> <li>- 유실, 유기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에 대하여 포획하여 판매하는 행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위 동물을 알면서도 알선·구매하는 행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맹견사육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제18조)</li> <li>영업의 등록 위반(제73조)</li> <li>- 동물 생산업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물보호법 제97조 제3항)</li> </ul>

#### 다. 다른 나라의 입법동향

독일은 1990년 ‘민법상 동물의 법적 지위의 개선을 위한 법률(Gesetz zur Verbesserung der Rechtsstellung des Tieres im bürgerlichen Recht vom 20. August 1990(TierVerbG)’을 제정하였다. 제1조에서는 동물에 관하여 민법(BGB) 상 물건의 개념 뿐 아니라 손해배상 및 소유권에 관한 특칙을 규정하였다. 민법에서는 동물을 물건과 구분하고(제90조의a)<sup>47)</sup> 동물의 상해에 대한 치료비에 관한 손해배상 특칙(제251조 제2항 후문)<sup>48)</sup>을 두었고, 소유권의 내용에 대한 특칙(제903조 후문)<sup>49)</sup>을 신설하

47) § 90 Begriff der Sache

Sachen im Sinne des Gesetzes sind nur körperliche Gegenstände.

제90조 물건의 개념

이 법률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만을 말한다.

§ 90a Tiere

Tiere sind keine Sachen. 2Sie werden durch besondere Gesetze geschützt. 3Auf sie sind die für Sachen geltenden Vorschriften entsprechend anzuwenden, soweit nicht etwas anderes bestimmt ist.

제90a조 동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동물은 별도의 법률에 의하여 보호된다. 그에 대하여는 다른 정함이 없는 한 물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양창수, 2021년판 독일민법전-총칙·채권·물권, 박영사, 2021.)

48) § 251 Schadensersatz in Geld ohne Fristsetzung

(1) Soweit die Herstellung nicht möglich oder zur Entschädigung des Gläubigers nicht genügend ist, hat der Ersatzpflichtige den Gläubiger in Geld zu entschädigen.

(2) 1Der Ersatzpflichtige kann den Gläubiger in Geld entschädigen, wenn die Herstellung nur mit unverhältnismäßigen Aufwendungen möglich ist. 2Die aus der Heilbehandlung eines verletzten Tieres entstandenen Aufwendungen sind nicht bereits dann unverhältnismäßig,

였다. 제2조에서는 민사소송법(ZPO)에 대해 규정하였는데, 민사소송법에서는 집행처분에 대한 취소·중단·일시 정지에 관하여 집행처분이 동물에 관련된 경우에 대한 특칙(제765조의 a 제1항 3문)<sup>50</sup>과 집에서 비영리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에 대한 압류금지 특칙(제811조의 c)<sup>51</sup>을 신설하였다. 제3조에서는 동물보호법(TierSchG) 등 개별법

wenn sie dessen Wert erheblich übersteigen.

제251조 즉시의 금전배상

- (1)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채권자의 전보에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배상의 무자는 금전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 (2) 원상회복이 과도한 비용지출에 의하여만 가능한 경우에는 배상의무자는 금전으로 배상할 수 있다. 피해입은 동물을 치료하는 비용이 동물의 가액을 현저히 상회한다는 것만으로 그 비용지출이 과도한 것이 되지는 아니한다.

(양창수, 2021년판 독일민법전-총칙·채권·물권, 박영사, 2021.)

49) § 903 Befugnisse des Eigentümers

Der Eigentümer einer Sache kann, soweit nicht das Gesetz oder Rechte Dritter entgegenstehen, mit der Sache nach Belieben verfahren und andere von jeder Einwirkung ausschließen. 2Der Eigentümer eines Tieres hat bei der Ausübung seiner Befugnisse die besonderen Vorschriften zum Schutz der Tiere zu beachten.

제903조 소유자의 권능

물건의 소유자는, 법률 또는 제3자의 권리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물건을 임의대로 처리할 수 있고 또 타인의 어떠한 간섭도 배제할 수 있다. 동물의 소유자는 그 권능의 행사에 있어서 동물의 보호를 위한 특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양창수, 2021년판 독일민법전-총칙·채권·물권, 박영사, 2021.)

50) § 765a Vollstreckungsschutz

- (1) 1Auf Antrag des Schuldners kann das Vollstreckungsgericht eine Maßnahme der Zwangsvollstreckung ganz oder teilweise aufheben, untersagen oder einstweilen einstellen, wenn die Maßnahme unter voller Würdigung des Schutzbedürfnisses des Gläubigers wegen ganz besonderer Umstände eine Härte bedeutet, die mit den guten Sitten nicht vereinbar ist. 2Es ist befugt, die in § 732 Abs. 2 bezeichneten Anordnungen zu erlassen. 3Betrifft die Maßnahme ein Tier, so hat das Vollstreckungsgericht bei der von ihm vorzunehmenden Abwägung die Verantwortung des Menschen für das Tier zu berücksichtigen.

제765a조 집행보호

- (1) 집행처분이 채권자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매우 특별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선량한 풍속에 합치하지 않을 정도로 가혹한 것인 경우, 집행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집행처분의 전체 또는 부분을 취소, 중단 또는 일시 정지할 수 있다. 법원은 제732조 제2항에 규정된 명령을 할 권한이 있다. 그 처분이 동물과 관련된 경우, 집행법원은 그 처분이 가혹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동물에 대한 사람의 책임을 고려하여야 한다.

51) § 811c Unpfändbarkeit von Haustieren

- (1) Tiere, die im häuslichen Bereich und nicht zu Erwerbszwecken gehalten werden, sind der Pfändung nicht unterworfen.
- (2) Auf Antrag des Gläubigers lässt das Vollstreckungsgericht eine Pfändung wegen des hohen Wertes des Tieres zu, wenn die Unpfändbarkeit für den Gläubiger eine Härte bedeuten würde, die auch unter Würdigung der Belange des Tierschutzes und der berechtigten Interessen des Schuldners nicht zu rechtfertigen ist.

제811조의c 가족의 압류금지

상 동물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을 신설하도록 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종래 동물에 대한 일정한 불법행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로 1년에서 5년 사이 또는 영구히 보유·매매·접촉 금지명령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었는데(제20조)<sup>52)</sup>, 제20조에 따른 금지명령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판사의 결정으로 보유·매매·접촉을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제20조의a)<sup>53)</sup><sup>54)</sup> 독일의 이러한 개정은 독일 내 국민의 인식변화 및 법제화 진전과

- 
- (1) 가정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육되지 않는 동물은 압류할 수 없다.
  - (2) 압류금지가 동물보호의 중요성 및 채무자의 정당한 이해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을 정도로 채권자에게 가혹한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동물이 고가임을 이유로 압류를 허가한다.

#### 52) Tierschutzgesetz

##### § 20

- (1) Wird jemand wegen einer nach § 17 rechtswidrigen Tat verurteilt oder nur deshalb nicht verurteilt, weil seine Schuldunfähigkeit erwiesen oder nicht auszuschließen ist, so kann ihm das Gericht das Halten oder Betreuen von sowie den Handel oder den sonstigen berufsmäßigen Umgang mit Tieren jeder oder einer bestimmten Art für die Dauer von einem Jahr bis zu fünf Jahren oder für immer verbieten, wenn die Gefahr besteht, dass er weiterhin eine nach § 17 rechtswidrige Tat begehen wird.
- (2) Das Verbot wird mit Rechtskraft des Urteils oder des Strafbefehls wirksam. In die Verbotsfrist wird die Zeit, in welcher der Täter in einer Anstalt verwahrt wird, nicht eingerechnet. Ergibt sich nach der Anordnung des Verbots Grund zu der Annahme, dass die Gefahr, der Täter werde nach § 17 rechtswidrige Taten begehen, nicht mehr besteht, so kann das Gericht das Verbot aufheben, wenn es mindestens sechs Monate gedauert hat.
- (3) Wer einem Verbot nach Absatz 1 zuwiderhandel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einem Jahr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제20조

- (1) 법 제17조에 의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책임무능력을 증명하거나 책임무능력이 조각되지 않은 이유로 유죄의 선고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 그러한 자가 계속하여 제17조에 따른 불법행위를 범할 위험이 있으면, 법원은 모든 동물 또는 특정한 종류의 동물을 보유, 사육, 매매하거나 그밖에 동물과 직업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최저 1년에서 최고 5년까지의 기간 동안 또는 영구히 금지할 수 있다.
- (2) 이와 같은 금지는 판결 또는 형벌명령이 확정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행위자가 시설에 구금된 기간은 금지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지명령이 내려진 후 행위자가 제17조에 따른 불법행위를 범할 위험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고 금지기간이 6개월 이상 계속된 경우에는 법원은 금지를 해제할 수 있다.
- (3) 제1항의 금지명령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 53) Tierschutzgesetz

§ 20a (1) Sind dringende Gründe für die Annahme vorhanden, dass ein Verbot nach § 20 angeordnet werden wird, so kann der Richter dem Beschuldigten durch Beschluss das Halten oder Betreuen von sowie den Handel oder den sonstigen berufsmäßigen Umgang mit Tieren jeder oder einer bestimmten Art vorläufig verbieten.

- (2) Das vorläufige Verbot nach Absatz 1 ist aufzuheben, wenn sein Grund weggefallen ist oder wenn das Gericht im Urteil oder im Strafbefehl ein Verbot nach § 20 nicht

오스트리아 일반민법(ABGB)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sup>55)</sup>

프랑스는 형사상 지위의 변화가 있는 후 민사상 지위 변화가 논의되었다. 프랑스는 1850년 그랑몽법(Loi Grammont)을 마련하여 공연히 가축을 학대한 행위를 형사처벌 하였고, 이를 대체한 1959년 9월 7일자 명령 제59-1051호는 공연성 요건을 제외하는 한편, 동물 소유자가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소유자가 알려지지 않은 경우 법원은 동물을 동물보호단체에 인계하거나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게 하였다. 1963년 11월 19일자 법률 제63-1143호는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긴급한 경우 판결 전에도 동물을 위탁하도록 결정할 수 있게 하며(구 형법 제453조),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동물실험을 처벌하는 규정(구 형법 제454조)을 마련하였다.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형법의 법률부분은 동물학대죄를 재산에 대한 죄에서 분리하여 제5권 기타의 중죄 및 경죄에 규정하고 있다. 제5권은 제1편 공중위생위반, 제2편 기타규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제2편은 중대한 동물학대를 단일한 장으로 규율하고 있다.

이는 미국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학대방지법은 본래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의 재산권침해로부터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다.<sup>56)</sup> 미국의 경우도 법조계는 동물에 대한 사회의 양면적 태도, 학대를 규정하는 문제의 어려움, 대부분의 위반 사례가 경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기소, 주에서 동물 보호단체들에게 집행권을 위임할 정도로 부족한 집행자금 및 인력 등을 이유로 동물 학대와 관련된 각종 법의 제정 및 집행을 주저해왔다.<sup>57)</sup> 동물에 대한 기소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유죄판결도 드물고, 기소가 이루어지고 유죄판결이 이루어졌어도 최소한

anordnet.

(3) Wer einem Verbot nach Absatz 1 zuwiderhandel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einem Jahr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제20a조

(1) 제20조에 따른 금지명령이 내려져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판사는 피의자에 대하여 결정을 통하여 모든 동물 또는 특정한 종류의 동물을 보유, 사육, 매매하거나 그 밖에 동물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일시적인 금지는 그와 같은 사유가 소멸되거나 법원이 판결 또는 형벌명령으로 제20조에 따른 금지명령을 하지 않은 경우 취소된다.

(3) 제1항의 금지명령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54) 이재영,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입법례 및 시사점-민사법 규정을 중심으로-, NARS 현안분석 제227호, 2021, 4면

55) 윤철홍, 민사법 체계에서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법무부 용역보고서, 2004, 16면

56) 클리프턴 P. 플린, 동물학대의 사회학, 책공장더불어, 2022, 40면

57) 클리프턴 P. 플린, 동물학대의 사회학, 책공장더불어, 2022, 40면

의 형이 내려지는 상황에서 동물에 대한 폭력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법적으로 동물은 누군가의 재산으로 간주되는 한 동물의 권리는 인간 소유주의 권리를 넘어서지 못한다는 것이다.<sup>58)</sup> 그러나 최근 몇 년 동물학대관련법이 강화되어 과거에는 경범죄에 속했던 일부 학대행위가 이제 많은 주에서 중범죄가 되었다. 현재는 미국 50개 주 전 지역에서 동물학대 범죄를 중범죄 수준으로 처벌하고 있다.

---

58) 클리프턴 P. 플린, 동물학대의 사회학, 책공장더불어, 2022, 41면



## 제 3 장

동물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

# 동물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의 비교법적 분석



## 제3장

# 동물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의 비교법적 분석

### 제1절 | 독일

#### 1. 개관

독일의 동물보호에 관련된 가장 주된 법은 연방 동물보호법(Tierschutzgesetz)이다. 그 외 독일 기본법과 민법에도 동물보호에 관련되어 주요하게 다루어야 할 법조문이 있다.

독일의 개별 동물보호 관련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다루기에 앞서 이 법령들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주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세 개의 법은 동물보호에 관하여 서로 유기적으로 관련성을 맺으며 발전해 왔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세 개의 법(동물보호법, 민법, 헌법)에서의 동물 보호 관점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독일에서 동물보호에 관련된 내용은 <동물보호법 → 민법 → 기본법>의 순서로 발전해 왔다. 아래에서는 이 순서로 독일 법제에 동물보호에 관련된 내용이 담기게 된 과정을 살펴본다.

##### 가. 연방 동물보호법

동물을 물건과 같이 취급하지 않고 인간과 함께 살아나가는 이웃으로 보는 관점을 가장 먼저 제시한 법률은 연방 동물보호법이다. 독일에서 동물보호법은 나치시대인 1933년 제국동물보호법으로 제정되었다가 1972년 연방 동물보호법(Tierschutzgesetz)로 새롭게 제정되었다. 이 법에서 가장 주요하게 다루게 되는 조문은 제1조이다. 제1조

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법률의 목적은 이웃(Mitgeschöpf)<sup>59)</sup>으로서의 동물을 위해 그들의 생명과 건강을 인간의 책임으로서 보호하기 위함에 있다. 그 누구도 합리적 이유 없이 동물에 고통, 괴로움 또는 상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참고로 연방주의를 취하는 독일에서 동물의 보호에 관련된 내용은 기본법(Grundgesetz) 제74조 제1항 제20호에 속하는 경합 입법에 해당하고, 제72조 제2항 범위 내에서 입법권은 연방에게 주어져 있다.

### 나. 민법 등

동물을 인간과 함께 (Mit-, co-) 존재하는 생명체(Geschöpf, creature), 즉 Mitgeschöpf로 규정한 동물보호법에 뒤이어, 1990년 민법에 동물에 관련된 주요한 조항이 추가되었다. 바로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고 선언한 민법 제90a조이다. 이 조문이 속한 제3장 제2절은 물건과 동물을 다루는 장이다. 이 중 제90a조는 ‘동물’이라는 표제 하에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동물은 별도의 법률을 통해 보호된다.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동물에 대하여 물건에 대한 규정을 준용한다.” 사실상 법효과면에서는 제3문에 따라 물건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인간의 동료이자 고통을 느끼는 생명체”로 관점을 변경하였다는 점에서 민법상 의의가 있다.<sup>60)</sup>

이 법조문은 우리나라의 동물에 대한 시각 변화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2021년 정부 의안으로 발의되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는 우리나라 민법 개정안(의안번호: 2112764)의 내용과 거의 유사하다. 우리 민법 개정안 제98조의2의 표제어는 ‘동물의 법적 지위’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②동물에 대해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개정안에 대한 법무부의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에 따르면, 동물 학대 방지 등 동물권 강화 인식이 넓어지고 있음에도 민법에서 동물을 단순한 물건으로 취급하

59) ‘Mitgeschöpf’는 다양하게 번역되고 있다. 이 중 인간의 동료인 생명체라는 의미를 담은 간명한 번역어인 ‘이웃’이라는 번역(윤철홍, “독일민법상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소고”, 인권과 정의 제420호, 2011, 9면)을 따르기로 한다.

60) Stresemann, Münchener Kommentar zum BGB - § 90a, 7. Aufl., 2015, Rn. 2; 주현경, “동물의 법적 지위 변화와 형사법의 변화 모색”, 환경법과 정책 제28권, 2022, 59면.

는 내용을 개정하여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겠다고 한다.

독일에서는 입법목적에 따라 1개의 포괄개정법률(Mantelgesetz)<sup>61)</sup>을 제정하고, 그 입법목적에 관련된 여러 개의 관계 법률을 동시에 개정함을 그 법률의 내용으로 하는 포괄입법방식(일괄개정방식)을 이용할 때가 많다. 이 법조문을 개정하게 된 포괄개정 법률은 1990년 8월 20일 민법상 동물의 법적 지위의 개선을 위한 법률(Gesetz zur Verbesserung der Rechtsstellung des Tieres im bürgerlichen Recht)이다. 이에서는 민법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법(ZPO) 및 동물보호법(TierSchG) 관련 규정도 신설되었다.<sup>62)</sup> 이 중 특히 독일 민사소송법에 신설된 규정인 제811c조의 동물에 대한 압류금지 규정을 눈여겨 볼 만 하다. 이 법조문은 “가정에서 키우며, 영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것이 아닌 동물은 압류할 수 없”고(제1항), 다만 “압류금지가 동물보호의 중요성 및 채무자의 합당한 이해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을 정도로 채권자에게 가혹한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동물이 고가임을 이유로 압류를 허가한다.”고 규정되었다.<sup>63)</sup> 현재 이 법조문은 제811조로 이동하였고, 조문의 내용도 개정되었다.<sup>64)</sup>

61) 조항법률(Artikelgesetz)로 명명하기도 한다.

62) 송호영, “동물의 법인격 논의 동향과 향후 민사법적 변화 모색”, 『동물법의 새로운 지평』, 사법정책연구원 - 강원대 환경법센터·동물법센터 공동학술대회 자료집(2022. 11. 25.), 11면.

63) (1) 가정에서 키우며, 영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것이 아닌 동물은 압류할 수 없다.

(2) 압류금지가 동물보호의 중요성 및 채무자의 합당한 이해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을 정도로 채권자에게 가혹한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동물이 고가임을 이유로 압류를 허가한다.

(1) Tiere, die im häuslichen Bereich und nicht zu Erwerbszwecken gehalten werden, sind der Pfändung nicht unterworfen.

(2) Auf Antrag des Gläubigers lässt das Vollstreckungsgericht eine Pfändung wegen des hohen Wertes des Tieres zu, wenn die Unpfändbarkeit für den Gläubiger eine Härte bedeuten würde, die auch unter Würdigung der Belange des Tierschutzes und der berechtigten Interessen des Schuldners nicht zu rechtfertigen ist,

64) 독일 민사소송법 제811조의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811조 다음 각호의 물건과 동물은 압류할 수 없다.

[...] 8. 가정에서 함께 생활하는 동물로서, a) 영리 목적으로 사육하는 것이 아닌 동물 또는 b) 획득의 대상으로 필요로 하지 않는 동물. 그리고 이 동물에게 필요한 사료 및 잠자리 깔짚

§ 811 Unpfändbare Sachen und Tiere

[...] 8. Tiere, die der Schuldner oder eine Person, mit der er in einem gemeinsamen Haushalt zusammenlebt,

a) nicht zu Erwerbszwecken hält oder

b) für die Ausübung einer Erwerbstätigkeit benötigt,

sowie das für diese Tiere erforderliche Futter und die erforderliche Streu.

이러한 반려동물 압류금지규정은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에 모두 반영되어 있으며, 이 표지들은 유사하면서도 조금씩 다르다. 우리 민사소송법에도 동일한 취지의 압류금지 규정이 필요하여, “가정 내에 있는”, “감정적 유대가 존재하는” 등의 표지 중 우리 법이 어떤 표지를 취할 것인지를 법무부가 논의 중이며,<sup>65)</sup> 관련된 민사집행법 개정안도 의안발의되었다.<sup>66)</sup>

#### 다. 기본법

독일에서는 동물보호법과 민법의 개정에 뒤이어 독일 기본법(Grundgesetz)에 동물 보호의 내용이 추가되었다.<sup>67)</sup> 2002년 기본법 개정시 제20a조가 개정되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는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으로서, 헌법적 질서 내에서 자연 생활환경 및 동물을 입법 및 법률·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과 사법을 통하여 보호한다.” 개정 전 내용에서 ‘동물’이라는 단어를 추가한 이 법조문을 통해, 기존의 ‘자연 생활환경’이라는 단어만 규정되어 있을 때보다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동물 보호의 의미를 담아내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sup>68)</sup>

#### 라. 시사점

독일법이 동물보호법에서부터 시작하여 민법, 기본법의 순서로 동물에 대한 시각의 변화가 변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각각의 법은 다른 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동물보호법에서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 “동물의 생명 존중”,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동법 제1조)을 우리 법이 추구하여야 할 목적으로 정립하였으나, 직접적인 학대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동물보호법 이외의 법에서는 이러한 동물에 대한 시각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65) 함태성, “개물림 사고에 대한 책임 및 대응의 법적 쟁점과 과제”, 『동물법의 새로운 지평』, 사법정책연구원 - 강원대 환경법센터·동물법센터 공동학술대회 자료집(2022. 11. 25.), 39면.

66) 반려동물 등을 압류금지물건으로 규정하는 민사집행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었다. 2021년 임종성의원 대표발의, 김도읍의원 대표발의, 정운천의원 대표발의, 한무경 의원 대표발의 등, 2022년 신정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351) 등이 그 예이다.

67) 김수진, “동물보호법개정논의에 즈음한 비교법적 고찰-미국과 독일의 동물관련법제를 중심으로-”, 행정법연구 제15호, 2006, 305면.

68) Gärditz, in Landmann/Rohmer, Umweltrecht, Art. 20a GG, 82. EL Januar 2017, Rn. 19 ff.

점에서 민법 개정안(의안번호: 2112764) 제98조의2는 동물보호법에 한정되어 있던 동물의 생명보호, 사람과의 공존이라는 시각이 확장되는 첫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민법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등 인간과 동물에 관련된 여러 법에서 동물을 단순한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넓혀지고 구체화되는 법률의 정비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2. 연방 동물보호법 개관

독일에서는 1972년에 새롭게 연방법으로 동물보호법을 제정되면서 인간의 동물에 대한 인간의 책무가 강조되었고, 1986년 개정에서 그 책임이 더욱 구체화, 강조되는 과정을 거쳐왔다.<sup>69)</sup> 독일에는 연방법인 동물보호법 외에도, 하위 법령인 동물보호농장 동물사육법, 동물보호도축법, 동물보호동물운송법 등이 각 주의 법령으로 존재한다.<sup>70)</sup>

2017년 3월에 개정된 연방 동물보호법의 12개 장은 1장 기본원칙, 2장 동물 관리, 3장 동물 도축, 4장 동물 수술, 5장 동물실험, 6장 동물보호담당관, 7장 동물의 번식·사육, 동물거래, 8장 동물의 이동·유통·사육금지, 9장 그 밖의 동물보호를 위한 규정, 10장 법률의 집행, 11장 벌칙, 12장 경과규정 및 종결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sup>71)</sup>

### ▶▶▶ [표 3-1] 독일 동물보호법 개관

제1장 원칙 Grundsatz
제2장 동물 관리 Tierhaltung
제3장 동물 도축 Töten von Tieren
제4장 동물 수술 Eingriffe an Tieren
제5장 동물실험 Tierversuche
제6장 동물보호담당관 Tierschutzbeauftragte
제7장 동물의 번식·사육, 동물거래 Zucht, Halten von Tieren, Handel mit Tieren
제8장 동물의 이동·유통·사육금지 Verbringungs-, Verkehrs- und Haltungsverbot
제9장 그 밖의 동물보호를 위한 규정 Sonstige Bestimmungen zum Schutz der Tiere
제10장 법률의 집행 Durchführung des Gesetzes
제11장 벌칙 Straf- und Bußgeldvorschriften
제12장 경과규정 및 종결규정 Übergangs- und Schlussvorschriften

69) 홍완식, “독일의 동물보호법제에 관한 고찰”, 유럽헌법연구 통권25호, 2017, 533면.

70) 홍완식, “독일의 동물보호법제에 관한 고찰”, 유럽헌법연구 통권25호, 2017, 533면.

71) 이하에서 독일 동물보호법 번역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국가별 동물보호복지 관련법, 2021. 11.을 참조하여 필자가 필요부분을 수정하였다.

동물보호법 제1조는 동물이 인간과 함께 동반 창조된 존재임을 명시하고 있어 민법상 물건이 아니라는 표현을 넘어, 동물과 인간과 동등한 존재임을 명시하고 있다.

동물학대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는 규정은 제17조이다. 이에 따르면 고의의 동물학대에 대하여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양벌규정 역시 적용된다.

▶▶▶ [표 3-2] 독일 동물보호법 제17조 -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형벌규정

<p><b>독일 동물보호법 제17조</b>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합리적 이유 없이 척추동물을 죽인 자</li> <li>2. 척추동물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잔인하게 상당한 고통 또는 괴로움을 가하는 행위</li> <li>b) 장시간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상당한 고통(Schmerzen)이나 괴로움(Leiden)을 가하는 행위</li> </ol> </li> </ol>
--

3. 독일 동물보호법상 동물보유등 금지제도

가. 개관

독일에서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재발을 금지하기 위한 대표적인 제도로는 동물보호법상 동물보유등 금지제도를 들 수 있다. 동법 제20조에 규정된 이 제도에 따르면, 제17조에 따른 위법행위를 행한 사람에게 모든 종류 또는 특정 종류의 동물을 보유(Halten), 보호(Betreuen), 거래(Handel), 그 밖의 직업적 취급(sonstiges berufsmäßigen Umgang)을 금지할 수 있다.

▶▶▶ [표 3-3] 독일 동물보호법 제20조 - 동물사육금지 및 직업적 거래행위 등 금지 규정

<p><b>독일 동물보호법 제20조</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어떤 사람이 제17조에 따른 위법행위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책임무능력이 입증되거나 이를 배제할 수 없어서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경우, 법원은 이 사람에게 모든 종류의 동물 또는 특정 동물의 관리, 보호, 거래 또는 그 밖의 직업적 취급을 1년에서 5년까지 금지할 수 있고, 향후에도 제17조에 따른 위법행위를 범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무기한 금지할 수 있다.</li> <li>(2) 금지는 판결의 확정력 또는 구금과 함께 효력을 발휘한다. 범인이 교도소에 유치된 기간은 금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금지명령이 내려진 후 범인이 제17조에 따른 위법행위를 범할 위험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근거가 있고 금지가 적어도 6개월 지속된 경우 법원은 금지를 해제할 수 있다.</li> <li>(3) 제1항에 따른 금지를 위반한 사람은 최대 1년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li> </ol>
---

이 규정의 목적은 동물의 이익을 위하여, 동물에게 범죄행위를 하거나 그러한 경향성이 있는 사람이 동물을 취급할 수 없도록 배제하는 것으로, 예방적 형사제재라는 점에서 형법상의 보안처분(독일 형법 제61조)에 관련되는 것으로 평가된다.<sup>72)</sup> 금지되는 4가지 유형은 보유(Halten), 보호(Betreuen), 거래(Handel), 그 밖의 직업적 취급(sonstiges berufsmäßigen Umgang)이다. 이 중 '보유'란 좁은 의미로서 자신의 비용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하한 포괄적인 양육을 의미하고, '보호'란 보유 이외의 양육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보유자 대신 일시적으로, 또는 동물의 특정한 생애주기에 동물을 돌보는 경우, 또는 동물의 운송, 도축 전, 동물실험 전 또는 동물실험 중에 동물을 일시적으로 돌보는 경우를 뜻하며, '직업적 취급'에 관련된 행위로는 거래, 번식, 훈련 등을 들 수 있다.<sup>73)</sup>

금지되는 4가지 행위 유형 중 '보호' 금지는 2013년부터 새로 효력이 있는 금지행위이다. 이는 그동안 동물보유금지조치 대상자가 가정 내에서 동물을 키울 때, 자신은 여전히 동물을 보유(Halten)하지 않는 것이고 단지 가족·동거인들이 동물을 키우는 것(보호하는 것, Betreuen)이라고 주장해 오던 부작용을 없애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sup>74)</sup>

이 조항은 또한 독일 형법 제70조의 직업금지조항과 경합하게 되며, 이 경우 직업·영업 금지는 제20조의 조항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sup>75)</sup> 그 외 행정법적 금지조항은 제16a 조 제2문 제3호(동물에 대한 위협이 있는 경우 보유 금지) 조항, 제11조 제3항 제2문의 허가 의무행위의 금지, 영업법(GewO) 제35조의 영업금지 조항 등을 들 수 있다.<sup>76)</sup>

## 나. 대상

동물보유등 금지제도의 대상은 동물보호법 제17조에 따른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 또는 책임조각사유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자이다. 위법성 있는 행위를 한 자라면 책임조각사유가 있어 처벌되지 않는 경우라도 이 금지제도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72) Lotz/Metzger(Hrsg.), TierSchG, § 20 Rn. 1.

73) Lotz/Metzger(Hrsg.), TierSchG, § 20 Rn. 6.

74) BT-Drs. 17/10572, 34.

75) Lotz/Metzger(Hrsg.), TierSchG, § 20 Rn. 2.

76) Lotz/Metzger(Hrsg.), TierSchG, § 20 Rn. 2.

이 때 행위유형인 동물보호법 제17조 위반행위는 1) 합리적 이유 없이 척추동물을 죽인 행위, 2) 척추동물에게 a) 잔인하게 상당한 고통 또는 괴로움을 가하는 행위를 하거나, b) 장시간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상당한 고통(Schmerzen)이나 괴로움(Leiden)을 가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sup>77)</sup> 이러한 동물학대행위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의 법정형으로 처벌된다.

#### 4. 동물보유 등 금지 임시조치제도

독일 형법상 직업금지제도에 대해서는 잠정적 직업금지제도(형사소송법 제132a조)가 함께 실시되는 것처럼, 위 동물보유 등 금지제도의 실효성을 위하여 이에 대한 임시조치제도가 도입되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표 3-4] 독일 동물보호법 제20a조 - 동물보유 등 금지 임시조치제도

###### 독일 동물보호법 제20a조

- (1) 제20조에 따른 금지 명령이 내려질 것이라는 유력한 근거가 있는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피의자에게 모든 종류의 동물 또는 특정동물의 관리, 보호, 거래 또는 그 밖의 직업적 취급을 일시 금지할 수 있다.
- (2) 유력한 근거가 없어진 경우 또는 법원이 판결 또는 과형명령으로 제20조에 따른 금지를 명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일시 금지는 해제하여야 한다.
- (3) 제1항에 따른 금지를 위반한 사람은 최대 1년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이는 형사소송법상 다른 예방적 조치로 볼 수 있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피의자 운전면허 일시정지제도(제111a조), 그리고 및 책임무능력·한정책임능력자에 대한 공공안전을 위한 임시수용제도(제126a조) 등에서 모델을 가져온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sup>78)</sup> 이 임시조치제도는 소송법상 존재하는 임시제도를 동물보호법제에 적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 제도는 제20조에 따른 금지명령이 받아들여야 할 긴급한 사정 있는 경우 결정의 형식으로 관리, 보호, 거래, 그 밖의 직업적 취급을 일시금지하는 제도이다(제1항). 이러한 긴급한 사유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임시조치는 해제되어야 한다(제2

77) 고통(통증, Schmerzen)과 괴로움(Leiden)의 의미에 대하여 한민지, 동물사육금지처분의 법적 쟁점과 과제 - 해의 입법례 비교를 통한 입법적 고찰, 『동물법의 새로운 지평』, 사법정책연구원 - 강원대 환경법센터·동물법센터 공동학술대회 자료집(2022. 11. 25.), 73면 이하.

78) Lotz/Metzger(Hrsg.), TierSchG, § 20a Rn. 1.

항). 이 금지제도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형벌을 부과된다(제3항).

이 때의 긴급한 사정이란, 동법 제17조 위반 범행 개연성이 높은 긴급한 범행혐의를 뜻하며, 개연성이 높다 함은, 제20조의 요건이 충족되고, 피의자의 위험성이 높으며, 비례성요건이 충족된 상황을 뜻한다.<sup>79)</sup>

이 결정의 관할은 수사단계에서는 동물에 대한 취급이 인지된 관할구역의 구법원(Amtsgericht)이다(독일 형사소송법 제162조). 공소제기 후에는 사물관할 법원이 관할하며, 청구권자는 검사이다.<sup>80)</sup> 이 결정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0조 제1항에 따라 기간의 제한이 없는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그 외의 불복은 불가하다(제310조 제2항).<sup>81)</sup> 임시조치의 종료(제2항)는 독일 형사소송법 제132a조 제2항에 상응하는 조치로 볼 수 있다.<sup>82)</sup>

## 5. 학대동물 압수

독일 동물보호법 제19조는 동물학대에 관련된 동물을 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표 3-5] 동물보호법 제19조 - 동물 압수제도

#### 독일 동물보호법 제19조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관련 있는 동물은 압수할 수 있다.

1. 제17조, 제20조제3항 또는 제20a조제3항에 따른 범죄
2. 질서위반행위가 제2a조, 제5조제4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 제4항제 2문 또는 제6항제2문, 제11b조제4항제2호 또는 제12조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법규명령과 관련이 있는 경우 제1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 또는 제4호, 제8호, 제12호, 제17호, 제20a호, 제21a호, 제22호 또는 제23호에 따른 질서위반행위

(2) 그 밖에 다음에 따른 질서위반행위와 관련 있는 동물은 압수할 수 있다.

1. 질서위반행위가 제18조제1항제4호, 제8호, 제12호, 제17호, 제21a호, 제22호 또는 제23호에 언급된 명령 또는 금지에 부합하고 직접 적용 가능한 유럽공동체 또는 유럽연합의 법령 규정과 관련 있는 경우 제18 조제3항제1호2. 질서위반행위가 제2a조, 제5조제4항, 제9조제1항부터 제4항 또는 제6항제2문, 제11b조제4항제2호 또는 제12조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법규명령에 부합하고 직접 적용 가능한 유럽공동체 또는 유럽연합의 법령 규정과 관련 있는 경우 제18조제3항제2호

79) Lotz/Metzger(Hrsg.), TierSchG, § 20a Rn. 2.

80) Lotz/Metzger(Hrsg.), TierSchG, § 20a Rn. 3.

81) Lotz/Metzger(Hrsg.), TierSchG, § 20a Rn. 6.

82) Lotz/Metzger(Hrsg.), TierSchG, § 20a Rn. 7; Meyer-Goßner/Schmitt(Hrsg.), StPO, § 132a Rn. 11 ff.

압수의 대상이 되는 범죄는 위의 동물보유등 금지제도의 대상인 제17조 학대행위보다 넓은 범위로 규정되어 있다. 범죄에 관련한 압수는 형법 제74조에 따라 가능하다. 특히 동물보호법에 따른 압수에서 관련대상은 범행의 필수적 대상이라 할 수 있는 동물이며,<sup>83)</sup> 특히 학대당한 동물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sup>84)</sup> 그 외에도, 결정 시 행위자 또는 범행가담자에게 속한 동물과 동물에게 위법적 행위 및 질서위반행위가 가해질 위험이 있는 경우 그 동물도 압수대상이 될 수 있다.<sup>85)</sup>

이 압수에 관하여는 법원과 소추기관의 재량영역을 인정하며, 그 재량영역에서는 형법 제74f조, 질서위반법 제24조 등 비례성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sup>86)</sup> 따라서 재량에 따라 압수를 유보하고 피고인 또는 관련자에게 가축을 매도하는 것도 고려될 수 있다.<sup>87)</sup>

압수는 법적으로 그 소유권이 국가로 이전되는 법적 효과를 가져오지만, 압수에 따라 국가가 동물을 살해할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동물이 병으로 고통받아 그 고통을 감소시키기 위해 또는 관청이 제16a조 제1항 제1문에 따라 지시한 경우와 같이 이성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sup>88)</sup>

## 제2절 | 스위스

### 1. 개관

#### 가. 민법

스위스 역시 동물보호법 뿐만 아니라 민법과 헌법 등에 동물보호에 관련된 조항을 두고 있다.

스위스 민법에는 독일과 유사하게 동물을 물건의 예외로 두는 조항을 두고 있다.<sup>89)</sup>

83) Fischer(Hrsg.), StGB, § 74 Rn. 16.

84) Lotz/Metzger(Hrsg.), TierSchG § 19 Rn. 2.

85) Lotz/Metzger(Hrsg.), TierSchG § 19 Rn. 3.

86) Lotz/Metzger(Hrsg.), TierSchG § 19 Rn. 5.

87) Lotz/Metzger(Hrsg.), TierSchG § 19 Rn. 5.

88) Lotz/Metzger(Hrsg.), TierSchG § 19 Rn. 7.

89) 스위스의 민법상 동물의 지위에 대한 논의로 한민지, “스위스법에 따른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

2013년부터 스위스 민법 제641a조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동물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물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정하고 있다.<sup>90)</sup>

동물보호법제에 대한 평가기준 중 법률에서 동물에 대한 정서적 가치를 부여하는지를 살펴볼때, 스위스 민법은 집에서 기르던 동물의 부상이나 사망 시 법관이 그 동물의 물질적 가치가 아닌 정서적 가치를 인정한다는 점(채권법 제43장 제1조)에서 동물과 인간의 유대감에 대한 법적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sup>91)</sup>

## 나. 헌법

스위스 헌법 역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을 위한 ‘생명의 존엄성’을 명시하는데 적극 기여하였다.<sup>92)</sup> 동물보호를 헌법에 명시함과 동시에, 동물학대를 금지하고 ‘생명의 존엄성’을 헌법에 명시한 국가는 스위스가 유일하다는 것이다.<sup>93)</sup> 스위스 헌법(Bundesverfassung der Schweizerischen Eidgenossenschaft) 제120조 제2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스위스 연맹은 동물과 식물 그리고 다른 유기생명체의 생식, 유전적 요소를 다루는 문제를 법으로 제정한다. 국가는 생명체(Kreatur)의 존엄성과 인간, 동물, 환경의 안전을 고려하고, 동물과 식물의 유전적 다양성을 보호한다.”<sup>94)</sup> 동물보호법이 일반적으로 동물의 고통방지에 머물러 있는 것과 달리, 스위스 헌법의 내용은 ‘존엄’의 개념을

한 동향”, 서울법학 제28권 제4호, 2021, 352면 이하.

90) 그 외에도 오스트리아 역시 1988년부터 제285a조에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고 정하였다. 이러한 규정을 한 유럽의 국가로는 네덜란드 민법 3:2a조(2011년 입법), 리히텐슈타인 물권법 제20a조(2003년 입법), 체코 민법 제494조(2012년 입법) 등을 들 수 있다. 미주에서는 캐나다 퀘벡주 민법 898.1조(2015년)이 유사한 조항을 두고 있다. 최준규,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민법 개정안의 의의와 민사법의 향후 과제 그리고 민사법의 한계”, 환경법과 정책 제28권, 2022, 4면.

91) 안토니 F. 괴첼/이덕임 역, 동물들의 소송, 알마, 2016, 197면; 이에 관련된 스위스 채권법에 대한 설명으로 한민지, “스위스법에 따른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동향”, 서울법학 제28권 제4호, 2021, 357면 이하.

92) “[동물과 사람 이야기] 스위스의 동물들을 위한 변호사 안토니 괴첼 인터뷰”,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702040489717153>, 최종접속일: 2023. 1. 2.

93) 안토니 F. 괴첼/이덕임 역, 동물들의 소송, 191면.

94) 번역은 기본적으로 안토니 F. 괴첼/이덕임 역, 동물들의 소송, 192면을 따랐지만, 필자가 일부 수정하였다.

Art. 120 Gentechnologie im Ausserhumanbereich

1 Der Mensch und seine Umwelt sind vor Missbräuchen der Gentechnologie geschützt.

2 Der Bund erlässt Vorschriften über den Umgang mit Keim- und Erbgut von Tieren, Pflanzen und anderen Organismen. Er trägt dabei der Würde der Kreatur sowie der Sicherheit von Mensch, Tier und Umwelt Rechnung und schützt die genetische Vielfalt der Tier- und Pflanzenarten.

추가하였고, 이렇게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동물의 존엄 등 법적 지위가 규정되자, 동물보호법 및 그 외에도 유실물법, 이혼법, 상속법, 형법 등 여러 법에서 동물이 그 자체로서의 존재가치 및 인간의 동료생명체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sup>95)</sup>

## 2. 동물보호법

### 가. 학대행위의 금지

스위스 동물보호법(Tierschutzgesetz: TSchG)<sup>96)</sup>는 동물학대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제26조 이하에 규정하고 있으며, 학대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sup>97)</sup>

#### » [표 3-6] 스위스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행위

##### 스위스 동물보호법 제26조 동물학대

- ① 고의로 다음의 행위를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 a. 학대, 방치, 불필요하게 혹사시키거나 다른 방법으로 동물의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
  - b.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또는 무자비하게 동물을 살해하는 행위
  - c. 동물끼리 싸우도록 하거나 동물과 싸우는 행위를 하도록 하여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죽도록 하는 행위
  - d. 동물실험 시, 실험목적에 불가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고통, 괴로움을 가하거나 겁을 주는 행위
  - e. 가정에서 보유하거나 영업을 위해 보유한 동물을 고의로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
- ② 행위자가 과실로 제1항의 행위를 한 경우, 180일 이하의 일수벌금에 처한다.

95) 안토니 F. 괴첼/이덕임 역, 동물들의 소송, 192면; 같은 의미로 헌법의 변화가 민법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한민지, “스위스법에 따른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동향”, 서울법학 제28권 제4호, 2021, 352면.

96) 원문은 이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fedlex.admin.ch/eli/cc/2008/414/de>, 최종접속일: 2023. 1. 2.

97) Art. 26 Tierquälerei

1 Mit Freiheitsstrafe bis zu drei Jahren oder Geldstrafe wird bestraft, wer vorsätzlich:

- a. ein Tier misshandelt, vernachlässigt, es unnötig überanstrengt oder dessen Würde in an - derer Weise missachtet;
- b. Tiere auf qualvolle Art oder aus Mutwillen tötet;
- c. Kämpfe zwischen oder mit Tieren veranstaltet, bei denen Tiere gequält oder getötet werden;
- d. bei der Durchführung von Versuchen einem Tier Schmerzen, Leiden oder Schäden zufügt oder es in Angst versetzt, soweit dies nicht für den verfolg - ten Zweck unvermeidlich ist;
- e. ein im Haus oder im Betrieb gehaltenes Tier aussetzt oder zurücklässt in der Absicht, sich seiner zu entledigen.

2 Handelt die Täterin oder der Täter fahrlässig, so ist die Strafe Geldstrafe bis zu 180 Tagessätzen.

## 나. 동물보유등 금지제도

스위스 역시 동물보호법상 동물보유금지제도를 갖추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독일과의 차이점은 행정처분의 형식으로 부과된다는 점이다. 제23조 제1항에 관련된 형사제재 대상이 되는 행위로는, 제26조에 규정된 동물학대행위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 ▶▶▶ [표 3-7] 스위스 동물보호법상 금지처분 및 행정청의 개입

#### 스위스 동물보호법

제4장 행정상의 조치 및 이의신청

제23조 동물보유금지<sup>98)</sup>

제1항 관할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또는 무기한으로 동물의 보유, 사육, 거래 또는 동물에 대한 직업적 활동을 금지할 수 있다.

- a. 이 법률 및 동시행령의 규정 또는 처분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또는 중대하게 위반하여 처벌받은 자
- b.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동물을 보유하거나 사육할 수 없는 자

제2항 어느 한 주(州)에서 부과된 금지처분은 스위스 전역에서 유효하다.

제3항 연방식품안전검역국(BLV)은 부과된 금지목록을 작성한다. 법 제33조에 따른 각 주(州)의 전문 사무소는 자신의 법률상 과제를 이행하기 위하여 이 목록을 열람할 수 있다.

제4항 연방상원(Bundesrat)은 부과된 금지처분에 관한 정보의 상호 교환에 관한 국제법상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연방상원은 해외에서 부과된 금지 조치를 스위스에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제24조 행정청의 개입<sup>99)</sup>

제1항 동물이 방치되거나 완전히 부적합한 환경에 놓여있는 것이 확인되면, 관할 행정청은 지체없이 개입해야 한다. 관할 행정청은 예방적으로 동물을 압수할 수 있고, 보유자의 비용으로 적절한 장소에서 지내게 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관할 행정청은 동물을 매각하거나 살처분할 수 있다. 관할 행정청은 이를 위해 경찰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제2항 매각수익금은 절차비용을 공제한 후 보유자에게 귀속된다.

제3항 이 법률의 규정에 대한 형사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집행을 관할하는 행정청은 형사 고발한다.

제4항 경미한 사건의 경우, 집행을 관할하는 행정청은 형사고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98) 4. Kapitel: Verwaltungsmassnahmen und Behördenbeschwerde

Art. 23 Tierhalteverbote

1 Die zuständige Behörde kann das Halten oder die Zucht von Tieren, den Handel oder die berufs - mässige Beschäftigung mit Tieren auf bestimmte oder unbestimmte Zeit den Personen verbieten:

- a. die wegen wiederholter oder schwerer Zuwiderhandlung gegen Vorschriften dieses Gesetzes und seiner Ausführungserlasse oder gegen Verfügungen bestraft worden sind;
- b. die aus anderen Gründen unfähig sind, Tiere zu halten oder zu züchten.

2 Ein solches von einem Kanton ausgesprochenes Verbot ist in der ganzen Schweiz gültig.

3 Das BLV führt ein Verzeichnis der ausgesprochenen Verbote. Dieses kann von den kantonalen Fachstellen nach Artikel 33 zur Erfüllung ihrer gesetzlichen Aufgaben eingesehen werden.

4 Der Bundesrat kann völkerrechtliche Verträge über den gegenseitigen Austausch von Informationen über ausgesprochene Verbote abschliessen. Er kann vorsehen, dass im Ausland ausgesprochene Verbote in der Schweiz anwendbar sind.

## 제3절 | 미국

### 1. 개관

미국 내 동물학대행위를 규율하는 법률들은 과거 대비 사람들의 삶 속으로 더욱 깊이 들어오고 있으며, 규율하는 행위도 다양해지고 그 형량 역시도 높아지고 있다. 이미 각 주(state)마다 동물학대를 금지하는 주 형법 혹은 개별법이 존재하고 있었고 개정을 통해 더욱 촘촘해지고 있다. 2014년 사우스다코타 주가 참여하면서 동물학대 법은 모든 50개의 주에서 중죄 관련 조항을 갖게 되었다. 주의 경계를 넘어서는 동물학대행위를 규율하는 연방법이 부재했던 모습은 Animal Welfare Act의 수정보완과 Preventing Animal Cruelty and Torture(PACT) 법의 시행으로 보완되고 있다. 더욱이 PACT 법의 시행은 잔인한 영상 제작에 대한 처벌을 최대 7년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대부분의 주가 제정한 동물학대 처벌 기준을 상회하게 되었다.

또한 단순한 법률의 제정수준을 넘어서 2016년 1월부터 미국 연방수사국(FBI)는 동물학대행위를 공식 통계인 UCR 카테고리에 추가하였다.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통해 동물학대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갖고, 재발방지와 예방 전략을 세우는 데 활용하기 위함이다. 이는 동물학대가 더 이상 가볍게 여길 수 없는 범죄행위이고, 우리 사회가 충분히 동물을 보호해야 하는 당위적 메시지인 동시에 동물에 대한 범죄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라는 선언적 메시지이면서 이러한 범죄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예방의 필요성을 전달하고 있다. 동물학대 데이터 수집에 활용되는 범죄행위는

#### 99) Art. 24 Behördliches Einschreiten

- 1 Wird festgestellt, dass Tiere vernachlässigt oder unter völlig ungeeigneten Bedingungen gehalten werden, so schreitet die zuständige Behörde unverzüglich ein. Sie kann die Tiere vorsorglich beschlagnahmen und auf Kosten der Halterin oder des Halters an einem geeigneten Ort unterbringen; wenn nötig lässt sie die Tiere verkaufen oder töten. Sie kann dafür die Hilfe der Polizeiorgane in Anspruch nehmen.
- 2 Ein Verwertungserlös fällt nach Abzug der Verfahrenskosten der Halterin oder dem Halter zu.
- 3 Werden strafbare Verstöße gegen die Vorschriften dieses Gesetzes festgestellt, so erstatten die für den Vollzug zuständigen Behörden Strafanzeige.
- 4 In leichten Fällen können die für den Vollzug zuständigen Behörden auf eine Strafanzeige verzichten.

방임, 의도적 학대와 고문, 조직적 학대(투견, 투계 등)<sup>100</sup> 그리고 동물 성적 학대이다.

본 글에서는 동물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비교법적 고찰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미국의 동물학대 관련 연방법과 각주법, 그리고 영국의 법률을 검토해보도록 한다.

## 2. 미국 연방법

미국 연방법에서 동물학대를 금지하는 내용은 크게 동물복지법(Animal Welfare Act, AWA)와 동물학대및고문금지법(Preventing Animal Cruelty and Torture Act, PACT)에서 찾아볼 수 있다.

### 가. 동물복지법(Animal Welfare Act, AWA)

동물복지법(AWA)은 동물을 소유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동물 생활조건(비농업용 가축의 경우)을 규율하는 법이다. 위반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민사처벌, 그리고 허가취소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동물복지법에서는 학대행위에 대한 구체적 규율보다는 동물의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과 표준, 그리고 이를 제도적으로 이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의무를 설명하고 있다. 동물을 취급하는 사람들이 그 과정에서 주거, 먹이, 급수, 위생, 환기, 극한 날씨로부터의 대피, 적절한 수의학적 처치, 필요한 경우 종별 분리 내용 등 인도적 동물 취급 기준을 제시한다.

눈에 띄는 항목은 동물복지법에서 “동물싸움(animal fighting)”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동물싸움의 경우 단순하게 싸움에 동원된 개(dogs)들만이 아니라 새와 닭 등의 조류도 포함된다.<sup>101</sup> 연방법의 정의에 따르면 투견은 2마리 이상의 동물이 스포츠, 내기결기, 혹은 오락 목적으로 동원된 것을 의미한다.<sup>102</sup>

100) 미국 내에서는 투견, 투계 등의 행위는 사실 조직화된 동물학대행위로 보고 있다. 이는 단독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없고 대부분 역할이 구분되어 조직적으로 행해진다. 미국 내에서는 이러한 투견이나 투계와 같은 동물싸움과 같은 동물학대행위에는 다른 범죄와의 연관성도 깊을뿐더러 공무원 부정부패와도 관련이 있다고 보고 함께 단속한다. 미국 마약 집행국(US Drug Enforcement Agency)의 경우에는 투계와 투견 장소에서 마약투약이 일어난 다양한 정황을 포착하여 기소하기도 하였고, 수많은 살인 범죄 역시도 이러한 투견과 투계 현장에서 발생하기도 하였다. 테네시와 버지니아 주에서는 경찰이 투견행위에 연루된 것을 밝혀내기도 하였다.

101) 7USC§§2156(f)(4)

동물싸움 금지 조항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1) 동물싸움을 위해 동물을 후원하거나, 전시하는 것을 금지하며 2) 동물싸움장에 참석하거나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동물싸움장에 참석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며, 3) 동물싸움에 사용하기 위해 동물을 고의로 판매, 구매, 소유하는 것은 물론, 훈련, 운송, 배달 및 수령도 모두 금지한다. 또한, 4) 동물싸움 또는 관련 상품을 광고하거나 홍보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동물싸움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경우 벌금 혹은 구금 또는 둘 다 선고가 가능하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103)</sup>

동물 거래 및 취급과 관련한 내용을 위반할 경우 벌금이 최대 \$5,000까지 선고되며, 이는 동물 1마리당 각각 계산된다. 정부기관에 소속되어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동물에 대한 학대가 발생할 경우 최대 10년까지 징역형이 선고되고, 벌금 \$10,000이 함께 선고 가능하다. 또 동물싸움에 동원되는 동물을 후원, 전시, 판매, 구매, 소유하는 것은 물론, 훈련, 운송, 배달 및 수령 행위 시, 그리고 광고 및 홍보 위반 시 최대 5년의 징역형이 선고 가능하며, 비의도적 참석의 경우에는 최대 1년의 징역형이 선고 가능하다. 16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동물싸움장에 참석하도록 한 자에 대해서는 최대 3년까지 징역형이 선고 가능하다.

개와 고양이 식용금지에 대한 위반은 최대 \$5,000의 벌금이 선고된다.

▶▶▶ [표 3-8] 미국 연방법상 동물복지법(AWA)의 처벌 내용

조항	내용	처벌수준	기타
7USC§§2158	동물 거래 자격증	위반 시 \$5,000	동물 1마리당
7USC§§2143	동물 운반, 처우, 다룸, 절차에 대한 인도적 처리 기준		
7USC§§2146	정부기관 서비스 업무 동물학대	최대 10년, 또는/함께 벌금 \$10,000	
7USC§§2156 18USC§§49(a)(b)(c)	동물싸움 금지 - 동물을 후원하거나, 전시, 참석, 광고 금지 <sup>104)</sup> - 고 의로 판매, 구매, 소유하는 것은 물론, 훈련, 운송, 배달 및 수령도 모두 금지 - 미성년자 참석 금지	- 5년 이하의 징역, 각 위반행위마다 - 단순 비의도적 참여는 1년, 각 위반 행위 마다 - 16세 이하 참석 종용 시 최대 3년	영장벌금 사유이며, 해당동물 몰수 각 위반행위마다
7USC§§2160	개와 고양이 식용금지	\$5,000 벌금	각 위반 행위 마다

102) 7USC§§2156(f)(1)

103) 18USC§§49(a)(b)(c)

## 나. 동물학대및고문금지법(Preventing Animal Cruelty and Torture, PACT)

### 1) 1999년 제정법

동물복지법 대비 직접적으로 동물학대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연방 법률로는 동물학대및고문금지법이 있다. 이 법은 1999년경 미국 내 여러 주에서 유통되는 소위 압살영상(crush video)에 대한 규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sup>105)</sup> 압살영상(crush video)은 주로 기이한 변태적 취향 내지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소형 동물들을 잔인하게 고문하거나 신체를 훼손, 혹은 죽이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지칭해왔다. 얼굴을 드러내지 않은 사람이 작은 개, 토끼 등의 동물을 하이힐로 밟아 죽이는(crush) 영상들이 유포되는 현상을 빌려 압살영상(video crush)으로 불리고 있다. 압살영상에 대한 금지는 연방법 이전의 주단위에서도 규율하고 있었으나, 등장인물이나 제작사의 신원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는 점, 온라인을 통해 주 경계 없이 유통되는 문제로 주의 관할권을 따지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연방법으로 압살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하고 소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 제정되었다.<sup>106)</sup>

### 2) 2010년 개정법

이전의 법은 동물싸움 영상에 대해 광범위한 규제 대상과 검사의 재량문제가 있어 위헌판결이 선고되었다. 때문에 개정된 법에서는 동물싸움에 대한 영상을 제외하고, 동물학대 관점에서 압살영상의 제작과 유포를 금지하는 법안을 담고 있다. 전반적인 동물학대행위는 주 단위에서 규제되고, 해당 연방법은 동물학대행위를 촬영한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sup>107)</sup>

이렇게 개정된 동물압살영상금지법이 적용된 대표적인 사례는 *United States v.*

104) 주를 넘어서는 상업수단의 서면, 광고, 라디오, 텔레비전 및 상업광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일체

105) 김준성, “미국의 동물보호 및 동물학대 행위 처벌 관련법제 연구”, 법무연수원, 국외훈련검사연구논문. 2022. 5쪽.

106) 이후 관련법의 규율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표현의 자유에 관한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하였다는 지적과 함께 위헌 판결이 내려졌다(*United States. v. Stevens*, 559. U.S.460(2010). 김준성(2022) 논문 5쪽에서 재인용.

107) 김준성. 같은 논문 6쪽.

Richards, 741 F.3d 843 (2014) 사건이다. 텍사스 주의 휴스틴 시의 경찰은 동물학대 의심 사건 수사를 개시하였다. 압살영상에서는 신원 미상의 젊은 여성이 강아지를 구타하고, 발바닥을 자른 후 머리를 자르고 사체 위에 소변을 보는 장면, 하이힐로 고양이 눈을 짓기하는 장면 등 잔혹한 동물학대 장면이 담겨있었다. 영상 속의 가해자는 가면을 쓰고 있었고 촬영자 역시도 확인되기 어려운 영상이었다. FBI는 해당 사건이 동물 압살영상 금지법 적용대상임을 확인하였고, 수사를 통해 가해자, 촬영자의 신원 및 영상 제작 및 판매 규모 등을 확인하였다. 해당 영상은 미국을 넘어 파키스탄, 이탈리아 등의 해외로 판매되었다. 실제 학대행위를 했던 피고인은 25세의 Ashley Nicole Richards 여성이었고, 제작자는 Brent Justice라는 남성이었다. 동물학대행위에 대해서는 텍사스 주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동물 압살영상 제작 및 배포 행위는 연방법의 동물압살영상금지법 위반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제작자는 텍사스 주법에 따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고, 동물 압살영상 제작 판매 등의 연방법 위반 혐의로는 징역 4년 9월을 선고 받았다. 영상에 등장한 피고인은 텍사스 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년과 연방법 위반혐의로 징역 3년 9월을 선고 받았다.<sup>108)</sup>

### 3) 2019년 개정법

앞서 설명하였듯 연방법으로 규율하는 동물압살영상금지법은 동물학대 행위 자체에 대한 규제라기보다는 관련 영상을 제작하여 주 및 국가의 경계를 허물어 배포하는 것에 대한 제한적인 입법에 그쳐왔다. 그러나 2019년 개정을 통해 연방법은 “누구든지 고의적으로 미국의 특별 해양 및 영토 관할 내의 교역, 주와 주 사이 또는 해외 교역 과정에서 동물 압살행위에 관여 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즉,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행위를 넘어서 압살행위 자체를 연방법으로 금지하게 된 것이다. 이는 미국에서 실질적인 동물에 대한 잔혹한 행위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첫 연방법이 되었다.

이러한 PACT 법은 비인간 동물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라는

108) Justice. v. State. 2020. Tex. Lexis 3000. United States, v. Justice. 703. F. App345(5th Cir, 2017). State v. Richards, 2014. Tex. Dist. Lexis 18001. United States. v. Ricards, 755 F. 3d. 269(5th cir, 2014). 김준성. 같은 논문 7쪽.

측면에서 더욱 의미를 갖는다. 그동안 동물에 대한 잔혹한 영상을 규제하여야 한다는 목소리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충돌하여 왔으나, 잔혹한 동물 영상 제작은 결국 폭력이라는 시각이 법률에 반영되게 된 것이다.

미국 연방법 제18장의 48조의 내용은 미국 전체 지역 혹은 외국과의 상업적 거래에서 발생하는 동물크러쉬행위에 대한 금지를 소개한다. 이 내용에 있어 동물은 하나 이상의 살아있는 비인간 포유류, 조류, 파충류 또는 양서류를 고의로 짓밟거나, 불에 태우거나, 익사시키거나, 질식사시키거나, 꺾매거나, 기타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입힌 행위로 규정된다.

이 조항에서 강조하는 크러쉬행위는 소위 동물학대 비디오 제작과 유포를 금지하고 있다. 동물크러쉬 비디오는 동물 괴롭힘을 묘사하거나 성적으로 대하는 모든 사진, 영상, 디지털 녹화본 혹은 전자적 이미지를 의미한다.<sup>109)</sup>

이러한 영상의 고의적 판매는 물론 마케팅 홍보 및 광고도 모두 금지된다. 해당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최대 7년의 징역 혹은 (모두) 벌금이 선고된다.

#### ▶▶ [표 3-9] Preventing Animal Cruelty and Torture, PACT 내용

조항	내용	처벌수준	기타
18USC §§48	동물학대 영상 제작, 판매, 홍보 유포 금지	최대 7년, 벌금	
18USC65 §§1368	경찰 활동을 보조하는 동물에 대한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위해 및 예비음모 금지	최대 1년, 동물의 사망 혹은 영구적 장애 시 최대 10년	예비 음모도 처벌

더 나아가 연방법상 집행되는 동물보호법은 법 집행에 동원되는 경찰 동물에 대한 상해를 더욱 엄하게 처벌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경찰 동물이란, 연방기관(행정부, 입법부 또는 사법부)이 범죄 활동, 법 집행 또는 범죄자 체포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활용한 개 또는 말을 의미한다.

65장의 1368조에 따르면 경찰 동물에 대하여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상해를 입히거나, 이를 시도하거나, 공모한 자에 대하여 최대 1년의 징역형 선고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상해로 인하여 해당 동물이 무력화되거나 심각한 신체적 손상 또는 사망에

109) 18USC §§48(f)(2)

이르게 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이 선고 가능하다. 단순히 기수범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미수와 예비 음모까지도 처벌한다는 것에서 눈에 띄는 처벌 규정이다.

개별 주 단위에서도 동물에 대한 압살행위가 이미 규율되어 왔지만 연방법에서 재차 이를 중범죄로 금지하는 것은 크게 네 가지의 추가적인 의미를 갖는다. 첫째, 중한 상해 등이 발생하지 않는 행위를 경죄로 처벌하는 주가 존재하고 있지만 연방법에서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 가능한 중범죄로 보고 있다. 둘째, 연방법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는바 주 단위에서 개별적으로 기소되는 행위보다 더욱 중한 구형과 선고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셋째, 연방법에 의해 유죄를 선고받고 수감되는 피고인은 가석방이 불가능하다. 넷째, 압살행위 제작 여부와 상관 없이 압살행위 자체를 모두 금지하고 있기에 동물학대행위를 더욱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개 사육장(혹은 강아지 공장) 관리자가 상품성이 없는 개를 의도적으로 죽이는 경우에도 연방법 적용이 가능하다.<sup>110)</sup>

### 3. 동물학대 관련 주(State)법

연방법에 의해 동물복지법의 집행과 동물학대에 대한 국가적 개입이 더욱 단단해진 것은 사실이나 동물복지와 동물학대에 대한 긴 역사적 배경을 가진 주(state) 단위의 법들이 더욱 섬세하고 넓게 동물복지와 동물학대를 규율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경우 동물학대 관련 법제정의 단계를 지나 많은 주들은 이러한 법들이 집행될 수 있도록 부서를 재조직하고 있다. 2015년 버지니아 검찰은 미국 내 처음으로 동물법 부서(Animal Law Unit)를 만들었고, 델라웨어에서는 주 단위에서 동물 복지부(Office of Animal Welfare)를 만들어서 반려동물 프로그램을 통합하고 관리하게 되었다. 2016년에는 뉴욕 시티의 Queens 카운티 검찰청에서 처음으로 동물학대 기소 부서(Animal Cruelty Prosecution Unit)를 설치하였다. 이후 연방법에 따라 연방 검찰에서도 동물학대 기소 부서를 설치하였고, 플로리다 주에서도 동물학대 부서(Animal Abuse unit)를 만드는 등 실질적 동물학대 행위 처벌과 집행을 위한 모습들이 갖춰지고 있다.

110) Animal welfare Institue 보고서. 김준성 같은 논문 8쪽 참고.

다음의 내용에서는 주 단위에서 동물학대행위를 규율하는 법률 내용을 소개하도록 한다.

## 가. 캘리포니아

### 1) 관련법과 처벌 수준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에는 형법에서 동물학대 금지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최대 3년 징역형과 벌금 선고까지 함께 가능한 처벌 규정을 갖고 있다. 동물학대 금지 내용은 크게 Title 14의 “악의적 장난”에 해당하는 내용과 Title 9의 미풍양속에 반하는 죄로써 자연에 대한 범죄규정에서 다루고 있다. 먼저, Title 9에 속해있는 자연에 대한 범죄에서는 286.5에서 동물과의 성적 접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물에 대한 성적 접촉을 자연에 대한 범죄행위로 넓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 흥미로운 접근이다. 그 다음으로 Title 14에서는 캘리포니아에서 금지되는 다양한 동물학대행위들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통상적인 학대, 복지 위반, 유기 방임, 동물학대 금지 내용 뿐만 아니라 고양이 발톱제거 금지, 아동학대 규정과 유사하게 사람이 없는 자동차에 동물을 방치하는 행위, 인간의 식용 소비를 목적으로 말을 판매 하거나 구매하는 행위, 안내견과 같이 서비스 일을 보조하는 동물에 대한 범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대다수 동물에 대한 불법행위들이 1년 이내의 징역에 해당하는 경죄로 규정되고 있다. 반면, 동물에 불필요한 괴롭힘과 고통을 주는 행위나, 살해하는 행위, 동물싸움(개싸움), 그리고 식용을 목적으로 말을 소유, 수입, 수출, 판매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중죄로 규정하고 있다. 동물싸움 중에서도 개싸움의 경우에만 중죄로 규정하고 있다.

#### ▶▶▶ [표 3-10] 캘리포니아 주 형법상 금지된 동물학대

	조항	내용	처벌수준	기타
Title 14. <sup>111)</sup> 악의적 장난	§596 타인의 동물이나 재산에 의도적으로 독극물을 투여하는 행위	소유주의 동의 없이 악의적으로 동물에게 독성물질을 주는 행위, 독성물질에 노출시키는 행위, 삼키거나 투약하는 행위	경죄	
	§596.5	코끼리에게 학대적 행위 <sup>112)</sup>	경죄	

	조항	내용	처벌수준	기타
	§597 동물,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어류에 관한 불법행위	a) 악의적이고 의도적으로 살아있는 동물을 고의적으로 불구로 만들거나, 고문하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  b) 또는 c)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동물에게 과로, 과부하, 과부하 상태에서 몰아붙임, 혹사, 고문, 괴롭힘, 갈증 및 굶주림, 구타, 신체 절단 또는 잔인하게 도살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유발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동물에 대한 소유주 또는 다른 형태의 책임이나 양육권을 가진 사람이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이나 학대를 가하거나 적절한 음식, 마실 것, 피난처 등을 제공하지 않거나 업무에 적합하지 않을 때 동물을 주행, 탑승, 또는 기타 방법으로 사용	중죄	3년 이하 징역과 \$20,000 벌금.
	§597.4	살아있는 동물의 선물 판매 금지	2회부터 경죄	\$250 벌금. 경죄일 경우 \$1,000이하 벌금.
	§597.5	개싸움 - 투견 목적으로 개를 소유, 소지, 보관 혹은 훈련하는 행위 - 오락이나 이익을 위해 다른 개와 싸우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행위 - 위 두 항목을 자신의 책임 또는 통제하여 수행하도록 허용하거나, 돕거나, 교사한 경우 - 참석하는 경우	중죄	3년 이하 징역 또는 (모두) \$50,000 벌금
	Cal. Pen. Code §597.6	고양이 발톱 제거	경죄	1년 이하 징역 또는 (모두) \$10,000 벌금
	§597.7	사람이 없는 자동차에 동물 방치 <sup>113)</sup>	경죄	동물에 큰 피해가 없을 경우 최대 \$100 벌금. 동물의 상해 위반 시 최대 \$500 벌금, 6개월 이하 징역.
	§597.a	탈가죽을 위해 개나 고양이를 불법적으로 죽이는 것; 모피의 불법 수입, 판매 또는 구매	경죄	

	조항	내용	처벌수준	기타
	§597b	개 이외의 동물싸움 <sup>114)</sup>	경죄	1년 이하 징역, 또는 (모두) \$10,000 벌금.
	§597s	의도적 유기	경죄	
	§598.c	식용을 목적으로 말을 불법적으로 소유, 수입, 수출, 판매, 구매 또는 보유하는 행위	중죄	16개월, 또는 2-3년 징역.
	§598.d	인간의 소비를 위한 말고기 판매		\$1,000 벌금, 30일 이내 징역.
	§600.2	안내견, 신호견, 안내견과 관련된 불법 행위		1년 이하 징역 또는(모두) \$2,500 벌금. 피해자에게 손실 배상 명령.
	§598	동물의 가족을 판매하거나 양도할 목적으로 개나 고양이를 죽이는 행위	경죄	
	§598	공공 묘지 또는 매장지에서 새를 죽이거나 상처를 입히거나 닳을 놓거나 제비집 이외의 새 동지를 파괴하거나 둥지에서 알이나 어린 새를 제거하는 행위 금지	경죄	
Title 9 <sup>115)</sup> : 사람에 대한 성범죄, 미풍양속에 반하는 죄	자연에 대한 범죄 Section 286.5 - Sexual contact with an animal	사람이 동물 <sup>116)</sup> 과 성적 접촉을 한 경우	경죄	

111) Malicious Mischief

112) 코끼리에게 음식, 물, 휴식을 제공하지 않거나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위해나 상처 등을 낳는 물리적 처벌을 사용하는 경우, 가슴걸이 끈의 부적절한 사용, 모든 신체구멍에 기구 삽입, 발목에 쇠고랑 채움

113) 보안관, 소방관, 인도적 관리관, 동물 통제관 또는 기타 비상 대응자는 자동차에서 동물을 제거하거나 자동차에서 제거된 동물을 동물 보호소로 데려가야 한다. 다른 보관 장소에 보관하거나, 경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한다. 차량에서 제거된 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유지 관리, 관리, 치료 또는 압류에 대해 발생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Ca. Pen. Code § 597.7 (d)(3)

114) 오락이나 이익을 위해 동물을 싸우게 하거나 방조, 승인 하는 행위

115) crimes against the person involving sexual assault, and crimes against public decency and good morals.

116) 캘리포니아 형법에서 성적 접촉의 대상자로서 동물은 그 동물이 살아있든 죽어있든 모두 포함하여 비인간 창조물로 넓게 정의하고 있다. Cal. Pen. Code § 286.5. ©(1)

성적 접촉이란, 수의학적 또는 동물사육 목적이 아닌 성적 흥분이나 만족, 학대 또는 금전적 목적으로 성기나 항문과 다른 사람의 구강, 성기나 항문 사이의 접촉을 포함하여 사람의 신체 일부나 물건을 동물의 질이나 항문 구멍에 삽입하는 행위 또는 사람의 질이나 항문에 동물의

## 2) 선고이후 부수 처분

### 가) 상담 및 치료 명령

동물에 대한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법원은 피고인에게 법원이 결정한 행동장애를 평가하고 치료하기 위해 자비로 상담비용을 지불하도록 하고 치료를 완료할 것을 명령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상담은 집행유예 기간 및 벌금을 포함한 다른 집행유예 조건에 추가적으로 부과된다. 유죄판결 시 보호관찰의 조건으로 양육 소유 제한에 대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판결서에 명시해야 한다.

### 나) 압수

또한, 이러한 금지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동물 조사관에 의해 범죄에 사용된 동물은 압수가능하다.

기소된 피고인이 유죄판결을 받으면 합법적으로 압류 및 압수된 모든 동물은 몰수된 것으로 법원이 판결하고, 적절한 입양이나 그 밖의 처분을 위해 압수 담당자나 관련 공공기관으로 이송된다. 법원은 이 조항의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압수 시점부터 적절한 처분 시점까지 압수된 동물의 주거, 관리, 먹이 및 치료 등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해당 공공기관에 지불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특정 동물과 관련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해당 동물에 대한 배상책임을 공통이나 개별적으로 부여될 수 있는데 이는 법원에서 명령한 다른 벌금 또는 형량에 더해진다.

### 다) 유죄판결 후 강제 소유권 금지

앞선 형법에서 규정한 동물학대에 대한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5년 동안 동물을 소유, 점유, 유지, 양육, 함께 거주 또는 돌보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공공범죄로 규정되며 \$1,000의 벌금이 부여될 뿐만 아니라 소유권 금지 기간 역시도 상향 조정된다. 피고인에게 부여된 강제 소유권 금지 기간에 대해 피고인은 단축을 법원에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또한 공공 동물보호기관, 동물복지단체, 또는 동물학대방지 단체가 관리하는 동물 보호소, 동물 구조 또는 입양단체는 동물을 입양하려고 하는 자에 대하여 이 조항에

---

신체 일부를 삽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 동물의 소유, 점유, 유지, 양육 또는 함께 거주가 금지되어 있는지 여부를 요청할 수 있다.

## 나. 메릴랜드

### 1) 관련법과 처벌 수준

메릴랜드 주의 동물학대 금지 내용은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형법 중에서 사람에 대한 다른 범죄 중 성범죄 항목, 공중보건, 잘못 및 감성에 대한 범죄에서 동물학대 내용과 처벌 규정을 담고 있다.<sup>117)</sup>

메릴랜드 형법의 Title 10의 소항목 6에서는 동물에 대한 학대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메릴랜드 주에서는 이 항목의 입법목적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길 잃었거나, 길들여진 동물, 야생동물, 농장 동물, 또는 기업 소유, 연구에 사용되는 동물들에 대한 모든 고의적인 학대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 [표 3-11] 메릴랜드 주 관련법과 처벌 내용

	조항	내용	처벌수준	기타
Title 3. 사람에 대한 기타 범죄 <sup>118)</sup>	§ 3-322 - Unnatural or perverted sexual practice	부자연스러운 변태적 성적 행위 1) 동물의 생식기를 입에 넣는 행위 2) 사람의 성기를 다른 사람이나 동물의 입에 넣는 행위 3) 사람 또는 동물과 부자연스럽거나 변태적 성적 행위를 하는 경우	경범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모두) 최대 \$1,000 벌금
Title 10 <sup>119)</sup> . 공중보건, 잘못 및 감성에 대한 범죄	Subtitle 6. Crimes Relating to Animals. § 10-604 .	동물학대 및 복지 위반 - 동물을 과도하게 운전하거나, 과부하 시키는 것, 생계 박탈하는 것,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가하는 것, 앞의 행위를 승인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주인이나 양육자로서 영양, 수의학적 관리, 음	경죄	90일 이하의 징역 또는 (모두) 최대 \$1,000벌금. 양형의 조건으로 1) 심리상담참여 및 비용지불, 2) 벌금 비용 이외에 피고로부터 압수된 동물을 이동, 수용, 치료 또는 안락사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

117) <https://www.animallaw.info/statute/md-cruelty-consolidated-cruelty-statutes>

	조항	내용	처벌수준	기타
		료, 공기, 공간, 쉼터 제공 및 날씨로부터 보호를 하지 않는 행위 <sup>120)</sup>		지불 3) 보호관찰의 조건으로 법원은 피고가 동물을 소유, 점유 또는 함께 거주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음
	§ 10-605~608	동물싸움 참석	경죄	1년 이하 징역 또는 (모두) \$2,500 벌금. 양형의 조건으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심리상담 명령 및 비용 지불 가능.
	§ 10-606	성적 학대를 포함하여 동물 신체 훼손, 고민, 구타, 잔인하게 살해	중죄	3년 이하 징역 또는 (모두) 최대 \$5,000 벌금. 심리상담 명령 및 비용 지불. 특정 기간 동안 동물을 소유, 점유 또는 함께 거주하는 것을 금지
		개싸움 소유, 판매, 이송, 운반, 목인	중죄	3년 이하 징역 또는 (모두) 최대 \$5,000 벌금. 심리상담 명령 및 비용 지불. 특정 기간 동안 동물을 소유, 점유 또는 함께 거주하는 것을 금지
		닭싸움	중죄	3년 이하 징역 또는 (모두) \$5,000 벌금. 심리상담 명령 및 비용 지불. 특정 기간 동안 동물을 소유, 점유 또는 함께 거주하는 것을 금지
	§ 10-610 . Animal as prize	농림부의 허가 없이 살아있는 동물을 게임이나 콘테스트 등의 상으로 주는 것	경죄	최대 \$500 벌금.
	§ 10-612	동물 유기 방임	경죄	최대 \$100 벌금.
	§ 10-613. Sale of puppy or kitten	8주 이내의 새끼 고양이 나 강아지 판매	경죄	최대 \$500 벌금.

	조항	내용	처벌수준	기타
		장난감으로써 병아리의 판매 또는 염색	경죄	\$25 벌금.
	§ 10-618 . Poisoning dog	독성물질 노출	경죄	\$100/ 각 위반행위 마다
	§ 10-624	개의 귀, 꼬리, 발톱 절단 금지	경죄	첫 위반 시 90일 이내 구금 또는 (모두) 최대 \$1,000 벌금. 2번 위반: 6개월 이하 징역, 최대 \$5,000 벌금.
	§ 10-625	개나 고양이 성대 수술	경죄 중죄	첫 위반 시 90일 이내 구금 또는 (모두) 최대 \$1,000 벌금. 2번 위반: 중죄, 1년 이하 징역, 최대 \$2,000 벌금.
	§ 10-625.1	고양이 발톱 제거 <sup>121)</sup>		\$1000불 이하 벌금
	§ 10-626	서비스 동물 위해	중죄	2년 이하 징역 또는 모두 \$2,500 벌금

이러한 학대행위에 대한 즉각적 체포와 형사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메릴랜드 주에서는 “인도적 사회 관리관(humane society officer)”이 가질 수 있다. 이들은 동물 복지 위반이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발견하면 이들을 체포하고 지방법원에 소환하도록 되어 있다. 메릴랜드 주의 칼버트 카운티(Calvert County)는 동물 보호협회 직원 또는 카운티 위원 또는 카운티 위원이 임명한 “동물통제 담당관(Animal Control Officer)”이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체포와 법원 회부의 권리를 갖는다. 볼티모어 카운티(Baltimore County)에서는 볼티모어 카운티의 보건 및 동물 통제국에서 해당 내용을 집행한다.

118) Title 3. Other Crimes Against The Person.

119) Crimes Against Public Health, Conduct, and Sensibilities

120) 동물을 과도하게 운전하거나, 과부하 시키는 것, 생계 박탈하는 것,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가하는 것, 앞의 행위를 승인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주인이나 양육자로서 영양, 수의학적 관리, 음료, 공기, 공간, 쉼터 제공 및 날씨로부터 보호를 하지 않는 행위

121) 경찰 혹은 지역 animal control authority이 위반 사항 집행 가능

2) 선고이후 부수 처분

가) 유죄 판결 후 몰수

형사고발이 제기된 경우 피고인이 학대에 사용한 동물과 그의 소유의 동물은 압수되고 유죄판결을 받게 될 경우 압수된 모든 동물은 몰수된다. 그리고 이에 압수와 몰수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도 피고인이 지불해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

나) 강제적 소유 금지

동물싸움에 연루되었거나, 동물에 대한 학대, 동물에 대한 잔인한 학대(성적 학대 포함)를 행한 범죄자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이 이후 강제적으로 소유, 점유 또는 함께 거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유죄 판결 이후 강제적으로 소유, 점유, 거주를 금지하는 내용은 보호관찰 조건으로 부여 가능함을 형법상에서 제시하고 있다.

다) 심리 상담 참여

동물싸움에 참여한 자와 동물에 대한 복지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이 심리상담 치료를 명하고 그 치료에 대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주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다. 테네시

1) 관련법률 및 처벌 내용

테네시 주의 경우 형법에서 동물학대를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동물에 대한 잔혹함을 다루고 있는 39-14.202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본적인 동물에 대한 고문과 괴롭힘을 중죄로 여긴다. Class E의 중죄일 경우 테네시 법에 따라 최대 6년 미만의 징역과 동시에 \$3,000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 또한 법원은 해당 가해자에 대하여 동물 소유권을 포기하게 하고 유죄선고 시 몰수도 가능하다. 더 나아가 향후 일정기간 동안 동물 소유를 금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러한 몰수규정과 소유권 금지 규정 명령을 위반할 경우 추가적으로 Class A 경죄 선고가 가능하다. A급 경죄는 최고 1년 미만의 징역형 선고가 가능하다.

동물싸움 역시도 E급 중죄로 상당히 엄한 기증을 갖고 있다. 동물싸움을 목적으로 동물을 소유하거나 소지, 훈련하는 경우, 동물을 싸움에 참여하도록 묵인하거나 승인

한 경우도 모두 중죄이다.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동물싸움에 참석하게 하는 행위도 범죄로 취급하여 경죄로 보고 1년 미만 징역 선고가 가능하다. 중죄로 취급되는 또 다른 동물학대행위는 범죄 및 화재 등의 업무를 보조하는 동물에 대한 의도적 살인이다. E급 중죄로 보고 최대 6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유사하게 장애인을 보조하는 서비스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가 있었을 경우에도 처벌되는데 테네시 주법 Animals and Property 346.57조에서는 누구든지 차량에 방치해서는 안 된다. 치안담당관(peace officer), 휴메인 소사이어티 직원, 유기견 포획원(dog warden), 소방관(봉사직 소방관만 포함) 등은 합리적인 강제력을 사용하여 차량에 진입할 수 있다.

▶▶▶ [표 3-12] 테네시 주 관련법과 및 처벌 내용

조항	내용	처벌수준	
39-14.202	(1) 동물을 고문하거나 불구로 만들거나 심하게 과로하는 행위	A급 경죄	1년 미만 징역.
	(2) 자신이 관리하는 동물에게 필요한 음식, 물, 보살핌 또는 은신처를 부당하게 제공하지 않는 경우 (3)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동물을 부당하게 방치하는 행위 (4) 동물을 잔인하게 운반하거나 가두는 행위; 또는 (5) 말의 경쟁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어떤 목적으로든 말의 다리나 발굽에 물질이 생기는 화합물을 포함하여 어떤 방법으로든 화상, 절단, 열상 또는 기타 부상이나 고통을 말의 다리나 발굽에 가하는 행위 쇼 및 이와 유사한 이벤트.	두 번째 E급 중죄	6년 미만 징역 그리고 최대 \$3,000 벌금 <sup>122)</sup> . - 법원은 해당 동물 포기 명령 선고 가능하고 유죄판결 시 몰수 가능하다. 특정기간 동안 동물 소지 금지 가능하다.
		A급 경죄	1년 미만 징역
39-14-203	동물싸움 - 동물 간 싸움, 상해 등을 유희와 스포츠,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동물을 소유하거나 소지, 훈련 하는 경우 - 동물싸움 발생 및 승인 행위	E급 중죄	6년 미만 징역, 추가로 최대 \$3,000 벌금. 1년 미만 징역, \$2,500 벌금. 유죄판결 시점 최소 2년 동안 반려동물 양육 금지 명령가능, 2번째 위반일 경우 평생 반려동물 양육 금지
	18세 미만을 참석시키는 것	A급 경죄	1년 미만 징역, \$1,000 이상의 벌금.
39-14-204	엄격한 병아리나 토끼	C급 경죄	30일 미만 징역 또는 최대 50불 벌금.
39-14-205	경찰동물(경찰 개, 소방개, 구조견, 경찰 말)에 대한 의도적 살해	E급 중죄	6년 미만 징역, 추가로 최대 \$3000 벌금.
39-14-216	서비스 동물: 가해와 배상	A급 경죄	서비스 개에 대한 범위반 시 소유권 평생 박탈

조항	내용	처벌수준	
39-14-212	동물에 대한 중한 학대 (가축 포함) - 정당한 사유없이 살해 고문 등의 신체적 고통, 죽음의 위험 - 반려동물에 대한 불과 음식 제공 미이행으로 죽음의 위험	E급 중죄	6년 미만 징역 추가로 최대 \$3,000불 벌금. 유죄판결이후 최소 2년간의 반려동물 사육 금지. 이는 종신 가능. 두 번째 위반자에 대하여는 반려동물 사육 평생 금지. 법원은 피고인이 심리 평가와 상담을 받도록 명할 수 있고, 해당 비용은 피고인이 지불하도록 한다. 피고인이 경제적 능력이 없을 경우 법원이 적절한 상담 혹은 프로그램에 등록 가능하다. (청소년 역시 정신과적, 심리적 치료 필요성 평가)
39-14-213	동물 등록 전자 칩 제거	B급 경죄	최대 6개월 징역형과 \$500 벌금.
	이후 사망한 경우	A급 경죄	최대 1년 미만 징역과 \$2,500 벌금.
39-14-214	동물과의 성적 행위	E급 중죄	6년 미만 징역, 추가로 최대 \$3,000 벌금. 유죄판결이후 최소 2년간의 반려동물 사육 금지. 이는 종신 가능. 두 번째 위반자에 대하여는 반려동물 사육 평생 금지 동물이 있는 곳에서 거주하거나 소유하거나 취업 금지 피고인의 비용으로 상담에 참여할 것

39-14-202에 따르면 동물학대자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처벌과 함께 추가적으로 법원이 동물학대자의 동물 관리 포기 및 몰수(surrender custody and forfeit)를 명령하게 된다. 이 경우 동물 관리는 테네시 주법에 의해 설립된 휴메인 소사이어티(humane society)에게 주어진다.<sup>123)</sup>

## 2) 처분 후 부수 조건

### 가) 심리상담 및 치료

동물에 대한 중한 범죄, 동물싸움, 그리고 동물에 대한 성적 접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서는 테네시 법원은 정신과적 혹은 심리적 평가를 통해 치료명령

122) 테네시 주에서 felonyE 에 해당하는 범죄 유형은 무기소지 절도, 총기소지 중죄, 중대한 폭동 등이다.

123) 동물과의 공존을 위한 미국 입법례. 2018.7. 36쪽.

을 내릴 수 있으며, 그 비용은 피고인이 지불하도록 한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 능력이 없을 경우 법원의 비용으로 지역사회 내 프로그램에 등록할 수 있다.

#### 나) 강제적 소유 금지

동물에 대한 중한 범죄, 동물싸움, 그리고 동물에 대한 성적 접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최소 2년 동안 법원이 반려동물을 보호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복행위가 이루어지면 테네시 법원은 피고인에게 평생 반려동물 보호 양육 금지를 명령할 수 있다.<sup>124)</sup> 반려동물 보호 혹은 양육을 금지하는 제도는 다른 주에서도 발견할 수 있지만 테네시는 2번째 행위부터 평생 양육 금지가 가능하도록 강력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동물에 대한 성적 접촉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동물이 있는 곳에서의 취업 활동은 물론 노동과 거주가 금지된다.

#### 다) 동물학대자 신상등록 및 공개

테네시 주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대한 내용중 “범죄자 등록 및 모니터링” 관련 규정<sup>125)</sup>으로 테네시동물학대자등록법(Tennessee Animal Abuser Registration Act)<sup>126)</sup>을 마련하였다. 동물학대 행위 중 1) 동물싸움, 2) 중한 학대, 3) 성적 학대행위를 한 가해자에 대하여 2016년부터 테네시 수사국(TBI)은 대중이 접근 가능한 웹사이트에 동물학대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sup>126)</sup> 명단은 가해자의 사진과 함께, 이름과 추가적 정보를 수집하며 사회보장번호, 운전면허정보, 다른 주 혹은 연방신원번호는 포함하지 않는다. 첫 번째 행위에 대하여 테네시 주는 2년 동안 자료를 보관하며 최근 범죄 기준으로 5년 동안 정보를 공개한다.

#### 라. 뉴욕

뉴욕 주의 동물학대 관련 규정은 농업및시장법(Agriculture and Markets Law)과 뉴욕 주 형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sup>127)</sup> 농업및시장법에서는 동물에 대한 정의를 “인간

124) 39-14-203(c)(1), 39-14-212(e), 39-14-214(c)(2)

125) Title 40. Criminal Procedure. Chapter 39. Offender Registration and Monitoring. Part 1. Tennessee Animal Abuser Registration Act

126) § 40-39-103. Convicted animal abusers list

127) <https://www.animallaw.info/statute/ny-cruelty-consolidated-cruelty-statutes#:~:text=%C2%>

을 제외한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로 규정하고 있다.<sup>128)</sup> 특히, 동물에 대한 성적 접촉은 성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뉴욕 주의 동물학대 규정은 형법보다 개별법인 농업및시장법에서 상당히 구체적 행위들을 규율하고 있는 것이 특징 중의 하나이다. 다른 주와 마찬가지로 동물싸움금지, 동물에 대한 기본적인 복지, 이동 중의 복지, 중한 학대 금지, 성적 학대 금지는 물론이거니와, 동물을 차 안에 혼자 두는 행위, 동물에 대한 문신과 피어싱 금지 내용, 공공장소에서 동물에게 물건을 던지는 행위, 반려동물 절도(인식칩 제거), 고양이 발톱 제거 금지 등의 행위들에 대한 처벌 수준을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주에 비하여 그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이 높지는 않다. 동물싸움 중에서 개싸움에 대한 처벌기준이 최대 4년으로 가장 높은 불법행위이며, 동물에 대한 중한 학대는 중죄이지만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성적 학대는 최대 1년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 [표 3-13] 뉴욕 주 관련법과 처벌 내용

	조항	내용	처벌수준	
농업및시장법 (Agriculture and Markets Law)	351	동물싸움 금지 - 오락이나 이득을 위해 동물싸움에 가담하게 함, 동물 훈련, 싸움에 가담하는 동물 사육 판매, 이상의 행위 승인, 동물싸움 구역에서 훈련 동물 소유 소지, 보관	중죄	4년 이하 징역 또는 (모두) 최대 \$25,000 벌금.
		동물 싸움 가담할 의도로 동물 소유, 점유, 양육하는 것	경죄	1년이하 징역 또는 (모두) 최대 \$15,000 벌금.
	353	동물 운전, 고문 및 상해; 적절한 생계를 제공하지 못함	A급 경죄	1년 이하 징역 또는 3년 이하 보호관찰, 최대 \$1,000 벌금 또는 이득액의 2배 벌금 부과.
	353-a	동물에 대한 중한 학대 - 극도의 신체적 고통을 유발하려는 의도, 가학적인 방식으로 수행된 괴롭힘	중죄	2년 이하 징역
	353-c	털 있는 동물의 감전사	A급 경죄	
	353-d	반려동물을 차량에 가두는 것: 극한의 온도 <sup>129)</sup>		\$50 이상. 2회 이상은 \$100 이상.

A7%20353%2Da.,-Aggravated%20cruelty%20to&text=A%20person%20is%20guilty%20of,companion%20animal%20with%20aggravated%20cruelty.

128) Agriculture and Markets Law. chapter 69 of the consolidated laws§350.

조항	내용	처벌수준
353-e	반려동물 미용시설 및 금지 행위 - 반려동물 건조 목적으로 발열체가 있는 케이지나 박스형 건조기 사용	최저 \$250이상의 벌금. 최대 \$500 벌금.
353-f	반려동물 피어싱 및 문신	형법에 따라 처벌 가능.
355	동물 유기	1년 이하 징역, 또는 (모두) 최대 \$1,000 벌금
356	압수된 동물에 대한 적절한 음식과 수분 공급 실패	1년 이하 징역, 또는 (모두) 최대 \$1,000 벌금.
	질병에 걸린 동물을 판매 또는 판매 제안 또는 노출	1년 이하 징역, 또는 (모두) 최대 \$1,000 벌금.
358	장애를 가진 말 판매	1년 이하 징역, 또는 (모두) 최대 \$1,000 벌금.
358-a	경품으로 살아있는 동물 금지	
360	동물을 독살하거나 독살하려는 시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모두) 최대 \$1,000 벌금.
361	경주나 번식, 싸움, 체력 등을 목적으로 말, 노새, 개 또는 기타 가축의 변조, 부상 및 조작을 가하는 행위	
362	공공장소에서 동물에게 유해한 물건을 던지는 행위	1년 이하 징역 또는 (모두) 최대 \$1,000 벌금.
365	개 귀 자르기	1년 이하 징역 또는 (모두) \$500벌금.
366	반려동물 절도 - 등록증이나 식별태그 제거, 외부로 유인하는 행위 반려동물을 유인, 포획, 괴롭히는 행위 죽이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적법하지 않게 소유한 반려동물을 운송하는 행위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모두) \$1,000 벌금.
370	동물학대 방지 경찰활동 방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모두) 최대 \$1,000 벌금.
380	엔터테인먼트의 코끼리 사용 금지(전시, 서커스, 트레이드 쇼, 탑승, 퍼레이드, 유사 능력 등	\$1,000 벌금/ 각 위반행위마다
381	고양이 발톱 제거	최대 \$1,000 벌금.

129) 집행권한: 경찰, 치안관(peace officer), 응급의료 서비스 요원, 유급 소방관 또는 자원봉사 소방관, 응급 의료 서비스 요원이 차량에서 동물 제거 지원 요청가능하고, 차량에 서면통지함.

경찰은 물론이거니와 치안관(peace officer)도 동물학대행위자를 목격했을 때 형사 절차에 개입하는 권한을 갖는다. 경찰관은 반드시, 그리고 동물학대 방지를 위해 설립된 대리인 또는 공무원은 형사소송법 150.20에 따라 법원 출두 티켓을 발부해야 하고, 영장이나 소환, 체포를 위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sup>130)</sup>

현재 뉴욕 주의 법에서는 특별히 유죄 선고 이후의 동물 소유권 제한에 관한 내용과 부수처분이나 보안처분을 추가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 마. 플로리다

### 1) 관련법과 처벌 수준

플로리다 주의 경우에는 주 형법상에서 동물학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범죄를 규정하는 chapter 828과 불법행위를 규정하는 chapter 768에서 찾을 수 있다. 플로리다 형법의 동물학대 관련 규정은 통상 “Anti-Cruelty Act”라고 통칭되고 있다. 플로리다의 형법에서 규정되는 동물은 살아있는 창조물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동물 복지와 관련한 내용과 비인도적 방식으로 동물을 대하는 행위는 경죄로 처벌하고 있고, 의도적으로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3급 중죄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정신과적 치료 혹은 심리 상담이 의무로 부과되는 것이 특징이기도 하다.

플로리다 법의 특징은 아동이나 취약한 대상과 동물 보호를 같은 맥락에서 바라본다는 것인데, 자동차 안에서 반려동물을 구조하는 내용을 “취약한 대상과 동물”이라고 표현하면서 병렬적으로 대등하게 바라보고 있고, 동물학대 법 역시도 집행자와 집행 기관이 아동과 동물을 보호하거나 학대를 방지하고 그러한 잔혹함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는 점이 흥미롭다.

동물에 대한 중한 학대의 경우에는 3급 중죄로 취급하여 최대 5년의 징역 혹은 \$10,000 이하의 벌금 또는 모두 선고가 가능한데, 의도적인 학대 위반일 경우 벌금은 의무적으로 최소 \$5,000이 선고되고, 심리 상담과 분노조절 치료를 받도록 선고가 가능하다. 또한, 복역 측면에서 의무적으로 6개월을 복역해야 한다. 더 나아가, 이들은

130) 371

가석방이 불가능한 만기출소를 해야 한다. 출소 이후에도 법원의 명령에 의해 어떠한 동물에 대해서도 소유, 소지, 보관, 양육 돌봄 등이 일정기간동안 금지된다.<sup>131)</sup> 피해 동물이 1마리 이상일 경우, 각 동물에 대한 행위를 분리해서 심리하며 포괄일죄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동물학대와 동일하게 3급 중죄로 취급하는 또 다른 행위는 동물싸움행위이다. 역시나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과 \$10,000 이하의 벌금이 모두 선고 될 수 있고, 유죄판결 이후 법원의 선고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유죄 선고를 받은 동물의 종과 같은 동물의 소유, 소지, 보관 양육 등이 금지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동물을 성적 행위에 이용한 경우도 3급 중죄로 처벌된다. 역시나 모든 동물에 대한 소유, 소지, 양육이 금지되는 통제명령이 가능하고, 어떠한 동물이 있는 집에서의 거주나 동물이 있는 곳에서의 유급 혹은 무급 취직, 봉사활동도 금지된다. 이러한 명령은 유죄판결 이후 5년 동안 적용된다.

» [표 3-14] 플로리다 주 관련법과 처벌 내용

조항	내용	처벌수준	
768.139	차량내 반려동물 구조 의무 <sup>132)</sup>		
828.08	독성물질 노출	1급 경죄	최대 1년 이하
	동물에게 잔인한 행위		
	- 불필요하게 과적 운전, 과속 운전, 고문, 필요한 생계 또는 보호소 박탈, 불필요하게 동물을 절단 또는 살해하거나 동일한 행위를 유발하거나 차량에 싣거나 탑승하거나 동물을 잔인한 또는 비인도적인 방식으로 동물학대	1급 경범죄	1년 이하 징역 \$5,000 이하의 벌금 또는 둘 다
828.12	- 동물에게 고의로 행위를 한 사람 또는 동물을 소유 또는 관리 또는 관리하는 사람이 행동을 취하지 않아 잔인한 죽음을 초래하거나 불필요한 고통이나 괴로움 또는 원인을 과도하거나 반복적으로 가하는 사람	3급 중범죄	3년 이하 징역 \$10,000 이하의 벌금 또는 둘 다 - 위반 시 \$2500 이상의 벌금 어떠한 동물의 소유, 소지, 보관, 양육 금지 명령 가능 심리상담과 분노조절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 두 번째 위반 시 \$5000불 이상의 벌금과 6개월 이상의 구금. <sup>133)</sup> - 범죄행위마다 - 분리된 가해행위 마다 (per each)

131) 828.12(6)

조항	내용	처벌수준	
828.122	동물싸움	3급 중죄	5년 이하 징역 유죄판결시 행위와 같은 종의 동물 소유, 소지, 보관, 양육 금지 명령 가능 <sup>134)</sup>
828.123	모피를 팔거나 나눠줄 목적으로 개나 고양이를 죽이는 행위	3급 중죄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0 벌금(모두)
828.125	말과 가축을 죽이거나 혹은 중한 학대	2급 중죄	15년 이하 징역
828.126	동물을 이용한 성적 활동 - (a) 고의로 동물과 성적 행위 또는 성적 접촉을 하는 행위 (b) 고의로 다른 사람이 동물과 성행위 또는 성적 접촉을 하도록 유발, 지원 또는 방조하는 행위; (c) 자신의 책임이나 통제하에서 동물과의 성적 행위 또는 성적 접촉을 고의로 허용 (d) 상업적 또는 레크리에이션 목적으로 동물과의 성적 행위 또는 성적 접촉과 관련된 행위를 고의로 조직, 홍보, 수행, 광고, 지원, 교사, 참관인으로 참여 또는 서비스를 수행하는 행위	3급 중죄	5년 이하 추가로 유죄 판결 이후 어떠한 동물의 은닉, 소유, 점유 또는 통제 양육을 금지하며, 동물이 있는 곳에서의 취업과 자원봉사도 금지 유죄 판결일로부터 최대 5년 동안 유효
828.13	충분한 음식, 물 또는 운동 없이 동물을 가두는 것; 동물 유기	1급 경죄	1년 이하, 징역 \$5,000이하 벌금 혹은 둘다
828.14	운반시 물과 음식 미제공	2급 경죄	60일 이하 구금
828.16	전염성 질환	2급 경죄	60일 이하 구금
828.1615	특정 동물의 인공 착색 및 판매 금지	2급 경죄	60일 이하 구금
828.26	인도적 도살위반		828.22-828.26과 관련된 모든 규칙은 각 위반에 대해 최대 \$10,000의 과태료가 부과
828.40	플로리다 동물 기업 보호법 - 동물 기업이 사용하는 동물, 기록물 등의 재산을 고의로 훔치거나 훼손, 의도적으로 신체적 손상 가하여 경제적 피해를 입힌 경우	3급 중죄	5년 이하 징역 배상명령 의무

132) 취약한 사람이나 동물을 구제하는 목적으로 강제로 또는 다른 방식으로 자동차에 강제력을 행사한 경우 자동차에 대한 민사 책임 면제

133) 동물에 대한 동물학대 또는 가중 동물학대 행위를 여러 번 저지른 사람은 그러한 각 행위에 대해 별도의 범죄로 기소 가능, 한 마리 이상의 동물에 대해 동물학대 또는 가중 동물학대를 저지른 사람은 그러한 학대가 행해진 각 동물에 대해 별도의 범죄로 기소 가능.

134) 828.122(8)

플로리다 주에서는 동물에 대한 학대, 동물싸움, 동물에 대한 성적 학대를 3급 중죄로 여기고 있는데, 3급 중죄는 플로리다 주에서 중한 스토킹, 무기를 갖고 무단 침입한 행위, 차량을 이용한 살인 행위와 같은 수준으로서 동물학대를 상당히 중한 범죄로 취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잔인한 학대에 더불어 동물에 독극물을 살포하거나, 유기, 물이나 음식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영장 없이 주 보안관이나 기타 치안관, 경찰관이 체포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체포한 경찰은 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해당 범죄자를 구금해야 하며 영장발부를 위한 노력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sup>135)</sup>

일반적으로 중한 학대, 동물싸움, 성적 학대에 부과되는 법원의 소유권 강제 제한 등의 명령에 대해서는 경찰뿐만 아니라 자격을 부여받은 동물통제담당관(animal control officer)이 협조 위반사항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다.<sup>136)</sup>

동물통제담당관은 카운티나 지역단위에서 사적 혹은 공적 재산 영역에 있어서 동물 통제나 학대를 조사하고 경고장을 발급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들은 무기를 소지하거나 체포할 권한은 갖지 않는다. 16시간의 훈련과, 동물 케어 와 안전 등을 교육받고 임명된다. 경고장의 내용은 위반 날짜와 시간, 위반 행위, 과태료 수준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경고장에 해당하는 과태료는 \$500 이하이다.

## 2) 선고 이후 부수 처분

### 가) 정신 및 심리 상담 치료

동물에 대한 중한 학대에 대해서는 법원이 심리 상담과 분노조절 프로그램이수 명령을 선고 할 수 있다.

### 나) 강제 소유권 금지

동물에 대한 중한 학대의 경우에는 동물의 종과 상관없이 어떠한 동물의 소유나 소지, 보관, 양육 등의 행위가 일정기간 금지된다. 동물싸움일 경우에는 동물싸움에 동원된 종과 같은 동물의 소유 등이 금지되며, 동물에 대한 성적 학대의 경우에는 종과 상관없이 동물의 소유나 소지, 보관, 양육에 대한 금지는 물론이거니와 동물이

135) 영장 없이 체포 가능한 행위는 828.08, 828.12, 828.13-828.16이며, 이들에 대해 영장 없이 체포 가능함을 명시한 조항은 828.17이다.

136) 828.27

있는 곳에서의 취업과 봉사활동 역시도 일정 기간 동안 금지되는 명령이 내려진다. 이러한 내용은 아동에 대한 성범죄자에 대해 가해지는 취업금지 및 접근금지 명령과 유사한 면을 갖고 있다.

바. 주별 학대 금지 행위 비교

1) 동물에 대한 학대 법정형 비교

앞서서는 미국 연방법과 주법을 통해 처벌하는 동물학대 종류와 그 처벌 수준을 살펴보았다. 이어서 각 주별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중 가장 높은 처벌수준과 그에 부수적으로 병과되어 선고 가능한 법원의 처분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2018년 장은혜<sup>137)</sup>는 “동물학대 행위의 범위 및 처벌수위 분석”이라는 연구 보고서를 통해 국내는 물론 국외의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매우 구체적으로 조사하였다. 그러나 현재 시점(2022)에도 4년전 대비 동물학대에 대한 법률이 빠르게 수정되면서 처벌 수위 역시도 상당히 상향 조정되었다.

동물학대행위에서 선고형이 높은 대표적인 행위는 중한 학대, 동물싸움, 그리고 동물에 대한 성적 학대(성적 행위)이다. 동물에 대한 성적 학대의 경우에는 주마다 경죄 혹은 중죄로 달리 처리되고 있고, 주에 따라 동물 소유금지와 치료명령과 같은 부수적인 명령도 상당히 차이를 알 수 있다.

그러나 동물에 대한 중한 학대와 동물싸움에 대한 입장은 많은 주들이 유사하게 매우 엄중히 처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표 3-15] 미국 각 주별 동물학대 최고 선고형과 행위

주	법령	주요내용	
		2018년 기준 내용	2022년 기준 바뀐 내용
알라바마	ALA. CODE Section 13A-11-14 (1977)	반려동물 특히, 개나 고양이에 대한 잔혹한 행위가 처벌 대상 B급 경죄(Class A misdemeanor)로 \$3,000 이하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자유형	§ 13A-11-14.1. Aggravated cruelty to animals. C급 중죄. \$15,000 이하 벌금, 최대 2년 징역.

137) 장은혜, 2018. 101면.

주	법령	주요내용	
		2018년 기준 내용	2022년 기준 바뀐 내용
알래스카	Alaska Statute 11.61.140	동물학대는 A급 경죄의 경우 \$5,000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사회봉사, 보상	C급 중죄. \$50,000 이하 벌금, 최대 5년 징역.
아리조나	Arizona Statute 13-2910	고의 및 부주의에 의한 동물학대에 대해 규정 1급 경죄의 경우 \$2,500 이하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자유형 고의로 잔혹하게 학대하거나 죽이는 등의 행위는 6급 중죄로 처벌. \$150,000 이하 의 벌금형, 18개월의 자유형 또는 병과 동물사육 3년 금지,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 가능	5급 중죄 집행유예 또는 최대 징역 2년 6개월
알칸사스	Arkansas Code 5-62-101	경죄로 처벌. \$150~1,000 미만 벌금형 또는 하루 이상의 자유형 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병과 5년 내 동종범죄를 저지른 경우: \$400~ 1,000이하의 벌금형 또는 7일 이상의 자 유형 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및 30일 이상 의 사회봉사 3회 이상 동종범죄 전과자: \$900~1,000 미만 벌금형 또는 90일 미만의 자유형 또 는 1년 이하의 자유형, 90시간 이하의 사 회봉사 명령, 병과	4급 중죄 \$10,000 이하의 벌금, 최대 6년 징역 최대 400시간 사회봉사
캘리포니아	Cal Penal Code 596-597	동물학대는 경죄 또는 중죄로 처벌 \$20,000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병과	중죄 최대 \$20,000 이하 벌금, 최대 3년 징역
콜로라도	Colorado Revised Statute 18-9-202	1급 경죄로 \$400~5,000 벌금형 동물학대보호방지를 위해 관할기관에 \$400 추징 누범의 경우 \$1,000~5,000 이하의 벌금 형, 90일 이상의 자유형 또는 가택연금 또 는 18개월 이하의 자유형 고의 등 가중처벌 시 중죄 6급 적용. \$100,000 이하의 벌금형, 18개월 이하의 자유형, 90일 이상의 자유형 또는 가택연금 누범의 경우 5급 중죄 적용. \$100,000 이 하의 벌금형, 3년 이하의 자유형	6급 중죄. \$100,000 이하 벌금, 최대 1년 6개월 징역.
코네티컷	Conn Statute Section 53-247	경죄 또는 중죄로 처벌. \$1,000 이하의 벌 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병과 고의와 악의적으로 동물을 학대한 경우 가 중처벌. \$5,000 이하의 벌금형 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보호관찰의 조건으로 상담, 동물학대방지 교육 등을 추가할 수 있음	D급 중죄. \$5,000 이하 벌금, 최대 5년 징역.

주	법령	주요내용	
		2018년 기준 내용	2022년 기준 바뀐 내용
델라웨어	Delaware Code Ann. Title 11, Part 1, Chapter 5, Subchapter VII, 1325	A급 경죄. \$1,000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피해 동물 몰수. 5년 동안 사육금지 고의로 학대한 경우 F급 중죄. \$5,000 이하의 벌금형 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피해 동물 몰수. 15년 동안 사육금지	F급 중죄 최대 3년 징역.
콜롬비아 특별자치구	D.C. Code Ann. 22-1001	- \$250 이하의 벌금형 또는 180일 이하의 자유형. 학대행위로 해당 동물이 죽거나 심각한 상처를 입은 경우 중죄 적용. \$25,000 이하의 벌금형 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같음.
플로리다	Florida Statute 828.12	3급 중죄. \$10,000 이하의 벌금형 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고의가 있는 경우 \$2,500이하의 벌금형 또는 가석방 없는 6개월 이하의 자유형 누범의 경우 \$5,000 이하의 벌금형 또는 6개월 이하의 자유형	3급 중죄. \$10,000 이하의 벌금, 최대 5년 징역 (5년 이하 집행유예).
조지아	Georgia Code Ann. 16-12-4	경죄 적용. \$1,000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누범의 경우 \$5,000 이하의 벌금형 또는 51년 이하의 자유형 누범의 경우, 동물학대로 인해 해당 동물이 죽은 경우 3개월 이상 12개월 이하의 자유형 또는 \$10,000 이하의 벌금형 가중학대의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15,000 이하의 벌금형	같음.
하와이	Hawaii Rev. Stat. 711-1109	경죄. \$2,000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병과	\$10,000 이하 벌금, 최대 5년 징역.
아이다호	Idaho Title 25, Chapter 35, 25-3501	경죄. 최초 범죄 시 \$100~5,000 벌금형 또는 6개월 이하의 자유형 또는 병과 최초 범죄 후 10년 이내에 동종범죄 시, \$200~7,000 벌금형 및 1년 이하의 자유형 3번째 범죄 시 15년 이하의 자유형, \$500~9,000 이하의 벌금형 또는 병과	2019 Idaho Code Title 25 - ANIMALS Chapter 35 - ANIMAL CARE Section 25-3520A 같음.
인디애나	Ind. Code 35-46-3-13	A급 경죄. 5,000달러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 누범의 경우 고의로 학대한 경우 C급 중죄, \$10,000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6개월 이하의 자유형	P.L.76-2002, SEC.7에 의해 추가. P.L.171-2007, SEC.9; P.L.158-2013, SEC.559, eff에 의해 수정됨. 2014년 7월 1일. \$10,000이하 벌금, 최대 2년 6개월 징역.

주	법령	주요내용	
		2018년 기준 내용	2022년 기준 바뀐 내용
아이오와	Iowa Code 717B.1	<p>동물학대(animal abuse): 가중처벌이 가능한 경죄(aggravated misdemeanor), 500~5,000달러 이하의 벌금형 또는 2년 이하의 자유형</p> <p>방치(neglect): 경죄로 \$50~500 벌금형 또는 30일 이하의 자유형. 고의가 입증된 경우 \$250~1,500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병과 \</p> <p>고문(torture): 가중처벌이 가능한 경죄인 경우 \$500~5,000의 벌금형 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병과. 또한 심리치료도 함께 명할 수 있음. 누범의 경우, D급 중죄로 분류되어 \$500~7,500 벌금형 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병과 및 심리치료</p>	같음.
캔자스	Kan Stat. Ann. 21-4310	경죄로 \$2,500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병과	21-6412. (2020년 7월 1일) 비개인 중죄. \$5,000 이하의 벌금, 최대 1년 징역.
켄터키	KY REV. Stat. Ann 525.135	A급 경죄. \$500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병과 누범의 경우, D급 중죄. \$1,000~10,000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병과. 중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1년 이상의 자유형 선고	D급 중죄. 최대 5년 징역.
루이지애나	LA Rev. Stat. Ann. 14.102	단순 학대(simple animal cruelty)의 경우, \$1,000 이하의 벌금형 또는 6개월 이하의 자유형 또는 병과. 이와 더불어 반드시 58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병과. 가중처벌이 가능한 학대의 경우, \$5,000~25,000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병과	같음.
메인	ME Code Ann. Title 17 -1031	일반 동물학대의 경우 \$500~2,500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병과. 누범의 경우 \$1,000~10,000 이하의 벌금형 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병과. 심리상담 및 기타 치료를 함께 명할 수 있음	같음.
메릴랜드	MD Code Ann. - Criminal Code, Title 10, Subtitle 6, 10-601	경죄로 \$1,000 이하의 벌금형 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병과 고의인 경우 중죄로 \$5,000 이하의 벌금형 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병과	같음.
매사추세츠	Mass. Gen Laws Ch. 272-77 -	경죄로 \$1,000 이하의 벌금형 또는 90일 이하의 자유형 또는 병과	\$2,500 이하의 벌금, 최대 5년 징역.

주	법령	주요내용	
		2018년 기준 내용	2022년 기준 바뀐 내용
	Cruelty to Animals 266-112 – Malicious Killing of an Animal	고의로 동물을 죽인 경우 \$1,000달러의 벌금형과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미시간	Michigan Penal Code 750.50 – Animal Abuse/ Code 750.50b – Maliciously killing or injuring	최초 범행 시: 경죄로 \$1,000 이하의 벌금형 또는 93일 이하의 자유형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병과. 2회 시: 중죄로 \$2,000 이하의 벌금형 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300시간 이하의 사회봉사 명령 병과 3회 이상 또는 고의: 중죄로 \$5,000 이하의 벌금형 또는 4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500시간 이하의 사회봉사 명령	1급 중죄. \$5,000 이하의 벌금, 최대 10년 징역, 그리고 /또는 500시간 이하의 사회봉사
미네소타	Minn Stat. 343.20	일반 동물학대는 경죄로 700달러 이하의 벌금형 또는 90일 이하의 자유형으로 처벌하며 누범의 경우 \$3,000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병과 고의 동물을 학대한 경우 3,000달러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병과. 누범의 경우 5,000달러 이하의 벌금형 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병과 이러한 동물학대가 타인을 협박하거나 겁주기 위한 목적일 경우 \$10,000 이하의 벌금형 또는 4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병과	같음.
미시시피	Miss Code Ann 97-41-1	경죄로 \$1,000 이하의 벌금형 또는 6개월 이하의 자유형 고의로 가중처벌이 가능한 학대인 경우, \$25,000 이하의 벌금형 또는 6개월 이하의 자유형 5년 내에 동일 범죄를 저지른 경우 중죄로 \$5,000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병과.	중죄. \$5,000 이하의 벌금, 최대 5년 징역.
미주리	MO Rev. Stat. 578.005	방치 또는 유기인 경우, C급 경죄로 \$500 이하 또는 15일 이하의 자유형 동물학대는 A급 경죄로 \$1,000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병과 누범의 경우 D급 중죄, \$3500달러 이하의 벌금형 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병과.	E급 중죄. \$10,000 이하 벌금, 최대 4년 징역.
몬타나	Montana Code Annotated 45-8-211	1,000달러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병과. 가중처벌이 가능한 학대 또는 누범의 경우 2,500달러 이하의 벌금형 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병과.	같음.

주	법령	주요내용	
		2018년 기준 내용	2022년 기준 바뀐 내용
네브래스카	Neb. Rev Stat. 28-1008	유기 또는 방치 및 동물학대는 1급 경죄로 1,000달러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병과 누범의 경우 4급 중죄로 10,000달러 이하의 벌금형 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병과.	III A 중죄. 최대 3년 징역.
네바다	Nev. Rev. Stat. 574.050	최초 범행 시는 경죄로 200~1,000달러 벌금형, 10일~6개월 자유형 및 100-200시간 사회봉사 명령 7년 이내에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 3회 이상의 경우 C급 중죄로 10,000달러 이하의 벌금형 또는 1~5년 자유형	D급 중죄. \$5,000 이하의 벌금, 최대 4년 징역.
뉴햄프셔	NH Rev. Stat. Ann. 644:8 (Criminal Code)	경죄로 2,000달러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병과. 누범 또는 고의가 입증된 경우 B급 중죄로 4,000달러 이하의 벌금형 또는 7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병과.	같음.
뉴저지	NJ Rev. Stat. Ann. 4:22-17 & 4:22-26	치안문란 행위(Disorderly persons Offense)로 250~1,000달러 이하의 벌금형 또는 6개월 이하의 자유형 또는 병과. 가중처벌이 가능한 학대의 경우 4급 중죄로 1,000달러 이하의 벌금형 또는 18개월 이하의 자유형 또는 병과. 법원은 30일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할 수 있음. 또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피해 동물의 돌봄, 치료비 등을 지불해야 함 청소년이 가중처벌이 가능한 동물학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 반드시 심리치료를 받아야 함 유기의 경우 벌금 500달러, 도로에 유기한 경우 벌금 1,000 달러	같음.
뉴멕시코	NM Stat. Ann. 30-18-1 (Statutes, Statutory Chapters, Chapter 30, Article 18)	경죄로 1,000달러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병과 4회 이상 동종범죄를 저지른 경우 4급 중죄로 5,000달러 이하의 벌금형 또는 18개월 이하의 자유형 또는 병과. 학대예방 프로그램 수강 또는 심리치료 또는 병과. 아동이 해당 범죄를 자행한 경우 반드시 심리평가와 상담을 받아야 함	4급 중죄. \$5,000 이하의 벌금, 최대 1년 6개월 징역.
뉴욕	New York State Consolidated Laws Article 26, Chapter 353 & 353-a	경죄로 1,000달러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병과 가중처벌이 가능한 학대 5000달러 이하의 벌금형 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병과.	Chapter 351 중죄. \$25,000 이하 벌금. 최대 4년
노스캐롤라이나	NC Gen Stat. 14-360	1급 경죄로 법원의 재량에 따라 벌금형 또는 자유형	H급 중죄. 최대 2년 1개월 징역.

주	법령	주요내용	
		2018년 기준 내용	2022년 기준 바뀐 내용
		고의로 학대하거나 죽인 경우, 법원의 재량에 따라 1급 중죄	
노스다코타	ND Century Code 36-21-1-01	동물의 이동, 주정차 시 차 안에 반려동물 방치 등이 포함 동물학대는 A급 경죄로 \$2,000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병과.	N.D.C.C. § 36-21.2-03 \$10,000 이하의 벌금, 최대 5년 징역.
오레곤	O. R. S. §167.322.		\$125,000 이하의 벌금, 최대 5년 징역.
오하이오	Ohio Rev. Code Ann 959.01	1급 경죄로 \$750의 벌금형 또는 90일 이하의 자유형 반려동물에 대한 폭행 누범의 경우 5급 중죄로 \$2,500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병과 징수한 벌금은 동물학대 방지를 위한 시민 단체와 협회에 제공	4급 중죄. \$5,000 이하 벌금, 최대 1년 6개월 징역.
오클라호마	OK State Title 21: 1685	동물학대는 5,000달러 미만 또는 1년 항의 지역 구치소 또는 5년 이하의 주형무소 구금 방치 또는 유기는 경죄로 \$200~500 이하의 벌금형 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중죄. \$25,000 이하의 벌금, 최대 10년 징역.
펜실베이니아	18 PA Cons. Stat. 5511	타인의 가축을 학대, 도살한 경우 \$500 미만의 벌금형 고의를 갖고 동물원 동물을 죽인 경우 \$15,000 이하의 벌금형 또는 7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병과. 동물학대의 경우 \$1,000 이하의 벌금형 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병과 누범의 경우, 3급 중죄로 \$15,000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병과.	3급 중죄. 최대 7년 징역.
로드 아일랜드	Rhode Island Gen Stat. 4-1-1	불필요한 학대행위의 경우 \$50~500의 벌금형 또는 11개월의 자유형 타인의 동물을 죽인 경우 \$100~500의 벌금형 또는 11개월의 자유형 민사소송의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3배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1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이수해야 함	\$1,000 이하의 벌금, 최대 2년 징역.
사우스캐롤라이나	S.C. Code Ann. 47-1-10	부당한 처우와 같은 동물학대의 경우. 최초 범행 시 60일 동안의 사회봉사명령 최초 범죄의 경우 최대 60일까지 자유형 또는 \$100~500 벌금형 또는 병과 2차 범행: \$800 이하의 벌금형 또는 90일 이하의 자유형 3회 이상: \$2,000 이하의 벌금형 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병과	SC Code § 47-1-40. (2018) 중죄. \$5,000 이하의 벌금, 최대 5년 징역.

주	법령	주요내용	
		2018년 기준 내용	2022년 기준 바뀐 내용
사우스다코타	SD Codified Laws 40-1-1	1급 경죄로 \$1,000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병과. 고의로 확대하는 경우는 6급 중죄로 \$4,000 이하의 벌금형 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병과.	SD Codified Laws 40-1-2.4. 같음.
테네시	Tenn Code Ann 39-14-202; 39-14-212	1급 경죄로 \$2,500 이하의 벌금형 또는 11개월, 29일부터 30년 이하의 자유형 누범의 경우 E급 중죄로 \$3,000 이하의 벌금형 또는 6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병과 심리상담, 동물보호비용 청구, 피해동물 몰수, 사유금지 등의 양형을 추가할 수 있음	TN Code § 39-14-212 (2021). \$3,000 이하의 벌금, 최대 6년 징역.
텍사스	Tex. Penal Code, Title 9, Chapter 42, 42.09	A급 경죄로 \$4,000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병과. 3회 이상 동종범죄로 유죄를 받은 경우 \$10,000 이하의 벌금형 또는 180일 이상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병과. 고의 동물학대가 3회 이상인 경우 \$10,000 이하의 벌금형 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병과.	TX Penal Code § 42.09 (2019). 3급 중죄. \$10,000 이하의 벌금, 최대 10년 징역.
유타	Utah Code Ann. 76-9-301	B급 중죄로 \$1,000 이하의 벌금형 또는 6개월 이하의 자유형 또는 병과. 형법상 과실(criminal negligence)에 의한 경우 C급 경죄로 \$750 이하의 벌금형 또는 90일 이하의 자유형 이외 법원의 직권으로 심리상담, 피해 동물의 몰수, 치료비용 등을 추징할 수 있음	3급 중죄. \$25,000 이하의 벌금, 5년 징역.
버몬트	Vt. St. Ann. Title 13, Chapter 8, 351	\$2,000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병과. 누범의 경우 \$5,000 이하의 벌금형 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병과. 투견 등 동물을 이용하는 경우 5,000달러 이하의 벌금형 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병과 가중처벌이 가능한 확대의 경우 \$5,000 이하의 벌금형 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병과. 누범의 경우 \$7,500이하의 벌금형 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병과. 이와 더불어 동물학대 방지에 관한 교육 및 심리상담, 불시점검 등을 병과할 수 있음	Vt. St. Ann. Title 13, Chapter 8, 353. \$5,000 이하의 벌금, 최대 5년 징역.
버지니아	VA. Code Ann. 3.1-796.122	1급 경죄로 2,500달러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병과. 누범의 경우 6급 중죄로 \$2,500 미만의 벌금형	§ 3.2-6570(2019). 6급 중죄. \$2,500 이하의 벌금, 최대 5년 징역.

주	법령	주요내용	
		2018년 기준 내용	2022년 기준 바뀐 내용
		동물 유기에의 경우 고속도로 쓰레기 무단 투기로 분류되어 \$250-2,500이하의 벌금형 또는 12개월 이하의 자유형 병과	
워싱턴	Wash. Rev. Code 16.52.011/Sentencing Provisions: 16.52.200/Animal Cruelty in the First Degree: 16.52.205/Animal Cruelty in the Second Degree: 16.52.207	1급 동물학대의 경우 C급 중죄로 \$10,000 이하의 벌금형 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병과 2급 동물학대는 경죄로 \$3,000 이하의 벌금형 또는 90일 이하의 자유형 또는 병과	같음.
웨스트 버지니아	W. VA Code 61-8-19 Cruelty to animals is defined	경죄로 \$300~1,000이하의 벌금형 또는 6개월 이하의 자유형 누범의 경우 \$500~1,000 이하의 벌금형 또는 90일 이상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병과. 누범의 경우 법정형은 자유형. 또한 법원에서 명령한 심리상담 과정을 이수하지 않으면 집행유예 불가 고의로 동물을 학대한 경우 중죄로 \$1,000~5,000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병과.	\$5,000 이하의 벌금, 최대 5년 징역.
위스콘신	Wis Stat. 951.02	A급 경죄로 \$10,000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6개월 이하의 자유형 또는 병과. 고의로 동물을 학대한 경우 E급 중죄로 \$10,000 이하의 벌금형 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병과.	1급 중죄. \$10,000 이하의 벌금, 최대 3년 6개월 징역.
와이오밍	Wyo. Stat. 6-3-203	일반 동물학대는 경죄로 \$750 이하의 벌금형 또는 6개월 이하의 자유형 가중처벌이 가능한 학대의 경우 \$5,000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병과 고의인 경우 \$5,000 이하의 벌금형 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병과.	같음.

출처: 장은혜(2018). "동물학대행위의 범위 및 처벌수위 분석". 한국법제연구원 연구결과 보고서(101~109쪽)를 수정 보완함.

## 2) 의도적 방임 금지 내용

동물에 대한 의도적 방임의 내용은 넓게는 학대를 포함한 전반적 동물 복지 내용을 다루고 있다. 통상적으로는 동물에 대한 유기, 동물을 심각한 피해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의도적 행위, 감금, 차 안에 가두기, 동물학대 묘사, 개싸움, 동물싸움, 독극물 주입, 성적 폭력, 절도, 고문의 금지 및 수의학적 케어 등을 의무로 하고 있다.

대부분의 주에서 동물의 유기를 금지하고 있지만 대표적인 주로는 하와이, 네브래스카, 오레곤 주가 있다. 동물에 대한 심각한 피해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의도적 행위를 금지하는 주는 대표적으로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일리노이, 뉴욕 주이다. 동물이 운동을 할 때 목줄이 얽히거나 노출되는 것에 대한 보호의무, 그리고 동물을 묶는 재질과 유형, 묶는 시간을 제한하고 있는 주는 캘리포니아, 메사츄세츠, 오하이오, 오레곤, 뉴욕, 그리고 텍사스 주가 있다. 동물을 차 안에 갇힌 상태로 두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극한의 추위와 더위로부터 보호해야할 의무를 두고 있는 주는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뉴욕주가 대표적이다.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운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주는 캘리포니아, 메인, 미네소타 주이며, 연방법으로도 28시간 법이 적용된다. 동물에 대한 잔인한 대우, 굶주림, 탈수, 피로 유기로 인해 발생하는 배고픔이나 노출을 포함하는 주는 일리노이, 캘리포니아, 뉴욕, 미네소타, 그리고 오레곤 주가 대표적이다. 동물에 대한 학대를 시각적으로나, 청각적으로 묘사하는 것을 모두 금지하는 주는 일리노이 주가 대표적이고, 연방법에서도 동물크러쉬비디오금지법(animal crush video prohibition act)이 존재한다. 개싸움을 금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주는 캘리포니아, 아디아호, 일리노이, 오레곤 주이고,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개싸움은 중죄이고, 개싸움에 참석하는 경우도 경죄로 처벌받는다. 오레곤 주는 싸움에 참여하는 개나 관련 용품을 소지하는 것과 개싸움을 광고하는 것도 중죄로 금지하고 있다. 동물에 대한 성적 접촉 역시도 대부분의 주에서도 금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메사츄세츠, 메인, 뉴욕, 플로리다 주가 해당된다. 대부분의 동물에 대한 성적 접촉을 금지하는 주법들은 이를 중죄로 처벌하고 있다. 동물 소유자가 합리적인 수준의 동물 건강관리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대표적인 주는 미시건, 오레곤, 텍사스, 버지니아가 있다.

▶▶▶ [표 3-16] 의도적 방임 금지 규정과 대표적 주법

규정 내용	효과	대표적인 주 법률
유기	동물을 유기하는 것을 금지 유기는 동물에 대해 심각한 피해와 병, 죽음을 초래하지 않는 한 경범죄	HAW. REV. STAT. § 143-2.6 NEB. REV. STAT. § 238-1009 OR. REV. STAT. § 169.340.
중한학대	동물을 심각한 피해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의도적인 행위를 포함	CAL. PENAL CODE § 597(a) COLO. REV. STAT. § 18-9-202(2)(c); 510 ILL. COMP. STAT. 70/3.02 N.Y.AGRIC. & MKTS. LAW § 353-a(3).
감금 (confinement)	운동을 할 때, 목줄이 얽히거나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는 것에 대한 보호의무, 동물을 묶는 재질의 유형과 묶는 시간을 제한.	CAL. PENAL CODE § 597t; MASS. GEN. LAWS ch. 140, § 174E; OHIO REV. CODE ANN. § 959.13(2); OR. REV. STAT. § 167.343; N.J. STAT. ANN. § 4:22-19; TEX. HEALTH & SAFETY CODE § 821.077.
차안에 가두기	이 조항은 자동차 안에 갇힌 동물들을 구체적으로 다루며, 일반적으로 극한의 추위와 열에 의해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 적용	CAL. PENAL CODE § 597.7; 510 ILL. COMP. STAT. 70/7.1; N.J. STAT. ANN. § 4.22-17(a)(3).
잔인한 운송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운반하는 것을 금지	CAL. PENAL CODE § 597a; ME. REV. STAT. ANN. tit. 7, § 3981; MINN. STAT. § 343.24. See also 49 U.S.C. § 80502 (Twenty-Eight Hour Law) (See Chapter 11, section III.B).
Cruelty	이러한 조항들은 구타, 잔인한 대우, 굶주림, 탈수, 피로, 유기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배고픔, 노출 등을 포함	510 ILL. COMP. STAT. 70/3.01; CAL. PENAL CODE § 597; N.J. STAT. ANN. § 4:22-26; MINN. STAT. § 346.37; OR. REV. STAT. §§ 167.315, 167.320.
동물학대의 묘사	시각적이나 청각적인 동물학대 묘사 금지	510 ILL. COMP. STAT. 70/3.03-1; 48 U.S.C. § 48 (Animal Crush Video Prohibition Act of 2010).
개싸움	개싸움을 금지. 많은 법령들은 개싸움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참여와 참석을 금지함. 예를 들어, (싸움을 하는)개나 용품을 소지하거나 싸움을 광고하는 행위와 같은 것도 금지	CAL. PENAL CODE § 597.5 (fighting is a felony and attendance is a misdemeanor); IDAHO CODE ANN. § 25-3507; 720 ILL. COMP. STAT. 5/48-1; OR. REV. STAT. § 167.372 (advertising or possessing paraphernalia is a felony); WYO. STAT. ANN. § 6-3-203(c)(ii)(n),
기타 동물싸움	일반적으로 개싸움 법령과 비슷하나 다른 동물들과 연관성	11 DEL. CODE § 1326 (prohibiting fighting or baiting of bears, dogs, cocks, other animals or fowl).

규정 내용	효과	대표적인 주 법률
독극물	의도적으로 개나 가축에게 유독물질을 먹이는 것을 금지.	CAL. PENAL CODE § 596; 510 ILL. COMP. STAT. 70/6; N.J. STAT. ANN. § 4:22-26(a)(2).
성적 폭력	가해자가 동물에 대해 성적인 접촉을 하는 것을 금지	CAL. PENAL CODE § 286.5; 720 ILL. COMP. STAT. 5/12-35; MASS. GEN. LAWS ch. 272, § 34; ME. REV. STAT. ANN. tit. 17 § 1031(1); N.J. STAT. ANN. § 4:22-17(c)(4); OR. REV. STAT. § 167.333.
절도	과학적, 환경적, 경제적, 또는 문화적 가치가 있는 동물에 대해서 치료 보호소나 연구시설에 보내는 것을 금지	DEL. CODE ANN. tit. 11 § 1325(b)(5). See also 7 U.S.C. §§ 2131-2159 (the Animal Welfare Act discussed in Chapter 12, section II, generally).
고문	동물의 아픔을 증가시키기 위한, 괴롭힘이나 고통을 주는 것을 금지	510 ILL. COMP. STAT. 70/3.03; OR. REV. STAT. § 167.322.
수의학적 케어	소유자의 합리적인 수준의 동물 건강관리	MICH. COMP. LAWS ANN. § 750.50(1)(a); OR. REV. STAT. § 167.330; 18 PA. CONS. STAT. ANN. § 5511(c)(1); TEX. PENAL CODE § 42.092(b)(3); VA. CODE ANN. § 3.2-6570 (requiring emergency veterinary care).

### 3) 학대동물 몰수와 학대자의 동물 소유 금지

동물을 학대한 가해자에 대하여 피학대 동물을 몰수하거나 향후 학대자의 동물 소유권에 제한을 두고 있는 주들이 존재한다. 유죄 판결전, 형사소송이 종료되기 이전에 국가가 동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도록 한 몰수 조건을 갖고 있는 주들은 미네소타, 일리노이, 오레곤, 워싱턴 주가 대표적이다.

유죄판결 이후 몰수 및 소유 금지 조항을 갖고 있는 주들은 일리노이, 뉴저지, 미네소타, 텍사스, 테네시, 오레곤, 플로리다 주가 대표적이다. 여기서 유죄판결 이후 몰수와 소유 금지 조항은 별개로써 피학대 동물을 몰수 당하는 것과 동시에 향후 동물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가 추가적으로 가해지는 것이다.

동물학대자에 대해 가해지는 국가의 몰수와 소유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개인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다. 대표적으로 노스캐롤라이나, 오레곤 주가 해당된다.

▶▶▶ [표 3-17] 금지 내용과 대표적 주 법

규정 내용		효과 및 내용	대표적인 주 법률
유죄 판결 이전	몰수	형사소송이 완료되기 전, 안락사, 국가의 입증책임, 동물에 대해 소유권을 획득할 수 있는 국가의 권한	MINN. STAT. §§ 343.22(3), 343.235 510 ILL. COMP. STAT. 70/3.04-3.05 OR. REV. STAT. § 167.347(3) (3일 이내에 위반 입증 제시해야함); WASH REV. CODE § 16.52.085 (몰수된 동물을 이전 소유주에게 반환할 경우 소유주가 향후 고문이나 방임, 학대 등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증거를 충분히 입증해야함)
유죄판결 이후	몰수 및 소유 금지	동물학대법에 따른 유죄판결이후 몰수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인이 동물을 소유 금지	510 ILL. COMP. STAT. 70/3.06, 4.02 (유죄판결시 몰수(forfeiting); N.J. STAT. ANN. § 4:22-26.1 ; MINN. STAT. § 343.21(10) (providing an exception if the defendant can care for the animal); TEX. HEALTH & SAFETY CODE § 821.023 (잔인하게 다루진 동물들은 동물 보호소로 이관되거나 공공 경매에 붙여지도록 몰수됨); OR. REV. STAT. § 167.332 (최소 5년에서 최대 15년까지 어떠한 동물도 소유를 금지함).
개인 권리		개인의 형사 조항 위반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 권한 있음	N.C. GEN. STAT. §§ 19A-1, 19A-1.1, 19A-2; OR. REV. STAT. §§ 105.550-105.600 (2016).

### 사. 학대동물 압류 및 몰수

#### 1) 테네시

테네시 주법 제39편-14-202조에서는 동물학대자가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처벌과 함께 법원이 동물학대자의 동물관리 포기 및 몰수를 명령하게 됨. 이 경우 동물 관리는 테네시 주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humane society)에게 주어진다.

#### 2) 일리노이

일리노이 주법 제510편(동물) 제70/3.04조에서는 한 마리 이상의 동물에 대하여 동물학대, 중한 동물학대, 동물 고문, 오락목적 동물싸움, 차량 내 방치와 관련한 범죄를 이유로 범죄자를 구속하는 경우 법집행관은 해당 반려동물을 점유하고 압류할 수 있다.

법집행관은 해당 반려동물을 공공 동물 수용 보호소(animal control)나 사설 동물 보호소(animal shelter)에 압류하되, 해당 학대행위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는 법률상 부과되는 처벌에 추가적으로 법원은 해당 반려동물을 공공 동물 수용 보호소 또는 사설 보호소로 몰수시키도록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몰수 명령이 내려지는 경우, 유죄 판결을 받은 학대자는 해당 동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영구적으로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된다. 몰수된 동물은 입양되거나 인도적으로 안락사 된다.

### 3) 펜실베이니아

펜실베이니아 주법 제18편 제 5552조에서도 동물싸움에 사용된 동물의 몰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경찰이나 적법하게 설립된 동물학대 방지 관련 소사이어티, 협회의 직원은 동물싸움에 사용되거나 사용되기로 한 동물들을 압류할 권리를 갖는다. 압류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해당 동물이 완전히 몰수되는 것은 아니나 제5543조(동물싸움)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경찰 및 협회 직원이 동물을 압류하게 된다. 경찰 및 협회 등의 직원이 동물에게 합리적 수준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며, 압류된 동물이 회복의 합리적 가망성이 없는 정도로 불구이거나, 병들거나, 다친 경우에는 경찰이나 협회 등의 직원이 해당 동물을 인도적 방법으로 죽이는 것이 허용된다. 또한 기타 법상의 처벌에 추가적으로 동물싸움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주체는 학대받거나 방치된 피고인의 동물에 대한 몰수 또는 권리포기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sup>138)</sup>

### 4) 메인

메인 주에서도 동물학대 발생시 피학대 동물에 대한 긴급압수가 진행된다. 동물보호경찰 등이 동물학대가 발생하였거나 진행 중인 것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고,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즉시 피학대동물을 압수할 수 있다. 다만, 압수 후 3근무일 이내에 사후영장을 받아야 한다.<sup>139)</sup>

피학대동물 소유자에게는 별도의 심리 과정에서 진술할 기회가 제공되며, 이때 피학대동물의 몰수(소유권 영구박탈) 또는 안락사의 부당함을 소명할 책임은 피학대

138) 김지현, 2018. 37쪽.

139) 17 MRS 1021(5-A). 김준성(2022) 논문에서 재인용

동물 소유자에게 두고 있다.<sup>140)</sup> 법원은 소유자가 동물을 학대·유기하였거나 동물이 질병, 장애, 탈수, 영양결핍 등으로 건강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될 경우, 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해당 동물을 몰수하거나 안락사할 것을 명할 수 있다.<sup>141)</sup>

동물소유자에게 학대의심 사례가 확인되어 동물을 압수당한 경우, 심리가 열리기까지 최대 31일(심리기일이 연기된 경우 최대 45일)이 걸린다. 이 경우 소유자는 피학대 동물의 반환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새로이 동물을 취득하여 또다른 학대행위를 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Maine 주에서는, 적법하게 압수된 동물의 소유권 몰수 여부를 결정할 심리기일이 열리기 전까지 다른 동물을 취득하거나 점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sup>142)</sup> 메인 주의 이러한 법은 일반적인 동물학대 행위는 물론 개싸움 등에 연루된 동물 소유자에게 동물 소유에 대한 일시적 제한 명령이 의미가 있어 보인다.

추가적으로 메인 주에서는 동물보호경찰 등이 질병, 장애, 탈수, 영양결핍 등으로 건강상태가 불량하다고 믿을 만한 동물의 상태를 확인한 경우에도 동물의 건강검진을 위해 최대 30일간 동물을 압수할 수 있다. 영장을 받아 압수 진행가능하다. 영장을 받아 이 경우에도 소유자에게 심리 진술기회가 제공되고, 동물 소유자가 동물의 소유권 영구박탈이 부당한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동물이 장애, 질병, 탈수, 영양결핍으로 건강상태가 불량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은 동물을 몰수하여 기부, 입양, 판매하거나, 회복가능성이 낮은 경우 안락사를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sup>143)</sup>

통상적으로 동물이 압수된 경우 보호소에서 동물을 관리하며 건강검진 및 치료 등을 하면서 보호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법원에서는 보호비용 보전을 위해 소유자에게 보호비용 관련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다. 동물소유자는 담보제공명령이 있는 날로부터 10 근무일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만일 해당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경우 법원은 해당 동물을 몰수하여야 한다.<sup>144)</sup>

140) 17 MRS 1021(3). It is the owner's responsibility at the hearing to show case why the animal should not be seized permanently or disposed of humanely. 이에 관하여 김준성(2022)은 통상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유죄의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사전 몰수의 경우 형사재판과 별도의 심리기일을 열어 몰수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바 통상적인 형사재판과 입증책임을 달리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하였다.

141) 17 MRS 1021(1)~(3). 김준성(2022) 논문에서 재인용

142) 17 MRS 1021(5-B) Temporary possession ban. 김준성(2022) 논문에서 재인용

143) 17 MRS 1021(5). 김준성(2022) 논문에서 재인용

## 아. 동물학대자에 대한 소유권 제한

### 1) 네브래스카

네브래스카 주법 제28장(범죄 및 처벌) 28-1019조에 따르면 개싸움이나, 유기, 동물 방치 및 동물학대 위반으로 제IV급 중죄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선고를 한 법원은 동물학대자에게 유죄판결일로부터 최소 5년 동안 어떤 동물도 소유하거나 점유하거나 같이 살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게 된다. 해당 제한 기간은 15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 2) 델라웨어

델라웨어 제11편(범죄 및 형사절차) 제1325조에서는 동물학대 위반으로 경범죄 처벌을 받은 자는 유죄판결을 받은 후 5년 동안 어떠한 동물도 소유하거나 점유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동물학대로 중죄 판결을 받은 자는 유죄 판결 후 15년 동안 어떤 동물도 소유하거나 점유할 수 있도록 금지하고 있다.

### 3) 메인 주

메인주는 제7편(농업및동물) 제4016조에 따라 법원은 판결의 일부로써 동물학대 위반 판결을 받은 자가 일정기간 동물을 소유하거나, 점유하거나 피고의 구역에 동물을 데리고 있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영구적 소유 포기도 포함된다.

### 4) 일리노이주

일리노이주 제729장(범죄) 형법 제5/12-36조에서는 동물학대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 형법 제48-1조 동물싸움 위반 등으로 중죄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출소 후 10년간 맹견을 소유하거나 관리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맹견이 아닌 개는 중성화하지 않으면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144) 17 MRS 1027(6). 보호비용 미납 시 '즉시' 동물을 몰수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다른 몰수절차와 달리 심리 이전이라도 즉시, 그리고 필요적으로 몰수하도록 하고 있다. 김준성 (2022) 논문에서 재인용

### 가) 압수 및 사전 몰수

일리노이 주의 경우에도 메인 주와 유사하게, 동물학대 행위로 인한 유죄선고 이전이라도 그와 별개로 피학대동물을 사전에 몰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1) 행정심판에 의한 몰수

동물보호 특별사법경찰, 농무부 소속 수사관, 수의사 등은 동물보호법 위반행위가 확인되고, 소유자가 이에 대한 구제조치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동물을 반드시 압수하여야 한다. 이때 피학대동물을 압수당한 소유자는 압수로부터 7일 이내에 농무부에 행정심판(administrative hearing)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것이 동물의 이익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될 경우, 심판관은 피학대동물 몰수 결정을 할 수 있다.<sup>145)</sup>

위 몰수 결정은 유죄 선고 시 병과하는 피학대동물의 몰수, 장래 동물 소유 등 제한명령과는 구별된다. 유죄선고와 병과하는 부가처분은 어디까지나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의 일부로서의 성격을 갖지만, 위 몰수 결정 근거규정에는 ‘행정심판 결정은 동물소유자의 동물학대 관련 형사사건의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sup>146)</sup>라고 명시하여 위 몰수 결정이 형사처벌의 일부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 (2) 재판 전 몰수 청구

앞서 소개한 행정심판 절차 외에도, 경찰 등 수사기관이 반려동물<sup>147)</sup> 소유자를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체포하는 경우 학대자가 보관 중인 ‘반려동물’을 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동물보호법위반 형사사건 기소 전이라도 반려동물 압수 후 14일 이내에 법원에 압수된 반려동물의 영구적 소유권 박탈, 즉 몰수를 요청하는 ‘재판 전 몰수 청구’를 할 수 있다. ‘재판 전 몰수 청구’시 피체포자가 동물보호법을 위반하여 동물학대행위를 하였음을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나 입증의 정도는 ‘증거의 우세’(preponderance of evidence)로 충분하다.<sup>148)</sup>

145) 510 ILCS 70/12(a) & (c). 김준성(2022) 논문에서 재인용

146) This decision by the Hearing Officer shall have no effect on the criminal charges that may be filed with the appropriate authorities.

147) 행정심판에 의한 몰수와 달리 검사의 재판 전 몰수청구에 의한 몰수의 대상은 동물 전부가 아니라 반려동물에 한정된다. 김준성(2022) 논문에서 재인용

## 나) 유죄 선고 시 몰수

## (1) 피학대동물의 임의적 몰수

법원은 학대행위자에 대해 유죄를 선고할 때 피학대동물의 몰수를 함께 선고할 수 있다.<sup>149)</sup> 몰수된 피학대동물에 대해서는 입양절차를 진행하거나, 건강 회복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안락사를 시행한다. 유죄를 선고받은 학대행위자 뿐만 아니라 학대행위자의 동거인도 몰수된 피학대 동물의 입양 절차 참여가 금지되고, 동거인(가족구성원)도 피학대 동물을 재양육이 금지된다.

(2) 피학대 반려동물, 동물싸움에 이용된 동물의 필요적 몰수<sup>150)</sup>

일리노이 주에서는 피학대동물이 반려동물이 아닌 경우에는 위 가항과 같이 유죄선고 시 몰수 병과 여부를 임의적으로 결정하나, 피학대동물이 반려동물인 경우에는 유죄선고 시 필요적으로 몰수하여야 한다. 이 또한 일리노이 주 동물보호법에서 반려동물에 대해 보다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부분이라 하겠다.<sup>151)</sup>

그 외에 동물싸움으로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피해동물을 몰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동물싸움이 갖는 상황적 범죄적 특징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동물싸움은 주거지에서 행해지는 동물 학대와 달리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관리자, 장소 제공자, 관객, 후원자 등으로 구성된 조직적인 행위라는 점, 그리고 동물 싸움에 동원되는 동물들은 통상 싸움을 통해 심각한 상처를 입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동물 싸움 이전과 이후에도 심각한 학대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동물 싸움은 도박, 마약, 자금세탁, 불법총기류 밀매, 공무원 부패 등 다른 강력범죄와 연결된 정도도 깊을 뿐만 아니라 동물에 대한 몰수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남아있는 동물들은 지속적으로 동물 싸움에 동원되거나 새로운 동물이 투입될 가능성이 있는 범죄 행위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sup>152)</sup>

148) 510 ILCS 70/3.04(a) 통상 형사사건에서는 검사에게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입증(beyond a reasonable doubt)이 요구되지만, 재판 전 몰수청구에서는 검사에게 민사소송에서 요구되는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preponderance of evidence)의 입증만 요구하는 것인바 입증 책임을 완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준성(2022) 논문에서 재인용

149) 510 ILCS 70/3.04(c) 일반 동물학대, 720 ILCS 5/12-35(f) 동물 대상 성범죄. 김준성(2022) 논문에서 재인용

150) 510 ILCS 70/3.06(a),(c). 김준성(2022) 논문에서 재인용

151) 김준성(2022) 논문에서 재인용

일반적인 학대와 달리 동물싸움은 학대의 고의가 명확하고, 학대 정도 및 피해 개체 수가 상당하며, 유죄 선고 후 동물들을 개선된 환경에서 양육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고, 경제적 목적이 결부되어 있으므로 재범가능성도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할 때 동물싸움에 이용된 동물은 필요적으로 몰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sup>153)</sup>

(3) 성범죄 피해동물 몰수

일리노이 주에서는 다른 동물학대 사건과 달리 성적인 학대의 대상이 되었던 동물에 대해서는 피학대 대상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다른 동물에 대해서도 몰수할 수 있는 규정을 둬으로써, 가해자의 재범을 차단하고 피해 확산을 차단한다.<sup>154)</sup>

(4) 보호비용 담보 미제공에 의한 몰수

메인 주와 유사하게 일리노이 주에서도 압수된 동물의 보호비용을 학대자가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법원은 보호비용을 확보를 위해 학대 행위자에게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고, 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동물에 대한 필요적 몰수가 가능하다.<sup>155)</sup>

다) 유죄선고 시 장래 동물 소유 등 제한

일리노이 주의 동물학대 법의 특이한 점은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학대자 뿐만 아니라 학대 행위자의 동거인 중에서 학대행위를 공모, 교사, 방조한 자, 혹은 학대 행위자의 학대 행위를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던 자<sup>156)</sup> 까지도 동물 소유, 양육, 관리, 보호 제한이 가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sup>157)</sup>

152) Animal Welfare Institute, "Illinois Toughens Dog Fighting Laws", <https://awionline.org/press-releases/illinois-toughens-dog-fighting-laws> (2022. 12. 6. 접속). 김준성(2022) 논문에서 재인용

153) 김준성(2022) 논문에서 재인용

154) 720 ILCS 5/12-35(f).

155) 510 ILCS 70/3.05(c).

156) 510 ILCS 70/3.04(c). 합리적인 기간의 상한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없다. 김준성(2022) 논문에서 재인용

157) 이러한 일리노이의 법률에 관하여 김준성(2022)는 유죄를 선고받은 자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형사재판 선고 효력의 인적 범위를 확장한다는 측면에서 제3자의 기본권 침해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으나, 개인이 동물을 소유, 양육할 권리를 제한 불가능한 권리라고 볼 수 없고 다른 공익과의 비교형량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제한을 할 수 있는 점, 학대행위 당시 피고인과 '동거한' 자 중 동물학대행위를 공모하였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자로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거인이 동물학대행위를 공모하였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 역시 검사에게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을 정도의 엄격한 입증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의

### 5) 테네시

테네시 주의 형법 제39-14. 202 내용에서는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학대행위, 동물싸움, 서비스 동물에 대한 학대, 그리고 동물에 대한 성적 접촉(학대)행위를 한 가해자에 대하여 유죄 판결 시 향후 동물 소유권을 제한하고 있다. 테네시 주의 경우에는 특히나 동물과 성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 종신으로 반려동물 사육이 금지되고, 단순 사육만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동물이 있는 곳에서 거주하거나 소유, 취업까지도 모두 금지된다(39-14-214).

### 6) 플로리다

플로리다 주의 경우 형법 828-122부터 125, 126의 내용을 위반한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행위, 동물싸움, 동물에 대한 성적 접촉을 행한 가해자에게 다른 주와 유사하게 소유하거나 관리, 보호 등을 금지하고 있다. 성적 접촉을 하였을 경우, 모든 동물에 대한 소유, 소지, 양육이 금지되는 통제 명령이 가능하고, 어떠한 동물이 있는 집에서 거주나 동물이 있는 곳에서의 유급 혹은 무급 취직, 봉사활동도 금지된다. 이러한 명령은 유죄판결 이후 5년 동안 적용된다.

### 7) 메릴랜드

메릴랜드 주의 경우 형법 10조 내용에 따라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행위, 동물싸움, 동물에 대한 성적 접촉을 행한 가해자에게 다른 주와 유사하게 소유하거나 관리, 보호 등을 금지하고 있다.

### 8) 캘리포니아

유죄판결 이후 최소 5년 동안 소유, 점유, 유지, 양육, 함께 거주 또는 보호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공공범죄로 규정되고 추가적 형사처분이 내려지며, 소유 금지 기간도 상향 조치된다.

---

동거인이 장래 다른 동물을 취득하여 양육하는 경우 사실상 피고인에 대한 장래 동물 소유 등 제한처분을 무력화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내법에 도입하더라도 위험적인 기본권 침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취했다.

자. 인간과 동물에 대한 폭력성 연계 해석

동물에 대한 폭력성이 인간 자체의 폭력성과 연결되어 있음을 인정하고 부수적인 처벌을 요구하는 주를 살펴보면 그 내용은 1) 동물에 대한 보호명령, 2) 피고인에 대한 정신적인 감정의 필요성, 3) 수의사의 동물학대 보고 의무, 4) 가중처벌 내용으로 정리된다.

첫 번째로, 보호명령은 피고인 또는 미성년이 주인인 경우에는 해당 동물에 대한 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법률이며,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일리노이, 메인, 뉴욕, 네브래스카, 버몬트 주에서 관련 법을 갖고 있다.

두 번째로 동물에 대한 특정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한 정신감정을 요구하는 주는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미네소타, 오레곤, 텍사스 주 등이다.

세 번째로, 아동에 대한 학대 발견 시 의사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법률과 유사하게, 수의사 혹은 카운티 직원들에게 아동과 동물에 대한 학대를 발견 시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한 주들이 있다. 캘리포니아, 미네소타, 오레곤 주가 이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해당 범죄가 인간에 대한 폭력성과 연결되어 있을 때 양형과정에서 구간조정이 가능한 법률이다. 가해자가 이전에 가정폭력으로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곳에서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혹은 가족 구성원이나 타인을 위협하거나 협박하기 위해 동물에 대한 학대를 행했을 경우에는 경범죄에서 중범죄로 상향 조정이 가능한 법률이다. 미네소타와 오레곤 주에서 시행 중이다.

▶▶▶ [표 3-18] 인간과 동물에 대한 폭력성의 연결점을 인정한 대표적 주 법

규정 내용	효과 및 내용	대표적인 주 법률
보호명령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은 청원인, 피고인 또는 미성년이 주인이거나, 소유 또는 보관하는 동물을 보호명령에 포함할 수 있음.	CAL. FAM. CODE § 6320; CONN. GEN. STAT. § 46b-38c(e); 750 ILL. COMP. STAT. 60/214(11.5); ME. REV. STAT. ANN. tit. 19-A § 4007; N.Y. CRIM. PROC. LAW § 530.12; NEV. REV. STAT. § 33.030; TENN. CODE ANN. §§ 36-3-601-602; VT. STAT. ANN. tit. 15 § 1103.
정신감정	동물에 대한 특정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정신적인 감정이 요구된다.	CAL. PENAL CODE § 597(h); 510 ILL. COMP. STAT. 70/3(d), 70/3.01, 70/3.02(c), 70/3.03-1(c); MINN. STAT. § 343.21; OR. REV. STAT. §§ 1167.333-334; TEX. FAM. CODE ANN. § 54.0407.

규정 내용	효과 및 내용	대표적인 주 법률
신고의무	동물과 대인관계 폭력의 연관성을 인정하여, 일부 주에서는 수의사와 카운티 직원들에게 어린이와 동물의 학대를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다른 주에서는 보고가 의무화되지 않을 수 있으나, 보고가 선의로 이루어진 경우 허용될 수 있음 수의사들은 일반적으로 민사 및 형사 면책 특권을 받음	CAL. BUS. & PROF. CODE § 4830.7 (수의사의 중한 학대 보고 의무); CAL. PENAL CODE § 11199 (카운티 직원의 경우 동물학대에 대한합리적 의심시 신고 의무); MISS. CODE ANN. § 73-39-87 (providing civil and criminal immunity for voluntary good faith reporting off suspected animal cruelty); OR. REV. STAT. § 686.442(수의사의 중한학대 보고 의무)
양형상향조정	가해자가 이전에 가정폭력으로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곳에서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또는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협박하기 위해 학대를 저질렀을 때, 경범죄에서 중범죄로 상향.	MINN. STAT. 343.21(9)(g) <sup>158)</sup> OR. REV. STAT. § 167.320(4) <sup>159)</sup>

#### 차. 동물학대자 심리치료 및 교육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단순히 처벌받아야 할 행위로만 보지 않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동물을 줄이고 가해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의 필요성을 법률에 반영한 주들도 존재한다. 미국의 경우 30여 개 주에서 동물학대자에 대해 학대행위에 대한 처벌에 추가적으로 법원은 심리분석이나 정신의학 분석을 받도록 명령하고, 치료, 상담 교육 등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sup>160)</sup>

특히 중한 동물학대 범죄자인 경우나, 동물학대자가 청소년인 경우에는 상당수의 주가 심리분석이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 심리적 측면에서의 치료가 병행되어야 재범이 방지될 수 있음을 명시하는 주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공통적으로 법원에서 부과하는 동물학대자 심리치료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해자 부담이 원칙이다.

158) 협박, 위협, 괴롭힘이 가족이나 구성원에게 두려움을 유발하기 위한 행위일 경우, 타인을 위협하기 위해 학대를 행한 경우 가중처벌 부여

159) 가해자가 이전에 가정폭력이나, 아동에 대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미성년 아동 앞에서 해당 동물학대를 가한 경우 경죄를 중죄로 상향 이동

160) 김지현, 2018. 40쪽.

1) 일리노이

일리노이 주는 주법 제510장(동물) 제70/3조의 소유자 의무위반, 제70/3.01조의 동물학대, 제70/3.02조의 중한 동물학대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해서 법원은 처벌과 함께 심리분석 또는 정신과 진단을 받도록 명령할 수 있고, 그 분석 결과를 고려하여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피고인의 비용으로 일정한 치료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특히 제70/3조(소유자의무), 70/3.01(동물학대), 70/3.02(중한동물학대)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반려동물 호더이거나 청소년인 경우에는 반드시 심리치료를나 정신과 진단을 받도록 명령해야 하고, 그 분석 결과를 고려하여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일정한 치료를 받도록 명령해야 한다.

2) 버몬트

제13편(범죄 및 형사소송) 제353조(b)에 따르면 제352조(동물학대), 제352a(중한 동물학대)로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은 처벌과 더불어 피고인 거주지로부터 합리적 거리 이내에서 동물학대방지 프로그램(animal cruelty prevention program) 또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하거나 심리 상담 및 치료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3) 플로리다

828.12조에서는 중한 동물학대행위로서 동물을 고의로 고문하거나 동물에게 심한 고통을 주어 다치게 하거나 죽인 자에게는 3,500달러의 의무적 벌금(mandatory fine)과 더불어 심리 상담이나 분노조절 치료 프로그램을 받도록 한다.

4) 캘리포니아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법원은 행동장애를 평가하고 치료받도록 자비로 상담 비용을 지불하게 하고, 치료 완료를 명령할 수 있다.

5) 메릴랜드

동물싸움에 관여한 경우 동물은 몰수되고, 피고인은 동물 소유 또는 점유, 거주가 금지되는 동시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심리상담 명령을 선고하고 그 비용을 피고인이

지불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 카. 동물학대자 신상등록 제도

미국 내에서 동물학대자에 대해 가해지는 처분 중의 하나로 소개할 만한 내용은 동물학대자에 대한 신상등록 및 공개 제도이다. 이러한 동물학대자 신상등록 제도는 동물학대자에 대한 접근 가능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에 주요 목적을 둔다. 동물 복지 기관, 형사사법기관, 연구자와 대중들에게 그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동물학대자 신상등록 및 공개제도는 현재 미국 전역은 물론 전세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성범죄자 신상등록 제도와 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갖고 있다. 현재는 부시 대통령 정부의 “Adam Walsh Protection and Safety Act 2006”에 따라 국가의 관리 하에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가 관리되는 현 제도보다는, 과거 아동대상 성추행 범죄자에 대한 명단과 신상을 공개했던 “Dru Sjodin National Sex Offender Public Website (NSOPW)” (Dru 법)의 모습과 유사하다.

동물학대자에 대한 신상등록 및 공개 제도는 고지 자체로써, 처벌로써 효과를 갖는 것이 아니라 재범방지에 더욱 가치를 두고 있다. 성범죄자 신상등록 제도가 그러하였듯이 단순히 신상등록 제도와 고지 제도는 범죄자에 대한 특별억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동물학대자의 신상, 주소, 행위, 소유 금지 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는 명단 공개를 통해 법집행기관들은 물론이거니와 동물 보호소, 입양기관, 그리고 지역사회 주민들도 입양자의 동물학대 전력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피해를 막는데 일조할 수 있는 제도이다.

현재 신상등록 제도는 가해자의 사진과 함께, 이름과 추가적 정보를 수집하며 사회 보장번호, 운전면허정보, 다른 주 혹은 연방신원번호는 포함하지 않는다. 첫 번째 행위에 대하여 테네시는 2년 동안 자료를 보관하며 최근 범죄 기준으로 5년 동안 정보를 공개한다.

동물학대자에 대한 신상등록 제도에 대한 미국 사회의 우려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sup>161)</sup>

161) Nowicki, 2010

- 1) 동물 복지와 건강을 증진할 수 있어야 한다.
- 2) 가해자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행동을 추적할 수 있어야 하며, 인간에 대한 폭력으로 연결을 주시해야 한다.
- 3) 폭력 행위로써 잔인한 행위에 대한 패턴 분석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 4) 형사사법기관, 동물 복지집단 그리고 동물 구조 집단에 동물학대자 판단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 5) 통계적 데이터 수집하고 그 맥락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 6) 동물학대자에게 그들의 행위가 승인되는 행위가 아니라는 메시지가 전달되어야 한다.
- 7) 잠재적 위해로부터의 취약한 집단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각 주의 카운티 수준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는 이러한 동물학대자 신상등록 제도는 정확한 비용은 아니지만 1년에 유지 비용이 5억 정도로 산정되고 있으며, 운영하고 있는 주에서는 해당 범죄자에게 \$500의 비용을 청구하고 있다.

#### 1) 테네시 주의 신상등록 제도

2008년 테네시 동물학대자 등록, 추적, 확인법(Tennessee Animal Abuser Registration, Tracking, and Verification Act of 2008)이 만들어졌고, 2016년 1월 1일에는 테네시동물학대자등록법(Tennessee Animal Abuser Registration Act)이라는 동물학대 범죄자에 대한 신상등록 제도를 도입하였다.

모든 동물에 대한 범죄행위자에 대한 신상이 등록되는 것은 아니고, 1) 동물에 대한 중한 학대, 2) 동물싸움, 2) 동물에 대한 성적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 소유권과 접촉을 금지하면서 신상을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테네시는 주 단위로는 신상등록 제도를 시행한 첫 번째 주이다. 이전에는 각 주의 카운티 단위에서 조례로써 동물학대자에 대한 신상등록 제도를 운영하였고, 이에 대한 기대감이나 체계성이 크지 않았으나, 테네시의 경우에는 테네시 수사국(TBI)에서 정보 등록은 물론 관리를 담당하고 있어 다른 주에 미치는 영향력도 상당하다. 2021년 현재, 최소 7개의 주에서 동물학대 범죄자 신상등록 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sup>162)</sup>

### ▶▶▶ [표 3-19] 테네시 주 동물학대 등록 및 공개 사이트

Tennessee Animal Abuse Registry	
<p><b>Disclaimer</b></p> <p>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registry is provided to the Tennessee Bureau of Investigation by the appropriate clerk in each county. The TBI does not independently verify the convictions, and cannot guarantee their accuracy. Therefore, this information should be regarded as a resource suggesting the need for further inquiry.</p> <p><b>Contact Information</b></p> <p>If you have questions about the Tennessee Animal Abuse Registry, please email TBI.Media@tn.gov.</p> <p>Clerks who need to submit qualifying judgments should mail them to:</p> <p>Tennessee Animal Abuse Registry C/O Professional Standards Unit Tennessee Bureau of Investigation 901 R.S. Oaks Boulevard Nashville, TN 37216</p>	<p>COUNTY: DAVIDSON</p> <p>OFFENSE: AGGRAVATED CRUELTY TO ANIMALS CONVICTION DATE: 4-14-22 EXPIRATION DATE: 4-14-24</p> <p>NAME: DANIELLE ELIZABETH DOWNEY DOB: 5-8-1989 ADDRESS: 6312 HANSLEY DRIVE, CHATTANOOGA, TN 37416 COUNTY: HAMILTON</p> <p>OFFENSE: AGGRAVATED CRUELTY TO ANIMALS CONVICTION DATE: 1-27-2022 EXPIRATION DATE: 1-27-2024</p> <p>NAME: LINDA GREEN DOB: 2-11-1959 ADDRESS: 472 JOSEPHINE STREET, MEMPHIS, TN 38111 COUNTY: SHELBY</p> <p>OFFENSE: AGGRAVATED CRUELTY TO ANIMALS (9 COUNTS) CONVICTION DATE: 1-20-2022 EXPIRATION DATE: 1-20-2024</p> <p>NAME: HECTOR MARTINEZ DOB: 1-18-1984 ADDRESS: 4030 ELLISTON ROAD, MEMPHIS, TN 38111 COUNTY: SHELBY</p> <p>OFFENSE: COCK AND ANIMAL FIGHTING CONVICTION DATE: 1-7-2022 EXPIRATION DATE: 1-7-2024</p> <p>NAME: CANDACE R. DEMONBREUN DOB: 6-22-1983 ADDRESS: 5083 RAWLINGS ROAD, JOELTON, TN 37080 COUNTY: DAVIDSON</p> <p>OFFENSE: AGGRAVATED CRUELTY TO ANIMALS (2 COUNTS) CONVICTION DATE: 12-8-2021 EXPIRATION DATE: 12-8-2023</p>
<p>NAME: ELAINE ADAIR SWINGLE DOB: 12-5-1973 ADDRESS: HOMELESS, SPARTA, TN 38583 COUNTY: WHITE</p> <p>OFFENSE: AGGRAVATED CRUELTY TO ANIMALS (8 COUNTS) CONVICTION DATE: 11-10-22 EXPIRATION DATE: 11-10-24</p> <p>NAME: NATHAN HASKING DOB: 2-18-1981 ADDRESS: 20 JONES CIRCLE, OLD HICKORY, TN 37138 COUNTY: DAVIDSON</p> <p>OFFENSE: AGGRAVATED CRUELTY TO ANIMALS CONVICTION DATE: 5-26-22 EXPIRATION DATE: 5-26-24</p> <p>NAME: TORRIE SHACK DOB: 1-24-1989 ADDRESS: 1301 LONGHUNTER LANE, NASHVILLE, TN 37217</p>	

출처: <https://www.tn.gov/tbi/tennessee-animal-abuse-registry.html>

## 2) 뉴욕 주 카운티의 동물학대자 신상등록 제도

2010년 뉴욕의 Suffolk 카운티에서는 미국 내 처음으로 동물학대자등록법(animal abuser registry law)을 제정하였다. 이후 2011년 Rockland 카운티와 Albany 카운티에서도 학대자 등록법을 제정하였고, 2014년에는 Nassau 카운티와 New York City<sup>163)</sup>에서도 같은 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카운티 수준에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동물학대자 신상등록 제도는 행정법 혹은

- 162) Arizona - SB 1161  
Connecticut - HB 5205  
New York - S2305A  
Hawaii - SB 0528  
Oregon - HB 2394  
Pennsylvania - HB 0265 and SB 0320  
South Carolina - HB 3045  
Vermont - S 0009  
Virginia - HB 2242

163) New York City Administrative Code > Title 17.Chapter 16 - Animal Abuse Registration Act

조례에서 그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가장 먼저 신상등록 제도를 시행한 Suffolk 카운티의 경우, 이 제도의 입법목적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sup>164)</sup>

“동물학대가 미국에서 매년 수천마리의 동물학대를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본다. 뉴욕 주가 동물에 대한 잔혹한 대우를 범죄로 규정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Suffolk 카운티와 주 전역에서 동물학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입법부는 통계적으로 동물을 학대하는 개인이 인간에 대한 폭력을 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더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입법부는 또한 동물을 학대하는 개인과 가정폭력 사건을 연결하는 강력한 상관 관계가 확립되었다고 판단한다. 동물학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개인이 주 전체 신상등록부를 구축하기 위한 법안이 다른 주(캘리포니아, 테네시) 의회에 계류중인 것을 확인했다. 유사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Suffolk 카운티의 주민들에게 최선의 이익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따라서 이 법률의 목적은 동물학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Suffolk 카운티에 거주하는 개인들의 온라인 등록부를 구축하는 것이다.”

뉴욕 주의 형법과 농업및시장법(Agriculture and Markets Law, AML)에서는 중한 동물학대, 동물싸움, 성적 학대로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하여 소유권을 제한하는 명령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신상등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카운티와 시티의 경우에는 형법은 물론 농업및시장법(AML)에서 규정하는 전반적인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신상을 등록하고 있다.

동물학대자가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범죄자의 1) 이름과 가명, 2) 생년월일, 3) 성별, 인종, 키, 몸무게, 눈색깔, 4) 운전면허 혹은 신분증 번호, 5) 주소, 6) 범죄행위, 유죄 판결 받은 날, 선고된 양형 결과와 7) 얼굴 사진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주소가 변경될 때마다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 연간 등록비로써 일정 부분<sup>165)</sup>은 범죄자에게 부과된다.

뉴욕 주에서 대표적으로 신상등록 제도를 운영하는 카운티 및 도시인 Albany, Nassau, Rockland 카운티와 뉴욕에서는 특정한 동물 판매자, 보호소에게 판매하거나 동물을 사람에게 인도할 때 동물학대자 명단을 체크하도록 하고 있고, 명단에 올라간

164) Suffol County Code Part II. Regulatory Local laws/ Animals and Insect/ Article IV. Animal Abuse Offenders Registry.§299-25 Legislative intent.

165) \$50(Albany, Rockland 및 Suffolk 카운티) 또는 \$100(Nassau 카운티)

사람에게는 동물 인도가 금지된다.

다음 표는 뉴욕에서 동물학대자 신상등록 제도를 운영하는 카운티의 등록 제도를 1) 가해자에 대한 정의 2) 등록 의무 기간, 3) 등록실패 시 처벌 기준, 4) 등록 제도 관리의 책임권한의 내용을 비교한 것이다.

의무 등록기간이 카운티마다 상이하고, Albany 카운티의 경우 첫 등록은 10년 의무 등록기간을 가지며, 재범이 있을 경우 평생 신상이 등록되고 공개된다. 이렇게 신상이 등록되는 동물학대자가 신상정보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위반하였을 경우 A급 경죄로 최대 1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보통 카운티의 Sheriff가 등록 제도의 책임을 갖고 있지만, 동물학대방지 협회 등이 이러한 등록 제도를 관리하는 책임을 동시에 맡기도 한다.

▶▶▶ [표 3-20] Albany, Nassau, Rockland, Suffolk 카운티 및 New York시 의 동물학대자 등록 법 소개

	Albany	Nassau	Rockland	Suffolk	New York
가해자	18세 이상의 자가 동물학대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	18세 이상의 자가 동물학대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	18세 이상의 자가 동물학대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	18세 이상의 자가 동물학대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	18세 이상의 자가 동물학대로 유죄판결 받은 자
의무 등록기간	10년 이후 후속 범죄 있을시 평생	5년 재범 시 최근 범죄 기준 10년	4년 재범 시 최근 범죄 기준 추가	5년 재범 시 최근 범죄 기준 10년	5년 재범 시 최근범죄 기준 10년
등록 실패시 처벌	A급 경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이하 벌금(모두)	A급 경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이하 벌금(모두)	A급 경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이하 벌금(모두)	A급 경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이하 벌금(모두)	A급 경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이하 벌금(모두)
관리 책임	Albany County Sheriff 등록 제도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Humane Society	Nassau County 경찰위원회(동물학대 예방과 신상등록 제도 관리를 위해 설립된 카운티 조직)	Rockland county Sheriff's Department	Suffolk County 경찰 위원회 (동물학대 예방과 신상등록 제도 관리를 위해 설립된 카운티 조직)	
동물 판매자의 의무와 처벌	동물보호소, 동물 판매자, 또는 동물을 매수하거나 교환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는 사람들은 모두	동물보호소, 동물 판매자는 1) 동물 구매자와 입양자에게 인도전에 반드시 등록명단 체크	동물보호소, 동물 판매자, 동물학대 방지 협회는 1) 동물 구매자와 입양자에게 인도전에		동물학대 명단에 있는 사람에게 동물을 양도하거나 교환금지.

	Albany	Nassau	Rockland	Suffolk	New York
	1) 동물을 사람에게 인도하기 전에 반드시 등록명단 체크 2) 등록된 범죄자에게 인도 시 \$5,000 벌금	2) 등록된 가해자임을 알고 매도, 제공, 배달, 금지 3) 첫 위반 시 \$500, 두번째 위반 시 \$1,000, 세번째 이상 \$1,500	반드시 등록명단 체크 2) 등록된 가해자임을 알고 매도, 제공, 배달, 금지		

뉴욕 주의 경우에는 이상의 5개의 카운티나 도시를 포함하여 23개의 카운티에서 동물학대 신상등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뉴욕 주의 동물학대 신상등록 제도 운영 카운티는 다음 표와 같다.

▶▶▶ [표 3-21] 뉴욕 주의 신상등록 제도 운영 카운티

신상등록 제도 운영
Albany County
Bronx County (The Bronx)
Broome County
Cattaraugus County
Chautauqua County
Dutchess County
Greene County
Kings County (Brooklyn)
Nassau County
New York County (Manhattan)
Niagara County
Oneida County
Onondaga County
Orange County
Putnam County
Queens County (Queens)
Rensselaer County
Richmond County (Staten Island)
Rockland County
Suffolk County
Sullivan County
Ulster County
Westchester County

출처: <https://www.nyshumane.org/animal-abuser-registries-nys/>

## 제4절 | 기타 영미법계 법률

### 1. 영국

#### 가. 개관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처음으로 동물보호의 의무를 법률로 명시한 나라이다. 1822년 가축에 대한 학대와 부당한 처우를 막기 위한 법이 의회를 통과하였다. 일반적인 동물보호법은 1911년 “Protection of Animals Act”로 제정된 이후 지속적인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sup>166)</sup>

#### 나. 관련 법률

##### 1) 동물복지법2006 (Animal Welfare Act, 2006)

동물복지법은 동물보호법을 대체하는 법으로 반려동물학대에 대한 여러 법률을 정비하여 2006년에 제정되어 2007년부터 시행되었다.<sup>167)</sup>

기존의 동물공연법, 애완동물법, 동물유기법, 투계법 등의 동물 관련 법들을 통합하여 만든 법이지만, 농장동물, 실험동물, 말 또는 그레이하운드와 같이 경주에 사용되는 동물, 동물의 서커스 공연에 대한 규정은 제외되었다.

##### 가) 동물복지법의 주요 규정

동물복지법은 동물 소유주나 관리인이 동물에게 생존에 적합한 환경과 장소를 제공해야 하고, 음식을 제공해야 하고, 본성에 맞는 정상적인 행동 패턴을 유지하도록 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다른 동물과 함께 또는 분리해야 하며, 아픔, 상해, 고통과 질병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동물의 복지 욕구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동물 소유가 금지되고, 벌금과 최대 12개월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2021년 개정된 동물복지법은 중한 동물학대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고, 법정형을

166) 장은혜, “동물학대행위의 범위 및 처벌수위 분석”, 한국법제연구원, 연구결과보고서, 2018.

167) 장은혜, “동물학대행위의 범위 및 처벌수위 분석”, 한국법제연구원, 연구결과보고서, 2018, 80쪽.

상향 조정하였다. 특히,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행위, 절단,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의 꼬리를 절단하거나 독성물질을 주게 될 경우, 그리고 동물싸움 위반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과 Level 5의 벌금을 을 선고하게 되었다. 영국에서 level 5에 속하는 벌금은 최고 금액에 한도가 없다.<sup>168)</sup>

▶▶ [표 3-22] 영국 동물복지법의 처벌조항 처벌 수준

조항	규정	처벌	기타
4	불필요한 고통	최대 5년 징역형 (약식재판 시1년)	소유권 박탈 자격 박탈
5	절단		
6	개꼬리 절단		
7	독성물질 투여		
8	동물싸움	최대 51주 이내 징역형 또는 Level 5 벌금	소유권 박탈 자격 박탈
9	동물 복지 증진 책임 위반		
13(6)	동물관련 자격 및 등록 활동		
34(9)	자격 박탈자의 위반		

동물에 대한 중한 위해가 가해졌을 경우 법원은 소유권을 박탈하고 동물을 몰수할 수 있게 하였다. 불필요한 고통, 절단, 개꼬리 절단, 독성물질 투여 그리고 동물싸움의 경우에는 소유주는 소유권이 박탈되고 자동으로 동물이 몰수되며, 가해자가 동물 관련 자격증을 갖고 있었을 경우 그 자격 역시도 박탈된다.

동물복지 증진의 책임위반(적절한 환경과 장소, 음식제공 등)에 대해서는 최대 51주(1년)이하의 형이 선고되지만 소유권이 박탈되므로 동물 소유나 양육은 불가능하다. 자격이 박탈된 자가 동물에 대한 소유와 관리를 행할 경우 추가로 최대 51주(1년)의 형이 부과될 수 있다.

동물에 대한 성적 학대는 2016년 처벌 기준이 마련되었고 동물에 대한 성적 학대자는 소유와 거주가 금지된다.

168) Level 1: £200, Level 2: £500, Level: 3:£1000, Level4: £2500, Level 5: 무한정(영국 양형위원회), <https://www.sentencingcouncil.org.uk/explanatory-material/magistrates-court/item/fines-and-financial-orders/approach-to-the-assessment-of-fines-2/9-maximum-fines/>.

## 나) 동물 소유 연령

동물복지법은 동물의 동의 없이 반려 동물을 사거나 상으로 받을 수 있는 최저 연령을 16세로 조정하였다. 스코틀랜드의 동물보건과복지법 2006은 포상 혹은 경품으로 동물을 주는 것을 완전히 금지시켰다.

## 2. 캐나다

### 가. 개관

미국 대비 캐나다의 경우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 수준이나 처벌 규정이 촘촘하게 마련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캐나다 형법에서 전반적인 내용을 규율하고 있고, 각 주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조율하고 있으나, 학대자 신상등록 제도와 같은 공격적인 제도는 아직 미시행 중이다.

### 나. 관련 법률

캐나다의 경우 형법 제11부 특정재산에 대한 고의적이고 금지된 행위에서 동물에 대한 학대 금지를 제시하고 있다.

▶▶▶ [표 3-23] 캐나다 동물학대 금지 규정 및 처벌 수준

조항	규정	처벌	기타
444	소떼에게 상해나 위해 - 소떼를 죽이거나, 불구로 만들거나, 상처를 입히거나, 독극물을 사용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약식재판일 경우 최대 18개월 이하의 징역, \$10,000벌금)	
445.	다른 동물에 대한 상해나 위해 (a) 합법적인 목적을 위해 기르는 개, 새 또는 동물을 죽이거나, 불구로 만들거나, 상처를 입히거나, 독극물을 사용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또는 (b) 합법적인 목적으로 사육되는 개, 새 또는 동물이 쉽게 섭취할 수 있는 위치에 독극물을 두는 행위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약식재판일 경우 최대 18개월 이하의 징역, \$10,000벌금)	
445.01	법집행 업무를 수행하는 특정동물을 살해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해당 동물이 살해된 경우 최소 6개월의 징역)	

조항	규정	처벌	기타
445.1	불필요한 고통 (a) 동물이나 새에게 고의로 불필요한 고통, 괴로움 또는 상해를 유발하거나 소유자로서 고의적으로 허용하는 행위 동물싸움에 있어 어떤 방식으로든 장려, 지원, 홍보, 주선, 지원, 금전 수령 또는 참여 (i) 동물이나 새의 싸움이나 미끼, 또는 (ii) (i)호의 목적을 위한 동물이나 새의 훈련, 운송 또는 사육	5년 이하의 징역	
446	(a) 동물이나 새를 운전하거나 운반하는 동안 고의적인 방치로 인해 동물이나 새가 손상되거나 상해를 입는 경우 또는 (b) 가축, 새, 동물 또는 포로 상태에 있는 자연 야생 조류의 소유자 또는 보호 또는 통제권을 가진 사람이 고의로 방치하거나 적절한 물, 피난처 및 관리,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160	성적 잔인함 성적인 목적으로 동물과 접촉하는 것	5년 이하의 징역	5년 소유 및 거주 금지

#### 다. 동물학대자 소유 금지

캐나다에서도 소떼에 대한 위해 및 상해, 일반 다른 동물에 대한 위해 및 상해 행위, 동물에 대한 불필요한 고통주기, 동물에 대한 유기 방임으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간 동안 피고인이 동물이나 새를 소유, 양육 또는 통제하거나 동일한 거주지에서 거주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sup>169)</sup> 단, 두 번째 또는 후속 위반의 경우, 최소 5년 동안 소유와 거주를 금지한다.

#### 라. 동물학대자 신상등록 제도

현재 캐나다에서는 동물학대자 신상등록 관련 법은 제정되지 않았으나, 해당 내용은 정부에 청원이 올라가는 내용 중의 하나이다.

169) 447.1 (1)

## 제 4 장

동물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

# 실효성 있는 보호조치를 위한 유사제도 분석



## 제4장

# 실효성 있는 보호조치를 위한 유사제도 분석

“입법부는 통계적으로 동물을 학대하는 개인이 인간에 대한 폭력을 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더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입법부는 또한 동물을 학대하는 개인과 가정 폭력 사건을 연결하는 강력한 상관관계가 확립되었다고 판단한다.”

-Suffolk 카운티 신상등록 제도 입법 취지

이렇듯 동물을 향하고 있는 폭력은 피해자가 존재하는 학대이다. 그 행위가 누구를 겨누고 있으며, 피해자가 어떠한 법적 자격을 갖추었는가를 우선적으로 따지기 이전에 행위의 피해자를 어떻게 구조하고 보호할 수 있는가, 추가적인 피해를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것이 더욱 인도적이고 사회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동물학대와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와와의 연관성은 국외에서는 꾸준히 지적되어왔다. 미국의 경우 가정이라는 성(castle)을 들여다보니 가정폭력과 성폭력, 아동학대가 존재하였고, 동시에 그 취약한 가족구성원이 돌보는 동물들 역시도 피해를 받고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즉, 동물학대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동물학대 가해자가 과거 가정폭력의 피해자였다는 점, 동물학대가 가정폭력의 일부분으로써 일어나고 있다는 점, 동물학대 피해자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발견과 연결된다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그렇다면 가정폭력과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사회적 개입의 모습을 통해 동물학대 가해자에 대한 사회적 규제의 모습을 그려보는 것과 이들 피해자에 대한 보호제도를 제안하는 것은 충분히 의미 있는 작업이다. 본 장에서는 특히 학대 피해 동물에 대한 사회적 개입의 모습을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보호제도를 통해 조명해보도록 한다.

## 제1절 | 아동학대와 동물학대

### 1. 아동학대 개념과 피해 특징

#### 가. 아동학대 개념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제3조 제7호)으로 정의하고 있다. 물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와 형법상 처벌 가능한 행위는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가해행위를 많이 규율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체벌이나 훈육이라 할지라도 아동의 신체와 정신, 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경우에는 학대로 보고 있다.

#### 나. 아동학대 범죄와 동물학대 범죄의 유사점

##### 1) 발견의 어려움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2021년 한해 아동학대 사건의 가해자 중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집단은 부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사건이 가정에서 발생하는 경우 발각이 쉽지 않으며, 제3자가 이를 인지하더라도 신고하기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아동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에 대한 자료 집계와 통계 분석을 통해 매년 아동학대 비율과 사례를 분석하고 있지만 동물의 경우에는 출생에 대한 신고도 없을 뿐더러 학대행위에 대한 통계 집계가 전무한 상황으로 학대에 대한 파악이 쉽지 않다.

##### 2) 수사기관의 소극적 대응 및 증거수집의 어려움

아동학대의 경우 아동 스스로가 학대의 피해자임을 인지하고 외부기관에 신고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학대 정황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학대행위자에 의한 행위였음을 증명해내는 과정이 성인 범죄 대비 쉽지 않다. 사건이 신고된다 하더라도 수사

재판에서의 아동의 진술능력과 증거능력에 대한 논의와 실제 학대로 인한 피해 여부도 첨예하게 대립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 경찰의 소극적 개입이 문제시되기도 하였고 신고의무자를 두는 정책이 마련되기도 하였다.

동물의 경우에는 언어소통이 불가해 피해 여부에 대한 진술능력이 없으며, 구조자나 신고자가 이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상당히 크다. 가해자가 동물의 소유주인 경우에도 그 상관성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타인일 경우, 동물싸움과 같이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질 때에는 더욱 수사의 어려움이 더욱 크다. 이러한 어려움은 결국 경찰의 소극적 수사로 연결되어 법은 있지만 처벌받는 가해자가 없는 사회의 모습을 낳는다.

### 3) 사회적 인식

2021년 1월 26일 민법 제915조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징계권 조항이 삭제되었다. 아동에 대한 체벌이 더 이상 훈육이 아니며, 훈육을 위해서는 학대적 방식이 아닌 교육적 방식이 동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징계권 삭제에도 사회적 인식은 체벌금지법안에 대해 무지하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육 과정상 체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도 하다.<sup>170)</sup> 또한 아이를 부모의 소유의 대상으로 여기는 관점 역시도 이러한 아동에 대한 부모의 학대를 방치하게 만들기도 한다.

실제 동물학대 사건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이 동일하게 나타난다. 민법에서는 여전히 동물을 물건으로 보고 있으며, 재산권, 소유권의 행사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물에 대한 학대의 문제를 소유권을 넘어서 비인간인격권의 문제로 넘어가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 4) 학대자와 피해자의 즉각적 분리필요성

아동학대가 발생하였을 경우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하는 아동의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가해자와의 즉각적인 분리가 최우선으로 작동해야 한다. 아동학대 피해자가 안전하게 머물 곳이 필요하고, 치료가 필요하다면 치료를 받을 수

170)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징계권 삭제 100일을 맞아 진행한 인식조사(‘민법 제915조(징계권) 조항 삭제’ 그 이후)

있는 의료시스템이 작동해야 하는 문제이다. 이를 위해 현재 아동에 대한 응급조치와 긴급입시조치를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격리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동물학대가 발생한 경우, 소유주가 학대자인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투견과 같은 동물학대 현장에서 피학대 동물의 보호 문제가 동일하게 발생한다. 투견 현장일 경우에는 동물이 즉각적으로 분리되지 않을 때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추가적인 투견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학대의 재발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와 격리 및 분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해자는 자신의 투견 관여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피학대 동물을 살해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동물학대 현장에서도 아동학대 현장에서 적용되는 응급조치에 해당하는 “격리”, “보호시설 인도”가 현장에서 적용되어야 한다.

## 2. 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적 작용

### 가. 처벌 및 보호사건처분

#### 1) 처벌 병과 규정 및 친권 상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 내용을 살펴보면 아동학대에 대한 범죄는 최대 사형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아동복지 시설의 종사자 등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해 아동학대를 한 경우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받는다. 아동학대 가해자에게 부여되는 처벌에 관한 특례에서 유심히 살펴볼 내용 중의 하나는 형벌에 부과되는 수강명령 등의 병과 규정이다.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유죄판결 시 200시간 이내의 수강명령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집행유예 선고 시 수강명령을 병과하고, 실형 선고 시 이수명령이 선고가능하다. 그리고 이러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1) 아동학대 행동의 진단 및 상담, 2) 보호자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게 하는 교육, 3) 아동학대행위자의 재범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의 내용을 담는다.

그 이외에도 처벌의 규정은 가해자가 피해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에는 친권 상실 또는 후견인 변경신청을 하도록 검사에게 의무를 부여하였다.

▶▶ [표 4-1] 아동학대 범죄 처벌 특례

처분 내용		집행유예 선고 시	실형 선고 시	보호처분시
수감명령	아동학대 행위의 진단 및 상담, 보호자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게 하는 교육, 아동학대행위자의 재범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		○
이수명령			○	○
보호관찰		○	○	○
친권상실		○	○	○
감호위탁				○

## 2) 보호사건과 보호처분

아동학대 사건을 보호사건으로 결정할 경우, 판사는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제36조에 근거하여 접근금지 명령,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 제한 또는 정지를 신청함과 동시에, 보호관찰법에 따라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관찰 병과가 가능하다. 또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서의 감호위탁과 의료기관에의 치료 위탁, 아동보호기관이나 상담소 등에 상담위탁이 가능하다.

이러한 보호처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법원에 의한 보호처분 결정시 가정보호사 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 소속 직원이 집행한다. 집행 담당자는 보호처분 상황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학대행위자의 보호처분 이행을 관리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아동학대처벌법 제38조 ②~④항)

법원이 내린 처분에 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이행을 관리하고 조치를 취해야하는 항목은 2020년 3월에 신설된 조항으로써 사법부와 행정부의 협조 의무와 함께 지역사회 내에서의 관리 책임을 보여주는 항목이다.

### 나. 처리절차

#### 1) 현장 피해자에 대한 조치

자신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능력이 안되는 아동에 대한 학대가 발생하였을 때, 아동

학대처벌법에서는 아동학대 현장에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로서 응급조치, 긴급 임시조치, 임시조치 장치를 마련하였다. 이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 위험이 급박하거나 현저할 경우 아동과 가해자를 격리하는 응급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응급조치 이후에도 재발 우려가 있을 경우, 긴급임시조치로써 가해자에게 퇴거명령, 접근금지명령이 현장 경찰의 재량으로 명령 가능하다. 이후 법원에 청구를 통하여 추가적 임시조치 역시 가능한데, 이 임시조치는 퇴거명령, 접근금지 뿐만 아니라 친권제한, 아동 교육 위탁, 요양시설 위탁과 함께 유치장이나 구치소 구금이 가능하다.

» [표 4-2] 응급조치와 임시조치 비교

구분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
근거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	아동학대처벌법 제13조	아동학대처벌법 제19조
주체	경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경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경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요건	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응급조치 이후 아동학대 재발 우려 있고 긴급을 요할 때	학대범죄 조사 심리 또는 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치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아동학대범죄행위의 제지</li> <li>2.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 아동 등으로부터 격리</li> <li>3. 피해아동 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li> <li>4.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 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피해아동 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li> <li>2. 피해아동 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 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li> <li>3. 피해아동 등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피해아동 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li> <li>2. 피해아동 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 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li> <li>3. 피해아동 등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li> <li>4.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li> <li>5.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li> <li>6.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 시설에의 위탁</li> <li>7.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li> </ol>

그러나 이러한 응급조치가 요건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아동에 대한 일시 보호제도로써, 즉각 분리 제도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형사사법 기관의 작동에 의한 처벌 조항이라기보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주체가 되어 운영되는 제도이다.

기존 응급조치 보호기간이 72시간으로 짧고, 학대 피해가 확인되지 않으면 분리보호가 어려웠던 응급조치의 한계를 보완하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써 아동복지법 제15조 제6항에 근거하여 아동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즉각 분리는 1년에 2차례 이상 학대 신고가 접수된 사례 가운데 실제 피해가 의심되거나 재학대 우려가 있을 때 아동 동의를 받아 실시된다. 학대 신고가 1차례만 접수됐더라도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판단에 따라 분리가 가능하다. 즉각 분리 기간은 7일로 이 기간 동안 지자체가 추가 조사, 아동 건강 점검 등을 실시해 학대 여부를 판단한다. 이 제도는 2021년 3월 20일부터 시행되었는데,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시행 1년 동안 즉각 분리 제도 실적을 점검한 결과, 즉각 분리 이후 추가 조사 등을 통해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경우는 982건(94.2%), 아동학대가 아닌 일반사례는 61건(5.8%)이었다.<sup>17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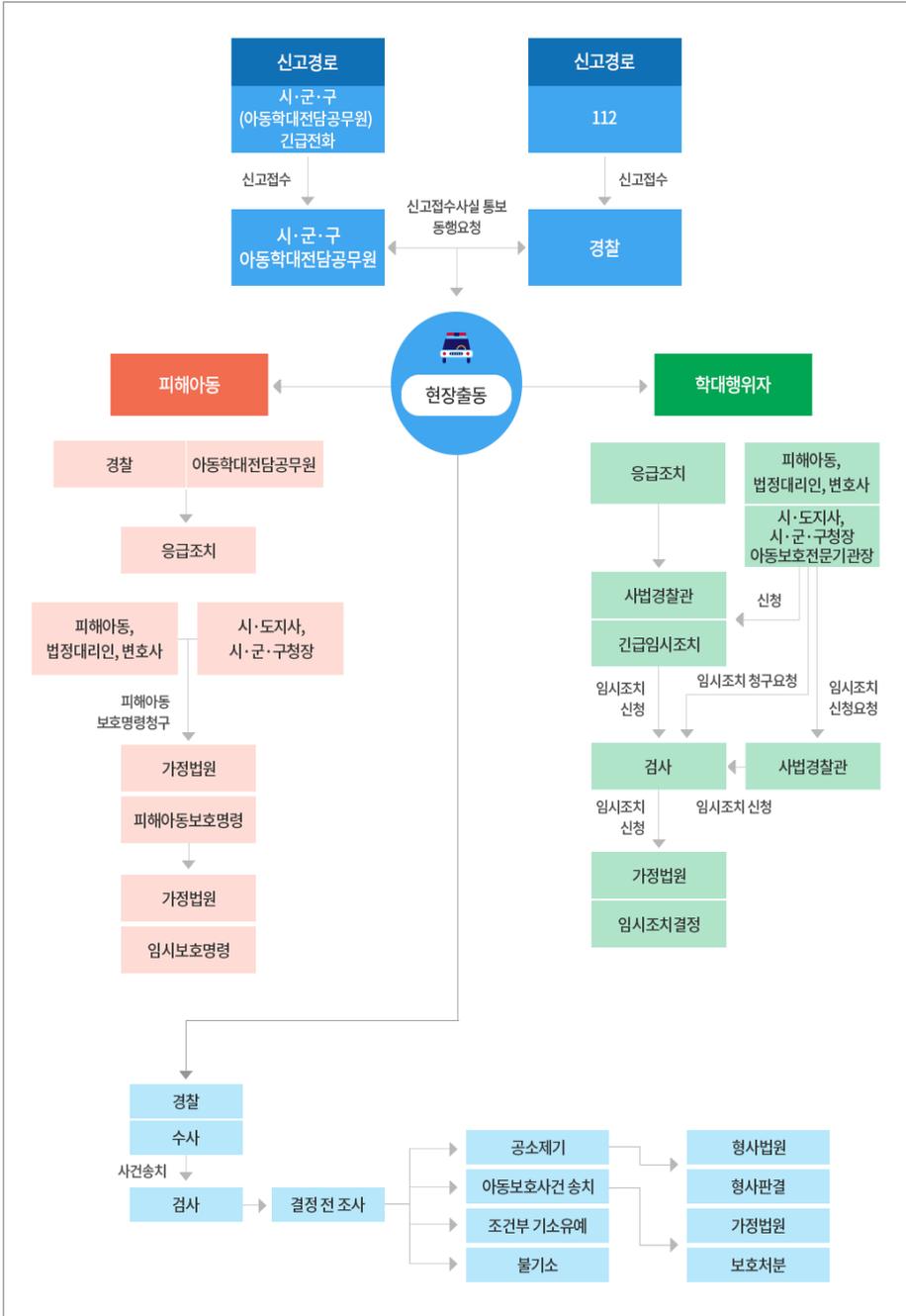
#### ▶▶▶ [표 4-3] 응급조치와 즉각 분리 제도 비교

구분	응급조치	즉각 분리 제도
근거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	아동복지법 제15조 제6항
주체	경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요건	학대범죄 현장 또는 학대 현장 이외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등 응급조치 요건 충족 시	응급조치에 이르지 않는 사안으로 재학대 우려, 면밀한 조사 필요 등 즉각 분리 요건 충족 시
기간	72시간 이내 * 공휴일·토요일 포함시 48시간 연장할 수 있음 * 임시조치가 청구된 경우 법원 결정시까지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출처: 보건복지부 2022.3.29. 보도자료에서 인용

171)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2.03.29.) “즉각 분리1년, 학대 피해 아동들의 보다 안전한 보호 위해 노력한다!”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70808#:~:text=%EC%A6%89%EA%B0%81%EB%B6%84%EB%A6%AC%EC%A0%9C%EB%8F%84%EB%8A%94%20%EA%B8%B0%EC%A1%B4,%EB%B3%B4%ED%98%B8%ED%95%98%EA%B8%B0%20%EC%9C%84%ED%95%9C%20%EC%A0%9C%EB%8F%84%EC%9D%B4%EB%8B%A4.](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70808#:~:text=%EC%A6%89%EA%B0%81%EB%B6%84%EB%A6%AC%EC%A0%9C%EB%8F%84%EB%8A%94%20%EA%B8%B0%EC%A1%B4,%EB%B3%B4%ED%98%B8%ED%95%98%EA%B8%B0%20%EC%9C%84%ED%95%9C%20%EC%A0%9C%EB%8F%84%EC%9D%B4%EB%8B%A4.))

▶▶ [그림 4-1] 아동학대 대응체계



## 2) 아동학대처벌법 속의 가해자 처분 및 형사사법기관 역할

## 가) 가해자대상 보호 처분 및 권리 박탈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하여 내려질 수 있는 벌칙 규정 이외에도 보호처분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특히 아동학대처벌법의 내용은 가해자에 대하여 형과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집행기관은 보호관찰소로 명시하고 있다. 더 나아가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하여 검사는 친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참고로 하여 같은 방식으로 동물보호법 내에 동물학대 가해자에게 선고할 수 있는 다양한 보호처분 등을 구체적으로 담을 수 있다.

▶▶▶ [표 4-4] 아동학대처벌법 상의 가해자 벌칙 조항 및 내용

	조항	내용
가 해 자	제8조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면서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강명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제1항의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실행(實刑)을 선고할 경우에 병과한다. ③ 법원이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의 실행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벌금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와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고, 징역형의 실행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징역형의 실행과 병과된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이수명령을 집행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 1. 아동학대 행동의 진단·상담 2. 보호자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게 하기 위한 교육 3. 그 밖에 아동학대행위자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⑦ 형벌과 병과하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9조 (친권상실 청구 등)	① 아동학대행위자가 제5조 또는 제6조의 범죄를 저지른 때에는 검사는 그 사건의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에 법원에 민법 제924조의 친권상실의 선고 또는 같은 법 제940조의 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친권상실의 선고 또는 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항	내용
		② 검사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검사에게 제1항의 청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를 요청받은 검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4.>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처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직접 법원에 제1항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

나) 아동학대 사건의 집행기관의 역할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 범죄 신고를 접수한 경찰과 형사사법 집행기관이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취해야하는 조치에 대하여 상세히 명시하고 있다. 동물학대 행위를 아동학대 행위에 준하여 해석하고 처벌기준을 만들 경우 학대 현장에 출동한 기관들의 역할과 이들의 의무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는 아동학대처벌법의 제11조, 제13조, 제15조, 제36조, 제37조의 내용은 동물보호법의 참고문구로서 적절하다.

▶▶▶ [표 4-5] 아동학대처벌법 상 집행기관의 역할

	조항	내용
가해자 조치 및 집행기관 역할	제11조 (현장출동)	①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이나 아동복지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은 지체 없이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법경찰관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범죄 현장에 동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4.> ②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범죄가 행하여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현장 또는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다만,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다음 각 호를 위한 범위에서만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 2021. 1. 26.> 1. 피해아동의 보호 2. 아동복지법 제22조의4의 사례관리계획에 따른 사례관리(이하 “사례관리”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출동 시 아동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동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피해아동의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한 범위에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신설 2020. 3. 24.>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출입이나 조사를 하는 사법경찰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

	조항	내용
		<p>게 내보여야 한다. &lt;개정 2020. 3. 24.&gt;</p> <p>⑤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 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lt;신설 2021. 1. 26.&gt;</p> <p>⑥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폭행·협박이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lt;개정 2020. 3. 24., 2021. 1. 26.&gt;</p> <p>⑦ 제1항에 따른 현장출동이 동행하여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현장출동에 따른 조사 등의 결과를 서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lt;신설 2021. 1. 26.&gt;</p>
	제13조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p>① 사법경찰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제19조제1항에 따른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이나 피해아동등, 그 법정대리인(아동학대행위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변호사(제16조에 따른 변호사를 말한다. 제48조 및 제49조를 제외하고는 이하 같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제19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lt;개정 2020. 3. 24.&gt;</p> <p>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긴급임시조치”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lt;개정 2020. 3. 24.&gt;</p> <p>③ 제2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결정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유, 긴급임시조치의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p>
	제14조 (임시조치의 청구)	<p>① 검사는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이나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제19조제1항 각 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p> <p>② 피해아동등,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lt;개정 2020. 3. 24.&gt;</p> <p>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 및 임시조치를 요청한 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lt;개정 2020. 3. 24.&gt;</p>
	제15조 (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 후 임시조치의 청구)	<p>① 사법경찰관이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를 하였거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가 행하여졌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제19조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lt;개정 2020. 3. 24.&gt;</p> <p>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검사는 임시조치를 청구하는 때에는 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72시간(제1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응급조치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긴급임시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5항에 따라 작성된 응급조치결과보고서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lt;개정 2021. 1. 26.&gt;</p> <p>③ 사법경찰관은 검사가 제2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이 임시조치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그 긴급임시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p>

조항	내용
제36조 (보호처분의 결정 등)	<p>①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li> <li>2.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li> <li>3.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li> <li>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수강명령</li> <li>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li> <li>6.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에 의 감호위탁</li> <li>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li> <li>8.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li> </ol> <p>② 제1항 각 호의 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p> <p>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피해아동을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닌 다른 친권자나 친족 또는 아동복지시설 등으로 인도할 수 있다.</p> <p>④ 판사가 제1항제3호의 보호처분을 하는 경우 보호처분의 기간 동안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사람의 선임 등에 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p> <p>⑤ 법원은 제1항에 따라 보호처분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보호관찰관 및 보호처분을 위탁받아 하는 보호시설, 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상담소 등(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기관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으로부터 수탁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lt;개정 2020. 3. 24.&gt;</p> <p>⑥ 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한 경우에는 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p> <p>⑦ 제1항제6호의 감호위탁기관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그 성행을 교정하기 위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p>
제37조 (보호처분의 기간)	<p>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처분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항 제4호의 사회봉사·수강명령의 기간은 각각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p>
제38조 (보호처분 결정의 집행)	<p>①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보호처분의 결정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집행담당자는 아동학대행위자의 보호처분 이행상황에 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lt;신설 2020. 3. 24.&gt;</p> <p>③ 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동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lt;개정 2016. 5. 29., 2020. 3. 24.&gt;</p> <p>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학대행위자의 보호처분 이행을 관리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lt;신설 2020. 3. 24.&gt;</p>

### 다) 보호처분 불이행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

아동학대처벌법은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아동학대 행위자,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학대자에 대하여 불이행에 대한 벌칙 규정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또한 과태료 처분으로써 아동학대행위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긴급임시조치, 보호처분 등의 이행을 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 조항도 명시하고 있다.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하여도 동물보호법 안에서 이러한 가해자에게 행해지는 조치 불이행에 대한 명백한 벌칙 조항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 ▶▶▶ [표 4-6] 아동학대처벌법 상 보호처분 불이행에 대한 조항

조항	내용
제59조 (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학대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1.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아동학대행위자 2.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아동학대행위자 3. 제47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제52조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이 결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아동학대행위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아동학대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19.> ③ 제8조제1항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사람이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7. 12. 19.> 1.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징역형의 실행과 병과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3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3. 24., 2021. 1. 26.> 1. 정당한 사유 없이 판사의 아동보호사건의 조사·심리를 위한 소환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수행하는 현장조사를 거부한 사람 3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출석·진술 및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사람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36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39조에 따른 보고서 또는 의견서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 3. 아동학대 대응을 통해 살펴본 동물학대 사건 대응 방향성

아동학대처벌법과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현장에서 아동학대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된 대응책들은 실제로 유사성을 갖고 있는 동물학대 행위 대응 방안에 좋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 무엇보다, 즉각적으로 학대행위를 멈추도록 하고, 반복피해를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응급조치와 임시조치는 동물학대에도 매우 필요한 제도이다. 특히 동물싸움(투견) 현장에서 피해 동물과 가해자를 현장에서 분리하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다른 방식으로 피학대 동물이 추가 피해를 입는 위험을 맞이하게 된다. 따라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재량적으로 응급조치와 긴급임시조치로써 피해 동물을 안전한 곳으로 분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 [표 4-7] 아동학대 법률을 통해 살펴본 동물학대 처분 방향성

내용	아동학대 규정	동물학대 규정		
		현재 규정 존재여부	방향성	
신고의무자 위반 벌칙조항	○	x	강제성 부여 필요	
신고의무자에 대한 가중처벌	○	x	가중처벌 필요	
가해자 처분	수강명령, 이수명령 선고	○	x	수강명령, 이수명령, 치료 및 상담 필요
	친권 자격 상실	○	x	소유권 박탈 보유, 소유, 소지, 보관, 거주, 취업제한
	즉각 분리제도	○		압수, 몰수, 소유권 제한
	응급조치 (격리)	○	x	
	긴급임시조치 (퇴거)	○	x	
	긴급임시조치 (접근금지)	○	x	압수, 몰수, 소유권 포기, 접근금지 보유, 소유, 소지, 보관, 거주, 취업제한
	임시조치 (친권상실, 위탁)	○	x	압수, 몰수, 소유권 포기, 소유권 제한
집행이행	보호처분위반 확인 기관	○	x	법원의 선고에 대한 지자체의 이행 점검 의무 부과 및 위임

## 제2절 | 가정폭력

### 1. 가정폭력 개념과 피해 특징

#### 가. 가정폭력 개념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족 구성원이란 배우자와 과거 혼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관계, 그리고 자녀, 동거하는 친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즉, 가정폭력은 가정이라는 공간 안에서 공존하는 구성원들에 대한 신체적이고,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 나. 가정폭력 범죄와 동물학대 범죄의 유사점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가정 내부에서 구성원들에 의해 발생하는 사건이다 보니 발각이 어렵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지 않는 한 수사가 적극적으로 진행되기 어렵다. 또한 피해의 경우 단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었고 반복적 피해가 발생하는 사건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매맞는 아내 증후군과 같은 현상을 경험하면서 폭력 현장에서 적극적인 탈출을 시도하기가 어렵다는 특징을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타인의 가정사에 개입하는 것에 대한 경찰의 부적절한 재량권 행사가 발생하고 있어 피해가 존재해도 적극적인 경찰의 개입이 부족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상황적 특징을 갖는다.

동물학대 역시도 이러한 가정 내 사건 혹은 은밀하게 발생하는 투견 사건 등으로 인해 발각이 어렵고, 동물이 스스로 변호하거나 증거를 수집할 수 없기에 증거수집이 어려우며, 가해자 스스로가 스스로를 신고하지 않기에 도움이 필요한 동물학대에는 타인의 개입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가정폭력 사건과 유사하게 처벌규정은 존재하고 있으나, 경찰의 부적절한 현장 파악 혹은 재량적 접수로 인해 동물학대 수사가 적극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가정폭력 사건의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의 가해행위가 즉각적으로 중지되는 것이

필요함은 물론이거나 피해자와의 분리를 통해 추가적 반복 피해를 막을 수 있는데, 동물학대 역시도 소유주와의 즉각적인 분리를 통해 추가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추가적으로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하는 것은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원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단순한 처벌 위주의 정책이 아니라 보호처분을 통한 성행 교정을 중요 역할로 보고 있는데,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성행 교정을 통한 재범 방지 대책이 역시나 필요하다. 동물학대 가해자에 대한 영구적 동물 소유 금지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단순한 처벌을 넘어서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치료와 교육이 병행되어야 하는 상황도 동일한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다.

## 2. 가정폭력에 대한 법률적 작용

### 가. 처벌 및 보호사건처분

#### 1) 처벌 병과 규정 및 친권 상실

▶▶▶ [표 4-8] 가정폭력처벌법상 형벌과 수강명령 병과

가정폭력처벌법		집행유예 선고 시	실형 선고 시	보호처분시
수강명령	1. 가정폭력 행동의 진단·상담 2. 가정구성원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게 하기 위한 교육	○		○
이수명령	3. 그 밖에 가정폭력행위자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보호관찰		○	○	○
사회봉사		○	○	○

## 가) 현장 피해자에 대한 조치

» [표 4-9] 가정폭력사건 응급조치와 임시조치 비교

구분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
근거	가정폭력처벌법 제5조	가정폭력처벌법 제8조의2	가정폭력처벌법 제29조
주체	경찰	경찰	경찰
요건	피해가 확인되고 재해대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	학대범죄 조사 심리 또는 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치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의 분리</li> <li>1의2.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른 현행범인의 체포 등 범죄수사</li> <li>2.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li> <li>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li> <li>4. 폭력행위 재발 시 제8조에 따라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li> <li>5.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 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li> <li>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li> <li>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li> <li>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li> <li>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li> <li>4.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li> <li>5.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li> <li>6.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li> </ol>

## 나) 보호처분

가정폭력처벌법 제40조에서는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접근금지, 친권행사 제한,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친권 행사가 제한될 경우에는 피해자를 다른 친권자나 친족, 또는 적당한 시설로 인도할 수 있다고 보다.

감호위탁의 경우에는 가정폭력행위자 성행 교정을 위한 교육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교정 역시도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보호처분을 받은 행위자는 위탁 및 보호처분에 필요한 자비로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제48조). 또한, 가정폭력처벌법은 보호처분 시 가정폭력에 제공되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써 가정폭력행위자 외의 사람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건을 몰수할 수 있다.

### 3. 가정폭력 대응을 통해 살피본 동물학대 사건 대응 방향성

가정폭력처벌법에 근거하여 동물학대 보호법의 개정 및 현장 집행력을 높이는 대안을 고민하면,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대응과 유사하게 응급조치와 임시조치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특히 동물싸움(투견) 현장에서 피해동물과 가해자를 현장에서 분리하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다른 방식으로 피학대 동물이 추가 피해를 입는 위험을 맞이하게 된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재량적으로 응급조치와 긴급임시조치로써 피해동물을 안전한 곳으로 분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단순 분리를 넘어서 가해자로부터 피학대 동물을 압수 및 몰수하고 소유권을 포기하게 하는 제도, 그리고 친권 상실과 유사하게 소유와 양육 등을 제한하는 제도 역시도 매우 필요하다.

또한 가해자에 대한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을 의무적으로 부과하여 성향 교정과 치료를 통해 향후 재범을 막기 위한 사회적 노력도 필요하다. 보호사건으로 감호위탁이 내려질 경우 그 비용을 가해자가 직접 지불하도록 하는 가정폭력처벌법의 내용 역시도 동물학대자 성행 교정 절차상에 도입 가능한 규정이다.

더 나아가, 가정폭력처벌법은 피해자가 가정보호사건이 진행되는 1심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민사처리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장애인 등을 보조하는 서비스 동물에 대한 학대가 타자에 의해 발생했을 때 이러한 배상신청을 통해 소유주의 피해회복을 신속히 도모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 [표 4-10] 가정폭력 법률을 통해 살피본 동물학대 처분 방향성

내용	가정폭력 규정	동물학대 규정		
		현재	방향성	
가해자 처분	수강명령, 이수명령 선고	○	x	수강명령, 이수명령, 치료 및 상담 필요
	친권 자격 상실	○	x	소유권 박탈 보유, 소유, 소지, 보관, 거주, 취업제한
	즉각 분리제도	○		압수, 몰수, 소유권 제한

내용	가정폭력 규정	동물학대 규정		
		현재	방향성	
	응급조치 (격리)	○	x	
	긴급임시조치 (퇴거)	○	x	
	긴급임시조치 (접근금지)	○	x	압수, 몰수, 소유권 포기, 접근금지 보유, 소유, 소지, 보관, 거주, 취업제한
	임시조치 (친권상실, 위탁)	○	x	압수, 몰수, 소유권 포기, 소유권 제한
	감호위탁	○	x	학대자가 비용 지불
피해자	배상명령	○	x	안내견 등 서비스 동물 소유주에 대한 신속한 배상 명령 가능



## 제 5 장

동물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

# 동물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의 실효성 보완 현안 및 개선방안



# 동물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의 실효성 보완 현안 및 개선방안

### 제1절 | 동물사육금지제도

#### 1. 개요

동물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가장 실효성 있는 제도는 학대행위자에 대하여 동물의 사육 등을 금지하는 제도이다. 어느 나라에서도 시도되지 않은 창의적인 방안보다는 외국, 특히 동물학대 재발방지를 위해 이미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유럽 및 미국의 제도를 검토하고, 이 제도를 우리에게 적합한 제도의 모습으로 제안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효율적인 방법일 것이다. 동물학대 행위자에게 동물의 사육 등을 금지하는 제도는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럽(독일, 스위스) 및 미국에서 활용되는 제도이다. 다만, 제도를 처음 도입하게 되는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추어 시행 첫 단계에서는 대상범죄인 동물학대범죄를 중한 범죄로 한정하는 등 제도 도입 단계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 감정에 발맞추어 갈 필요가 있다.

동물사육을 금지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형사제재의 형식으로서, 검사가 청구하고 법원이 유죄판결 선고 시에 보안처분으로 함께 내리는 명령의 형식인 '동물사육금지명령'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아래 6. 개정안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처분으로 부과하는 방법(개정안 2)이다. 그 외에도 기존의 이수명령과 병과하는 방법(개정안 3), 보안처분의 부수처분으로 부과하는 방법(개정안 4) 등이 있다. 이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이중처벌금지, 비례성 원칙 위반 등의 비판이 있으므로, 아래에서 이에 대한 논의를 확인하고(2.), 그 실제적 명령·처분 방법 등에 대해 검토한 후(3~5),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제시한다(6 이하).

## 2. 제도 도입 비판론 검토

이중처벌금지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보안처분의 특수성을 이유로 하고, 이 제도가 필요적 처분이 아니며 법원의 재량에 따른 제도라는 점을 설명할 수 있다. 보안처분이 형벌과 관련하여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은 학설과 판례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 다만,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은 신중하여야 하고, 제도 도입 시 부작용을 예방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비례의 원칙에 따라 제도를 남용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①목적의 정당성, ②수단의 적합성, ③피해의 최소성, ④법익의 균형성 측면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첫째,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둘째, 수단의 적합성 측면에서는, 장래 위험을 예방하는 명령 또는 처분으로서 동물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적절한 수단이라 볼 수 있다.<sup>172)</sup> 또한 미국, 유럽 등에서 적극적으로 시도되는 제도라는 점에서도 수단의 적합성 인정에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셋째, 피해의 최소성에서는, 수감명령제도 등의 입법 등 동물사육금지제도보다 약한 기본권 제한 조치가 있으며, 사육금지가 유일한 수단은 아니며, 이러한 덜 제약적인 제도가 효과가 없는 사람에 대하여 본 명령 또는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구성한다면 정당성을 찾을 수 있다. 반대로, 이러한 제한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침해의 최소성 측면에서의 정당성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제도 구성 시 이 점을 고려하여야 하나. 예를 들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부과하는 제도로 기능하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며,<sup>173)</sup> 침해가 더 적은 다른 수단을 통하여 이 제도가 요청하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sup>174)</sup> 넷째, 법익의 균형성 측면에서는 국민의 법감정에서 동물학대를 기본권침해보다 중요하지 않은 법익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존재하여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동물보호의 공익성이 시민의 법감정으로 공유되기 위해서는 민법에서의 물건관

172) 한민지, “동물사육금지처분의 법적 쟁점과 과제 - 해외 입법례 비교를 통한 입법적 고찰”, 『동물법의 새로운 지평』, 사법정책연구원 - 강원대 환경법센터·동물법센터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2022. 11. 25.), 79면.

173) 한민지, “동물사육금지처분의 법적 쟁점과 과제 - 해외 입법례 비교를 통한 입법적 고찰”, 『동물법의 새로운 지평』, 사법정책연구원 - 강원대 환경법센터·동물법센터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2022. 11. 25.), 79면 이하.

174) Lotz/Metzger(Hrsg.), TierSchG § 20 Rn. 5.

런 규정의 예외를 정한 민법 개정안이 빠르게 개정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불완전한 토대 위에서도 균형성원칙을 충족하는 동물사육금지제도를 신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명령 또는 처분이 중한 종류의 동물학대를 대상으로 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범죄자에게만 부과된다고 한다면, 동물보호라는 공익과 범죄자의 동물 사육이라는 사익을 비교하였을 때 사익이 크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이 제도를 도입한다 하여 무조건적으로 동물사육금지제도를 모든 사건마다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제도의 도입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사건마다 비례성원칙의 충족 여부가 고려되어야 한다.

### 3. 대상 학대범죄의 수준

#### 가. 학대범죄 유형 구분

가장 최근에 개정된 동물보호법(법률 제18853호, 2022. 4. 26., 전부개정, 시행 2024. 4. 27.)에 따르면 동물학대범죄(법 제10조 제1항 내지 제4항 위반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부터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다양하여(제97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 제5항 등) 죄질의 범위가 넓다. 다양한 유형의 동물학대행위를 일률적으로 '동물사육금지명령'의 대상 범죄로 삼을 것인지, 또는 이 중 우선 중한 범죄에만 형사제재로서의 동물사육금지처분을 규정할 것인지를 정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독일의 경우 합리적 이유 없는 척추동물에 대한 살해, 척추동물에 대하여 잔인하게 상당한 고통 또는 괴로움을 가하는 행위, 장시간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상당한 고통(Schmerzen)이나 괴로움(Leiden)을 가하는 행위를 보유등금지제도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이 행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이다. 스위스의 경우는 대상범죄는 좀 더 넓어서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다만 그 중 반복적 위반 또는 중대한 위반인 경우로 한정된다.

우리 동물보호법에서도 제도 도입 초기 단계에서는 중대한 학대범죄를 대상으로 동물보유등금지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동물사육금지제도와 관련되는 동물학대범죄를 특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실현가능성이 높은

두 가지를 고른다면, 첫째, 실제 처벌되는 선고형을 기준으로 징역형을 부과할 때에만 동물사육금지제도를 도입하는 방법, 둘째, 동물보호법상 금지되는 학대행위의 행위유형과 법정형을 고려하여 그 유형을 선별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 [표 5-1] 대상 동물학대행위의 선별방법

	기준	방법
1	선고형 기준	징역형의 유죄판결로 한정
2	행위유형 및 법정형 기준	법정형별로 경중을 구분하여 유형 선별

이 중 두 번째 방법을 검토해 볼 때,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동물보호법 제10조 중 제5항의 행위는 직접 동물을 사육하는 등의 행위와 관련성이 없이 발생할 수 있는 행위유형이므로 사육등금지제도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동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금지행위는 동물에게 직접적으로 학대에 해당하는 폭력 등을 가하는 행위가 아니라 영상물 게재, 광고·선전, 동물의 제공, 영리목적 대여 등이다.

이렇게 제5항을 제외할 경우 법정형에 따른 학대범죄의 유형은 아래와 같이 세 가지(A~C)로 구분할 수 있고, 그 중에서도 동물에 대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고, 그 결과가 어떠한지에 따라 총 4개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동물사육금지제도에서 이 네 가지 유형 중 어느 유형까지를 포함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 [표 5-2] 동물학대행위의 유형 구분

처벌의 정도	유형 구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유형 A [고통·괴로움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유형 B-1 [고통이나 괴로움을 가하는 행위로서 죽음에 이르지 않은 행위]
	유형 B-2 [기타 처벌되는 동물학대행위]
300만원 이하의 벌금	유형 C [맹견유기 이외의 동물유기행위]

첫째, 가장 좁은 유형의 학대범죄인 유형 A로 대상범죄를 제한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법정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행위로 대상학대행위가 한정된다.

둘째, 유형 A 및 유형 B-1까지의 행위를 대상범죄로 제한하는 방법이다. 이 두 유형은 동물에게 직접적으로 고통이나 괴로움을 가하는 행위를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셋째, 유형 A 및 유형 B(B-1 및 B-2) 행위를 대상범죄로 제한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을 취할 경우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인 학대범죄를 모두 대상범죄화하게 된다. 즉 동물보호법 제10조의 행위 중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맹견유기 이외의 동물 유기행위(제10조 제4항 제1호) 범죄를 제외한 모든 행위를 동물사육등금지제도의 대상으로 정하게 된다.

넷째, 동물보호법 제10조에 해당하는 모든 행위를 동물사육등금지제도의 대상으로 정하는 방법이 있다.<sup>175)</sup>

▶▶▶ [표 5-3] 동물보호법 제10조 금지행위와 처벌의 정도

	행위 구분	처벌의 정도
유형 A	제10조 ①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을 이르게 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을 이르게 하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을 이르게 하는 행위 3.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 4. 그 밖에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움에 이르게 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97조 제1항 제1호)
유형 B-1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해당 동물의 질병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몸을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해당 동물의 질병 예방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동물의 몸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 가.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97조 제2항 제1호)

175) [2115073]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반영으로 폐기된 박홍근의원 대표발의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2757, 발의연월일 : 2021. 9. 30.)은 제10조의 행위 전체를 사육 등금지제도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행위 구분	처벌의 정도
	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 갈증이나 굶주림의 해소 또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의 목적 없이 동물에게 음식이나 물을 강제로 먹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라. 동물의 사육·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거나 도구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유형 B-2	③ 누구든지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포획하여 판매하는 행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97조 제2항 제1호)
유형 A	③ 2. 포획하여 죽이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97조 제1항 제2호)
유형 B-2	③ 3.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97조 제2항 제1호)
유형 B-2	③ 4.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임을 알면서 알선·구매하는 행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97조 제2항 제1호)
유형 B-2	④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동물을 유기(遺棄)하는 행위	맹견유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97조 제2항 제2호)  맹견유기 이외: 300만원 이하의 벌금 (제97조 제5항 제1호)
유형 B-1	④ 2.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적절한 길이의 목줄, 위생·건강 관리를 위한 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관리 또는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97조 제2항 제2호)
유형 A	④ 3. 제2호의 행위로 인하여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97조 제2항 제2호)
대상 제외	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항부터 제4항까지(제4항제1호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다만,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목적이 표시된 홍보 활동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00만원 이하의 벌금 (제97조 제5항 제2~5호)

	행위 구분	처벌의 정도
	2.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 또는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선전하는 행위. 다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은 제외한다. 3. 도박·시합·복권·오락·유희·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4.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건의 대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유죄판결의 부과

이 제도는 법원이 부과하는 명령의 경우 원칙적으로 동물학대범죄에 대한 유죄판결과 함께 부과하는 형식을 갖추게 된다. 다만, 독일의 경우 책임조각사유로 인하여 유죄판결받지 않는 경우도 이 명령의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독일과 같은 방식을 취한다면 형사미성년자인 14세 미만자라면 유죄판결을 받지 않게 되지만 동물사육 등금지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되므로, 우선적으로는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로만 한정하여 이 제도를 시행하고, 향후 제도 안정화 단계에서 책임조각사유가 있어 유죄판결받지 않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행정처분의 형식으로 동물사육등금지처분을 부과할 경우 동물학대범죄가 인지되거나, 이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때에도 처분을 내릴 수 있어 유죄판결보다 이른 시기에 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

#### 4. 재범의 위험성 판단방법 등

이 명령이 비례성원칙의 균형성 원칙이 지켜진다고 하기 위해서는, 이 명령을 부과하기 위한 조건으로 단순한 과거의 범죄행위인 학대행위만을 요건으로 두어서는 안 되며, 보안처분의 목적인 장래에 대한 범죄위험성, 즉 재범위험성을 명령의 요건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어떠한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개별 사안에서의 법관의 판단이 요구되는 부분이므로, 법률에서 그 내용을 더 자세히 규정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다른 법률에서 운용하고 있는 청구전 조사 제도나 의견청취제도 등 사전의 조사제도의 필요성이 검토될 수 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에서는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전 재범의 위험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청구 전 조사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동법 제6조),<sup>176)</sup>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법원은 취업 제한 명령 선고 전 전문가로부터 재범 위험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동법 제56조 제3항)<sup>177)</sup> 등을 두고 있다. 동물사육등금지제도에서도 이러한 사전의 조사 또는 의견청취제도가 존재한다면 좀 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자료에 의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외부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은 첫째, 검사가 동물사육등금지제도의 청구 전에 조사를 하는 방법, 둘째, 법원이 명령 선고 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 ① 입법안 1: 검사의 청구 전 조사제도

이 조문은 동물사육금지명령의 청구 다음 조로 삽입한다. 이 때 보호관찰관이 향후의 집행을 담당한다는 가정 하에 보호관찰관이 조사보고서를 제출하게 구성해 볼 수 있다. 아래 6. 개정안 1에서는 제18조 제3항에 검사가 전문가의 진단 등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입법안 제18조(조사)

- ① 검사는 동물사육금지명령을 청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의자의 주거지 또는 소속 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범죄의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심리상태, 재범의 위험성 등 피의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조사할 보호관찰관을 지명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지명된 보호관찰관은 지체 없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 후 검사에게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76)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① 검사는 부착명령을 청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의자의 주거지 또는 소속 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범죄의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심리상태, 재범의 위험성 등 피의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17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려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취업제한 명령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 등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④검사는 제1항의 요청을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조사진행상황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⑤검사는 동물사육금지명령을 청구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피의자에 대한 정신감정이나 그 밖에 전문가의 진단 등의 결과를 참고하여야 한다.

## ② 입법안 2: 법원의 명령 선고 전 의견청취제도

이 조항은 동물사육금지명령의 선고 아래의 항으로 삽입한다. 아래 6. 개정안 1에서는 제20조 제5항에 법원이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입법안 제\*조 제\*항

법원은 제1항에 따라 동물사육금지명령을 선고하려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동물사육금지명령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 등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5. 금지되는 행위 및 그 대상

### 가. 금지 행위

현재 법안에서는 사육·관리 및 보호를 금지하고 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소유자등”으로 보고 있으며(제2조 제2호), “사육·관리 또는 보호”를 동물에 대한 돌봄의 기본행위로 칭하고 있다(제3조, 제9조 등). 따라서 동물사육금지제도에서도 금지하는 행위는 기존의 법체계와의 정합성을 위하여 사육, 관리, 보호로 정할 수 있다. 이 개념은 넓은 의미의 ‘양육’ 개념에 포함되는 것이다.

각 개념을 살펴보기에 앞서 국어사전의 정의를 살펴보면, ‘사육’이란 어린 가축이나 짐승이 자라도록 먹이여 기름, ‘관리’란 어떤 일의 사무를 맡아 처리함, 시설이나 물건의 유지, 개량 따위의 일을 맡아 함, 사람을 통제하고 지휘하며 감독함, ‘보호’란 위험이나 곤란 따위가 미치지 아니하도록 잘 보살피 돌봄을 뜻한다.

첫째, ‘사육·관리’는 통합적 개념으로, 동물보호법<sup>178)</sup> 제9조가 규정하는 바에 따르면 적합한 사료와 물의 공급, 운동·휴식·수면보장, 질병·부상의 치료 등 조치, 환경 적응 조치, 재난 시 대피 노력 등을 들 수 있다. 더욱 구체적인 적절한 사육·관리방법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에 규정되어 있다.

둘째, ‘보호’는 동물보호법이라는 법령의 특징상 법률 여러 곳에서 사용되는 단어가

178) [시행 2023. 4. 27.] [법률 제18853호, 2022. 4. 26., 전부개정].

다. '보호'라는 단어는 동물보호법에서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 첫째, 제3장 제1절 동물의 보호 등에서 볼 수 있듯 사육·관리를 포괄하는 일반적 의미의 동물을 돌보는 의미, 즉 케어(care)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둘째, 제3장 제4절 동물의 구조 등에서 구조와 함께 '보호조치',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활용되고 있는 것처럼, 소유자등이 아닌 사람들이 구조하여 그 동물을 돌보게 될 때 보호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 때의 보호는 앞서 살펴본 국어사전에서의 보호의 의미를 따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 유형은 비교법적으로 볼 때 독일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는 보유(Halten) 및 보호(Betreuen)의 개념을 포함하는 것이다. 즉 자신이 직접 소유·보유하지 않더라도 넓은 의미에서 직접 동물을 키우는 행위까지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미국 캘리포니아 주 등에서 금지하는 '소유'까지는 금지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제도의 초기에는 높은 정도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인 소유 금지는 제외하는 방법을 고려하였다.

결론적으로, 우리 동물사육등금지제도에서 금지되는 사육·관리 또는 보호는 소유 여부를 불문하고, 또한 일시적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동물을 양육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행위로 규정할 수 있다.

또한, 개정안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그 외 금지행위로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으로는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분양금지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동물보호법상 신고, 등록, 허가가 필요한 시설의 소유나 운영 등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이다.

#### 나. 금지 대상 동물

사육 등이 금지되는 동물을 특정하는 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론적으로는 미국의 예와 같이 모든 종류의 동물에 대한 사육 등을 금지하는 방법, 또는 종별로 금지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특히 가정의 반려동물로 가장 일반적인 개와 고양이, 특히 등록대상인 개를 중심으로 고려해 볼 수도 있다. 그 외 동물보호법상의 동물의 범위(동법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인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어류 등의 종류로 나누어 특정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재범위험의 측면에서 실효성은 적지만, 학대동물 그 자체만을 사육금지의 대상으로 정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 6. 개정안 1: 형사제재(보안처분) 형식

### 가. 동물사육금지명령

동물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법원이 동물을 보유, 관리, 보호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법원이 내리게 되는 보안처분인 광의의 형사제재에 대해서는 ‘처분’이라는 이름보다는 ‘명령’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이 기존의 형사제재와의 정합성 측면에서 타당하므로,<sup>179)</sup> 기존에 사용하였던 동물사육금지 처분이라는 이름 대신 ‘동물사육금지명령’으로 칭하기로 한다.

이는 형사재판의 선고 시에 내려지는 제재이며,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규정을 담은 형사특별법에 규정되는 광의의 형벌과 함께 부과되는 형태인 보안처분으로 구성되는 것으로서, 성격상 형사제재이다. 청구권자는 검사가 되며,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로 구성한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검사에게 동물사육금지처분의 청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11조 제2항).

이 때 대상이 되는 동물학대범죄가 너무 광범위한 경우, 불필요한 형사제재가 남발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으므로, 기존 농림부 안의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 내지 제4항 범죄보다 좁은 범위의 유형 A 및 유형 B로 한정하는 방법을 제시안으로 구성하였다. 이에 따르면 제9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2호까지, 제2항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범죄를 동물학대범죄로 규정하게 된다.

### 나. 청구 및 관할

이 명령은 검사가 청구한다. 명령의 청구는 공소제기 시부터 가능하며, 공소가 제기된 동물학대등 사건(특정범죄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하여야 한다. 동물학대 범죄의 인지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검사의 청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17조 제2항 자구수정).

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사건의 관할은 동 명령 청구사건과 동시에 심리하는 동물학

179) 기 존재하는 보안처분으로는 수감명령·이수명령(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등), (전자장치) 부착명령(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약물)치료명령(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제4조 등) 등이 있다.

대사건의 관할에 따른다(안 제18조).

#### 다. 약식명령의 경우

학대범죄의 대상범죄에 대하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 약식절차에 의하여 약식명령이 가능하므로, 약식명령 시에도 동물사육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약식명령은 주형으로 벌금, 과료, 몰수에 한하며(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부수처분으로 몰수 불가능에 대한 가액추징(형법 제48조 제2항), 압수물 피해자환부(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벌금·과료 또는 추징에 대한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이 가능하다.<sup>180)</sup>

약식절차는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여 검사가 제출한 자료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정식재판절차에서보다 피고인에게 불리할 수 있다.<sup>181)</sup> 또한 제도 도입 초기 단계에는 중한 범죄유형으로 한정하여 제도의 정착을 꾀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징역형이 배제되는 약식절차에 의한 유죄판결에 있어서는 부수적인 동물사육등금지제도는 부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제시하는 법안에서는 제20조 제3항에서 동물학대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하여, 약식명령을 한 사건은 동물사육금지명령에서 배제한다.

만약 약식재판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동물사육금지제도를 부가할 수 있는지도 문제될 수 있다. 이 중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상 형종상향금지원칙(형사소송법 제457조의2)가 적용되므로 형의 종류는 바꿀 수 없다. 그러나 동물사육금지명령을 부가하는 것은 형의 종류를 바꾸는 것은 아니고,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을 새롭게 부가하는 것이 된다. 형종상향금지원칙은 2017년에 도입되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판례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형종상향금지원칙과 유사한 불이익변경금지원칙(형사소송법 제368조, 제396조)에서는 동일한 자유형의 형기를 유지하면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이수명령 등을 새롭게 부가하는 경우 불이익변경으로 보고 있다.<sup>182)</sup> 이와 비교해 볼 때, 정식재판청구

180) 이창현, 형사소송법(제8판), 정독, 2022, 1365면.

181) 이창현, 형사소송법(제8판), 정독, 2022, 1359면.

시 동물사육금지명령을 금지하는 내용을 제도화하지 않더라도 실무에서 피고인에게 사육등금지제도를 부가하는 일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 부분은 앞으로 실무에서 판례를 통해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라. 선고

법원이 동물학대범죄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검사의 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사육, 관리, 보호가 금지되는 대상동물을 정하여 판결로 동물사육금지명령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20조 제1항).

#### 마. 집행

이 명령의 집행 주체가 누가 될 것인가가 문제된다. 형사판결의 집행을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도록 하는 것은 그동안의 형사법의 체계와는 다르고, 형집행이 자치사무의 범위에 포섭될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형사소송법상 재판의 집행은 검사가 지휘하도록 하므로(제460조), 원칙적으로 이 명령의 집행은 검사의 지휘 하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내에서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보호관찰관의 업무 하로 두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sup>183)</sup>

그러나 동물구조·보호 등의 조치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검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 명령의 집행지휘를 위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sup>184)</sup>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업무를 위임받아 집행하도록 함이 효율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명령에 따라 “사육이 금지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동물의 보호격려·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23조 제2항).

182) 이창현, 형사소송법(제8판), 정독, 2022, 1227면. 보호관찰에 대하여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6403 판결, 수감명령에 대하여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도15961 판결, 특히 이수명령에 대하여 대법원 2015. 9. 14. 선고 2015도11362 판결.

183) 전자장치부착법상 부착명령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법 제12조)

184) 검사는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수감명령 등의 집행지휘를 하고 있다.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8조의2 참조.

#### 바. 임시해제

동물사육금지명령을 받은 사람이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해야 할 중대한 필요성이 생기거나 그 밖에 동물사육금지명령의 집행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명령에 대하여는 임시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4조), 이에 대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25조). 임시해제된 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신청 및 심사에 따라 임시해제를 취소할 수 있다(제26조).

#### 사. 위반 시 제재

동물사육금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형사제재를 함으로써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독일, 미국 테네시 등 이에 대한 제재내용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징역형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동물보호법 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을 구성한다(안 제97조 제3항 제5호).

#### 아. 법원의 명령 제도에 대한 종합 검토

동물사육금지제도를 법원의 명령 형식으로 구성할 경우, 이 제도의 기본권 제한적 측면을 고려할 때 신중하게 제도에 접근할 수 있는 사법적 제재방식이라는 점을 장점으로 볼 수 있다. 재판의 형식으로 명령이 내려지므로 상소의 방법을 통해 불복하게 된다. 이에 반하여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처분대상자가 처분에 불복하여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집행정지가 결정될 경우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이 처분은 집행될 수 없다.

#### 자. 개정안 제시

동물학대범죄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제3장 제1절의 뒷부분에 동물사육금지명령에 대한 내용을 추가한다. 또는 이를 별도의 절로 구성할 수도 있다.

**제2조(정의)** 10. “동물학대범죄”란 제97조 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 제2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범죄를 말한다.

**제17조(동물사육금지명령의 청구)** ① 검사는 동물학대범죄로 공소제기된 사람으로서, 동물학대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동물을 사육, 관리, 보호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동물사육금지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검사에게 제1항의 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검사는 동물사육금지명령을 청구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피의자에 대한 정신감정이나 그 밖에 전문가의 진단 등의 결과를 참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동물사육금지명령의 청구는 공소가 제기된 동물학대범죄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하여야 한다.

⑤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동물학대범죄사건을 심리한 결과 동물사육금지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동물사육금지명령의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청구사건의 관할)** 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사건의 관할은 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사건과 동시에 심리하는 동물학대범죄사건의 관할에 따른다.

**제19조(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서의 기재사항 등)** ① 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대상자(이하 “피명령청구자”라 한다)의 성명과 그 밖에 피명령청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2.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
3. 적용 법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원은 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서의 부분을 피명령청구자 또는 그의 변호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물학대범죄사건에 대한 공소제기와 동시에 부착명령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5일 전까지, 동물학대범죄사건의 심리 중에 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공판기일 5일 전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제20조(동물사육금지명령의 판결 등)** ① 법원은 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기간 및 사육, 관리, 보호가 금지되는 대상동물을 정하여 판결로 동물사육금지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판결로 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1. 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
2. 동물학대범죄사건에 대하여 무죄(심신상실을 이유로 치료감호가 선고된 경우는 제외한다)·면소·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을 선고하는 때
3. 동물학대범죄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때<sup>185)</sup>
4. 동물학대범죄사건에 대하여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

③ 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은 동물학대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④ 동물사육금지명령 선고의 판결이유에는 요건으로 되는 사실, 증거의 요지 및 적용 법조를 명시하여야 한다.

⑤ 법원은 제1항에 따라 동물사육금지명령을 선고하려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동물사육금지명령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 등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동물학대범죄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 및 상소의 포기·취하가 있는 때에는 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에 대하여도 상소 및 상소의 포기·취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의 청구나 비상상고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검사 또는 피명령청구자 및 형사소송법 제340조·제341조에 규정된 자는 동물사육금지명령에 대하여 독립하여 상소 및 상소의 포기·취하를 할 수 있다.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의 청구나 비상상고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1조(동물사육금지명령 판결 등에 따른 조치)** ① 법원은 제20조에 따라 동물사육금지명령을 선고한 때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동물사육금지명령을 선고받은 자(이하 “피명령자”라 한다)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판결문의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185) 선고형 기준 징역형의 유죄판결로 한정하는 경우 추가.

- ②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국립법무병원 및 군교도소의 장(이하 “교도소장 등”이라 한다)은 피명령자가 석방되기 5일 전까지 피명령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경우 법원은 그 의견이나 그 밖에 동물사육금지명령의 집행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22조(집행지휘)** ① 동물사육금지명령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집행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휘는 판결문 등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한다.

**제23조(동물사육금지명령의 집행)** ① 피명령자는 동물사육금지명령의 집행기간 동안 대상동물을 사육, 관리, 보호할 수 없다.

- ② 제21조제1항에 따라 판결문 등본을 받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피명령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육, 관리, 보호가 금지된 동물을 사육, 관리, 보호하는지 여부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피명령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6조제1항에 따른 격리 및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동물사육금지명령 판결 확정일부터 동물사육금지명령을 집행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집행한다.

1. 동물사육금지명령의 원인이 된 동물학대범죄사건으로 징역형이나 치료감호를 집행하는 경우,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석방되는 날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가종료되는 날부터 집행한다.
2. 동물사육금지명령의 원인이 된 동물학대범죄사건이 아닌 다른 범죄사건으로 형이나 치료감호의 집행이 계속될 경우에는 동물사육금지명령의 원인이 된 동물학대범죄사건이 아닌 다른 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석방 되는 날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가종료 되는 날부터 집행한다.

**제24조(동물사육금지명령의 임시해제 신청 등)** ① 피명령자의 관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 피명령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동물사육금지명령을 받은 사람이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해야 할 중대한 필요성이 생기거나 그 밖에 동물사

육금지명령의 집행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심사위원회에 동물사육금지명령의 임시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은 동물사육금지명령의 집행이 개시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하여야 한다.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기각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임시해제의 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서에 임시해제의 심사에 참고가 될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동물사육금지명령 임시해제의 심사 및 결정)** ① 심사위원회는 임시해제를 심사할 때에는 피명령자의 인격, 생활태도, 재범의 위험성에 대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임시해제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피명령자나 그 밖의 관계인을 직접 소환·심문 또는 조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요구를 받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심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심사위원회는 피명령자가 동물사육금지명령이 계속 집행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개선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부처명령의 임시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

⑤ 심사위원회는 동물사육금지명령의 임시해제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결정서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26조(임시해제의 취소 등)** 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사육금지명령이 임시해제된 자가 동물학대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심사위원회에 임시해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는 임시해제된 자의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시해제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시해제가 취소된 자는 잔여 명령기간 동안 동물사육금지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시해제기간은 동물사육금지명령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7조(동물사육금지명령 집행의 종료)** 제20조에 따라 선고된 동물사육금지명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집행이 종료된다.

1. 동물사육금지명령기간이 경과한 때
2. 동물사육금지명령과 함께 선고한 형이 사면되어 그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 때
3. 동물사육금지명령이 임시해제된 자가 그 임시해제가 취소됨이 없이 잔여 명령기간을 경과한 때

### 제97조(벌칙)

- ① 생략
- ② 생략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23조제1항을 위반한 자

## 7. 개정안 2. 이수명령 등과 병과하는 방법

### 가. 개요

개정안 1과 같은 법원의 명령으로 구성하면서, 법률상 좀 더 간략한 방법으로 현행 동물보호법에 존재하는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과 등가적으로 동물사육금지명령을 규정하는 방법이 있다.

이 제도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40조의 보호처분과 같이 보호처분의 한 종류로 동물사육금지제도를 구성하는 것이다. 규정할 수 있다. 가정폭력처벌법은 제40조에서 접근제한, 사회봉사·수강명령 등을 규정하고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동물보호법은 이미 제100조에서 형벌과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그 아래인 제101조에 동물사육금지명령을 추가하는 안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현실적으로는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병과되어야 재범위험성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 개정안 제시

**제101조(형벌과 동물사육금지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은 제97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를 지은 자(이하 이 조에서 “동물학대 행위자”라 한다)에게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면서, 동물학대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기간 및 사육, 관리, 보호가 금지되는 대상동물을 정하여 동물사육금지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

② 동물학대행위자에게 부과하는 동물사육금지명령은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실행을 선고할 경우에 병과한다. 동물사육금지명령은 제100조제1항의 수강·이수 명령과 병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동물사육금지명령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집행한다.

④ 법원은 동물사육금지명령의 집행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낼 수 있다.

⑤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피명령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육, 관리, 보호가 금지된 동물을 사육, 관리, 보호하는지 여부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피명령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6조제1항에 따른 격리 및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동물사육금지명령 판결 확정일부터 동물사육금지명령을 집행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집행한다.

1. 동물사육금지명령의 원인이 된 동물학대범죄사건으로 징역형이나 치료감호를 집행하는 경우,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석방되는 날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가종료되는 날부터 집행한다.
2. 동물사육금지명령의 원인이 된 동물학대범죄사건이 아닌 다른 범죄사건으로 형이나 치료감호의 집행이 계속될 경우에는 동물사육금지명령의 원인이 된 동물학대범죄사건이 아닌 다른 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석방 되는 날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가종료 되는 날부터 집행한다.

## 8. 개정안 3: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

### 가. 개요

행정청의 행정처분 형식을 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동물사육금지처분'을 하도록 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비교법적으로 볼 때 독일이 위에서 언급한 사법적 제재형식을 선택하였다면, 스위스는 행정처분의 형식으로서의 동물보유금지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행정처분 형식의 장점은 동물의 구조·보호(동물보호법 제14조)에서 주도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이다. 동물의 구조·보호업무는 실제 동물학대행위의 발견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학대행위의 인지와 처분이 긴밀히 연관되어 업무처리 될 수 있을 것이다.

동물사육금지처분을 행정법상 하명으로 규정하는 경우, 행정처분의 목적은 동물보호법의 목적인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여,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으로 보며, 이 목적달성을 위해 행정처분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한다.

행정청의 처분으로 부과할 경우 한 행정청에서 부과한 금지처분은 처분대상자에게 유효하므로 처분의 지역이 한정되는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 나. 처분의 대상행위 확정

행정처분의 형식을 취할 때에도 스위스와 같이 동물학대행위의 범위반으로 형사처벌받은 자를 대상으로 들지, 또는 동물학대행위가 인지되는 경우 형사재판과 무관하게 이 처분을 부과할지가 문제된다.

만약 형사처벌받은 자를 처분의 대상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위의 사법적 제재방식보다 행정처분방식이 더 시간이 소요되는 방식일 수 있다. 왜냐하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등 형사소송절차가 종료된 후에야 비로소 행정처분에 대한 쟁송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형사처분과 무관하게 동물학대행위 인지 시 이 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도 집행정지제도로 인하여 이 금지처분제도의 효력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는 행정쟁송에 대하여 집행부정지원칙을 채택하고 있기는 하지만(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에는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고(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 특히 최근의 실무경향에 비추어 볼 때 동물에 대한 직업적 취급 등에 관련되는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또는 중대한 손해 예방의 필요성이 인정될 확률이 적지 않다.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 결정되면 행정소송·심판이 종결될 때까지 동물사육금지처분은 집행될 수 없어, 긴급한 동물학대의 예방적 처분으로서의 동물사육금지처분의 실효성이 낮아질 수 있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동물사육금지처분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동물학대행위자로서 1) 학대행위 유형이 중대한 행위이고, 2)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며, 3) 학대행위로 인해 지역 주민의 평온한 생활에 지장을 주는 등의 요건을 실시하여 행정청이 재량판단을 통해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입법하여야 한다.

한편, 처분의 적법성과 적절성 등을 고려함과 동시에 행정청의 재량판단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사육금지처분에 관련된 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위원회에서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동물사육금지처분을 하도록 제도화할 수 있다. 기존 동물보호법에 존재하는 동물복지위원회에 기능을 추가하는 방법, 또는 새로운 위원회인 동물학대심사위원회를 두는 방법 등이 있다. 이 때 사육하고 있는 동물에 대하여 동물사육금지처분이 내려질 확률이 높으므로, 이 경우 적합한 지위에 있는 자에게 현재 사육하고 있는 동물을 인도하도록 명령함으로써 재산권 제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적합한 지위에 있는 자를 지정하지 못하거나 인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이를 지정토록 하여 금지기간 동안 해당 동물에 대해 보호조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 다. 불복절차 및 처분의 철회

동물사육금지를 행정처분의 형식으로 제도화하는 경우 행정법상의 불복절차인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다.

또한 처분대상자의 사정변경 등으로 처분을 더 이상 집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제화가 없더라도 행정기본법 제19조에 따라 행정청이 그 처분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철회의 사유를 개별법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동물보호법에 철회 가능성을 명시한 법조문을 신설한다.

#### 라. 위반 시 제재

동물사육금지명처분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통해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의 가장 높은 과태료 수준인 제101조 제1항의 500만원 이하 과태료로 구성한다(안 제101조).

#### 마. 개정안 제시

**제\*조 (동물사육금지처분)**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중대한 동물학대범죄로 공소제기된 사람으로서 동물학대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5년 이하의 기간 및 대상동물을 정하여 동물을 사육, 관리, 보호하지 않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동물이 현재 사육, 관리, 보호하고 있는 동물인 경우 적합한 자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적합한 지위에 있는 자를 지정하지 못하거나 인도하지 못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이 적합한 자를 지정하여 인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동물사육금지처분을 명한 경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처분대상자가 대상동물을 사육, 관리, 보호하는지 여부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처분대상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6조제1항에 따른 격리 및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동물사육금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해야 할 중대한 필요성이 생기거나 그 밖에

동물사육금지처분의 집행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철회할 수 있다.

**제\*조(동물사육금지처분위원회)**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사육금지처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동물사육금지처분에 관한 중요 사항
2. 동물사육금지처분의 철회에 관한 중요 사항

**제10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조제\*항에 따른 동물사육금지처분 등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 9. 개정안 4: 기존 보안처분의 부수처분

### 가. 개요

보안처분으로서의 보호관찰의 특별준수사항으로 동물사육금지 등을 부과할 수 있을 것이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호관찰법) 제32조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제3항 제10호에 따르면 보호관찰 대상자는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이러한 광범위한 사항 중에 동물사육금지내용을 추가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호관찰법 시행령) 제19조는 이 사항을 ‘특별준수사항’으로 명명하면서 8가지의 준수사항을 정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19조의 특별준수사항에 동물사육금지를 신설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에서 그 내용을 첫째, 보호관찰법 개정안, 둘째, 보호관찰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 나. 보호관찰법 활용

보호관찰법 제32조 제2항의 내용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지켜야 할 내용을 크게 4가

지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첫째,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둘째, 범죄 성향을 버리고 일탈적 주변인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않을 것, 셋째,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를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거 이전 시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이라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준수사항이다.

▶▶ **【표 5-4】 보호관찰 일반준수사항(보호관찰법 제32조 제2항)**

1. 주거지에 상주(常住)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善行)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4. 주거를 이전(移轉)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그러나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위의 네 가지 사항의 준수사항만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범죄의 내용과 종류, 범죄자의 특징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지켜야 할 사항으로 추가적으로 부과될 수 있다. 이는 통상 '특별준수 사항'이라 불리운다. 통상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특별준수사항으로는 외출제한, 출입 금지, 접근금지, 피해회복 노력, 거주 장소 제한, 사행행위에 빠지지 않을 것, 음주 제한,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않을 것 등을 들 수 있다.

▶▶ **【표 5-5】 보호관찰 특별준수사항(보호관찰법 제32조 제3항)**

1. 야간 등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
2.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특정 지역·장소의 출입 금지
3. 피해자 등 재범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특정인에 대한 접근 금지
4.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5. 일정한 주거가 없는 자에 대한 거주장소 제한
6.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
7.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8.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9.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마약류 투약, 흡연,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에 따를 것
10.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또한 보호관찰법 제32조 제4항에서는 제3항에 제시된 특별준수사항 이외에도 “사정변경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심사위원회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라 각각 준수사항 전부 또는

일부를 추가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면서 일반준수사항 및 특별준수사항 부과에 있어 법원과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존 법의 유연성을 고려해 볼 때, 다음의 2가지 방법을 통한 동물사육금지가 가능하다.

이러한 기존 법의 유연성을 고려해 볼 때, 다음의 2가지 방법을 통한 동물사육금지가 가능하다.

첫째, 기존 보안처분의 부수처분으로 부과하게 될 경우 위의 보호관찰법 제32조의 3항에 “동물사육금지”의 내용을 추구하는 법령개정을 통해 동물학대자에 대한 보호관찰 특별준수사항 부과가 가능하다. 이 경우 보호관찰법의 개정 뿐만 아니라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하여 동물사육금지를 보호관찰의 형식으로 명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동물보호법(시행 2024. 4. 27.) [법률 제18853호, 2022. 4. 26., 전부개정]은 이미 제100조에서 집행유예 시 보호관찰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어(제3항), 이 유형의 보호관찰과 새로 도입되는 동물사육금지를 명하는 보호관찰이 동물보호법에 병존하게 된다. 한편 보호관찰법에서는 보호관찰의 준수사항 미이행시 제38조의 경고, 제39조의 구인 등 관련 조항 외에 직접적 제재를 취하는 조항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동물사육금지를 명하는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에 따르지 않는 경우의 별도 제재가 필요하다. 동물사육금지 미준수사항에 대한 제재사항을 동물보호법 제98조에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법률의 개정이 없다 하더라도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의 재량을 통해 특별준수사항에 개별적 사안을 추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통상적이고 일률적인 준수사항 부과가 어렵기에 집행의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한계를 갖는다.

다. 「동물보호법」 및 「보호관찰법」 개정안 제시

**제98조(벌칙)** 제100조제1항에 따라 **동물사육금지의 준수사항 이행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사람이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준수사항 이행 또는**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 이행 또는**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0조(보호관찰)** ① 법원은 제97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를 지은 자(이하 이 조에서 “동물학대행위자”라 한다)에게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면서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강명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할 수 있고, 동물학대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기간 및 사육, 관리, 보호가 금지되는 대상동물을 정하여 동물사육을 금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다.

- ② 동물학대행위자에게 부과하는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경우에 병과한다.
- ③ 법원이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벌금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와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고,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이수명령을 집행한다.
- ⑥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
  1. 동물학대 행동의 진단·상담

- 2. 소유자등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게 하기 위한 교육
- 3. 그 밖에 동물학대행위자의 재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⑦ 형벌과 병과하는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① 생략

- ② 생략
- ③ 법원 및 심사위원회는 판결의 선고 또는 결정의 고지를 할 때에는 제2항의 준수사항 외에 범죄의 내용과 종류 및 본인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별히 지켜야 할 사항으로 따로 과(科)할 수 있다.
  - 1. 야간 등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
  - 2.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특정 지역·장소의 출입 금지
  - 3. 피해자 등 재범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특정인에 대한 접근 금지
  - 4.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 5. 일정한 주거가 없는 자에 대한 거주장소 제한
  - 6.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
  - 7.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 8.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 9.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마약류 투약, 흡연,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에 따를 것

**[개정] 10. 동물보호법 제100조에 따라 대상동물의 범위를 정하여 대상동물의 사육, 관리, 보호를 금지**

**[신설] 11.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0호에서 이동)**

### 라. 보호관찰법 시행령 활용

보호관찰법 제32조의 3항의 법률개정안이 아니라 하더라도 동법 시행령에 의한 특별준수사항으로 동물사육금지를 명령할 수 있다.

보호관찰법 시행령은 보호관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보호관찰 시행령 제19조에서는 보호관찰법 제32조 제10호에서 말하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특별준수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시행령이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부과하고 있는 특별준수사항으로는 1)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운전을 하지 않을 것, 2) 직업훈련, 검정고시 등 성행 개선을 위한 교육 치료 및 처우 프로그램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 3) 범죄와 관련이 있는 특정 업무에 관여하지 않을 것, 4) 성실하게 학교 수업에 참석할 것, 5) 정당한 수입원에 의하여 생활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기적으로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 6)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 또는 보관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할 것, 7) 가족의 부양 등 가정 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것 등이다.

#### ▶▶▶ [표 5-6] 보호관찰법 시행령 제19조의 특별준수사항

1.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 운전을 하지 않을 것
2. 직업훈련, 검정고시 등 학과교육 또는 성행(性行: 성품과 행실)개선을 위한 교육, 치료 및 처우 프로그램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
3. 범죄와 관련이 있는 특정 업무에 관여하지 않을 것
4. 성실하게 학교수업에 참석할 것
5. 정당한 수입원에 의하여 생활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기적으로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
6.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 또는 보관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할 것
7. 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것
8.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생활상태, 심신의 상태, 범죄 또는 비행의 동기, 거주지의 환경 등으로 보아 보호관찰 대상자가 준수할 수 있고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개선·자립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구체적인 사항

보호관찰법 제32조 제3항에서 제시하고 있는 추상적이고 일반론적 내용과 달리 동법 시행령 제19조가 담고 있는 특별준수사항은 훨씬 더 구체적이어서 현장에서 보호관찰관이 개별 대상자에게 적용하고 지도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불법을 하지 말라’는 추상적이면서도 동어반복적 내용이라기보다는 대상자가 보호관찰을 받으면서 준수해야 할 일상적이고 개별화된 생활 지침적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보호관찰법 제32조의 내용에 비하여 훨씬 더 범죄 상황과 범죄 유발 요인들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었고,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방식도 구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항목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이 있는 보호관찰법 시행령 제19조의 특별준수사항을 활용하는 방법은,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동물사육금지를 규정하는 특별준수사항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다. 또는 법 개정이 없더라도 제8호 처분의 내용으로 동물사육금지를 준수하도록 명령할 수도 있다.

다만 이러한 방식은 법원의 선고에 의한 보호관찰 준수사항과 비교해 볼 때, 집행 현장에서 집행의 강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현장에서의 지도감독 방식이 보호관찰소의 재량에 맡겨진다는 한계점을 갖는다.

#### 마. 관찰법 시행령 개정안 제시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특별준수사항)** 법 제32조제3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 1. 5.>

1.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 운전을 하지 않을 것
2. 직업훈련, 검정고시 등 학과교육 또는 성행(性行: 성품과 행실)개선을 위한 교육, 치료 및 처우 프로그램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
3. 범죄와 관련이 있는 특정 업무에 관여하지 않을 것
4. 성실하게 학교수업에 참석할 것
5. 정당한 수입원에 의하여 생활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기적으로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
6. 흥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 또는 보관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할 것
7. 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것

**[개정] 8. 대상동물의 범위를 정하여 대상동물의 사육, 관리, 보호를 금지**

**[신설] 9.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생활상태, 심신의 상태, 범죄 또는 비행의 동기, 거주지의 환경 등으로 보아 보호관찰 대상자가 준수할 수 있고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개선·자립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구체적인 사항 **(제8호에서 이동)**

## 바. 검토

이 제도는 본처분인 보호관찰이 이미 존재하는 제도라는 점,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제도를 용이하게 신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보호관찰 부과시 보호관찰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특별준수사항 부과가 가능하므로, 이를 통해 소기의 입법 목적이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 다만 이 때에도 특별준수사항을 명하게 할 본 형사제재가 어느 정도이어야 할지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보호관찰 현장에서 부여된 특별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어야 하며, 불이행시 주어지는 절차에 대한 고민이 충분히 필요하다.

## 제2절 | 동물사육금지 임시조치 제도

### 1. 개요

동물사육금지제도가 일반적으로 동물학대행위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공소제기를 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피학대동물이 여전히 학대상황에서 노출됨으로써 보호가 용이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 이 제도의 임시조치제도를 통해 이른 시기에 피학대동물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유사한 다른 영역에서도 이러한 임시조치 등은 이미 제도화되어 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9조의 잠정조치 역시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예 제5호, 교도소, 구치소)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잠정조치와 유사하게 동물사육금지명령·처분에 대한 임시조치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임시조치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조치하며, 조치를 하여야 할 사유가 사라지거나 법원이 판결에서 금지명령을 명하지 않는 경우 해제되어야 한다. 금지 위반자에 대한 형벌 조항도 필요하다.

## 2. 현행 보호·격리조치의 개정

한편, 현 동물보호법 제34조 제1항은 제1문에서 보호조치와 격리조치를 동시에 규정하고 있다. 그 중 보호조치는 동물의 치료를 위한 조치로 기능하는 것이고, 격리조치는 학대재발방지를 위한 행위자와의 격리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어서 목적은 다르지만, 실질적 조치 내용에서의 뚜렷한 차이점은 법령에 설명되지 않고 있다. 동조 제3항에 따른 보호조치 기간은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수의사가 정하는 기간동안 보호조치되며, 학대행위를 한 소유자와는 3일 이상 격리조치하여야 한다는 내용만이 정해져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학대동물에 대한 임시조치 제도는 현 동물보호법 제34조 제1항의 격리조치를 좀 더 구체화하는 제도로 구성함으로써, 기존의 격리조치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함을 목표로 하였다. 개정된 제도에서의 격리조치는 수사상 긴급조치에 해당하는 긴급체포, 그리고 스토킹처벌법의 긴급응급조치(제4조)와 유사한 제도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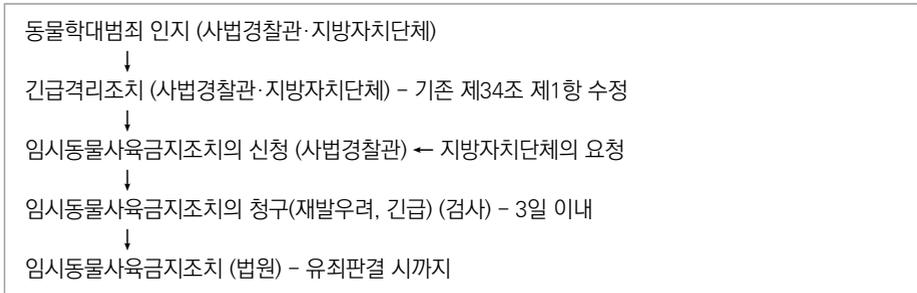
학대행위가 인지된 때, 즉각적으로 학대 행위를 멈추도록 하고, 반복피해를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피학대동물과 가해자를 현장에서 분리·격리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격리조치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재량적으로 피학대동물을 안전한 곳으로 분리·격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기능하여야 한다.

## 3. 임시조치의 내용

이후의 임시조치에 해당하는 임시동물사육금지조치는 일종의 가치분제도라 볼 수 있다. 스토킹처벌법상의 잠정조치(제9조)와도 유사하다. 일단 긴급격리조치를 통해 피학대동물과 가해자가 분리된 후, 본제재에 해당하는 동물사육금지제도가 법원 또는 행정처에 의해 부과되기 전 임시의 제도로서 동물사육을 금지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

의 청구권자는 검사로서, 긴급격리조치 후 72시간 이내에 청구하고 판사가 이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관할은, 수사단계에서는 동물학대범죄사건이 인지된 관할을 따르고, 공소제기 후에는 사물관할에 따른다. 수사단계에서 이 조치의 집행 업무 담당은 경찰이 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특별사법경찰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 [표 5-7] 동물사육금지 임시조치 단계



4. 개정안

제34조(동물의 구조·보호·긴급격리) 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제9조에 따라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사법경찰관 또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긴급격리조치(이하 “긴급격리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은 구조·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유실·유기동물
2.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3. 소유자등으로부터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

②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보호조치 중인 경우에는 그 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등록된 동물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조치 중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제3호에 따른 동물을 보호하거나 격리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 또는 긴급격리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도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5조(임시조치의 청구)** ① 검사는 동물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제37조 제1항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6조(긴급격리조치 후 임시동물사육금지조치의 청구)** ① 사법경찰관이 제34조제1항에 따른 긴급격리조치를 하였거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제34조제1항에 따른 긴급격리조치가 행하여졌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제36조에 따른 임시동물사육금지조치의 청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검사는 임시동물사육금지조치를 청구하는 때에는 긴급격리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37조(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동물사육금지조치)** ① 판사는 피학대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동물학대행위자에게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기간 및 사육, 관리, 보호가 금지되는 대상동물을 정하여 일시적으로 대상동물의 사육, 관리, 보호를 금지하는 조치(이하 “임시동물사육금지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임시동물사육금지조치를 받은 사람에게 이 조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임시동물사육금지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동물사육금지명령이 확정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임시동물사육금지조치는 해제된다.

③ 제1항의 조치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절 | 학대행위자와 피학대동물의 영구격리제도

#### 1. 영구격리제도 필요성

이미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앞에서 살펴본 격리조치가 규정되어 있다(제34조). 그러나 소유자가 보호조치 중인 피학대동물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제41조 제1항 제1호) 또는 보호조치 중인 같은 조 제1항제 3호의 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제2항에 따른 사육계획서를 제출한 후 제42조 제2항에 따라 보호비용을 부담하고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제41조 제1항 제2호) 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결국 피학대동물이 학대행위자인 소유자에게 돌아가게 되는 문제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다. 피학대동물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기 위하여 소유·보유자인 학대행위자와 영구 격리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 2. 안1: 압수 제도의 활용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하여 동물을 영구격리하는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피학대동물이 학대행위자에게 반환되는 모순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피학대동물을 소유자로부터 격리하는 방법으로 '압수' 또는 '몰수'의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다른 나라의 법과 비교해 볼 때에도 미국의 예, 독일 동물보호법 제19조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형사소송법상 압수란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강제처분이며, 압수대상은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되는 물건이다.(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 제219조). 현행법을 검토해 볼 때 피학대동물은 학대범죄의 증거물로 보아 압수할 수 있을 것이지만 현행법상 몰수의 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다.<sup>186)</sup> 궁극적으로 몰수되지 않을 경우, 일반적으로 압수물은 환부하게 되므로(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제1항, 제133조 제1항), 압수한 동물 역시 다시 환부의 대상이 된다. 피압수자가 소유권을 포기하거나 환부청

186) 형법 제48조에 따른 몰수의 대상은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3) 앞의 1과 2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으로,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이다.

구권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수사기관 등의 환부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sup>187)</sup> 또한 동물을 단순히 '증거물'이라는 이유로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는 것은 동물보호법상의 취지와도 걸맞지 않다.

따라서 영구격리제도로서의 압수는 기존의 형사소송법상 압수, 몰수와 유사하면서도 그 성질이 다른 제도로 보아야 한다. 특히, 동물에 대하여 '압수' 및 '몰수'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어,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sup>188)</sup> 그러나 이를 대체하여 '보호'라는 단어로 규정할 경우 현 동물보호법 제14조의 구조·보호 조치와 차이가 없어 보일 수도 있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그 차이를 부각하여야 한다면, 동물을 물건으로 보지 않는다는 민법 개정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압수'라는 단어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압수제도를 이용할 경우 기존 압수물과 달리 학대행위자에게 환부하지 않을 수 있는 내용을 검찰압수물사무규칙 등을 통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

### 3. 안2: 동물보호법 개정

현행 동물보호법에 제도화된 내용들을 소폭 개정함으로써 학대행위자로부터 피학대동물을 영구 격리하는 제도화를 꾀할 수 있다.

첫째, 위 제2절 동물사육금지 임시조치제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긴급격리조치를 통하여 피학대동물을 구조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긴급격리를 하도록 한다. 이를 통하여 학대행위자와 피학대동물은 우선적으로 분리될 수 있다.

187) 대법원 1996. 8. 16. 자 94모51 전원합의체 결정. 이창현, 형사소송법(제8판), 정독, 2022, 464면.

188) 유사한 개념인 '압류'에 대해 비교법적으로 살펴보면, 오스트리아는 1996년 강제집행법(Exekutionsordnung: EO) 제250조를 개정하여 "감정적 유대가 있고 양도할 목적이 아닌 가축 "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송호영, 동물의 법인격 논의 동향과 향후 민사법적 변화 모색, 『동물법의 새로운 지평』, 사법정책연구원 - 강원대 환경법센터·동물법센터 공동학술대회 (2022. 11. 25.) 자료집, 10면.

오스트리아 강제집행법 제250조

(1) Unpfändbar sind

4. nicht zur Veräußerung bestimmte Haustiere, zu denen eine gefühlsmäßige Bindung besteht, sowie eine Milchkuh oder nach Wahl des Verpflichteten zwei Schweine, Ziegen oder Schafe, wenn diese Tiere für die Ernährung des Verpflichteten oder der mit ihm im gemeinsamen Haushalt lebenden Familienmitglieder erforderlich sind, ferner die Futter- und Streuvorräte auf vier Wochen;

둘째, 분리 이후 다시 학대행위자에게 피학대동물을 돌려보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현행 동물보호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권 취득규정을 활용할 수 있다. 현 동물보호법 제43조 제2호에 따르면 제34조 제1항 제3호, 즉 소유자로부터 제10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제2호의 동물학대범죄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에 대해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하는 경우 시·도 및 시·군·구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동조 동항 제3호에 따른 보호비용 미납부, 제4호에 따른 연락두절, 반환의사미표시 등의 경우에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 조항을 활용하여 긴급격리조치 및 임시동물사육금지치가 내려진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해 옴으로써 사실상 학대행위자로부터의 압수 및 몰수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단, 학대행위자가 소유권 유지의 의지를 표명한 경우에도 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소유권을 박탈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우리나라에서 동물사육금지제도에 대한 강한 비판으로 사인의 재산권이라는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높으므로, 학대행위자의 의지에 반하는 소유권 박탈 부분은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강제적인 소유권박탈제도를 좀 더 광범위한 대중적 논의 이후로 미룬다고 한다면, 우선적으로 제도 초기에는 소유권을 강제로 박탈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소유권을 포기하게 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게 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동물사육금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대행위자가 소유권을 유지하려는 의지를 가지는 경우 소유권은 박탈하지 않되, 사육금지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학대행위자 본인에게 반환할 수는 없으므로, 소유자인 학대행위자는 그 동물을 매도하거나 다른 보호자를 지정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위와 같이 압수규정을 두고 있는 독일에서도 압수에 대하여 비례성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해석론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우회 제도를 통하여 소유권을 박탈하지 않으면서 사육을 금지하는 제도를 병행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에 규정할 필요는 없으며, 법률 개정안에는 원칙에 해당하는 내용, 즉 동물사육금지명령 선고를 받은 자에게는 동물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부가한다.

#### 4. 개정안 제시

제\*조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또는 긴급격리조치 중인 동물은 압수할 수 있다.

제41조(동물의 반환 등)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34조에 해당하는 동물을 그 동물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단 소유자가 제\*조의 동물사육금지명령을 선고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이 보호조치 중에 있고, 소유자가 그 동물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2. 제34조제3항에 따른 보호기간이 지난 후, 보호조치 중인 같은 조 제1항제3호의 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제2항에 따른 사육계획서를 제출한 후 제42조제2항에 따라 보호비용을 부담하고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 제4절 |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 외 기타 보호처분 제도 보완

#### 1. 형벌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의 병과

형법 제62조의2에 따르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고, 집행유예기간 내에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제5호에서는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은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외에 별도의 학대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동물학대 행위자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드물고,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 현실에서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통해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크다.

국내 법률 중 수강명령 등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는 아동·청소년

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의2(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8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등이 있다.

동물학대죄에 대하여 수강명령 등을 병과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 내에 이러한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내용을 신설하여 처벌과 처분 방향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 2. 동물몰수 처분 및 동물사육의 금지 등

국내 동물보호법은 2022년 전면개정을 거쳤다. 내용이 대폭 확장되고, 세분화되어 2023년 및 2024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새로운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 유형을 세분화하였고, 범위를 확장하였으며, 동물학대의 유형 세분화 및 범위 확장, 법정형 상향 등의 동물보호 측면에서 많은 진전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피학대 동물의 압수 및 몰수, 선고 전후 동물 소유 및 사육금지 관련 내용은 전무한 상황이다.<sup>189)190)</sup> 개정된 동물보호법을 따르다 하더라도 사실상 학대행위자로부터 피학대 동물을 분리하고 구조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예를 들면 투견현장에 동원되어 투견 현장 자체 및 전후 과정보상 학대를 당한 동물에 대한 구조는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학대를 공모하거나 방임한 가족들이 있는 경우에도 그 가족들에게 피학대 동물을 여전히 남겨둬야 한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sup>191)</sup> 국내 형사재판에서 상황에 따라 재판이 수개월, 수년이 걸릴 수도

189) 유죄판결을 받은 학대행위자가 일정기간 동물을 키우지 못하도록 하는 '학대행위자 장래 동물 소유 및 사육 제한'과 학대행위로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학대당한 동물을 압수 및 격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처분 조항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수차례 있었고, 2022년 개정안 심의과정에서도 도입 여부가 논의되었으나 무죄추정의 원칙, 지방자치단체 보호소의 수용여건 등을 이유로 개정법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천호성, "동물보호법 위반 한해 1000건, 학대 땀 동물소유 제한 필요", 한겨레신문, 2021. 8. 20., [https://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08501.html#cb](https://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08501.html#cb) (2022. 12. 2. 접속).

정진욱, "확 바뀐 동물보호법. 학대 방지 '핵심 조항' 빠진 이유는?", <https://m.blog.naver.com/animalandhuman/222695231226> (2022. 12. 2. 접속).

190) 김재득, "박광온, 동물학대시 몰수·보호권 박탈 추진", 중부일보, 2022. 8. 28.,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555779> (2022. 12. 2. 접속).

191) 동물보호법 제14조 제1항에 "피학대동물, 유기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학대 재발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두고 있으나, 동법 제18조에 따라 그 동물의 소유자가 보호비용을 부담하고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그 소유자가 학대행위자라고 하더라도 피학대동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2022년 개정된 (예)동물보호법에는 보호조치 중인 동물을 반환받으려는 소유자로 하여금 동물을 적정하게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기간동안 학대행위가 강하게 의심됨에도 불구하고 또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피학대동물을 학대행위자와 함께 거주하도록 사실상 방치하는 것은 추가적인 동물학대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sup>192)</sup> 동물에 대한 몰수는 판결 이전과 이후 과정에서 점검되고 논의되어야 하는 처분이다. 재판 전후는 물론 이를 방입한 가족들에게 까지도 피학대 동물 입양과 추가적 보호를 금지하는 미국의 동물학대 관련 규정들이 참고할만한 좋은 예이다.

몰수의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형법상 “몰수”는 형벌의 일종으로, 몰수는 다른 형벌에 부가하여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않을 경우에도 몰수요건이 있을 경우 몰수만을 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sup>193)</sup> 학대를 당한 동물 또는 학대를 당할 위험이 있는 동물을 “몰수”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 형법상 몰수의 대상은 “물건”, 즉, 명백한 소유자가 있지 않은,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이러한 대가로 취득한 물건이 몰수의 대상인데, 동물을 이러한 몰수의 대상인 물건으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다. 형법상의 “몰수”라는 용어와는 좀 다른 용어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아동복지법 제18조 제1항에서는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가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동물을 학대한 소유자 등에 대하여 소유권 행사 제한 또는 소유권 상실 등의 처분을 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 물론, ‘소유권’이라는 표현 역시 ‘몰

보호·관리하기 위한 사육계획서를 제출하게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고(개정법 제34조 제1항, 제41조 제1항), 동물보호관으로 하여금 동물 소유자의 사육계획서 내용 이행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으며(법 제41조 제4항), 동물보호관의 직무수행을 거부, 방해, 기피한 경우 법 제101조 제3항 제26호에 따라 최대 100만 원 이하 과태료의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위 과태료 규정은 동물보호관의 직무수행을 ‘거부, 방해, 기피’한 경우에 적용될 뿐, 동물보호관의 점검 자체를 거부, 방해, 기피하지는 아니한 채 ‘사육계획서의 내용만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고 할 것인바, 형식적인 사육계획서 제출이 개인의 주거지 등 은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피학대동물의 학대 피해 방지에 얼마나 실효적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192) 김준성(2022).

193) 형법 제49조(몰수의 부가성)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한다. 단,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수' 표현과 동일선상에서 타당하지 않은 용어일 수도 있다.

동물의 법적 지위가 '물건'에 불과한 우리 법제에서는 당연히 '몰수'라는 표현이 타당하겠지만, 형법이나 민법이 아닌 동물보호법에 해당 내용을 규정한다면, 다른 용어를 사용할 수도 있다고 본다. 조금 더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용어 사용의 구체적인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동물학대자에 대한 동물의 몰수, 동물사육금지 제도도 도입이 필요한 부분인 것은 분명하다.

### 3.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

아동학대 사건과 가정폭력사건에서 행해지고 있는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조치들이 동물학대 행위자와 피학대동물에게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다.

응급조치를 통해 현장에서 즉각적인 학대 행위자와 피학대동물을 분리할 수 있고, 피학대 동물을 보호시설로 인도할 수 있다. 아동학대처벌법이 응급조치를 위해 경찰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동행하도록 하는 것을 참고하여, 동물학대 담당 공무원 혹은 동물학대 관련 업무를 위임받은 자가 동행하여 피학대 동물을 보호소로 인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동시에 몰수가 진행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후 임시조치에 의해 아동학대처벌법에서 접근금지 명령과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제한을 둘 수 있는 것과 유사하게 유죄판결 이전에도 소유권 제한이 임시조치의 내용으로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 4. 동물학대 행위자 사후 관리 제도

#### 가. 성범죄자 신상등록·공개·고지 제도

미국의 경우에는 주단위는 물론 카운티 단위에서 동물학대자 신상을 등록하고 공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관련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의 주와 카운티에서는 동물 학대 가해자 관리를 성범죄자와 같은 방식으로 지역사회에 위험성을 알리고 추가적 동물의 피해를 방지하겠다는 입장을 강하게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동물학대자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공개하는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참고할 수 있는 제도는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등록공개고지제도이다.

신상정보등록제도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등록·관리하여 성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고, 그 내용의 일부를 일반 국민 또는 지역주민에게 알림으로써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 7월 청소년 성매매 문제등의대응책으로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신상과 범죄요지를 청소년보호위원회 홈페이지와 관보 등에 게시하는 것으로 시작되었고, 2010년에는 인터넷을 통한 공개 제도가 시행, 2011년 1월에는 신상정보 우편 고지 제도가 시행되었다. 이후 2011년 성인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신상등록기간은 판결 당시 선고형을 기준으로 등록기간이 차등화되어 벌금형은 10년, 3년 이하 징역형은 15년, 3년 초과~10년 이하 징역형은 20년, 사형·무기·10년 초과 징역형은 30년간 신상정보가 등록·관리된다. 최대 30년 동안 정부기관에 등록된다는 사실에 의해 경각심을 갖게 하는 등의 일반 범죄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재범할 경우 등록된 신상정보로 인해 쉽게 적발될 것이라는 심리적 압박을 통한 범죄 억제 기대효과를 갖는다. 또한 수사기관의 경우에는 성범죄 발생 시 업데이트된 성범죄자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용의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범인의 추적 및 검거를 용이하게 하여 수사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효과를 갖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공개·고지 제도는 성범죄자에 대한 유죄판결에 뒤따르는 처분이다보니 추가적인 과잉 처벌의 우려와 기본권침해의 문제가 초기에 지적되었다. 하지만 대법원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해당 제도를 보안처분으로 본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신상정보 등록 제도의 목적이 범죄예방을 위한 심리적 압박, 즉, “억압적 자기검열체계”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 법적 성격이 보안처분이라고 보았다.<sup>194)</sup> 유사하게 인권위원회에서도 2007년 결정에서 해당 제도가 사회적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한 보안처분의 일종<sup>195)</sup>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선고에서도 “등록조항에 의하여 제한되는 사익에 비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및 재범 방지와 사회 방위라는 공익이 크다는 점에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등록조항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과거 이러한 우려 속에서 출발하였던 신상등록 제도는 현재 98,000여 명의 신상이 등록

194)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9253 등 다수 판결

195) 국가인권위원회.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2007.1.19. 21면.

되어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다. 등록되는 자료들은 성명, 성범죄 경력 정보,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전자장치 부착 여부 및 기간, 사진(상반신 및 전신),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범죄 전과 사실, 소유차량의 등록정보, 신체정보(키와 몸무게)이다. 이러한 제출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경찰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사진 촬영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다.

기 운영 중인 성범죄자 신상등록제도가 추가적인 처분이 아니라 보안처분이라고 해석된 점과, 재범 방지와 사회 방위 측면에서 개인의 개인정보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된 점을 고려하여, 동물학대자에 대한 신상등록 제도 역시도 엄정하고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행위자의 재범방지는 물론 피학대 동물의 피해 확산을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운영 가능하다. 미국의 경우 주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고 있지만 동물학대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자 전체부터 불필요하게 과도한 고통을 유발하는 학대, 성적 학대, 동물싸움 행위자에만 한정하여 운영하기도 한다.

#### 나. 병무청 병역기피자 공개제도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등록제도 이외에도 우리나라의 경우 병역기피자에 대한 신상정보도 공개되고 있다. 병역기피자 공개 제도는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에 의한 병역을 거부, 기피한 사람의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로, 2014년 12월 병역법 개정에 의해 병역기피자 공개 제도의 근거조항이 신설되어 2015년 7월에 시행되었다.

병역기피자 공개는 매년 12월에 공개되며, 공개일 기준으로 전년도에 발생한 병역판정검사 거부자, 현역 입영거부자, 사회복무요원 등의 소집거부자, 국외여행허가 위반자가 그 대상이다. 정당한 사유없이 병역 의무를 기피하는 사람들의 인적사항(기피일자, 기피 요지, 주소, 연령, 이름)을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방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이 제도는 병역 기피 발생을 예방하고 성실한 병역 이행을 유도하여 공정한 병역 이행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제정목적에 갖고 있다.

병역법 제81조의 2의 조문으로 이를 규정하고 있고, 병역기피자 공개를 위한 위원회의 운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병역의무기피 공개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심의의결한다. 다만 시행령에 의해 이들의 인적사항을 삭제하는 권한은 병무청장이 갖는다.

▶▶▶ [표 5-8] 병역 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공개 관련 법령

법령	조문
병역법	<p><b>제81조의 2(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b> ① 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적사항과 병역의무 미이행 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질병, 수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t;개정 2016. 5. 29., 2019. 12. 31.&gt;</p> <p>[본조신설 2014. 12. 30.]</p>
병역법 시행령	<p><b>제160조(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b> ① 법 제8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질병, 수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p>④ 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른 공개는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방병무청(지방병무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1조에서 같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p> <p>⑤ 병무청장은 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의무를 이행하는 등 그 인적사항등을 공개할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인적사항등을 삭제하여야 하며, 관할 지방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제3항 각 호의 인적사항등을 삭제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⑥ 제5항에 따른 인적사항등을 삭제하는 기준과 절차 등 세부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p>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병역기피자 명단은 다음과 같은 방식을 따르고 있다.<sup>196)</sup>

▶▶▶ [그림 5-1] 병무청 웹사이트의 병역기피자 공개 화면

연번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병역법위반
1	김민수	31세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흥대로161길	2017-10-15	허가기간내미귀국	법 제94조
2	김영문	31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	2017-03-31	허가기간내미귀국	법 제94조
3	김영인	30세	강원도 춘천시 우두1길	2018-01-01	허가기간내미귀국	법 제94조
4	김영주	30세	서울특별시 은평구 용암로29길	2020-01-01	허가기간내미귀국	법 제94조
5	김영재	32세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용담로	2016-12-01	허가기간내미귀국	법 제94조
6	김영수	34세	충청남도 금산군 금성면 진산로	2019-04-24	허가취소후미귀국	법 제94조
7	김영수	31세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42길	2017-01-01	허가기간내미귀국	법 제94조
8	김영식	34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2017-01-01	허가기간내미귀국	법 제94조
9	김영규	32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동로3길	2020-07-01	허가기간내미귀국	법 제94조
10	김영호	32세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9길	2016-02-01	허가기간내미귀국	법 제94조
11	김영규	24세	전라북도 부안군 개화면 상복길	2019-11-26	현역입영기피	법 제88조
12	김영조	29세	대구광역시 서구 큰장로11길	2018-10-08	사회복무요원소집기피	법 제88조
13	김영중	33세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들문천로	2020-02-07	허가취소후미귀국	법 제94조
14	김영만	33세	광주광역시 남구 광복마을길	2017-01-01	허가기간내미귀국	법 제94조

196) [https://open.mma.go.kr/caisGGGS/bygp/list.do;jsessionid=ObzncYq\\_144GsDlBFriFhlnkupKWjAYSi2903gukUKzYiQLOA95l-651517454!NONE](https://open.mma.go.kr/caisGGGS/bygp/list.do;jsessionid=ObzncYq_144GsDlBFriFhlnkupKWjAYSi2903gukUKzYiQLOA95l-651517454!NONE)

### 라.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공개

앞선 두 제도와 유사하게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명단도 여성가족부의 관리 하에 공개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이행 심의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양육비 채무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근무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기간 및 양육비 채무액을 여성가족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sup>197)</sup> 이러한 내용을 규율하는 법은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 제21조의5의 내용과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의4에 명시되어 있다.

해당제도는 2021년 7월에 시행되었다. 관련 법에 의해 공개되는 내용은 1) 양육비 채무자의 성명, 나이 및 직업, 2)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또는 근무지(도로명주소법제2조제5호의 도로명 및 같은 조 제7호의 건물번호까지로 한다), 3) 양육비 채무 불이행기간 및 양육비 채무액이다.

명단 공개시 양육비 채무자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고 있고, 해당 명단은 여성가족부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며, 또는 추가적으로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언론이 요청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운영한다. 양육비 이행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명단이 확정되며 공개기간은 3년이다.

#### ▶▶ [표 5-9]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 관련 법령

법령	조문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약칭: 양육비이행법)	<p><b>제21조의5(명단 공개)</b>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양육비 채무자의 성명, 나이 및 직업</li> <li>2.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또는 근무지(도로명주소법 제2조제5호의 도로명 및 같은 조 제7호의 건물번호까지로 한다)</li> </ol>

197)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법령	조문
	<p>3. 양육비 채무 불이행기간 및 양육비 채무액</p> <p>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명단 공개를 할 경우 양육비 채무자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공개는 여성가족부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이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언론이 요청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단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21. 1. 12.]</p>
<p>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양육비이행법 시행령)</p>	<p><b>제17조의4(명단 공개)</b> ①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의 기간은 공개일부터 3년간으로 한다.</p> <p>② 법 제21조의5제1항 단서에서 “양육비 채무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양육비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li> <li>2.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액 중 절반 이상을 이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이행계획을 제출하여 위원회가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li> <li>3. 양육비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li> <li>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원회가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li> </ol> <p>③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 후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전액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명단을 삭제해야 한다.</p> <p>[본조신설 2021. 7. 13.]</p>

## 제 6 장

동물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

# 결 론



동물보호법은 계속 개정을 거듭하다가 최근 전면개정 되었고, 2023년과 2024년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변화된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지만, 실질적으로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해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처분이 빠진 채 전면개정되었고, 피학대동물에 대한 보호방안이 미흡하여 전면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제대로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 두 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동물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가장 실효성 있는 제도는 학대행위자에 대하여 동물의 사육 등을 금지하는 제도이다. 동물사육을 금지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 그 방법 중 첫째는 형사제재의 형식으로서, 검사가 청구하고 법원이 유죄판결 선고 시에 보안처분으로 함께 내리는 명령의 형식인 ‘동물사육금지명령’을 고려해볼 수 있다.(개정안 1) 두 번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처분으로 부과하는 방법이다(개정안 2). 그 외에도 기존의 이수명령과 병과하는 방법(개정안 3), 보안처분의 부수처분으로 부과하는 방법(개정안 4) 등이 있다.

### 개정안 1

동물학대범죄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제3장 제1절의 뒷부분에 동물사육금지명령에 대한 내용을 추가한다. 또는 이를 별도의 절로 구성할 수도 있다.

**제2조(정의)** 10. “동물학대범죄”란 제97조 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 제2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범죄를 말한다.

**제17조(동물사육금지명령의 청구)** ① 검사는 동물학대범죄로 공소제기된 사람으로서, 동물학대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동물을 사육, 관리, 보호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동물사육금지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검사에게 제1항의 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검사는 동물사육금지명령을 청구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피의자에 대한 정신감정이나 그 밖에 전문가의 진단 등의 결과를 참고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동물사육금지명령의 청구는 공소가 제기된 동물학대범죄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하여야 한다.
- ⑤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동물학대범죄사건을 심리한 결과 동물사육금지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동물사육금지명령의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청구사건의 관할)** 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사건의 관할은 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사건과 동시에 심리하는 동물학대범죄사건의 관할에 따른다.

**제19조(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서의 기재사항 등)** ① 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대상자(이하 “피명령청구자”라 한다)의 성명과 그 밖에 피명령청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 2.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
- 3. 적용 법조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원은 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서의 부분을 피명령청구자 또는 그의 변호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물학대범죄사건에 대한 공소제기와 동시에 부착명령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5일 전까지, 동물학대범죄사건의 심리 중에 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공판기일 5일 전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제20조(동물사육금지명령의 판결 등)** ① 법원은 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기간 및 사육, 관리, 보호가 금지되는 대상동물을 정하여 판결로 동물사육금지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판결로 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 1. 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
- 2. 동물학대범죄사건에 대하여 무죄(심신상실을 이유로 치료감호가 선고된 경우는 제외한다)·면소·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을 선고하는 때

3. 동물학대범죄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때<sup>198)</sup>
4. 동물학대범죄사건에 대하여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
  - ③ 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은 동물학대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 ④ 동물사육금지명령 선고의 판결이유에는 요건으로 되는 사실, 증거의 요지 및 적용 법조를 명시하여야 한다.
  - ⑤ 법원은 제1항에 따라 동물사육금지명령을 선고하려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동물사육금지명령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 등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⑥ 동물학대범죄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 및 상소의 포기·취하가 있는 때에는 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에 대하여도 상소 및 상소의 포기·취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의 청구나 비상상고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 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검사 또는 피명령청구자 및 형사소송법 제340조·제341조에 규정된 자는 동물사육금지명령에 대하여 독립하여 상소 및 상소의 포기·취하를 할 수 있다.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의 청구나 비상상고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1조(동물사육금지명령 판결 등에 따른 조치)** ① 법원은 제20조에 따라 동물사육금지명령을 선고한 때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동물사육금지명령을 선고받은 자(이하 “피명령자”라 한다)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판결문의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②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국립법무병원 및 군교도소의 장(이하 “교도소장등”이라 한다)은 피명령자가 석방되기 5일 전까지 피명령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법원은 그 의견이나 그 밖에 동물사육금지명령의 집행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22조(집행지휘)** ① 동물사육금지명령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집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휘는 판결문 등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한다.

**제23조(동물사육금지명령의 집행)** ① 피명령자는 동물사육금지명령의 집행기간 동안 대상동물을 사육, 관리, 보호할 수 없다.

198) 선고형 기준 징역형의 유죄판결로 한정하는 경우 추가.

② 제21조제1항에 따라 판결문 등본을 받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피명령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육, 관리, 보호가 금지된 동물을 사육, 관리, 보호하는지 여부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피명령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6조제1항에 따른 격리 및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동물사육금지명령 판결 확정일부부터 동물사육금지명령을 집행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집행한다.

1. 동물사육금지명령의 원인이 된 동물학대범죄사건으로 징역형이나 치료감호를 집행하는 경우,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석방되는 날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가종료되는 날부터 집행한다.
2. 동물사육금지명령의 원인이 된 동물학대범죄사건이 아닌 다른 범죄사건으로 형이나 치료감호의 집행이 계속될 경우에는 동물사육금지명령의 원인이 된 동물학대범죄사건이 아닌 다른 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석방되는 날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가종료 되는 날부터 집행한다.

**제24조(동물사육금지명령의 임시해제 신청 등)** ① 피명령자의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피명령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동물사육금지명령을 받은 사람이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해야 할 중대한 필요성이 생기거나 그 밖에 동물사육금지명령의 집행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심사위원회에 동물사육금지명령의 임시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은 동물사육금지명령의 집행이 개시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하여야 한다.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기각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임시해제의 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서에 임시해제의 심사에 참고가 될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동물사육금지명령 임시해제의 심사 및 결정)** ① 심사위원회는 임시해제를 심사할 때에는 피명령자의 인격, 생활태도, 재범의 위험성에 대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임시해제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피명령자나 그 밖의 관계인을 직접 소환·심문 또는 조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요구를 받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심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심사위원회는 피명령자가 동물사육금지명령이 계속 집행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개선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부차명령의 임시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
- ⑤ 심사위원회는 동물사육금지명령의 임시해제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결정서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26조(임시해제의 취소 등)**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사육금지명령이 임시해제된 자가 동물학대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심사위원회에 임시해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는 임시해제된 자의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시해제를 취소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임시해제가 취소된 자는 잔여 명령기간 동안 동물사육금지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시해제기간은 동물사육금지명령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7조(동물사육금지명령 집행의 종료)** 제20조에 따라 선고된 동물사육금지명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집행이 종료된다.

1. 동물사육금지명령기간이 경과한 때
2. 동물사육금지명령과 함께 선고한 형이 사면되어 그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 때
3. 동물사육금지명령이 임시해제된 자가 그 임시해제가 취소됨이 없이 잔여 명령기간을 경과한 때

**제97조(벌칙)**

- ① 생략
- ② 생략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23조제1항을 위반한 자

우선 동물사육금지명령은 도입될 경우 이는 보안처분의 성격을 갖게된다. 즉, 형사 제재 중 보안처분 형식으로 동물사육금지명령제도는 동물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법원이 동물을 보유, 관리, 보호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법원이 내리게 되는 보안처분인 광의의 형사제재에 대해서는 '처분'이라는 이름보다는 '명령'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이 기존의 형사제재와의 정합성 측면에서 타당하다. 이 제도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부가될 수 있다. 법원이 부과하는 동물사육금지명령은 원칙적으로 동물학대범죄에 대한 유죄판결과 함께 부과하는 형식이다.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될 때에는 우선적으로는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로만 한정하여 이 제도를 시행하고, 향후 제도 안정화 단계에서 책임조각사유가 있어 유죄판결 받지 않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를 도입한다 하여 무조건적으로 동물사육금지제도를 모든 사건마다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제도의 도입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사건마다 비례성원칙의 충족 여부가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 명령이 비례성 원칙에서 균형성 원칙이 지켜진다고 하기 위해서는, 이 명령을 부과하기 위한 조건으로 단순한 과거의 범죄행위인 학대행위만을 요건으로 두어서는 안 되며, 보안처분의 목적인 장래에 대한 범죄위험성, 즉 재범위험성을 명령의 요건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다른 법률에서 운용하고 있는 청구전 조사 제도나 의견청취제도 등 사전의 조사제도의 필요성이 검토되어야 한다.

동물사육금지명령을 도입할 경우에도 몇가지 세부적인 문제들은 남는데, 우선 다양한 유형의 동물학대행위를 일률적으로 '동물사육금지명령'의 대상 범죄로 삼을 것인지, 또는 이 중 중한 범죄에만 우선적으로 형사제재로서의 동물사육금지처분을 규정할 것인지를 정하여야 한다.

이 명령은 검사가 청구하며, 명령의 청구는 공소제기 시부터 가능하고 공소가 제기된 동물학대등 사건(특정범죄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하여야 한다. 학대범죄의 대상범죄에 대하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 약식절차에 의하여 약식명령이 가능하므로, 약식명령 시에도 동물사육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도 도입 초기 단계에는 중한 범죄유형으로 한정하여 제도의 정착을 꾀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징역형이 배제되는 약식절차에 의한 유죄판결에 있어서는 부수적인 동물사육금지제도는 부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법원이 동물학대범죄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검사의 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사육, 관리, 보호가 금지되는 대상동물을 정하여 판결

로 동물사육금지명령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형사소송법상 재판의 집행은 검사가 지휘하도록 하므로(제460조), 원칙적으로 이 명령의 집행은 검사의 지휘 하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물구조·보호 등의 조치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검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 명령의 집행지휘를 위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업무를 위임받아 집행하도록 함이 효율적일 것이다.

동물사육금지명령을 받은 사람이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해야 할 중대한 필요성이 생기거나 그 밖에 동물사육금지명령의 집행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명령에 대하여는 임시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물사육금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형사제재를 함으로써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동물사육금지제도를 법원의 명령 형식으로 구성할 경우, 이 제도의 기본권 제한적 측면을 고려할 때 신중하게 제도에 접근할 수 있는 사법적 제재방식이라는 점이 장점이기도 하다.

제도 도입 초기 단계에서는 중대한 학대범죄를 대상으로 동물보유등금지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 중 실현가능성이 높은 두 가지를 고른다면, 첫째, 실제 처벌되는 선고형을 기준으로 징역형을 부과할 때에만 동물사육금지제도를 도입하는 방법, 둘째, 동물보호법상 금지되는 학대행위의 행위유형과 법정형을 고려하여 그 유형을 선별하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본 보고서에서 개정안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그 외 금지행위로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분양금지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때에는 사육 등이 금지되는 동물을 특정하는 방법을 결정하여야 하며, 이론적으로는 미국의 예와 같이 모든 종류의 동물에 대한 사육 등을 금지하는 방법, 또는 종별로 금지하는 방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개정안 2〉

**제101조(형벌과 동물사육금지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은 제97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를 지은 자(이하 이 조에서 “동물학대행위자”라 한다)에게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면서, 동물학대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기간 및 사육, 관리, 보호가 금지되는 대상동물을 정하여 동물사육금지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

② 동물학대행위자에게 부과하는 동물사육금지명령은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실행을 선고할 경우에 병과한다. 동물사육금지명령은 제100조제1항의 수강·이수명령과 병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동물사육금지명령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집행한다.

④ 법원은 동물사육금지명령의 집행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낼 수 있다.

⑤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피명령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육, 관리, 보호가 금지된 동물을 사육, 관리, 보호하는지 여부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피명령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6조제1항에 따른 격리 및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동물사육금지명령 판결 확정일부터 동물사육금지명령을 집행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집행한다.

1. 동물사육금지명령의 원인이 된 동물학대범죄사건으로 징역형이나 치료감호를 집행하는 경우,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석방되는 날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가종료되는 날부터 집행한다.
2. 동물사육금지명령의 원인이 된 동물학대범죄사건이 아닌 다른 범죄사건으로 형이나 치료감호의 집행이 계속될 경우에는 동물사육금지명령의 원인이 된 동물학대범죄사건이 아닌 다른 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석방되는 날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가종료 되는 날부터 집행한다.

개정안 2는 현행 동물보호법에 존재하는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과 등가적으로 동물사육금지명령을 규정하는 방법임. 보호처분의 한 종류로 동물사육금지제도를 구성하는 것이다.

**〈개정안 3〉**

**제\*조 (동물사육금지처분)** 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중대한 동물학대범죄로 공소제기된 사람으로서 동물학대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5년 이하의 기간 및 대상동물을 정하여 동물을 사육, 관리, 보호하지 않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동물이 현재 사육, 관리, 보호하고 있는 동물인 경우 적합한 자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적합한 지위에 있는 자를 지정하지

못하거나 인도하지 못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이 적합한 자를 지정하여 인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동물사육금지처분을 명한 경우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처분대상자가 대상동물을 사육, 관리, 보호하는지 여부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처분대상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6조제1항에 따른 격리 및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동물사육금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해야 할 중대한 필요성이 생기거나 그 밖에 동물사육금지처분의 집행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철회할 수 있다.

**제\*조(동물사육금지처분위원회)**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사육금지처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동물사육금지처분에 관한 중요 사항
2. 동물사육금지처분의 철회에 관한 중요 사항

**제10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조제\*항에 따른 동물사육금지처분 등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개정안 3은 행정청의 행정처분 형식을 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동물사육금지 처분’을 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행정처분 형식의 장점은 동물의 구조·보호(동물보호법 제14조)에서 주도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이다. 행정처분의 형식을 취할 때에도 형사처벌받은 자를 대상으로 들지, 또는 동물학대행위가 인지되는 경우 형사재판과 무관하게 이 처분을 부과할지가 문제된다.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동물사육금지처분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동물학대행위자로서 1) 학대행위 유형이 중대한 행위이고, 2)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며, 3) 학대행위로 인해 지역 주민의 평온한 생활에 지장을 주는 등의 요건을 실시하여 행정청이 재량판단을 통해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입법하여야 한다.

동물사육금지를 행정처분의 형식으로 제도화하는 경우 행정법상의 불복절차인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처분의 적법성을 다룰 수 있다. 동물사육금지처분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통해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개정안 4. ① 보호관찰법 개정안〉**

**보호관찰법 개정안 제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① 생략**

② 생략

③ 법원 및 심사위원회는 판결의 선고 또는 결정의 고지를 할 때에는 제2항의 준수사항 외에 범죄의 내용과 종류 및 본인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별히 지켜야 할 사항으로 따로 과(科)할 수 있다.

1. 야간 등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
2.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특정 지역·장소의 출입 금지
3. 피해자 등 재범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특정인에 대한 접근 금지
4.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5. 일정한 주거가 없는 자에 대한 거주장소 제한
6.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
7.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8.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9.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마약류 투약, 흡연,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에 따를 것
- [개정] 10. 대상동물의 범위를 정하여 대상동물의 사육, 관리, 보호를 금지
- [신설] 11.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0호에서 이동)

**〈개정안 4. ② 보호관찰법 시행령 개정안〉**

**보호관찰법 시행령 개정안 제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특별준수사항)** 법 제32조제3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 1. 5.>

1.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 운전을 하지 않을 것

2. 직업훈련, 검정고시 등 학과교육 또는 성행(性行: 성품과 행실)개선을 위한 교육, 치료 및 처우 프로그램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
3. 범죄와 관련이 있는 특정 업무에 관여하지 않을 것
4. 성실하게 학교수업에 참석할 것
5. 정당한 수입원에 의하여 생활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기적으로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
6.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 또는 보관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할 것
7. 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것
- [개정] 8. 대상동물의 범위를 정하여 대상동물의 사육, 관리, 보호를 금지
- [신설] 9.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생활상태, 심신의 상태, 범죄 또는 비행의 동기, 거주지의 환경 등으로 보아 보호관찰 대상자가 준수할 수 있고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개선·자립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구체적인 사항 (제8호에서 이동)

개정안 4는 보안처분으로서의 보호관찰의 특별준수사항으로 동물사육금지 등을 부과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기존 보안처분의 부수처분으로 부과하게 될 경우 위의 보호관찰법 제32조의 3항에 “동물사육금지”의 내용을 추구하는 법령개정을 통해 동물학대자에 대한 보호관찰 특별준수사항 부과가 가능하고, 둘째, 법률의 개정이 없다 하더라도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의 재량을 통해 특별준수사항에 개별적 사안을 추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통상적이고 일률적인 준수사항 부과가 어렵기에 집행의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한계이다. 한편으로 이 제도는 본처분인 보호관찰이 이미 존재하는 제도라는 점,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제도를 용이하게 신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피학대동물이 여전히 학대상황에서 노출됨으로써 보호가 용이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 이 제도의 임시조치제도를 통해 이른 시기에 피학대동물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피학대동물에 대한 임시조치제도는 현 동물보호법 제34조 제1항의 격리조치를 좀 더 구체화하는 제도로 구성함으로써, 기존의 격리조치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함을 목표로 하였다.

학대행위가 인지된 때, 즉각적으로 학대 행위를 멈추도록 하고, 반복피해를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피해동물과 가해자를 현장에서 분리·격리하는 조치가 필요하므로 이 격리조치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재량적으로 피학대동물을 안전한 곳으로 분리·격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기능하여야 한다.

임시조치에 해당하는 임시동물사육금지조치는 일종의 가치분제도라 볼 수 있다. 이 제도의 청구권자는 검사로서, 긴급격리조치 후 72시간 이내에 청구하고 판사가 이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관할은, 수사단계에서는 동물학대범죄사건이 인지된 관할을 따르고, 공소제기 후에는 사물관할에 따른다. 수사단계에서 이 조치의 집행업무 담당은 경찰이 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특별사법경찰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피학대동물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기 위하여 소유·보유자인 학대행위자와 영구 격리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첫 번째 안으로 피학대동물을 소유자로부터 격리하는 방법으로 ‘압수’ 또는 ‘몰수’의 방법이다. 영구격리제도로서의 압수는 기존의 형사소송법상 압수, 몰수와 유사하면서도 그 성질이 다른 제도로 보아야 함. 특히, 동물에 대하여 ‘압수’ 및 ‘몰수’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어,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현행 동물보호법에 제도화된 내용들을 소폭 개정함으로써 학대행위자로부터 피학대동물을 영구 격리하는 제도이다. 긴급격리조치를 통하여 피학대동물을 구조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긴급격리하는 방법이다.

분리 이후 다시 학대행위자에게 피학대동물을 돌려보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현행 동물보호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권 취득규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단, 학대행위자가 소유권 유지의 의지를 표명한 경우에도 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소유권을 박탈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우리나라에서 동물사육금지제도에 대한 강한 비판으로 사인의 재산권이라는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높으므로, 학대행위자의 의지에 반하는 소유권 박탈 부분은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제도 초기에는 소유권을 강제로 박탈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소유권을 포기하게 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게 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동물사육금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임시조치를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과 같이 표현된다.

▶▶ [그림 6-1] 동물사육금지 임시조치



그 외의 제도로 미국의 경우에는 주단위는 물론 카운티 단위에서 동물학대자 신상을 등록하고 공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참고해 볼 수 있다. 동물학대자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공개하는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참고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제도는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등록공개고지제도이다. 기 운영 중인 성범죄자 신상등록제도가 추가적인 처분이 아니라 보안처분이라고 해석된 점, 재범 방지와 사회 방위 측면에서 개인의 개인정보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된 점을 고려하여, 동물학대자에 대한 신상등록 제도 역시도 엄정하고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행위자의 재범방지는 물론 피학대 동물의 피해 확산을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운영 가능할 것이다.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등록제도 이외에도 우리나라의 경우 병역기피자에 대한 신상정보도 공개되고 있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명단도 여성가족부의 관리하에 공개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할 수 있다.

위의 절차를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그림 6-2] 동물학대 재발방지 제도 구성



위에서 제시한 어떠한 제도이든지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추어서, 국민의 동물보호에 대한 법감정에 발맞추어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시행 첫 단계에서부터 모든 것을 포섭하고, 모든 동물학대행위를 처벌하려는 시도보다는 대상범죄인 동물학대범죄를 중한 범죄로 한정하는 등 제도 도입 단계에서 차근차근 발맞추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 1. 국내단행본

- 김중기(집필), 주석민법 [총칙2], 제5판(편집대표 김용덕), 한국사법행정학회  
법무부, 민사소송법 번역집(독일), 2019.
- 안토니 F. 괴첼/이덕임 역, 동물들의 소송, 알마, 2016.
- 이창현, 형사소송법(제8판), 정독, 2022.
- 전영실/윤정숙/유진, 영유아 학대특성 및 피해자 보호지원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
- 클리프턴 P.플린, 동물학대의 사회학, 책공장더불어, 2018, 2022.
- 피터싱어, 동물해방, 연암서가, 2021
- 윤철홍, 민사법 체계에서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법무부 용역보고서, 2004.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아동학대가 피해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및 후유증 연구, 법무  
부, 2015
- 동물자유연대, 2020년 동물학대 대응 매뉴얼, 2020
- 한국행정학회, 아동학대 수행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2016

## 2. 국내논문

- 강은영, 아동학대 발생현황과 특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
- 김아름,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공공성 강화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이슈페이퍼 2018-08,  
2018
- 김영준, 국내 동물범죄 수사의 한계 및 개선점에 대하여, 동물범죄 양형기준 수립을  
위한 국회 토론회(실효성 있는 동물범죄 예방을 위한 양형기준 모색) 자료집,  
2022
- 김준성, 미국의 동물보호 및 동물학대 행위 처벌 관련법제 연구. 법무연수원. 국외훈련  
검사 연구논문, 2022

- 김지현, 동물과의 공존을 위한 미국 입법례, 최신외국입법정보,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2018
- 김진희/김판기, “동물관련 법제의 체계화를 위한 시론적 고찰”, 법학연구 통권 제52집,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17
- 박광동, 아동학대 관련 법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8
- 박선권,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과제와 개선방향 -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 2020
- 송호영, “동물의 법인격 논의 동향과 향후 민사법적 변화 모색”, 『동물법의 새로운 지평』, 사법정책연구원 - 강원대 환경법센터·동물법센터 공동학술대회 자료집(2022. 11. 25.)
- 윤철홍, “독일민법상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소고”, 인권과 정의 제420호, 2011
- 이세원, “한국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입법적·사법적 관점에서의 변화과정 연구”, 보건사회연구 38(3), 2018
- 이재영,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입법례 및 시사점-민사법 규정을 중심으로-, NARS 현안분석 제227호, 2021
- 주현경, “동물의 법적 지위 변화와 형사법의 변화 모색”, 환경법과 정책 제28권, 2022
- 최준규,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민법 개정안의 의의와 민사법의 향후 과제, 그리고 민사법의 한계”, 환경법과 정책 제28권, 2022
- 한민지, “동물사육금지처분의 법적 쟁점과 과제 - 해외 입법례 비교를 통한 입법적 고찰”, 『동물법의 새로운 지평』, 사법정책연구원 - 강원대 환경법센터·동물법센터 공동학술대회 자료집(2022. 11. 25.)
- 한민지, “스위스법에 따른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동향”, 서울법학 제28권 제4호, 2021
- 함태성, “개물림 사고에 대한 책임 및 대응의 법적 쟁점과 과제”, 『동물법의 새로운 지평』, 사법정책연구원 - 강원대 환경법센터·동물법센터 공동학술대회 자료집(2022. 11. 25.)
- 함태성, “동물보호법의 입법적 평가와 향후 과제”, 공법학연구 제21권 제4호, 2020
- 홍완식, “독일의 동물보호법제에 관한 고찰”, 유럽헌법연구 통권25호, 2017.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0년 5월 13일), “2019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0년 8월 30일), “보건복지부, 2019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발간”, 2020.

이은주 의원실 보도자료(2020년 10월 21일), “부실한 경찰청 ‘동물학대 수사매뉴얼’ 재개정해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8 아동학대 주요 통계. 보건복지부, 2018

### 3. 외국문헌

Fischer, Thomas(Hrsg.), Strafgesetzbuch (StGB), 65. Aufl., C. H. Beck: München, 2018.

Landmann/Rohmer, Umweltrecht, EL Januar 2017.

Lotz, Albert/Metzger, Ernst(Hrsg.), Tierschutzgesetz Kommentar, 7. Aufl., C. H. Beck: München, 2019.

Meyer-Goßner, Lutz/Schmitt(Hrsg.), Bertram, Strafprozessordnung (StPO), 60. Aufl., C. H. Beck: München, 2017.

Säcker, Jürgen u. a.(Hrsg.), Münchener Kommentar zum BGB, 7. Aufl., C. H. Beck: München, 2015.



2023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연구용역과제보고서  
**동물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

발행 | 2023년 1월

발행처 | 농림축산식품부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화 | 100

인쇄 | (주)현대아트컴 02-2278-4482

• 보고서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

(비매품)



동물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